

연구보고 2016-29



KI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6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2013년 이후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정부차원의 보육재정 지원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표준보육비용 산출 연구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어린이집 보육비용은 보육정책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년부터 보육비용을 매년 산출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과제로 진행되는 보육비용 산출연구 중 4차년도 과제이다. 1차년도 연구는 보육의 질을 고려하여 보육비용 항목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함과 동시에,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단축형 보육 도입시 예상되는 보육비용 감소분도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지역물가 차이와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지방비 지원 차이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특히 그간 종일제 이외의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한 비용 관련 연구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였다는 점에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가 어린이집 운영 및 비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 차 례

요약 .....	1
I.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2. 연구내용 .....	15
3. 연구방법 .....	16
4. 용어의 정의 .....	17
II. 연구의 배경 .....	19
1. 보육비용의 개념 .....	19
2. 보육비용 산출시 접근 방법 .....	21
3.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정책 현황 .....	23
4.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 .....	28
5.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	34
III.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및 실태 .....	41
1.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	41
2.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운영 및 이용실태 .....	46
IV.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	55
1. 분석 자료 .....	55
2. 세입결산 현황 .....	57
3. 세출결산 현황 .....	62
4. 소결 .....	79
V.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	80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및 기본 원칙 .....	80
2. 인건비 .....	86
3. 업무추진비 .....	99
4. 관리운영비 .....	102

5. 사업운영비 .....	106
6. 시설비 .....	118
7. 보육비용 산출결과 종합 .....	124
VI. 요약 및 제언 .....	131
1. 요약 .....	131
2. 제언 .....	133
참고문헌 .....	141
Abstract .....	145
부록 .....	147
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	149
2.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150
3.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입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	151
4.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출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	180

## 표 차례

〈표 II-1-1〉 보육비용 관련 용어에 대한 기존 정의 .....	19
〈표 II-3-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	26
〈표 II-3-2〉 24시간 어린이집 및 휴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	27
〈표 II-4-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29
〈표 II-4-2〉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32
〈표 II-5-1〉 선행연구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유형 비교 결과 .....	38
〈표 II-5-2〉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의 표준보육료 수준 비교(97인) .....	40
〈표 III-1-1〉 설립유형 및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수,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현황 ..	41
〈표 III-1-2〉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 .....	42
〈표 III-1-3〉 2013-2015년 연령별 보육 아동수(현원) .....	43
〈표 III-1-4〉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현황 .....	44
〈표 III-1-5〉 시간연장어린이집 현황(2013-2015) .....	44
〈표 III-1-6〉 24시간 어린이집 현황(2013-2015) .....	45
〈표 III-1-7〉 휴일 어린이집 현황(2013-2015) .....	46
〈표 III-2-1〉 평일 및 토요일 운영 시간 및 현황 .....	47
〈표 III-2-2〉 토요일 보육참여 교직원 실태 .....	49
〈표 III-2-3〉 토요일보육 이용 영유아 재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	50
〈표 III-2-4〉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	51
〈표 III-2-5〉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근무형태 .....	51
〈표 III-2-6〉 시간연장보육시 주간 보육교사 연장 근무형태 .....	52
〈표 III-2-7〉 야간·24시간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	53
〈표 III-2-8〉 휴일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	54
〈표 IV-1-1〉 어린이집 세입·세출 결산 분석대상 .....	55
〈표 IV-1-2〉 주요 선행연구 세입·세출현황 분석시 어린이집 규모 분류 방식 ..	56
〈표 IV-2-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목별 규모 .....	58
〈표 IV-2-2〉 일반어린이집 세입 목별 분포 .....	59
〈표 IV-2-3〉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목별 규모 .....	60
〈표 IV-2-4〉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입 목별 분포 .....	61

〈표 IV-3-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63
〈표 IV-3-2〉 일반어린이집 세출 항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	64
〈표 IV-3-3〉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인건비)	66
〈표 IV-3-4〉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업무추진비)	67
〈표 IV-3-5〉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관리운영비)	68
〈표 IV-3-6〉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사업운영비)	69
〈표 IV-3-7〉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시설비)	70
〈표 IV-3-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72
〈표 IV-3-9〉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항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	73
〈표 IV-3-10〉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인건비)	74
〈표 IV-3-11〉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업무추진비)	75
〈표 IV-3-12〉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관리운영비)	76
〈표 IV-3-13〉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사업운영비)	77
〈표 IV-3-14〉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시설비)	78
〈표 V-1-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82
〈표 V-1-2〉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83
〈표 V-1-3〉 어린이집 규모별 반편성 및 교직원수	83
〈표 V-1-4〉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항목	85
〈표 V-2-1〉 보육교직원 호봉 및 월급여(6개 유형)	89
〈표 V-2-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내역	90
〈표 V-2-3〉 어린이집 교사 경력	92
〈표 V-2-4〉 어린이집 교사 호봉	92
〈표 V-2-5〉 보육교직원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결과	93
〈표 V-2-6〉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타 지원비용	94
〈표 V-2-7〉 보육교직원 호봉기준 월지급액	95
〈표 V-2-8〉 보육교직원 호봉기준 월지급액 기준 사용자부담비용	96
〈표 V-2-9〉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사용자부담금 제외) 산출결과	96
〈표 V-2-10〉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산출결과	97
〈표 V-2-1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산출결과	98
〈표 V-3-1〉 업무추진비 산출방식 비교	100



〈표 V-3-2〉	이용시간 유형별 업무추진비 평균 비교	101
〈표 V-3-3〉	이용시간 유형별 업무추진비 산출 결과	102
〈표 V-4-1〉	관리운영비 산출방식 비교	104
〈표 V-4-2〉	이용시간 유형별 관리운영비 평균 비교	105
〈표 V-4-3〉	이용시간 유형별 관리운영비 산출결과	105
〈표 V-5-1〉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산출방식 비교	108
〈표 V-5-2〉	연령별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최대-최저 지역 비교 결과	110
〈표 V-5-3〉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연령별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산출결과	110
〈표 V-5-4〉	보육연령별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일반/24시간)	111
〈표 V-5-5〉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112
〈표 V-5-6〉	교재교구비 산출방식 비교	113
〈표 V-5-7〉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연령별 교재교구비 산출결과	114
〈표 V-5-8〉	행사비 산출방식 비교	116
〈표 V-5-9〉	이용시간 유형별 행사비 평균 비교	116
〈표 V-5-10〉	이용시간 유형별 행사비 산출 결과	117
〈표 V-5-11〉	이용시간 유형별 사업운영비 산출 결과 종합	117
〈표 V-6-1〉	건축비 산출방식 비교	110
〈표 V-6-2〉	이용시간을 고려한 건축비 산출결과	119
〈표 V-6-3〉	놀이터 설치비 산출방식 비교	120
〈표 V-6-4〉	놀이터 설치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121
〈표 V-6-5〉	자산취득비 산출방식 비교	121
〈표 V-6-6〉	이용시간 유형별 자산취득비 산출결과	122
〈표 V-6-7〉	시설장비유지비 산출방식 비교	123
〈표 V-6-8〉	이용시간 유형별 시설장비유지비 산출 결과	123
〈표 V-6-9〉	이용시간 유형별 시설비 산출 결과 종합	124
〈표 V-7-1〉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1안(인건비 전체평균)	126
〈표 V-7-2〉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2안(인건비 국공립평균)	127
〈표 V-7-3〉	시간연장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	128
〈표 V-7-4〉	연도별 시간연장 보육단가 변화 추이	128
〈표 V-7-5〉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129
〈표 V-7-6〉	휴일 어린이집 교사수당 및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130

## 그림 차례

[그림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	7
[그림 II-3-1]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	24
[그림 V-1-1] 보육비용 산출 모형 .....	80
[그림 V-2-1] 어린이집 세출의 인건비 구성항목 .....	86
[그림 V-2-2] 인건비 산출 절차 .....	87
[그림 V-4-1] 관리운영비 산출 절차 .....	103

## 부록 표 차례

〈부록표 IV-2-1〉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51
〈부록표 IV-2-2〉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52
〈부록표 IV-2-3〉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53
〈부록표 IV-2-4〉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54
〈부록표 IV-2-5〉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55
〈부록표 IV-2-6〉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56
〈부록표 IV-2-7〉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57
〈부록표 IV-2-8〉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59
〈부록표 IV-2-9〉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60
〈부록표 IV-2-10〉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61
〈부록표 IV-2-11〉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63
〈부록표 IV-2-12〉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64
〈부록표 IV-2-13〉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65
〈부록표 IV-2-14〉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66
〈부록표 IV-2-15〉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68
〈부록표 IV-2-16〉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69
〈부록표 IV-2-17〉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70
〈부록표 IV-2-1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71
〈부록표 IV-2-19〉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72
〈부록표 IV-2-20〉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73

〈부록표 IV-2-21〉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	174
〈부록표 IV-2-22〉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76
〈부록표 IV-2-23〉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77
〈부록표 IV-2-24〉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	178
〈부록표 IV-3-1〉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180
〈부록표 IV-3-2〉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181
〈부록표 IV-3-3〉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182
〈부록표 IV-3-4〉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183
〈부록표 IV-3-5〉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184
〈부록표 IV-3-6〉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186
〈부록표 IV-3-7〉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인건비) 규모 .....	187
〈부록표 IV-3-8〉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	188
〈부록표 IV-3-9〉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	189
〈부록표 IV-3-10〉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190
〈부록표 IV-3-11〉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191
〈부록표 IV-3-12〉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193
〈부록표 IV-3-13〉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194
〈부록표 IV-3-14〉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195
〈부록표 IV-3-15〉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196
〈부록표 IV-3-16〉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197
〈부록표 IV-3-17〉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199
〈부록표 IV-3-18〉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00
〈부록표 IV-3-19〉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01
〈부록표 IV-3-20〉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02

〈부록표 IV-3-2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03
〈부록표 IV-3-22〉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시설비) 규모 .....	205
〈부록표 IV-3-23〉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	206
〈부록표 IV-3-24〉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	207
〈부록표 IV-3-25〉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전출금) 규모 .....	208
〈부록표 IV-3-26〉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	209
〈부록표 IV-3-27〉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	210
〈부록표 IV-3-28〉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12
〈부록표 IV-3-29〉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13
〈부록표 IV-3-30〉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14
〈부록표 IV-3-31〉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15
〈부록표 IV-3-32〉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16
〈부록표 IV-3-33〉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18
〈부록표 IV-3-34〉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인건비) 규모 .....	219
〈부록표 IV-3-35〉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	220
〈부록표 IV-3-36〉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	221
〈부록표 IV-3-37〉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222
〈부록표 IV-3-38〉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223
〈부록표 IV-3-39〉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	224
〈부록표 IV-3-40〉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226
〈부록표 IV-3-41〉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227
〈부록표 IV-3-42〉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	228
〈부록표 IV-3-43〉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29
〈부록표 IV-3-44〉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30
〈부록표 IV-3-45〉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 모: 필요경비 등 제외 .....	232

〈부록표 IV-3-46〉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33
〈부록표 IV-3-47〉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34
〈부록표 IV-3-4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	235
〈부록표 IV-3-49〉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시설비) 규모 .....	236
〈부록표 IV-3-50〉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	237
〈부록표 IV-3-51〉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	239
〈부록표 IV-3-52〉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전출금) 규모 .....	240
〈부록표 IV-3-53〉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	241
〈부록표 IV-3-54〉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	242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과제로 진행되는 보육비용 산출연구 중 4차년도 과제로, 종일반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1차년도는 보육의 질을 고려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을 검토하고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2차년도는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단축형 보육 도입시 예상되는 보육비용 감소분도 제시하였음.
- 3차년도는 17개 시도의 식자재에 대한 지역물가 차이와 시도별 특수보육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지방비 지원 차이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나. 연구 내용

-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과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음.
- 최근 선행연구를 기초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음.
-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등 어린이집 특성을 구분하여 어린이집 회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였음.
-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모형과 방법을 제시하였음. 특히 연속과제로서 선행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까지를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모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산출모형에 따라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다. 연구 방법

-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와 보육지원 정책 및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공시자료를 수집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하였음.
- 국공립, 민간·가정 등 설립유형에 따라,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이용시간 유형별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전문가 회의 실시하고, 보육비용 산출시 고려할 사항과 재정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2. 연구의 배경

### 가. 보육비용의 개념

- 대체로 보육비용을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비용으로 개념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음.

### 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정책 현황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영유아 부모의 추가 보육수요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여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됨.
  -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 327)에 의하면 시간연장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함. 야간보육의 경우 야간(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이며, 24시간보육은 이용시간이 07:30부터 익일 07:30



으로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동시에 이용하는 보육 형태임. 휴일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인 경우에는 1인당 123.6만원을 지원함. 초과근무 형태이거나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시 경우 월 41만원이 지원됨.
- 시간연장 보육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시간당 3,000원(장애아는 4,000원)으로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임.
- 24시간보육의 경우 보육료는 만 0세 627,000원, 만 1세 552,000원, 만 2세 456,000원, 만 3~5세 330,000원을 지원함.
- 휴일보육은 정부지원 일 보육료 대비 150%를 지원받으며,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를 지원함.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휴일보육 교사의 경우 1일 5시간이상 근무시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함.

#### 다.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

- 어린이집 세입예산과목은 크게 7관 8항 15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으로는 필요경비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보육료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전입금, 이월금으로 구성됨.
- 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은 크게 7관 9항 29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으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로 구성됨.

#### 라.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관련 연구

-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반을 중심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일부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였음.
- 선행연구들의 보육비용 구성항목은 유사하며,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포함),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주로 사용하였음.

- 선행연구들은 모두 영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함과 동시에 시설규모별, 연령별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설립유형이나 시도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또한 인건비나 급간식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최소 또는 최대 비용 등 1~3개의 다양한 보육비용안들을 제시하였음.

### 3.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은 약간 감소(△253개)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42,517개소임.
- 보육교사는 증가추세로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과 가정, 직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229,116명임.
- 최근 3년간(2013-2015년) 어린이집 충원율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음.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80% 후반대를 보여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직장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대비 20.2%(8,582개소)였으며,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함.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시간연장보육 현원 비율은 2015년 9.4%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이 23.7%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 4.2%로 가장 낮았음.
- 24시간어린이집은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중 0.6%로 매우 적고, 최근 3년간 감소추세임.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수와 아동수(현원)는 해당 어린이집 수 감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4시간 어린이집 정원 대비 24시간 보육 현원 비율은 2015년 5.4%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이 13.5%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았음.
- 휴일어린이집은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중 0.7%로 매우 적고, 시간연장이나

24시간 보육서비스와 달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증가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였음. 그러나 휴일 보육교사수와 아동수(현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원대비 휴일보육 현원 비율도 감소추세에 있음.

## 4.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 가. 분석자료

- 분석자료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이트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2016년 7월 10일부터 약 20일에 걸쳐 수집하였음.
  - 최종 분석대상 어린이집은 23,799개소이며, 공시대상 어린이집 전체 41,380개 어린이집 중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로 현행화된 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는 제외하였음.
  - 공시자료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대한 자료는 개별 어린이집 공시자료에는 없어, 동일 사이트 내 ‘보육정보공개API-Open API-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를 추가로 추출하여 매칭하였음.

### 나. 세입·세출결산

- 본 연구는 세입·세출 결산의 항·목별 규모와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종일반으로서 일반어린이집과 종일반 이외 유형 중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일반어린이집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으로,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과 관련된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어린이집임.
- 세입의 경우 필요경비수입, 보육료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등의 경상보조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경상보조금수입 중 특히 인건비보조금 비중이 높았음.
- 세출의 경우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어린이집에 비하여 높았음.

- 세출 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등이 포함되는 인건비 항목의 목별 분포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가 포함되는 업무추진비의 세목별 분포는 시간연장과 일반어린이집이 유사함.
- 관리운영비를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분석하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보다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비중이 더 큼.
- 사업운영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지출 세목별 분포에서는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보다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중이 높았음.
- 시설비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별 분포에서는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의 비중이 높았음.
-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보다 세입 항목에서는 경상보조금수입, 특히 인건비보조금의 비중이 높고, 세출 항목에서는 항수준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크고, 목수준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의 세목 분포는 유사하고, 관리운영비 중 수용비 및 공공요금, 사업운영비 중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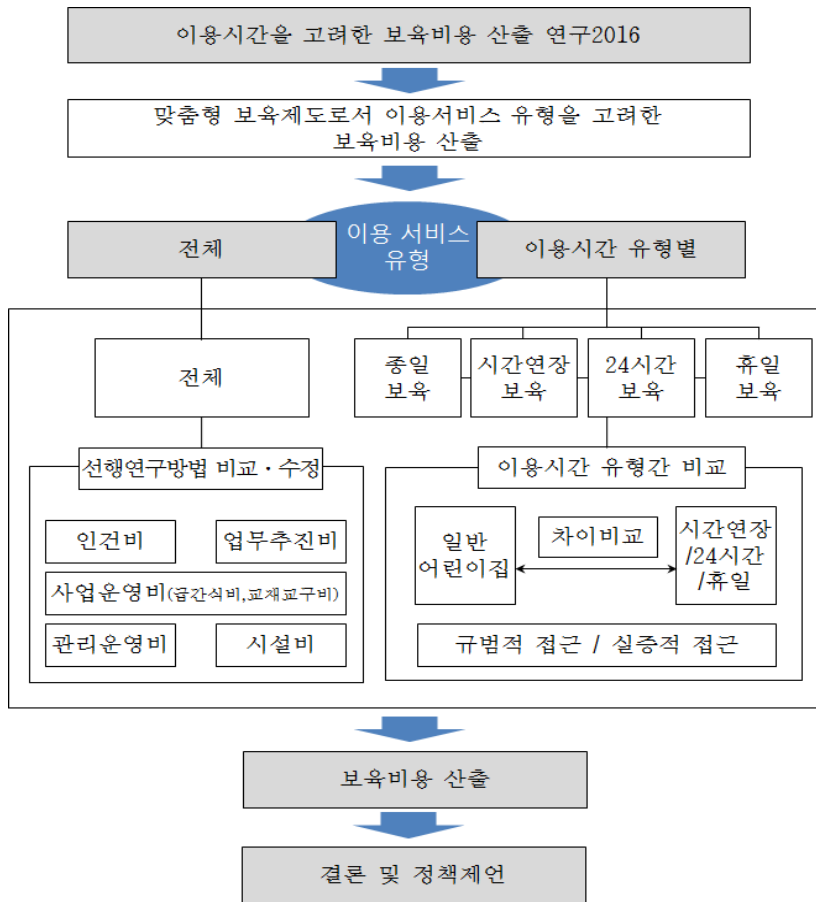
## 5.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 가. 보육비용 산출 모형 및 기본원칙

- 본 연구는 이용서비스 유형을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형(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으로 크게 구분함.
- 종일반 보육비용 산출은 기존 1~3차년도 연구와의 일관성 및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선행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일부는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음.
- 보육비용 산출항목은 크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관리운영비, 시설비로 구성하였음.
-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실제 세출결산자료를 비교·분석하고, 보육비용 항목별로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비용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간 차이를 도출

하였음.

- 이후 선행연구 결과와 세출결산 분석자료를 기초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시간당, 일/월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그림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 연구모형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음.

- 이용시간 유형은 일반어린이집(종일반),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하며,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비용은 제외한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과 선행연구 분류방식 등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규모 별 반 편성 및 교직원수를 도출한 후 인건비 등 다른 비용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보육교직원 배치나 시설이나 장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 및 요건들을 모든 충족한다는 가정하에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 선행연구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였음. 특히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는 이전 연구에서 체계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산출시 설립유형이나 시설규모에 따른 각 항목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시 지역물가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보조금 등 시도특수시책사업비는 제외하였음.

## 나. 인건비

- 산출기준은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호봉과 월급여로 산정하였고, 보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체 평균과 국공립어린이집 평균으로 구분하였음.
  - 평균호봉과 월급여 자료를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건복지부, 2016a: 306)에 적용하여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해당 연봉에 대한 월지급액을 산출하고, 법정부담금으로 사용자부담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부담비용과 퇴직적립금 등을 추가하여, 영유아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 월 인건비 산출 결과, 77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종일반은 0세 795,962원, 1세 504,035원, 2세 378,924원, 3세 212,108원, 4세 이상 175,618원으로 산출됨. 보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0세 875,954원, 1세 552,415원, 2세 413,755원, 3세 228,875원, 4세 188,433원으로 산출됨.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월 1,944,105원, 24시간은 월 1,944,105원, 이용아동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388,821원, 휴일보

육에 따른 1일 인건비는 60,000원으로 나타남.

#### 다. 업무추진비

-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비 산출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현재 또는 미래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세출결산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였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기관운영비와 회의비, 직책급 등이 추가로 더 지출된다고 보고, 세출결산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이용시간 유형간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였음.
- 종일반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20인 1만 9천원, 50인 1만원, 77인 8천원, 97인 7천원, 124인 6천원, 142인 6천원, 169인 5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시간당 업무추진비는 360원이었으며, 24시간은 이용 영유아 1인당 월 18,000원, 휴일보육은 시간당 2,160원으로 산출되었음.

#### 라.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 운영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때 수익자 부담경비 경향이 강한 차량운영비와 건물임대료 등의 기타운영비는 제외하였음.
- 종일반은 시설규모에 따라 20인 5만 3천원, 50인 4만 1천원, 77인과 97인 3만 6천원, 124인 3만 5천원 142인 3만 2천원, 169인 3만 3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시간당 관리운영비는 2,610원, 24시간은 이용 영유아 1인당 월 비용은 130,500원, 휴일은 이용 영유아의 1일 관리운영비는 15,660원이었음.

#### 마. 사업운영비

- 사업운영비 중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201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행사비는 세출결산 자료를 적용하였음.

- 급간식비의 경우, 종일반의 경우 0세는 월 급간식비가 30,820원, 1-2세는 38,590원, 3-5세는 55,140원이었으며, 24시간어린이집은 0세 43,150원, 1-2세 54,030원, 3-5세 77,200원으로 산출되었음. 시간연장은 이용 영유아당 1일 1,440원, 휴일은 1,800원이었으며, 24시간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산출하면 월 비용 65,080원이었음.
- 교재교구비는 종일반 월평균 비용은 0세는 45,700원, 1세는 41,340원, 2세는 30,280원, 3세는 39,900원, 4-5세는 34,340원이었음. 24시간 이용아의 월평균 교재교구비는 0세는 52,560원, 1세는 47,780원, 2세는 34,840원, 3세는 45,470원, 4-5세는 39,410원이었음. 24시간 보육서비스의 경우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교재교구비를 산출하면 월 39,190원임. 시간연장 이용아의 교재교구비 시간당당가는 110원이며, 휴일 보육의 경우 1일 660원임.
- 행사비는 종일반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월 행사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20인은 3,579원, 50인 3,382원, 77인 3,967원, 124인 3,290원, 142인 3,299원, 169인 2,374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따른 추가적 행사비 지출은 없다고 간주하였음.
- 사업운영비 산출결과를 종합하여 77인 일반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일반의 사업운영비는 월평균 0세 80,490원, 1세 83,900원, 2세 72,840원, 3세 99,010원, 4세 93,450원, 5세 93,450원임. 24시간어린이집의 경우 월평균 0세 99,680원, 1세 105,780원, 2세 92,840원, 3세 126,640원, 4세 120,580원, 5세 120,580원이었으며, 보육연령과 시설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비용은 104,270원으로 산출되었음.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은 1,560원, 휴일보육에 대한 1일 비용은 2,470원이었음.

## 바. 시설비

- 77인 일반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월 비용을 살펴보면, 건축비가 11,351원, 놀이터 설치비가 4,184원, 자산취득비가 6,024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81원으로 월 시설비는 23,940원으로 산출되었음
- 시설규모에 따른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시설비는 월 평균 20인 19,980원, 50인 23,696원, 77인 23,940원, 97인 23,785원, 124인 23,055원, 142인 23,228원, 165인 23,076원으로 산출되었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은 840원, 휴일보육에 대한 1일 비용은 3,240원,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1인당 월 비용은 23,912원으로 산출됨.

## 사. 보육비용산출 결과 종합

- 종일반은 2가지 인건비 산출방식에 따라 2개 안을 제시하였음.
  - 1안은 인건비 기준을 전체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77인 규모 일반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 94만 2천 원, 1세 65만 3천원, 2세 51만 7천원, 3세 37만 7천원, 4세, 5세는 33만 5천 원으로 산출되었음.
  - 2안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0세 102만 2천원, 1세 70만 2천원, 2세 55만 2천원, 3세 39만 4천원, 4세, 5세는 34만 8천원으로 산출되었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비용은 인건비와 그 외 보육비용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과 조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음.
  - 시간당 시간연장 보육비용은 급간식비는 시간연장 최초 1시간 이용에 모두 투입된다고 보아, 최초 1시간은 5,370원, 이후 1시간 초과시 부터는 3,920원을 산출되었음.
- 24시간 보육서비스 비용은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665,503원이었으며, 이중 영유아 1인당 인건비가 월 388,821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276,682원으로 산출되었음.
- 휴일 보육서비스 비용은 휴일 근무에 따른 교사의 시간외 수당과, 그 외 서비스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음. 교사의 휴일 근무수당은 60,000원으로 현재 기준은 50,000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외 서비스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월 23,530원으로 산출되었음.

## 6. 제언

- 이용시간 유형별 지원 비용에 대한 조정 필요

- 이용시간을 고려한 본 연구의 보육비용 산출 결과를 감안한다면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한 인상이 필요함.
-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지급기준 또한 상승하고 있어 표준보육비용의 재산출이 필요하며, 최소 5년 단위의 조사주기나 조사항목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함.
-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보육비용 산출 및 지원이 영유아 1인당에서 시설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보육비용에서 분리되어 반영되어야 함.
-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 변동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함.
  - 맞춤형이나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 8시간 주장 및 논의에 따라 다양한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분명한 산출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함.
- 서비스 이용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함.
  - 다양한 서비스로서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 후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보육비용 산출이 필요함. 또다른 지원 형태로 놓여준 비용지원, 누리과정 지원, 시간제보육 비용지원이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산출 등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함.
-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공시기간을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보의 허위 공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이 필요함.
-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계획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회계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요구의 증대 속에서 2013년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영유아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은 크게 경감되었으나, 정부차원에서 투입되는 보육재정 부담은 증가하였다.

보육재정은 보육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여 보육목표 달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수단이다(김혜금·임양미·조혜영, 2013: 38). 또한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와 질 높은 보육환경과 서비스의 제공은 부모의 보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하기 위해,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맞춤형 보육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보육지원 내실화 차원에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전년대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720억원 증액하여 일정부분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6d).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용은 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관련 보육비용 산출연구는 표준보육단가, 보육료, 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료, 보육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면서 정부 용역과제(변용찬·임유경, 2002; 서문희·이연희·임유경, 2003;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 2005; 김현숙·서병선, 2008,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정책연구기관 연구과제(임양미·전경숙·김혜금, 2010; 임양미, 2011;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 2012;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서문희·양미선·이동하, 2014; 양미선·박원순·피재은·이동하, 2015), 민간 용역과제(김혜금, 2010)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 표준보육료 산출연구(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과제로 보육비용 산출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차년도 연구(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에서는 보육의 질을 고려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을 검토하고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준의 연령별, 시설 규모별 영유아 1인당 종일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2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4)는 어린이집 설치주체에 따라 초기 설치 투자비용이 상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치 주체와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종일제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단축형 보육 도입시 예상되는 보육비용 감소분을 추가로 산출하였다. 3차년도 연구(양미선·박원순 외, 2015)는 보육비용 산정시 17개 시도의 비용 차이를 '지역특성'으로 간주하여, 국고지원 이외의 17개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지방비 지원 사업과 지역별 물가 차이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유형(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즉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비용이나 지원금은 수요자인 부모나 추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 비용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선행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보육비용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개념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보육비용이라는 용어자체에서 오는 혼동<sup>1)</sup>을 차치하더라도 우선 '표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3차년도까지의 보육비용 산출연구에서는 '표준보육비용'은 국가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고(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표준'의 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양미선·박원순 외, 2015). 또한 최근 들어 정부의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보육재정의 확충 및 공정한 배분을 넘어서 보편적 보육에 대한 성과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1)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라 함은 출생에서부터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해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정부 및 직장의 지원금액은 제외하였다.

보육비용에 대한 추정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제도로써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비용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음으로 종일반, 시간연장형 보육(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등 이용시간 유형별<sup>2)</sup> 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보육비용 산출 모형 제시와 함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 및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과 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보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2005년 이후 이루어진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중심으로 보육비용의 개념, 산출시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련 기준, 이용시간 유형, 이용시간 유형별 정부 재정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구조와 함께 선행연구에서의 보육비용 산출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시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연구인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시 기준점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등 어린이집 특성을 구분하여 어린이집 회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계정과목별 세입·세출 현황 및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규모와 계정별 비중을 파악하였다. 특히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에 대한 보육비용 산출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음.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일부연구에서 8시간 단축시 보육비용을 제시한 경우가 있으나 실증자료에 의한 분석은 아니었다.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비용은 실제 운영사례와 데이터(예: 회계자료 등)의 부재,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로는 맞춤형 보육비용 산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1년 이상 운영현황과 회계자료 등이 축적된 이후에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넷째,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출모형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속과제로서 선행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보육비용 산출 모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항목별 산출방법에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항목 및 세부기준까지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까지도 고려하였다.

다섯째, 산출모형에 따라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육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후 연령별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후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종일반,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수준으로 산출하였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 가. 문헌자료 수집·분석

보육비용 개념,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방법 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 법·통계, 보육지원 정책 및 현황 등을 수집하였다. 세부적으로 2005년 이후 주요 보육비용 산출 연구를 중심으로 보육비용 개념과 연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시간 관련 법·규정 및 정책지원 관련 자료, 이용서비스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나. 어린이집 공시자료 수집·분석

현 수준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료 보다는 법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되는 자료가 적합할 것이다. 이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sup>3)</sup>을 통해 어린이집 공시자료 수집을 추진하였다. 어린이집 공시자료에는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운영시간, 시설현

3)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황 등의 기본현황과, 보육교직원 현황(직종·자격별 현황, 근속연수), 보육비용(보육료 및 특별활동 비용),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결산 자료, 급식, 환경, 안전 관련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어 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설립유형, 시설규모, 지역규모, 이용서비스 유형에 따라 결산자료 계정과목별로 현 수준에서의 보육비용을 분석하였다.

#### 다. 전문가 회의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회의는 어린이집 보육비용 현황분석에 따라 설립유형별, 이용시간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비용 산출시 고려할 사항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향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특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종일반 어린이집 운영과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살펴보고, 보육비용 산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한 항목별 최소·적정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였다.

〈표 1-3-1〉 현장전문가 회의 개최 일정 및 내용

횟수	시기	대상	내용
1차	7.19(화)	시간연장보육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li> <li>· 보육비용 산출 시 고려할 사항</li> </ul>
2차	8.23(화)	시간연장보육 운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연장보육 운영 실태,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li> <li>· 보육비용 산출 시 고려할 사항</li> </ul>
3차	8.24(수)	24시간 및 휴일보육 운영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원장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및 휴일보육 운영 실태,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li> <li>· 보육비용 산출 시 고려할 사항</li> </ul>

## 4. 용어의 정의

### 가. 이용시간 유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용시간 유형을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한다. 종일제는 하루 12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시간연장형 보육제도는 영유아 부모의 추가 보육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332)에 따른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간연장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이며,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적 보육으로, 야간보육은 야간(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이며, 24시간 보육은 이용시간이 07:30부터 익일 07:30으로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동시에 이용하는 보육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휴일보육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나. 보육비용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보육비용은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현실적 비용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되거나,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는 인건비, 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에서는 적정수준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로 볼 수 있는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와, 보육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전출금, 잡지출, 예비비 등의 항목은 보육비용 산출시 제외하였다.



## II. 연구의 배경

### 1. 보육비용의 개념

그간 보육비용 산출 연구들에서 표준보육단가, 보육료, 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료, 보육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보육비 관련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박기백 등(2005)은 표준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고, 김현숙과 서병선(2008)은 박기백 등(2005)이 제시한 개념을 준용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표준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의 준수와 사회적 기준 충족 비용,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의 연구들도 이와 유사하며 대체로 보육비용을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비용으로 개념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현실적 비용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1-1> 보육비용 관련 용어에 대한 기존 정의

연구자	용어	정의
변용찬·임유경 (2002)	표준보육단가	-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서문희 외(2003)	보육료 보육비용	-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도록 제시된 비용 - 보육비용: 보육시설 입장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와 동의어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단가	- 보육시설을 통해 0세~만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일정한 기준 하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김현숙·서병선 (2008)	표준보육비용	-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0세~만5세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한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 기준으로 보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김현숙(2009)	표준보육비용	-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관련 투입비용으로, 일종의 적정서비스 수준에 필요한 투입비용

(표 II-1-1 계속)

연구자	용어	정의
김혜금(2010)	표준보육료	-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추산한 금액
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2012)	표준보육료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표준보육비용	- 어린이집이 사회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보육비 보육료 보육료지원단가	- 보육비: 정부가 운영비나 부모보조금형태로 지원하거나 또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육에 소요되는 총 보육비용을 의미 - 보육료: 부모에게 실제로 책정된 비용으로 주로 보육료 상한선으로 표시 - 지원단가: 정부가 지원하는 정해진 금액
서문희 외(2014)	보육비용	- 별도 정의는 없으며,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연구에 기초한 후속연구
양미선·박원순 외(2015)	보육비용	- 별도 정의는 없으며,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연구와 서문희 외(2014) 연구에 기초한 후속연구
보건복지부(2016b)	표준보육비용	- 아동 1인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비용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

- 자료: 1)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 산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  
 2) 서문희 외(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7  
 3)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p.3.  
 4)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p.5.  
 5) 김현숙(2009). 보육시설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p.25.  
 6)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p.11.  
 7) 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2012).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38.  
 8)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31.  
 9)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27.  
 10) 서문희 외(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1) 양미선·박원순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5. 육아정책연구소.  
 12)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안내(부록). p.44.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표준보육비의 개념을 정의하면, 표준보육비는 일정 수준의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보육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보육원가를 산출한 보육비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육원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기존의 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국공립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급식재료비를 유기농 등으로 상향 설정함으로써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의 상승이나 급식재료비 증가를 통한 보육비용의 상향조정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비용으로 단순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보육비용 산출시 접근 방법<sup>4)</sup>

보육비용 산출모형을 크게 규범적 접근 방법과 계량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규범적 접근 방법은 다시 전문가판단 모형과 증거기반 모형, 계량적 접근 방법은 비용함수모형과 교육원가분석 모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나민주 외, 2009: 236).

규범적 접근 방법 중 전문가판단 모형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형으로, 전문가에게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나민주·장수명·윤홍부·박동선·오범호, 2009: 237). 안미라(2013: 35-36)에 의하면 전문가판단 모형의 구체적 방법은 표준적인 학교(prototype school)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는 실제 존재하는 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가상의 학교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학교를 설정할 때 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학급당 학생수, 학급규모, 교직원수, 인구밀도, 교통수단 등 다양한 교육여건이며,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은 교직원 등 인적 자원과 공간이나 시설 및 기자재, 교구 등 일체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이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투입 자원을 확인한 후에는 학교 또는 지역 간의 차이를 보정한다. 교직원의 임금 수준, 공공요금 등 지역간 물가수준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가격수준을 보정한 후

4) 보육비용 산출시 접근 방법은 나민주 외(2009)의 국립대학 적정 재정지원 규모산정 및 배분 방법에 관한 연구와 안미라(2013)의 특수학급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투입항목의 수량과 단위비용을 산출하여 총 비용을 계산한다. 전문가판단 모형은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교육전문가, 특히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높으며, 산출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용 산출을 위해 선정된 전문가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전문가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부분 전문가의 판단이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보다는 현재 상태 또는 현상 유지에 기반을 둔 보수적 입장을 취하려 한다는 단점이 있다.

증거기반 모형은 비교모형이라고 하며, 기대수준 이상의 교육성취를 달성하고 있는 교육구나 학교를 대상으로 적정교육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나민주 외, 2009: 236). 구체적인 절차는 만족할만한 수행수준을 결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수행성과를 내는 교육구나 학교를 선정하여 선정된 학교 및 교육구의 특성이 비교대상과 비슷한지를 확인한 후,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비를 확인하는 것이다(나민주 외, 2009: 236). 이는 효과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학교를 비용산출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투입요소를 중심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투입 자원이 자연스럽게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과 비록 우수성이 입증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맥락과 상황이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의 제한점이 있다(안미라, 2013: 36).

계량적 접근 방법으로 비용함수 모형은 주로 경제함수 모형을 통한 통계분석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나민주 외, 2009: 237).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과 학교에 따라 학생구성, 교육과정, 지리적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된 모형으로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학업성취와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창의력, 논리력 등과 같이 계량화가 어려운 산출이나 성과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나민주 외, 2009: 237). 또한 이 모형은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 비용 최소화보다 보육의 질 제고라는 보육의 특성에 빗대어 보면 일부 한계가 있다.

계량적 접근 방법인 교육원가분석 모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 또는 경제적 효익을 화폐단위로 측정된 것을 원가라 하며, 이는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의 자원이 소비되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그 활동이 수행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데 기여한다(나민주 외, 2009: 237-238). 교육원가분석은 교육기관이 학교가 제한된 재정수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배분의 효

율성과 정당한 수혜자가 원가를 부담하는 공평성의 원칙을 달성하여 보다 바람직한 계획과 통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정호·곽수근, 1991, 나민주 외, 2009: 237-238, 재인용). 그런데 원가분석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제약된 예산 하에서 최대의 배분의 효율성을 찾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비 규모와 총 교육비 규모 산출에 대해 주는 정보는 그리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나민주 외, 2009; 안미라, 2013).

### 3.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정책 현황

#### 가.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 원칙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sup>5)</sup>」 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sup>6)</sup>,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나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2016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6a)는 불가피하게 휴원하는 경우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방학)을 불가하고 있다.

#### 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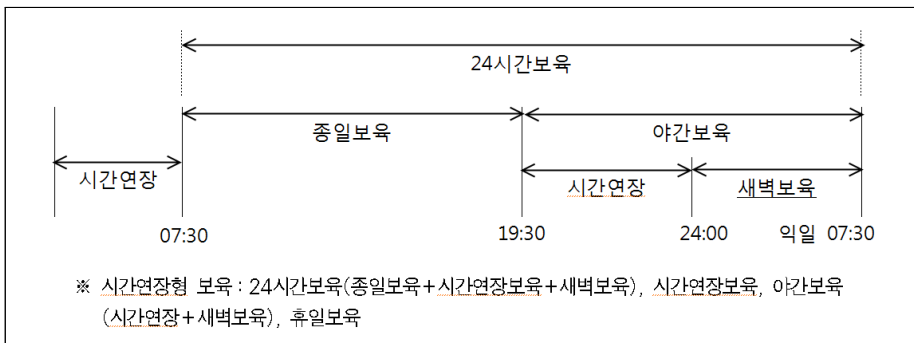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운영을 원칙(중일반)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추가 보육수요에 따라 12시간을 초과하여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간연장형 보

5) [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6)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육사업안내'(p.67)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금 평일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 토요일 운영시간은 8시간(07:30~15:30)으로 연중 계속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제도는 크게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된다.7)

시간연장형 보육은 12시간의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하여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 보육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추진되었다(양미선·배운진·김정민, 2015: 58). 관련 조항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취약보육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면서 범제화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4항은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양미선·배운진 외, 2015: 58).



[그림 II-3-1] 시간연장형 보육 개념

출처: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p.323.

「2016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331)에 의한 시간연장형 보육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간연장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시설의 종일보육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야간보육과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보육할 수 있다. 야간보육의 경우 야간(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이며, 24시

7) 이외에도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 부모가, 가정양육 시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 '시간제보육'(법령상 일시보육)이 있음.

간보육은 이용시간이 07:30부터 익일 07:30으로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동시에 이용하는 보육 형태이다. 이외에도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휴일보육이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는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6c).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c)에 의하면 맞춤형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으로, 영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제도이다. 종일반은 영유아의 부모가 맞벌이거나, 구직이나 학교재학 중, 임신, 장애 등에 해당하여 장시간 자녀양육에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기존의 12시간(07:30~19:30) 보육서비스를 지원받는다. 맞춤반은 종일반 이용 대상 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로, 기본 6시간(09:00~15:00)을 이용하며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시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 다.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정부 지원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보육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6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323-331)에 의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3-1>, <표 II-3-2>와 같다.

먼저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크게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지원형태가 구분된다.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은 시간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정부지원시설과 직장어린이집<sup>8)</sup>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인 경우 1인당 123.6만원을 지원한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은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 시간연장반 별로 월 41만원이 지원된다. 야간보육과 24시간보육의 경우에는 시간연

8)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함(보건복지부, 2016a: 324).

장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위의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지원조건과 동일하다. 휴일보육의 경우에는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의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이 지원된다.

〈표 II-3-1〉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구분	월급여 지원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운영방식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	- 주간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보육을 실시 ※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할 수 있음. -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
지원기준	-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함.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월 123.6만원	- 시간연장반 별 월 41만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시간	-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시간연장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시간연장 보육 아동수	- 시작시간(19:30) 이후 시간연장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 예외: 국공립,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함. ※ 장애아, 0세아는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가능	좌동 (단,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하는 경우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간연장 보육시간	-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 ※ 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좌동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23-326내용을 정리함.



〈표 II-3-2〉 24시간 어린이집 및 휴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

구분	24시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 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보육교사 운영방식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	- 실제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지원 -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 지원 가능
지원기준	- 정부지원시설: 월 지급액의 80%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함.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월 123.6만원	일일 5만원
보육교사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하루 5시간 이상 보육
보육 아동수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 교사대 아동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함. ※장애아, 0세아는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보육교사 1인당 3명 이상 보육할 경우 -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장애아, 0세아는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p. 327-332내용을 정리함.

## 4. 어린이집 세입·세출 구조

보육비용의 구조는 어린이집 시설회계의 세입·세출을 의미하며, 보건복지부(2016b)의 '2016 보육사업안내(부록)'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가. 세입구조

다음의 <표 II-4-1>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을 나타낸다. 어린이집 세입예산과목은 크게 7관 8항 15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항과 목 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필요경비수입(항)은 수익자(부모 등 보호자) 부담경비로 기타필요경비(목)와 특별활동비(목)로 구성된다. 기타 필요경비는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특별활동비는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하여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6b: 42).

과년도수입(항)은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인 과년도수입(목)과, 잡수입(항)의 기본재산예금 이외의 수입인 이자수입(목),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후원금·찬조금 등의 후원금수입(목),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 시 수령액 등의 기타잡수입(목)으로 구성된다.

보육료수입(항)의 보육료수입(목)은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한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료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1회), 간식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b: 43).

경상보조금수입(항)은 크게 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의 3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건비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보조받는 인건비 지원금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는 인건비 지원금 등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금은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sup>9)</sup>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43). 기본보육료는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및 장애아에 한해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sup>10)</sup>이다(보건복지부, 2016b: 44). 기타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 시간제보육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6b: 44).

자본보조금수입(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수입이며, 전입금(항)은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 인건비 등) 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전입금(목)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를 원칙으로 하는 차입금(목)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6b: 44-45).

〈표 II-4-1〉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필요경비 수입	필요경비 수입	기타 필요경비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 입으로 확정된 수입
잡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후원금수입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후원 금·찬조금 등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 시 수령액 등

9) 원장 80%, 영어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임.

10) 기본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임(기본보육료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여기에서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임(보건복지부, 2016b: 44).

과목			내역
관	항	목	
보육료수입	보육료수입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보조금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자본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자료: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안내(부록). p.1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 예산과목구분(제10조 제3항 제2호관련)

## 나. 세출구조

<표 II-42>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을 나타내며, 총 7관 9항 29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건비(항)는 기본급,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sup>11)</sup>,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건복지부, 2016a: 306, 부록2 참조)에 따라 집행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46).

업무추진비(항)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직책급은 어린이집 원장의

11) 퇴직적립금의 기준이 되는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함(보건복지부, 2016b: 46).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며, 회의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한다.

관리운영비(항)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 구성된다. 여비는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이 포함된다.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고료, 등기료 등 각종 수수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협회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6b: 48). 차량비는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 비용이며, 연료비<sup>12)</sup>는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48).

사업운영비(항)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 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지출로 구분된다. 급간식비는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로,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은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49).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 지출 비용이며,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기타 필요경비 지출은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등의 입학준비금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다(보건복지부, 2016b: 50). 특별활동비 지출비용은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별활동 강

12)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 159)과 양미선, 박원순 등(2015: 21)은 난방과 조리·취사에 도시가스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과 연료비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양미선, 박원순 등(2015: 21)은 이러한 이유로 연료비에는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비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6b: 51).

시설비(항)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된다.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이며, 자산취득비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의미한다.

전출금(항)은 법인회계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반환금, 보호자 반환금으로 구성된다. 법인회계전출금은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이며, 차입금 상환은 일시 운영차입금에 대한 상환 지출비용으로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 반환금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6b: 51).

이외에도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비용인 과년도지출(항,목),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인 잡지출(항,목),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비용인 예비비(항,목)이 있다.

〈표 II-4-2〉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관	과목		내역
	항	목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제수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연공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기타 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급량비·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관	과목		내역
	항	목	
	관리 운영비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등기료·수수료,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도시가스료, 자동차세·협회비·화재·자동차보험료 등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사업비	사업 운영비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기타필요경비 지출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보수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법인회계 전출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전출금	전출금	차입금상환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자료: 보건복지부(2016b). 보육사업안내(부록). pp.19-2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구분(제10조제 3항제 2호관련)

## 5.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 가. 보육비용 산출 관련 선행연구

정부는 1991~1999년 기간 동안 표준보육단가를 산출하여 제시하여 왔으며, 1991년 당시 표준보육단가 항목으로 종사자인건비(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종사자 급식비, 종사자 수당, 가계보조비, 아동 급식비, 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재비가 포함되었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5). 1992년에는 복지수당과 차량유지비 항목이 추가되어 종사자인건비, 가계보조비, 보육교사수당, 종사자급식비, 복지수당, 보육아동급식비 및 간식비,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비) 교재교구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 38). 1994년에는 기존 항목 중 인건비에 퇴직적립금,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이 추가되어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인건비에서 복지수당이 삭제되었고, 1998년에는 종사자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건비에는 기본급·상여급으로 상세화 함과 동시에 시간외수당, 교통비, 영아담당수당 등을 추가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5).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가 고시하는 민간개인 및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과 정부지원단가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부모의 부담이나 아동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따라서 표준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24). 가장 먼저 실시된 보육비용 산출 연구는 서울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삼성복지재단의 연구(2000)이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7). 이 연구는 삼성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수입-지출 자료에 의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산출된 비용 수준을 매우 높았다. 이어서 변용찬과 임유경(2002)의 연구에서는 표준보육료를 일정한 기준 하에 아동을 실제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산출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7).

여성부의 연구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수행한 박기백 등(2005)의 연구는 표준 보육비와 유치원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였다.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이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표준'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표준보육·교육비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수준을 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식,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항목별 단가산정 기준 설정시 만 3~5세 사이의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동일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양 기관 교사들의 임금을 조정하였다. 이에 인건비 최저값을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최대값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구간을 정하여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김현숙과 서병선(200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박기백 등(2005)의 연구에 기초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로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고려하여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였다. 항목별 단가 산정은 2005년의 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설립유형별 보육비용 차이정보를 제공하였고, 지역별 보육비용의 차이를 부지구입비나 차량유지비의 형태로 반영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투입비용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차이가 있다.

김혜금(2010)은 표준보육비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 비용에 기초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보육시설에서 현실적,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비용 여건을 고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에서는 재무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에서 제시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의 5개 항목을 산정하여 2개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인건비를 기본급에 종사자의 퇴직금과 퇴직적립금 및 사회보험시설부담비용을 합하였고, 2안은 여기에 제수당 및 기타후생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1, 2안은 다시 운전가사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세분되었다. 업무추진비 및 관리운영비는 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운영비는 1안은 일반 식단가, 2안은 유기농 식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등(2012)의 연구는 이전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시점에서의 표준보육료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와 달리 전국 어린이집 유형을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으며, 세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항목별 어린이집 연간 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육료 산출 원칙으로 인건비는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4호봉, 보육교사 3호봉, 일반어

린이집 원장 11호봉, 보육교사 5호봉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사업운영비 중 급간 식비와 교재교구비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관리운영비는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차량비는 비용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의 연구는 보육의 질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일정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별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영유아 1인당 종일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였다. 인건비는 적용되는 호봉, 인력배치, 교사 수당에 차이를 두었으며, 식단의 재료비는 일반식단과 플러스 식단으로 차별화하였고, 교재교구비는 층분성 정도에 차이를, 건축비는 대규모 어린이집에 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 기준과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로 차별화하였다.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다소 향상된 수준의 안과 중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하는 수준의 안을 제시하였다.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정부지원단가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시간외 수당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고려하였고, 관리운영비는 회의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를, 교재교구비는 실내 교육보육활동 교구와 비품, 교재비, 소모품과 실외 교육보육활동 소요 교구를 포함하였다. 시설비는 건물과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였다. 또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산출하였는데, 일반아동 항목별 표준비용을 기초로,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내용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서문희 등(2014)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 자료와 설문조사로 설립유형별 실제 항목별 세출 규모나 기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설립유형별로 차별화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건비는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두었으며, 업무추진비는 2013회계연도 1년간 월평균 아동 1인당 업무추진비 세출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의 평균 합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재교구

비는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에서 제시한 1안을 적용하고, 급간식비는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의 연구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시설비는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로 구성하여 설립유형별 재무회계 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시간단축형과 12시간 보육으로의 체계 변경시 적정 보육비용을 검토하여 시간단축 보육시,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는 100%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는 10%, 급식비는 15% 감액안을 제시하였다.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은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을 선정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특수보육시책 자료와 어린이집 재무회계자료를 검토·분석하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보육비용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누리과정 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하고, 시간외수당 등은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급간식비는 표준 레시피에 따라 표준 식단가와 급식단가를 산출하였으며, 교재교구비는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물가인상, 환율변동, 판매업체의 제품판매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재교구비 시장가격을 재조사하였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출 상의 아동 1인당 비용을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시설비는 건축비와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 나. 보육비용 구성항목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의 보육비용 구성항목은 유사하며,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시설비 등 계정과목의 항을 중심으로 주로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영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함과 동시에 시설규모별, 연령별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 연구목적에 따라 설립유형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인건비나 급간식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을 조정하여 최소 또는 최대 비용 등 1~3개의 최종보육비용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II-5-1>과 같다.

〈표 II-5-1〉 선행연구 보육비용 구성항목 및 산출유형 비교 결과

구분	박기백 외(2005)	김현숙 외(2008)	김혜금(2010)	이미화·서문희·임영미 외(2012)
보육비용 구성항목	인건비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기본급여, 체수당, 기타후생경비, 일용직급
	급간식비	영유아 칼로리에 따른 식단	영유아 칼로리에 따른 식단	※ 사업운영비에 포함
	교재교구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비,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비,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 사업운영비에 포함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체제공과금, 수용경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체제공과금, 수용경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체제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시설설치비(시설비/재산조정비)	시설설치비(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시설설치비(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재산조정비(자산취득비, 지비)
	차량유지비	-	차량유지비(표준보육비용에서 제외)	※ 관리운영비에 포함
	업무추진비	-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사업운영비	-	-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행사비
	규모별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연령별	0, 1, 2, 3, 4, 5세	0, 1, 2, 3, 4, 5세	0, 1, 2, 3, 4, 5세
산출유형	이용시간별	종일제(8시간+최고4시간), 연장제(5~6시간)	종일제(8시간+최고4시간), 연장제(5~6시간)	-
	설립유형별	-	3개(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민간, 가정보육시설)	-
	지역별	-	16개 시도	-
비용 제시	2개안(최고치/최저치)	2개안(국공립보육시설인건비+최소수준/국공립유치원인건비+정상수준)	- 1안: 체수당, 후생경비/여비/차량비/기타운영비 제외, 일반식 - 2안: 제외항목 포함, 유기농식단가	1개안
	기타	- 장애아·방과후 보육비용단가 산출 - 유치원 표준교유비 산출	- 1안과 2안 모두 인건비를 운전기사인건비 포함/미포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결과 산출	- 2012년 기준의 표준보육료 단가 산출을 위해 물가상승률 3% 반영

(표 II-5-1 계속)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서문희 외(2014)	양미선·박원순 외(2015)
보육비용 구성항목	인건비	기본급, 공동적용수당(채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급여, 퇴직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시간외수당, 정액영양, 누리교사 수당, 누리 보조교사 배치 반영시 별도 산정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 프로그램별 지원(영어전담, 방과후 등), 지방정부 지원(치우개선비 등)
	급간식비	급간식비	급간식재료비	※ 사업운영비에 포함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교육보유활동 소요 교구, 비품, 교재비, 소모품	실내 교육보유활동 소요 교구 비품, 교재비, 소모품, 실외 교육보유활동 소요 교구	※ 사업운영비에 포함	실내환경(교재교구, 소모품, 비품), 실외환경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 업무추진비에 포함	회의비, 여비, 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시설설치비 (시설비/ 재산조성비)	시설비(설비비(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시설비(건물과 놀이터 건축비, 장비설치비, 시설유지비)	시설비(시설비(건물비 포함), 장비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 업무추진비에 포함	(수익자 부담으로 별도)	-	-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관리운영비에 포함
	사업운영비	-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
	규모별 연령별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0, 1, 2, 3, 4, 5세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0, 1, 2, 3, 4, 5세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0, 1, 2, 3, 4, 5세	7개(20, 50, 77, 97, 124, 142, 169인) 0, 1, 2, 3, 4, 5세
	산출유형 이용시간별 실질유형별 지역별	종일제	종일제, 반일제	종일제, 시간단축형 보육비용 3개(공공립·법인, 민간, 가정)	종일제, 시간단축형 보육비용 3개(공공립·법인, 민간, 가정)
비용 제시	2개안(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조정에 따라 구분)	3개안(인건비, 급식재료비, 교재교구비, 건물과 놀이터 설치비 조정에 따라 구분)	2개안(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조정에 따라 구분)	2개안(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조정에 따라 구분)	
기타	-	-	-	17개 시도	- 지역별 물가차이 반영 - 지방비 특수보육시책 사업 반영

### 다. 보육비용 산출 결과 비교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연령별 보육비용을 연구 용역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5-2>와 같다. 여러 안을 산출한 연구의 경우 1안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산출방법이 다르고 불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0세의 경우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용역 연구인 김혜금(2010)의 산출 비용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외 연령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주체별로 보육비용을 산출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서문희 등(2014)의 국공립·법인어린이집 기준 산출 비용이 가장 높았다. 2016년도 3월 기준(3% 추가 인상 전) 정부지원 보육료(영아 기본보육료 포함)와 가장 유사한 금액은 모두 정부 용역 연구로 0세와 1세는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등(2013), 2세는 김현숙과 서병선(2008), 3~5세는 박기백 등(2005)의 산출 금액이었다.

<표 II-5-2> 선행연구 및 정부지원 단가와외의 표준보육료 수준 비교(97인)

단위: 원

구분	정부용역		민간용역		육아정책연구소			정부지원 보육료 <sup>1)</sup>	
	박기백 외(1안)(2005)	김현숙·서병선(2008)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1안)(2013)	김혜금(2010)	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2012)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1안)(2013)	서문희 외(국공립·법인)(2014)	양미선·박원순 외(1안)(2015)	중일반(맞춤반 <sup>2)</sup> )
만0세	788,973	711,300	800,800	1,012,325	877,828	879,761	1,006,800	964,840	825,000(739,000) <sup>2)</sup>
만1세	524,038	512,800	569,800	695,214	589,224	614,687	700,900	665,270	569,000(493,000) <sup>3)</sup>
만2세	403,333	409,200	453,800	550,886	474,603	488,475	558,900	524,960	438,000(375,000) <sup>4)</sup>
만3세	267,143	296,400	338,000	385,646	324,245	371,094	419,200	384,770	220,000
만4세	247,529	283,400	300,200	344,285	292,542	331,999	371,200	340,071	220,000
만5세	249,503	284,200	300,200	344,285	292,542	331,999	371,200	340,071	220,000

주: 1) 2016년 7월 이후 6%인상한 금액임. 기본보육료 포함한 금액임. 규모기준 별도로 없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에서 2016. 11. 21 인출)

2) 만 0세 보육료 825,000원(739,000원) = 보육료 430,000원(344,000원) + 기본보육료 395,000원(395,000원)

3) 만 1세 보육료 569,000원(493,000원) = 보육료 378,000원(302,000원) + 기본보육료 191,000원(191,000원)

4) 만 2세 보육료 438,000원(375,000원) = 보육료 313,000원(250,000원) + 기본보육료 125,000원(125,000원)

5)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월 15시간 6만원)

자료: 1) 박기백 외(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2)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3)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4)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5) 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2012).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4).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7) 서문희 외(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8) 양미선·박원순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육아정책연구소.

### Ⅲ.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및 실태

#### 1.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현황

##### 가. 전체 어린이집

<표 Ⅲ-1-1>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립유형 및 지역규모에 따른 어린이집 기관수,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어린이집 기관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총 253개의 어린이집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설립유형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국공립과 부모협동<sup>13)</sup>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수는 증가추세로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과 가정, 직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수는 정원 기준으로 보면 담보상태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아동수 정원이 늘어난데 반해, 가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표 Ⅲ-1-1> 설립유형 및 지역규모별 어린이집수,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수			보육교사수			아동수(정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43,770	43,742	42,517	212,332	218,589	229,116	1,782,459	1,800,659	1,790,821
설립유형									
국공립	2,332	2,489	2,629	18,792	20,481	21,832	170,050	179,939	188,661
사회복지법인	1,439	1,420	1,414	12,594	12,693	12,565	139,669	137,017	135,741
법인단체 등	868	852	834	5,783	5,783	5,707	62,820	61,483	60,509
민간	14,751	14,822	14,626	98,843	102,548	106,599	937,632	946,519	942,103
가정	23,632	23,318	22,074	70,074	69,701	73,788	423,533	419,352	399,649
부모협동	129	149	155	489	565	641	3,972	4,682	4,913
직장	619	692	785	5,757	6,818	7,984	44,783	51,667	59,245

13) 2016년부터는 '협동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음.

(표 III-1-1 계속)

구분	어린이집수			보육교사수			아동수(정원)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지역규모									
대도시	15,852	15,999	15,695	83,432	86,048	90,308	660,602	669,726	667,994
중소도시	19,649	19,478	18,606	84,785	87,170	91,449	687,572	694,593	677,543
농어촌	8,269	8,265	8,216	44,115	45,371	47,359	434,285	436,340	445,284

주: 기관규모별 보육교사수와 아동수는 통계자료가 없음.

보육교사에는 담임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표 III-1-2>는 어린이집 아동 정원대비 현원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충원율은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이 충원율이 80% 후반대를 보여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 직장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아동수(현원)			정원대비 현원비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1,486,980	1,496,671	1,452,813	83.4	83.1	81.1
국공립	154,465	159,241	165,743	90.8	88.5	87.9
사회복지법인	108,834	104,552	99,715	77.9	76.3	73.5
법인·단체 등	51,684	49,175	46,858	82.3	80.0	77.4
민간	770,179	775,414	747,598	82.1	81.9	79.4
가정	364,113	365,250	344,007	86.0	87.1	86.1
부모협동	3,226	3,774	4,127	81.2	80.6	84.0
직장	34,479	39,265	44,765	77.0	76.0	75.6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재구성.

<표 III-1-3>은 2013-2015년까지 연령별 보육 아동 현원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아동현원은 2013년에 비해 3만 4천여명이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육연령 1-2세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0세아와 3-5세는 상대적으로 아동현원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도 연령별 영유아 현원이 다음 해에 1세가 추가된 반에 편성<sup>14)</sup>된다고

14) 2013년 0세반이 다음해인 2014년 1세반, 2015년 2세반이 됨을 의미함.



보면, 가정내 양육이 많은 0세아가 1세, 2세가 되면서 신규 수요(가정에서 어린이집 보육으로 전환)와 함께 급격하게 현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은 현원을 보인 2세아는 누리과정이 시작되는 3세가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과 크게 양분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4세와 5세가 되면서도 꾸준히 어린이집 현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 3세 이후부터는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1-3> 2013-2015년 연령별 보육 아동수(현원)

단위: 명

구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이상
2015년 전체	1,452,813	137,117	308,227	419,252	253,294	180,249	147,278	7,396
국공립	165,743	4,057	21,963	36,979	37,392	34,134	29,816	1,402
사회복지법인	99,715	2,850	13,548	24,949	23,269	17,868	15,259	1,972
법인·단체 등	46,858	1,103	5,559	10,528	10,870	9,323	7,903	1,572
민간	747,598	37,502	124,595	217,816	168,201	109,660	87,561	2,263
가정	344,007	89,838	133,694	116,911	2,540	589	382	53
부모협동	4,127	172	556	1,116	837	790	636	20
직장	44,765	1,595	8,312	10,953	10,185	7,885	5,721	114
2014년 전체	1,496,671	138,563	342,056	409,954	265,338	177,014	155,510	8,236
국공립	159,241	3,871	21,053	34,642	36,354	32,198	29,640	1,483
사회복지법인	104,552	2,784	14,922	25,533	24,270	17,948	17,060	2,035
법인·단체 등	49,175	1,023	6,081	10,604	11,588	9,447	8,667	1,765
민간	775,414	35,084	137,708	216,513	180,139	109,420	93,817	2,733
가정	365,250	94,175	154,388	112,432	3,072	640	476	67
부모협동	3,774	163	618	916	814	660	576	27
직장	39,265	1,463	7,286	9,314	9,101	6,701	5,274	126
2013년 전체	1,486,980	148,273	325,921	400,781	255,786	184,513	161,877	9,829
국공립	154,465	3,595	19,791	33,508	34,118	31,836	29,887	1,730
사회복지법인	108,834	2,958	14,597	26,244	23,893	19,865	19,005	2,272
법인·단체 등	51,684	1,131	6,114	11,162	11,531	10,230	9,409	2,107
민간	770,179	35,713	128,165	215,115	174,854	114,934	97,943	3,455
가정	364,113	103,347	150,603	105,795	2,922	760	579	107
부모협동	3,226	190	438	806	649	592	534	17
직장	34,479	1,339	6,213	8,151	7,819	6,296	4,520	141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각년도 12.31.기준).

<표 III-1-4>는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현황을 나타낸다.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20명 이하 어린이집이 전체 52.60%였으며, 다음으로 21~39명이 15.14%, 5

0~80명 10.11%, 40~49명 7.86%, 81~99명 6.8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의 99%가 정원규모 200명 이하였다.

〈표 III-1-4〉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명	21~	40~	50~	81~	100~	161~	201~	241~	300명	합계	
	이하	39명	49명	80명	99명	160명	200명	240명	300명	초과		
개소	2013	23,894	6,694	3,205	4,060	2,793	2,263	497	198	150	16	43,770
	2014	23,598	6,655	3,289	4,172	2,874	2,284	503	199	154	14	43,742
	2015	22,363	6,438	3,343	4,297	2,892	2,307	506	205	152	14	42,517
비율	2013	54.59	15.29	7.32	9.28	6.38	5.17	1.14	0.45	0.34	0.04	100.0
	2014	53.95	15.21	7.52	9.54	6.57	5.22	1.15	0.45	0.35	0.03	100.0
	2015	52.60	15.14	7.86	10.11	6.80	5.43	1.19	0.48	0.36	0.03	100.0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표 III-1-5〉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어린이집 수는 20.2%로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간연장 보육교사수와 아동수(현원)는 해당 어린이집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감소하고 있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시간연장보육 현원 비율은 2015년 9.4%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이 23.7%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5〉 시간연장어린이집 현황(2013-2015)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 <sup>1)</sup>			시간연장 보육교사수 <sup>2)</sup>			시간연장 이용 아동수(현원) <sup>3)</sup>			전체 정원 대비 시간연장 이용 아동 현원 비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시간연장 계	8,705	8,644	8,582	9,054	9,224	8,908	41,052	41,655	39,445	9.9	10.1	9.4
국공립	1,541	1,607	1,692	1,434	1,449	1,429	5,796	5,583	5,500	4.9	4.5	4.2
사회복지법인	369	359	355	422	403	410	1,860	1,750	1,731	5.2	5.0	5.1
법인·단체 등	188	180	173	252	250	239	1,092	1,086	1,022	7.8	8.3	8.1
민간	2,653	2,626	2,584	3,538	3,611	3,465	15,093	15,539	14,466	9.1	9.5	8.9
가정	3,835	3,741	3,633	3,038	3,077	2,927	16,112	16,420	15,466	23.4	24.4	23.7
부모협동	7	8	9	10	11	10	53	55	52	13.3	13.2	10.8
직장	112	123	136	360	423	428	1,046	1,222	1,208	10.1	10.2	8.6

구분	시간연장 어린이집 수 <sup>1)</sup>			시간연장 보육교사수 <sup>2)</sup>			시간연장 이용 아동수(현원) <sup>3)</sup>			전체 정원 대비 시간연장 이용 아동 현원 비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대비 시간연장 비율	19.9	19.8	20.2	-	-	-	2.8	2.8	2.7	-	-	-

주: 1) 일반어린이집(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수는 미포함(2015년 1,061개소, 2014년 1,297개소, 2013년 1,186개소).

2) 아동이 1명이상 배치된 시간연장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수

3) 일반어린이집(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미포함(2015년 3,235명, 2014년 4,090명, 2013년 3,752명).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다. 24시간 어린이집

<표 III-1-6>에 따르면 24시간 어린이집 수는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중 0.6%가 운영중으로 매우 적고, 최근 3년간 감소추세에 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차지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증가추세, 나머지 어린이집은 담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수와 아동수(현원)는 해당 어린이집 수 감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4시간 어린이집 정원 대비 24시간보육 현원 비율은 2015년 5.4%였으며, 가정어린이집이 13.5%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1-6> 24시간 어린이집 현황(2013-2015)

단위: 개소, 명, %

구분	24시간 어린이집 수			24시간 보육교사수 <sup>1)</sup>			24시간 이용 아동수(현원)			전체 정원 대비 24시간 이용 아동 현원 비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4시간 계	284	277	268	305	300	268	853	867	777	5.7	5.9	5.4
국공립	65	69	72	34	37	34	165	193	176	3.2	3.5	3.1
사회복지법인	15	14	15	18	18	13	60	55	56	5.1	4.8	4.7
법인·단체 등	4	4	4	3	2	3	7	9	8	1.6	2.0	1.8
민간	103	95	89	135	125	114	371	361	315	6.1	6.7	6.1
가정	91	90	83	102	103	93	232	230	209	13.6	13.7	13.5
부모협동	-	-	-	-	-	-	-	-	-	-	-	-
직장	6	5	5	13	15	11	18	19	13	3	3.9	2.7
전체 대비 24시간 비율	0.6	0.6	0.6	-	-	-	0.06	0.06	0.05	-	-	-

주: 1) 보육교사 구분이 24시간 보육교사인 보육교직원 수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라. 휴일 어린이집

<표 III-1-7>에 따르면 휴일 어린이집 수는 2015년 전체 어린이집 중 0.7%가 운영중으로 시간연장이나 24시간 보육서비스와 달리,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증가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휴일 보육교사수와 아동수(현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증가에 비해 다른 유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감소분이 더 컸다. 아용 아동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의 아동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증가했으나, 정원대비 휴일보육 현원 비율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표 III-1-7> 휴일 어린이집 현황(2013-2015)

단위: 개소, 명, %

구분	휴일 어린이집 수 <sup>1)</sup>			휴일 보육교사수 <sup>2)</sup>			휴일 이용 아동수(현원) <sup>3)</sup>			전체 정원 대비 휴일 이용 아동 현원 비율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휴일 계	269	294	305	209	239	210	489	477	470	2.4	2.2	2.2
국공립	117	120	125	42	44	30	69	39	50	0.7	0.4	0.5
사회복지법인	43	45	46	50	54	51	136	97	98	3.0	2.2	2.2
법인·단체 등	15	16	16	32	27	29	91	81	68	6.8	5.8	4.9
민간	59	66	71	59	70	71	124	175	177	4.0	4.9	4.6
가정	27	37	38	5	7	6	28	27	32	5.7	4.0	4.6
부모협동	-	-	-	-	-	-	-	-	-	-	-	-
직장	8	10	9	21	37	23	41	58	45	5.1	5.6	4.9
전체 대비 휴일 비율	0.6	0.7	0.7	-	-	-	0.03	0.03	0.03	-	-	-

주: 1) 일반어린이집(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수는 미포함(2015년 229개소, 2014년 291개소, 2013년 271개소).

2) 아동이 1명이상 배치된 휴일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수

3) 일반어린이집(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미포함(2015년 746명, 2014년 931명, 2013년 884명).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2. 어린이집 이용시간 유형별 운영 및 이용실태

본 절에서는 최근에 전국단위로 조사된 이미화, 최윤경, 이정원 등(2016)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와 양미선, 배운진 등(2015)의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였다.

### 가. 전체 어린이집

<표 III-2-1>은 어린이집의 평일 및 토요일 운영 시간 및 현황을 나타낸다. 어린이집의 평일 운영시간을 어린이집의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으로 정의했을 때,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어린이집 조사대상 전체 평균은 문여는 시각 오전 7시 39분, 문 닫는 시각 오후 7시 34분경으로 나타나, 운영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55분으로 2012년과 유사하였다(이미화 외, 2016: 111).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각각 평균 12시간 34분, 12시간 27분으로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비율은 2009년 84.4%, 2012년 57.8%, 2015년 30.3%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5일제 근무의 전사회적 확산과 정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59.7%),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6: 112).

또한 토요일보육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운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많을수록 그 수요가 많음을 짐작케 하며 토요일 보육을 운영하는 1,240개 어린이집의 토요일보육 평균 운영일수는 월 3.51회로 이는 2012년 월 3.44회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이미화 외, 2016: 112).

<표 III-2-1> 평일 및 토요일 운영 시간 및 현황

단위: 시간/분, (개소), %, 일

구분	평일				토요일			
	문 여는 시각	문 닫는 시각	평일 운영시간	(사례수)	운영 비율	(사례수)	운영시 월평균 횟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사례수)	
전체	7시 39분	19시 34분	11시간 55분	(4,046)	30.3	(4,046)	3.51	(1,240)
설립유형								
국공립	7시 33분	20시 7분	12시간 34분	( 506)	59.7	( 506)	3.49	( 294)
사회복지법인	7시 34분	19시 31분	11시간 57분	( 377)	44.0	( 377)	3.72	( 169)
법인·단체	7시 39분	19시 26분	11시간 47분	( 283)	41.2	( 283)	3.59	( 120)
민간	7시 41분	19시 26분	11시간 45분	(1,134)	31.3	(1,134)	3.53	( 360)
가정	7시 42분	19시 26분	11시간 44분	(1,480)	16.8	(1,480)	3.33	( 259)
직장	7시 34분	20시 1분	12시간 27분	( 266)	13.6	( 266)	3.57	( 38)
<i>F</i>	9.7***	37.4***	34.8***		425.4(5)**		3.7**	

(표 III-2-1 계속)

구분	평일				토요일			
	문 여는 시각	문 닫는 시각	평일 운영시간	(사례수)	운영 비율	(사례수)	운영시 운영 횟수	월평균 횟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사례수)
지역규모								
대도시	7시 36분	19시 41분	12시간 05분	(1,464)	33.6	(1,464)	3.56	( 491)
중소도시	7시 41분	19시 33분	11시간 51분	(1,631)	26.1	(1,631)	3.39	( 422)
읍면	7시 40분	19시 25분	11시간 44분	( 951)	32.0	( 951)	3.61	( 327)
<i>F</i>	11.4***	15.5***	17.5***		221(2)**		4.7*	
규모								
20명 이하	7시 42분	19시 26분	11시간 44분	(1,520)	17.1	(1,520)	3.36	( 269)
21~39명	7시 43분	19시 24분	11시간 41분	( 625)	28.5	( 625)	3.51	( 183)
40~79명	7시 36분	19시 41분	12시간 05분	( 992)	36.7	( 992)	3.45	( 364)
80명 이상	7시 34분	19시 47분	12시간 13분	( 909)	46.7	( 909)	3.66	( 424)
<i>F</i>	15.5***	24.3**	29.3***		261.4(3)**		5.5**	
2012년 조사	7시 43분	19시 39분	11시간 56분	(4,000)	57.8	(3,985)	3.44	(2,349)
2009년 조사					84.4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12-113.의 내용 일부 재구성; 유희정·이미화·민현주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p.96.

\*\*  $p < .01$ , \*\*\*  $p < .001$

<표 III-2-2>는 어린이집의 토요일 보육참여 교직원 실태를 나타낸다. 토요일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참여 보육교직원 수는 평균 1.39명의 보육교사와 0.32명의 기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6: 113-114). 토요일 근무 보육교사의 경우 설립유형별로는 직장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1.89명, 1.72명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많았고,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 각각 평균 1.52명, 1.42명으로 대도시보다 약간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80명 이상인 경우 토요일 근무 교사수가 그 이하 규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보육교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교사가 아닌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이미화 외, 2016: 114).

<표 III-2-2> 토요일 보육참여 교직원 실태

단위: %, 명(개소)

구분	보육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계(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전체	3.2	75.5	15.4	6.0	1.39	74.1	23.4	1.8	0.7	0.32	100.0(1,263)
설립유형											
국공립	1.1	82.5	13.8	2.7	1.26	68.6	29.6	0.9	0.9	0.37	100.0( 303)
사회복지법인	2.1	56.5	33.0	8.5	1.72	66.3	28.4	4.4	0.9	0.41	100.0( 172)
법인단체	0.4	78.0	13.8	7.9	1.47	72.9	23.1	3.6	0.3	0.33	100.0( 122)
민간	3.9	76.0	13.5	6.7	1.33	78.9	19.4	1.2	0.4	0.23	100.0( 363)
가정	7.2	80.1	7.3	5.4	1.36	83.6	15.3	-	1.1	0.26	100.0( 265)
직장	-	52.1	33.1	14.8	1.89	46.9	44.0	9.1	-	0.62	100.0( 38)
$\chi^2(df)/F$		103.7(15) <sup>***</sup>					60.6(15) <sup>***</sup>				3.0*
지역규모											
대도시	2.4	78.9	13.6	5.1	1.29	77.2	21.8	0.5	0.6	0.26	100.0( 499)
중소도시	3.7	74.4	15.8	6.1	1.43	71.8	25.0	2.1	1.0	0.37	100.0( 431)
읍면	3.7	71.2	17.8	7.3	1.52	72.1	23.9	3.5	0.6	0.34	100.0( 333)
$\chi^2(df)/F$		6.9(6)					12.8(6)*				2.2
규모											
20명 이하	7.1	79.3	8.0	5.7	1.36	82.1	16.4	0.5	1.1	0.28	100.0( 276)
21~39명	2.1	80.5	9.9	7.5	1.34	76.2	22.2	1.6	-	0.25	100.0( 184)
40~79명	1.7	79.2	14.8	4.3	1.37	79.7	19.2	0.8	0.4	0.24	100.0( 371)
80명 이상	2.5	67.7	22.8	7.0	1.46	63.3	32.1	3.5	1.1	0.44	100.0( 432)
$\chi^2(df)/F$		50.8(9) <sup>***</sup>					47.9(9) <sup>***</sup>				5.2 <sup>**</sup>
2012년 조사	4.4	64.9	21.7	9.0	1.47	71.7	25.6	2.2	0.5	0.32	100.0(2,353)

출처: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14.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II-2-3>은 토요일 보육 운영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을 나타낸다. 토요일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조사 어린이집의 15.9%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토요일에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았다. 토요보육 운영 어린이집 비율은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36.8%→15.9%),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도 2012년 4.5%에서 1.9%로 감소하였다(이미화 외, 2016: 257).

토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은 약 30.3%로 나타나나(표 III-2-1 참조) 여기서 실제 토요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로 토요일 운영을 하여도 이용 영유아가 없는 경우가 존재함을 짐작케 하는 결과

라 할 수 있다(이미화 외, 2016: 257-258).

〈표 III-2-3〉 토요보육 이용 영유아 자원 시설 및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기관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29	105	159	(4,046)	1.2	0.7	(172,307)
설립유형							
국공립	21.2	24.8	29.7	( 506)	1.0	1.2	( 32,258)
사회복지법인	21.4	21.1	25.3	( 377)	1.2	1.2	( 26,436)
법인·단체	17.2	18.8	22.3	( 283)	0.8	1.5	( 16,162)
민간	13.7	12.3	17.5	(1,134)	0.9	0.9	( 58,230)
가정	7.3	0.6	7.4	(1,480)	1.5	0.1	( 23,004)
직장	9.0	6.8	10.0	( 266)	1.9	0.6	( 16,217)
지역규모							
대도시	13.1	11.0	16.1	(1,464)	1.2	0.6	( 66,367)
중소도시	11.1	8.5	14.3	(1,631)	1.4	0.6	( 59,267)
읍면	15.8	13.0	18.3	( 951)	1.1	0.8	( 46,673)
규모							
20명 이하	7.4	0.6	7.5	(1,520)	1.7	0.1	( 23,591)
21~39명	11.5	6.4	13.6	( 625)	1.3	0.7	( 16,133)
40~79명	14.1	14.7	18.7	( 992)	0.9	1.2	( 47,083)
80명 이상	22.0	25.3	28.6	( 909)	0.8	1.1	( 85,500)
2012년 조사	30.9	20.3	36.8	(4,000)	2.4(4,181)	2.1(3,713)	(175,873)

출처: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8.

##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표 III-2-4〉는 전국보육실태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시간연장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을 나타낸다. 조사대상 중 시간연장 이용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 유아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가 모두 있는 어린이집은 각각 18.4%, 12.9%, 21.5%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직장이 30% 내외의 높은 시간연장 서비스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영유아수 대비 시간연장보육 영유아수 비율을 보면, 영아는 3.0%, 유아는 1.3%로 그 크기는 미미하였다. 영아의 경우 가정/직장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비율이 높았으며, 유아의 경우에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 비율이 민간이나 가정보다 높았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야근 등 경제활동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영아와 유아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18.4	12.9	21.5	(4,046)	3.0	1.3	(172,307)
설립유형							
국공립	28.2	35.3	39.0	( 506)	1.6	2.4	( 32,258)
사회복지법인	13.2	14.7	17.3	( 377)	0.8	2.0	( 26,436)
법인·단체	11.5	14.6	15.3	( 283)	0.9	1.7	( 16,162)
민간	15.1	14.1	18.4	(1,134)	1.5	1.4	( 58,230)
가정	18.2	0.9	18.2	(1,480)	5.4	0.2	( 23,004)
직장	28.2	26.7	31.0	( 266)	4.0	3.7	( 16,217)
지역규모							
대도시	18.8	15.3	22.2	(1,464)	2.5	1.4	( 66,367)
중소도시	20.1	12.1	23.1	(1,631)	4.0	1.4	( 59,267)
읍면	14.8	10.6	17.7	( 951)	2.2	1.1	( 46,673)
규모							
20명 이하	18.2	0.9	18.2	(1,520)	5.4	0.2	( 23,591)
21~39명	16.5	11.3	18.8	( 625)	2.3	1.7	( 16,133)
40~79명	18.5	22.2	24.5	( 992)	1.8	2.5	( 47,083)
80명 이상	20.0	24.2	25.9	( 909)	0.9	1.7	( 85,500)
2012년 조사	21.0	13.5	24.6	(4,000)	2.1	1.7	(175,873)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3.

<표 III-2-5>에 의하면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평균 1.0명,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는 0.4명이다(양미선·배윤진 외, 2015: 75).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중 주간 보육교사 초과 근무자가 1.1명, 단시간 보육교사 0.1명으로 소수이다. 각 유형별 교사 수는 기관유형 및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양미선·배윤진 외, 2015: 75).

<표 III-2-5> 시간연장보육 담당교사 근무형태

단위: 명(개소)

구분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주간보육교사 초과근무	단시간 보육교사	(수)
전체	1.0	0.4	1.1	0.1	621
설립유형					
국공립	1.1	0.2	1.3	0.1	138
사회복지법인	1.1	0.4	1.1	0.2	30
법인·단체	1.3	1.1	2.0	0.1	16

(표 III-2-5 계속)

구분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교사	주간보육교사 초과근무	단시간 보육교사	(수)
민간개인	1.2	0.5	1.2	0.1	184
가정	0.8	0.5	1.0	0.1	241
직장	1.5	0.1	1.0	-	12
지역규모					
대도시	1.1	0.4	1.1	0.1	282
중소도시	1.0	0.4	1.0	0.1	221
읍면	0.9	0.7	1.3	0.1	118

출처: 양미선·배운진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74.

<표 III-2-6>에 의하면 주간 보육교사가 연장근무로 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경우, 주간 보육교사 중 1명이 전담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76.7%로 다수이고, 주간 보육교사가 순환근무하는 경우는 23.3%이었다. 기관유형별로 민간개인과 가정,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주간 보육교사 중 1명이 전담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전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양미선·배운진 외, 2015: 75).

&lt;표 III-2-6&gt; 시간연장보육시 주간 보육교사 연장 근무형태

구분	주간보육교사 중 전담근무	주간보육교사 순환근무	계(수)	$\chi^2(df)$
전체	76.7	23.3	100.0(202)	
설립유형				
국공립	31.6	68.4	100.0( 19)	
사회복지법인	62.5	37.5	100.0( 8)	-
법인·단체	37.5	62.5	100.0( 8)	
민간개인	73.8	26.2	100.0( 61)	
가정	91.4	8.6	100.0(105)	
직장	-	100.0	100.0( 1)	
지역규모				
대도시	71.4	28.6	100.0( 77)	
중소도시	82.2	17.8	100.0( 73)	2.4(2)
읍면	76.9	23.1	100.0( 52)	

출처: 양미선·배운진 외(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75.

## 다. 24시간 어린이집

<표 III-2-7>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나타

낸다. 표에 의하면 야간 및 24시간 어린이집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의 0.4% 수준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았고(0.8%),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0.2%). 야간 및 24시간보육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비율은 2012년 대비 감소하였으나(10.0%→0.4%) 서비스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은 0.1% 수준으로 2012년 조사와 같았으며,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아만 이용하고 있었다.

〈표 III-2-7〉 야간·24시간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기관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0.4	0.2	0.4	(4,046)	0.1	-	(172,307)
설립유형							
국공립	0.8	0.8	0.8	( 506)	-	-	( 32,258)
사회복지법인	0.7	0.3	0.7	( 377)	0.1	-	( 26,436)
법인·단체	-	-	-	( 283)	-	-	( 16,162)
민간	-	0.2	0.2	(1,134)	-	-	( 58,230)
가정	0.5	0.1	0.5	(1,480)	0.2	-	( 23,004)
직장	0.3	0.3	0.3	( 266)	0.1	0.1	( 16,217)
지역규모							
대도시	0.5	0.4	0.5	(1,464)	0.1	-	( 66,367)
중소도시	0.5	0.2	0.5	(1,631)	0.1	-	( 59,267)
읍면	-	0.1	0.1	( 951)	-	-	( 46,673)
규모							
20명 이하	0.5	0.1	0.5	(1,520)	0.1	-	( 23,591)
21~39명	-	-	-	( 625)	-	-	( 16,133)
40~79명	0.3	0.3	0.4	( 992)	-	-	( 47,083)
80명 이상	0.5	0.6	0.6	( 909)	-	-	( 85,500)
2012년 조사	0.8	0.7	1.0	(4,000)	0.1	0.1	(175,873)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55.

## 라. 휴일 어린이집

<표 III-2-8>은 휴일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을 나타낸다. 표에 의하면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의 3.2% 수준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직장 및 국공립의 운영비율이 각각 5.2%, 4.3%로 높았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2.3%로 가장 낮았다.

휴일보육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비율은 2012년 대비 증가하였으며(2.5%→3.2%), 서비스 이용하는 영유아 비율은 0.6% 수준으로 2012년 조사(0.4%)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휴일보육 이용 영유아 비율일 1.8%로 평균 이용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보였다.

〈표 III-2-8〉 휴일보육 이용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이용 영유아 비율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기관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영아	유아	(수)
전체	29	19	32	(4,046)	0.4	0.2	(172,307)
설립유형							
국공립	3.8	3.2	4.3	( 506)	0.2	0.3	( 32,258)
사회복지법인	2.4	2.4	2.8	( 377)	0.1	0.2	( 26,436)
법인·단체	2.3	1.9	2.4	( 283)	0.2	0.3	( 16,162)
민간	3.1	2.5	3.5	(1,134)	0.4	0.3	( 58,230)
가정	2.3	0.4	2.3	(1,480)	0.4	0.1	( 23,004)
직장	4.7	4.1	5.2	( 266)	0.9	0.9	( 16,217)
지역규모							
대도시	3.2	2.3	3.4	(1,464)	0.3	0.3	( 66,367)
중소도시	2.8	1.2	3.0	(1,631)	0.4	0.1	( 59,267)
읍면	2.6	2.4	3.0	( 951)	0.4	0.3	( 46,673)
규모							
20명 이하	2.2	0.4	2.3	(1,520)	0.4	0.1	( 23,591)
21~39명	2.4	0.9	2.4	( 625)	0.4	0.1	( 16,133)
40~79명	2.8	2.6	3.5	( 992)	0.4	0.4	( 47,083)
80명 이상	4.4	4.4	4.9	( 909)	0.3	0.4	( 85,500)
2012년 조사	2.2	1.0	2.5	(4,000)	0.2	0.2	(175,873)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

구소. p. 256.

## IV.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

### 1. 분석 자료

어린이집 세입·세출 현황은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이트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2016년 7월 10일부터 약 20일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기간 동안 공시된 어린이집은 총 41,380개소였으며, 이 중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본 연구에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또한 결산자료는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로 현행화가 안된 어린이집은 제외하였다. 이외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대한 자료는 개별 어린이집 공시자료에는 없어, 동일 사이트 내 '보육정보공개API-Open API-어린이집일람 현황' 자료를 추가로 추출하여 매칭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분석에 사용된 최종 어린이집 공시자료는 23,799개소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어린이집 세입·세출 결산 분석대상

단위: 개소

회계연도	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최초 결산공시 어린이집수	1,024	14,720	24,645	991	41,380
최종분석 어린이집수	-	-	23,799	-	23,799

주: 1) \*는 금액이 모두 0이고, \*\*는 공시자료에 대한 현행화가 안되었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2016회계연도 자료도 오류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음.

2) 201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공시한 어린이집 중 정원 또는 현원이 0명이거나, 세입 또는 세출 자료가 없거나 0인 경우, 공시되는 회계자료는 천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터무니없이 큰 값으로 원단위로 의심되는 일부 어린이집은 제외하였음.

세입·세출 분석은 크게 설립유형(7개), 지역규모(3개), 정원규모(7개)별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설립유형, 시도, 지역규모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를 사용하였으며, 정원규모는 선행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은 정원규모에 따라 그 운영 특성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의 규모 분포를 반영하였다. 어린이집 정원이 반 및 교사배치 기준이 바뀌는 기점을 기준으로 그 미만 최대치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기준인 20인 이하, 취사부 배치 적용 기준인 40인 이상, 놀이터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취사부 추가 배치인 80인 이상, 간호사와 영양사 배치기준인 100인 이상 등이 기준이므로 그 미만 최대치인 20인, 39인, 49인, 79인, 99인으로 정원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55,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29).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규모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후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원규모를 보육사업안내 등에서 어린이집 기본모형으로 제시하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교사배치 변동 없는 수준에서 정원 초과와 미달을 감안하여 각 해당 집단별로  $\pm 4$ 명 범주에 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세입·세출분석을 실시하였다(서문희 외, 2014: 10, 양미선·박원순 외, 2015: 23).

본 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서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서문희 등(2014)과 양미선, 박원순 등(2015)에서 제시한 정원규모 분류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원규모별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였다(표 IV-1-2 참조).

〈표 IV-1-2〉 주요 선행연구 세입·세출현황 분석시 어린이집 규모 분류 방식

전통적 규모분류	서문희·양미선· 이영미 외(2013)	서문희 외 (2014)	양미선·박원순 외 (2015)	서문희·양미선 ·박진아 외(2013)	2015년 보육통계
20인	16~20인	16~20인	16~20인	16~20인	20인 이하
50인	36~40인	46~54인	46~54인	36~40인	21~39인
77인	46~50인	73~81인	73~81인	46~50인	40~49인
97인	76~80인	93~101인	93~101인	76~80인	50~80인
124인	96~100인	120~128인	120~128인	96~100인	81~99인
142인	121~125인	138~146인	138~146인	121~125인	100~160인
169인	151인 이상	165인 이상	165인 이상	151인 이상	161~200인 201~240인 241~300인 300인 초과

또한 이용시간 유형별로 세입·세출을 분석하였다. 유형은 일반어린이집(종일반)과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설립유형, 시도,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 세입·세출을 분석하였다.

## 2. 세입결산 현황<sup>15)</sup>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공시자료에 근거하여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세입결산을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기업지원금), 자본보조금,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규모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일반어린이집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2015년도 보육통계에서는 특수보육 어린이집은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과 관련된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용시간 유형 중 종일반으로서 일반어린이집과 종일반 이외의 유형은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세입결산을 분석한다.

또한 이용시간 유형별 분석 시 세부적으로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에 따라 비교하였다.

### 가. 일반어린이집 세입결산 현황

<표 IV-2-1>은 일반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를 나타낸다. 월평균 보육료 수입의 경우, 국공립은 312,147원, 민간은 410,286원, 가정은 483,397원으로 가정과 민간의 보육료 수입이 높게 나타났다. 정원규모별로는 16~20인 규모 어린이집인 473,55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보육료 수입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인건비 보조금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인건비 지원 시설의 금액이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보다 높은 인건비 보조금을 보였다. 반면 기본 보육료의 경우에는 민간과 가정의 금액이 각각 125,990원과 276,897원으로 나타나 여타 유형 어린이집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수익자 부담경비인 필요경비 수입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다른 유형 어린이집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 중심의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5)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세입결산 규모는 부록 3 참조

〈표 IV-2-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목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5,811	24,312	312,147	340,570	13,526	48,289	0	14,130	32,160	810,945	455	
사회복지법인	31,999	43,916	343,936	298,807	2,954	52,547	0	6,519	44,742	825,420	503	
법인단체등	38,003	38,345	336,355	288,309	10,141	50,511	5	2,494	53,856	818,017	312	
설립 유형	민간	61,534	61,015	410,286	12,552	125,990	46,425	3	1,704	34,517	754,027	6,636
가정	32,834	28,107	483,397	24,725	276,897	23,228	13	3,374	41,714	914,289	9,759	
부모협동	11,193	10,813	324,957	12,990	67,170	47,896	776	1,500	135,396	612,691	58	
직장	14,935	20,908	298,583	132,232	3,723	45,624	30,041	7,864	464,713	1,018,624	379	
F	119.6 <sup>***</sup>	318.5 <sup>***</sup>	77.4 <sup>***</sup>	240.8 <sup>***</sup>	87.9 <sup>***</sup>	229.7 <sup>***</sup>	105.7 <sup>***</sup>	46.6 <sup>***</sup>	1,179.1 <sup>***</sup>	113.2 <sup>***</sup>		
대도시	33,354	41,592	437,672	46,948	196,846	35,149	876	3,293	51,572	847,304	6,532	
지역 규모	중소도시	50,845	39,838	450,444	24,006	212,508	28,567	409	2,863	43,194	852,672	8,228
농어촌	41,457	39,913	426,984	79,738	155,628	46,185	746	3,806	54,398	848,856	3,342	
F	101.7 <sup>***</sup>	2.4	6.9 <sup>**</sup>	302.8 <sup>***</sup>	101.8 <sup>***</sup>	190.1 <sup>***</sup>	0.8	3.7 <sup>*</sup>	15.3 <sup>***</sup>	0.6		
전체	42,800	40,485	441,504	42,574	196,355	34,195	640	3,192	48,285	850,030	18,102	
16~20인	34,096	29,571	473,552	26,319	265,691	22,817	365	3,552	41,085	897,047	8,406	
46~54인	54,055	54,233	386,344	68,635	97,946	44,922	1,201	2,109	85,096	794,542	1,068	
73~81인	54,029	55,409	350,571	89,350	54,715	52,955	16	3,405	60,534	720,982	514	
정원 규모	93~101인	52,555	58,938	342,070	87,098	45,322	60,746	269	2,587	41,703	691,289	609
120~128인	54,805	68,253	344,688	48,626	46,108	50,525	0	4,114	46,967	664,086	145	
138~146인	61,181	62,945	343,856	57,741	43,237	53,008	0	1,236	51,071	674,275	133	
165인 이상	74,425	70,883	357,631	30,282	41,755	53,215	3,735	3,431	48,428	683,785	362	
F	56.9 <sup>***</sup>	119.0 <sup>***</sup>	44.2 <sup>***</sup>	90.7 <sup>***</sup>	475.1 <sup>***</sup>	171.9 <sup>***</sup>	1.5	1.7	27.3 <sup>***</sup>	56.2 <sup>***</sup>		
전체a	39,792	36,913	445,580	37,305	215,474	30,046	523	3,332	46,622	855,587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2-2>는 일반어린이집의 세입 목별 분포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보육료 수입이 52.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인건비 보조금 등의 경상보조금 수입은 31.5%,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 수입은 10.5%로 분포하였다.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수입의 비중이 54.8%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필요경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16.6%로 높았다. 지역규모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비중이 컸고,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필요경비, 보육료, 기본보육료 수입의 비중이 컸고,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보조금과 기타지원금의 비중이 컸다. 기타필요경비 수입은 정원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기본보육료 수입은 정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2-2〉 일반어린이집 세입 목별 분포

단위: %,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3.4 <sup>b</sup>	3.3 <sup>b</sup>	39.5 <sup>b</sup>	40.5 <sup>c</sup>	1.5 <sup>a</sup>	6.1 <sup>bc</sup>	0.0 <sup>a</sup>	2.0 <sup>b</sup>	3.7 <sup>a</sup>	100.0	455	
사회복지법인	4.1 <sup>bc</sup>	5.7 <sup>c</sup>	42.7 <sup>c</sup>	34.9 <sup>d</sup>	0.4 <sup>a</sup>	6.6 <sup>c</sup>	0.0 <sup>a</sup>	0.6 <sup>a</sup>	5.0 <sup>ab</sup>	100.0	503	
법인단체등	4.9 <sup>c</sup>	5.1 <sup>c</sup>	42.5 <sup>c</sup>	32.8 <sup>c</sup>	1.6 <sup>a</sup>	6.5 <sup>bc</sup>	0.0 <sup>a</sup>	0.3 <sup>a</sup>	6.4 <sup>b</sup>	100.0	312	
설립 유형	민간	8.2 <sup>d</sup>	8.4 <sup>d</sup>	54.8 <sup>d</sup>	1.5 <sup>a</sup>	15.9 <sup>c</sup>	6.6 <sup>c</sup>	0.0 <sup>a</sup>	0.3 <sup>a</sup>	4.3 <sup>ab</sup>	100.0	6,636
	가정	3.7 <sup>bc</sup>	3.2 <sup>b</sup>	53.3 <sup>d</sup>	2.5 <sup>a</sup>	30.3 <sup>d</sup>	2.5 <sup>a</sup>	0.0 <sup>a</sup>	0.4 <sup>a</sup>	4.2 <sup>ab</sup>	100.0	9,759
	부모협동	1.4 <sup>a</sup>	0.9 <sup>a</sup>	55.0 <sup>d</sup>	1.7 <sup>a</sup>	9.5 <sup>b</sup>	8.0 <sup>d</sup>	0.2 <sup>a</sup>	0.2 <sup>a</sup>	23.0 <sup>c</sup>	100.0	58
직장	1.6 <sup>a</sup>	2.3 <sup>b</sup>	31.2 <sup>a</sup>	13.0 <sup>b</sup>	0.4 <sup>a</sup>	5.2 <sup>b</sup>	2.5 <sup>b</sup>	0.6 <sup>a</sup>	43.3 <sup>d</sup>	100.0	379	
F	702 <sup>***</sup>	1527 <sup>***</sup>	1298 <sup>***</sup>	5889 <sup>***</sup>	6602 <sup>***</sup>	6308 <sup>***</sup>	1493 <sup>***</sup>	45.0 <sup>***</sup>	2043.3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4.2 <sup>a</sup>	5.5 <sup>b</sup>	52.4 <sup>b</sup>	5.2 <sup>b</sup>	22.4 <sup>b</sup>	4.4 <sup>b</sup>	0.1	0.4	5.5 <sup>b</sup>	100.0	6,532
	중소도시	6.2 <sup>c</sup>	5.0 <sup>a</sup>	53.3 <sup>c</sup>	2.7 <sup>a</sup>	23.9 <sup>c</sup>	3.7 <sup>a</sup>	0.0	0.3	4.8 <sup>a</sup>	100.0	8,228
	농어촌	5.1 <sup>b</sup>	5.0 <sup>a</sup>	51.3 <sup>a</sup>	8.6 <sup>c</sup>	18.0 <sup>a</sup>	5.9 <sup>c</sup>	0.1	0.4	5.6 <sup>b</sup>	100.0	3,342
F	233.8 <sup>***</sup>	21.5 <sup>***</sup>	67.4 <sup>***</sup>	370.9 <sup>***</sup>	329.9 <sup>***</sup>	274.1 <sup>***</sup>	0.2	2.1	16.4 <sup>***</sup>			
전체	5.3	5.2	52.6	4.7	22.3	4.4	0.1	0.4	5.2	100.0	18,102	
정원 규모	16~20인	3.8 <sup>a</sup>	3.4 <sup>a</sup>	53.3 <sup>b</sup>	2.6 <sup>a</sup>	29.7 <sup>d</sup>	2.5 <sup>a</sup>	0.0	0.4	4.3 <sup>a</sup>	100.0	8,406
	46~54인	7.0 <sup>b</sup>	7.1 <sup>b</sup>	50.2 <sup>a</sup>	7.7 <sup>c</sup>	12.8 <sup>c</sup>	6.0 <sup>b</sup>	0.1	0.5	8.6 <sup>c</sup>	100.0	1,068
	73~81인	7.6 <sup>b</sup>	7.9 <sup>b</sup>	49.8 <sup>a</sup>	11.7 <sup>d</sup>	7.9 <sup>b</sup>	7.7 <sup>c</sup>	0.0	0.4	7.1 <sup>bc</sup>	100.0	514
	93~101인	7.8 <sup>b</sup>	8.9 <sup>c</sup>	50.3 <sup>a</sup>	11.5 <sup>d</sup>	6.7 <sup>ab</sup>	9.1 <sup>d</sup>	0.0	0.5	5.2 <sup>ab</sup>	100.0	609
	120~128인	8.2 <sup>bc</sup>	10.6 <sup>e</sup>	52.6 <sup>b</sup>	6.6 <sup>bc</sup>	7.1 <sup>ab</sup>	8.0 <sup>c</sup>	0.0	0.4	6.6 <sup>abc</sup>	100.0	145
	138~146인	9.0 <sup>c</sup>	9.6 <sup>cd</sup>	51.5 <sup>ab</sup>	8.4 <sup>c</sup>	6.2 <sup>ab</sup>	8.3 <sup>cd</sup>	0.0	0.2	6.8 <sup>bc</sup>	100.0	133
	165인 이상	10.7 <sup>d</sup>	10.5 <sup>de</sup>	52.8 <sup>b</sup>	4.3 <sup>ab</sup>	6.1 <sup>a</sup>	8.0 <sup>c</sup>	0.4	0.4	6.9 <sup>bc</sup>	100.0	362
	F	352.2 <sup>***</sup>	912.2 <sup>***</sup>	50.4 <sup>***</sup>	196.4 <sup>***</sup>	4045.5 <sup>***</sup>	664.3 <sup>***</sup>	4.6 <sup>***</sup>	0.7	52.5 <sup>***</sup>		
전체a	4.9	4.6	52.6	4.2	24.5	3.8	0.0	0.4	5.0	100.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잠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잠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입.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사후검정 결과 a, b, c, d, e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e).

\*\*\* p < .001

##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입결산 현황

<표 IV-2-3>은 시간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를 나타낸다. 월평균 보육료 수입의 경우, 국공립은 305,812원, 민간은 399,602원, 가정은 496,377원으로 가정과 민간의 보육료 수입이 높게 나타나, 일반어린이집과 동일한 형태를 보였다. 지역규모와 정원구별로 규모는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 특성별로는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금이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 보육료는 민간과 가정이 정부 인건비지원시설인 국공립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익자 부담경비인 필요경비 수입 규모는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금액을 보였다.

<표 IV-2-3>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목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6,919	27,140	305,812	320,143	11,125	43,199	2	8,451	26,260	769,052	684	
사회복지법인	28,502	40,545	346,911	348,416	896	51,461	0	7,558	41,497	865,785	133	
법인단체등	29,200	33,273	340,372	345,830	14,945	61,024	0	4,455	39,707	868,808	93	
설립 유형	민간	46,679	53,269	399,602	56,303	122,483	63,572	2	1,718	36,010	779,640	1,263
가정	28,385	22,544	496,377	121,294	283,059	38,840	18	8,730	45,213	1,044,619	1,946	
부모협동	39,347	61,822	668,007	86,334	304,095	7,292	0	0	144,489	1,311,355	3	
직장	36,808	25,886	304,950	200,562	3,788	87,034	14,042	22,739	311,885	1,007,695	76	
F	26.5***	146.9**	63.4***	433.8***	326.8***	41.9***	17.0***	0.4	167.6***	40.9***		
대도시	29,369	37,601	408,521	158,500	151,318	47,137	541	5,907	45,778	884,673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40,321	31,276	438,718	128,382	196,540	44,730	96	9,230	43,095	932,388	1,560
농어촌	31,258	28,871	432,226	160,481	162,838	59,095	4	3,738	42,100	920,611	874	
F	27.2***	27.0***	6.2**	18.2***	22.3***	23.8***	0.8	0.4	0.7	3.3*		
전체	33,832	33,433	424,678	147,720	170,521	48,732	264	6,690	44,015	909,886	4,198	
16~20인	29,551	23,878	485,513	116,734	272,463	38,343	22	4,455	44,789	1,015,749	1,605	
46~54인	34,378	45,023	359,466	177,002	72,053	55,261	2,445	4,008	38,736	788,371	309	
73~81인	34,458	40,719	315,059	174,804	34,799	59,791	0	3,011	31,253	693,892	195	
정원 규모	93~101인	47,040	47,855	338,584	136,981	44,189	63,623	0	1,882	42,181	722,335	174
120~128인	48,901	50,622	320,775	119,764	32,362	56,438	0	496	37,586	666,944	45	
138~146인	64,773	60,678	335,330	78,281	38,645	68,881	0	1,206	25,860	673,655	22	
165인 이상	41,874	47,122	322,525	80,328	31,699	61,374	0	14,377	107,241	706,539	71	
F	9.8***	56.4***	28.2***	15.0***	122.8***	19.3***	1.1	3.8**	9.7***	25.8***		

(표 IV-2-3 계속)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전체a	32,860	31,170	435,929	129,198	197,687	45,336	327	4,284	44,264	921,056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2-4>는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세입 목별 분포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보육료 수입이 47.4%, 경상보조금 수입이 39.4%, 필요경비 수입이 8.2%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경상보조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경상보조금 수입 중 특히 인건비보조금이 16.2%로 일반어린이집의 4.7%에 비해 높았으며 설립유형별로는 가정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보육을 할 경우 그 비중이 높아졌다. 민간과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간연장보육을 할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하여 보육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비중이 크고,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필요경비와 기본보육료 수입 비중이 크고,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기타지원금 수입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16~20인 이하 기관의 경우 특별활동비와 기타지원금 비중은 낮고 기본보육료 비중은 높았다.

<표 IV-2-4>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입 목별 분포

단위: %, 개소

구분	필요경비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3.6	3.8	40.5 <sup>ab</sup>	40.3 <sup>c</sup>	1.2 <sup>a</sup>	5.9 <sup>ab</sup>	0.0 <sup>a</sup>	1.2	3.4 <sup>a</sup>	100.0	684
사회복지법인	3.5	5.1	41.2 <sup>b</sup>	38.7 <sup>c</sup>	0.1 <sup>a</sup>	6.2 <sup>b</sup>	0.0 <sup>a</sup>	0.8	4.5 <sup>a</sup>	100.0	133
법인단체등	3.6	4.0	40.5 <sup>ab</sup>	38.2 <sup>bc</sup>	2.2 <sup>a</sup>	6.6 <sup>b</sup>	0.0 <sup>a</sup>	0.4	4.4 <sup>a</sup>	100.0	93
설립 유형											
민간	6.2	7.2	51.8 <sup>c</sup>	6.7 <sup>a</sup>	15.1 <sup>b</sup>	8.6 <sup>b</sup>	0.0 <sup>a</sup>	0.2	4.2 <sup>a</sup>	100.0	1,263
가정	2.8	2.4	48.2 <sup>bc</sup>	11.1 <sup>a</sup>	27.1 <sup>c</sup>	3.7 <sup>ab</sup>	0.0 <sup>a</sup>	0.5	4.1 <sup>a</sup>	100.0	1,946
부모협동	4.1	5.7	53.1 <sup>c</sup>	4.5 <sup>a</sup>	22.9 <sup>c</sup>	0.4 <sup>a</sup>	0.0 <sup>a</sup>	0.0	9.4 <sup>a</sup>	100.0	3
직장	2.9	2.8	33.3 <sup>a</sup>	19.0 <sup>b</sup>	0.6 <sup>a</sup>	8.5 <sup>b</sup>	1.4 <sup>b</sup>	2.3	29.1 <sup>b</sup>	100.0	76
F	104.5 <sup>***</sup>	169.1 <sup>***</sup>	268.7 <sup>***</sup>	158.7 <sup>***</sup>	232.3 <sup>***</sup>	136.2 <sup>***</sup>	22.8 <sup>***</sup>	8.1 <sup>***</sup>	25.1 <sup>***</sup>		

(표 IV-2-4 계속)

구분	필요경비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대도시	3.5 <sup>a</sup>	4.7 <sup>b</sup>	46.5 <sup>a</sup>	18.1 <sup>b</sup>	15.9 <sup>a</sup>	5.7 <sup>a</sup>	0.1	0.8 <sup>b</sup>	4.6	100.0	1,764
지역 중소도시	4.6 <sup>b</sup>	3.9 <sup>a</sup>	48.1 <sup>b</sup>	13.7 <sup>a</sup>	19.6 <sup>b</sup>	5.2 <sup>a</sup>	0.0	0.4 <sup>ab</sup>	4.3	100.0	1,560
규모 농어촌	3.7 <sup>a</sup>	3.6 <sup>a</sup>	47.8 <sup>b</sup>	16.7 <sup>b</sup>	16.5 <sup>a</sup>	6.9 <sup>b</sup>	0.0	0.4 <sup>a</sup>	4.4	100.0	874
F	32.9 <sup>***</sup>	22.1 <sup>***</sup>	15.8 <sup>***</sup>	35.8 <sup>***</sup>	46.5 <sup>***</sup>	28.1 <sup>***</sup>	1.1	4.9 <sup>**</sup>	0.9		
전체	4.0	4.2	47.4	16.2	17.4	5.8	0.0	0.6	4.5	100.0	4,198
정원 규모											
16~20인	2.9 <sup>a</sup>	2.5 <sup>a</sup>	48.3	11.1 <sup>a</sup>	26.8 <sup>c</sup>	3.8 <sup>a</sup>	0.0	0.5	4.1 <sup>a</sup>	100.0	1,605
46~54인	4.4 <sup>ab</sup>	5.8 <sup>b</sup>	46.4	21.5 <sup>c</sup>	9.4 <sup>b</sup>	7.2 <sup>b</sup>	0.2	0.6	4.6 <sup>a</sup>	100.0	309
73~81인	5.1 <sup>b</sup>	6.0 <sup>b</sup>	46.2	24.4 <sup>c</sup>	5.1 <sup>a</sup>	8.7 <sup>b</sup>	0.0	0.4	4.1 <sup>a</sup>	100.0	195
93~101인	6.5 <sup>cd</sup>	7.0 <sup>bc</sup>	47.3	18.5 <sup>bc</sup>	6.1 <sup>ab</sup>	9.5 <sup>bc</sup>	0.0	0.2	5.0 <sup>a</sup>	100.0	174
120~128인	7.2 <sup>cde</sup>	7.6 <sup>bc</sup>	48.3	18.0 <sup>abc</sup>	4.7 <sup>a</sup>	8.6 <sup>b</sup>	0.0	0.1	5.4 <sup>a</sup>	100.0	45
138~146인	9.1 <sup>e</sup>	9.2 <sup>c</sup>	49.7	12.0 <sup>ab</sup>	5.1 <sup>a</sup>	11.5 <sup>c</sup>	0.0	0.2	3.2 <sup>a</sup>	100.0	22
165인 이상	6.4 <sup>cd</sup>	7.0 <sup>bc</sup>	47.3	12.0 <sup>ab</sup>	4.8 <sup>a</sup>	8.6 <sup>b</sup>	0.0	1.6	12.4 <sup>b</sup>	100.0	71
F	65.4 <sup>***</sup>	91.6 <sup>***</sup>	4.5 <sup>***</sup>	63.6 <sup>***</sup>	922.6 <sup>***</sup>	101.9 <sup>***</sup>	1.1	2.0	20.4 <sup>***</sup>		
전체a	3.8	3.8	47.8	14.2	20.1	5.3	0.0	0.5	4.5	100.0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사후검정 결과 a, b, c, d, e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e).

\*\*  $p < .01$ , \*\*\*  $p < .001$

### 3. 세출결산 현황<sup>16)</sup>

본 절에서는 어린이집 공시자료에 근거하여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세출결산의 항·목별 규모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에 대해 설립유형, 지역규모 규모, 정원규모에 따라 비교하였다.

#### 가. 일반어린이집 세출결산 현황

일반어린이집의 세출자료를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로 구분하여 각 항별 지출액의 분포를 살펴보고 각 항별로 세부 목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16)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세출결산 규모는 부록 4 참조.

1) 전체 세출 항별 규모 및 분포

<표 IV-3-1>은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 인건비는 설립유형에서는 국공립의 경우 525,545원, 민간은 369,948원, 가정은 506,677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이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이 낮게 나타났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영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유아 1인당 월 19,98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이 12,173원, 민간은 8,940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의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이 101,32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 64,119원, 민간 77,640원이었다.

사업운영비의 경우에는 민간이 165,321원, 국공립이 132,612원, 가정이 118,710원 수준이었다. 특히 정원규모가 커질수록 영유아 1인당 지출 규모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세입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민간의 수익자부담경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는 사업운영비에서 민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시설비의 경우에는 국공립이 32,261원이었으며, 민간과 가정은 각각 12,833원, 14,125원으로 2배정도 낮게 나타났다. 전출금과 기타 세출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계	기관수	
국공립	525,545	12,173	64,119	132,612	32,261	5,443	2,799	774,951	455	
사회복지법인	481,924	10,853	75,291	146,176	32,564	9,901	2,020	758,730	503	
법인단체등	489,386	9,385	71,162	139,253	26,134	6,472	1,796	743,589	312	
설립유형	민간	369,948	8,940	77,640	165,321	12,833	10,995	2,678	648,355	6,636
	가정	506,677	19,989	101,320	118,710	14,125	14,265	5,269	780,354	9,759
	부모협동	435,428	6,093	53,219	93,309	5,665	12,346	1,941	608,000	58
	직장	642,414	7,592	82,386	163,847	19,574	6,274	2,259	924,345	379
	F	185.7 <sup>***</sup>	335.1 <sup>***</sup>	116.3 <sup>***</sup>	179.9 <sup>***</sup>	74.7 <sup>***</sup>	8.3 <sup>***</sup>	16.5 <sup>***</sup>	73.2 <sup>***</sup>	
대도시	466,436	14,969	87,294	133,094	14,242	10,622	3,815	730,472	6,532	
지역	중소도시	453,264	15,343	91,850	142,404	14,042	13,795	4,028	734,725	8,228
규모	농어촌	456,722	14,224	90,247	137,436	18,372	12,526	4,472	734,000	3,342
	F	3.8 <sup>*</sup>	5.1 <sup>**</sup>	8.8 <sup>***</sup>	18.0 <sup>***</sup>	28.3 <sup>***</sup>	9.4 <sup>***</sup>	1.4	0.2	

(표 IV-3-1 계속)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전체	458,655	15,001	89,910	138,127	14,913	12,416	4,033	733,057	18,102	
16~20인	499,169	19,159	99,938	120,601	14,060	13,681	5,336	771,943	8,406	
46~54인	419,794	9,884	76,959	158,871	16,237	13,261	3,001	698,007	1,068	
73~81인	376,426	7,870	66,321	166,216	16,981	7,150	1,991	642,955	514	
정원 규모	93~101인	353,258	7,416	67,272	170,508	17,141	6,078	2,039	623,713	609
120~128인	332,672	6,073	70,397	177,431	14,456	5,335	1,117	607,482	145	
138~146인	325,028	6,289	63,272	176,689	14,767	4,357	1,758	592,160	133	
165인 이상	306,448	4,784	66,592	193,850	15,366	5,188	1,575	593,802	362	
F	72.0***	157.7***	76.5***	103.8***	2.4*	6.6***	8.9***	28.7***		
전체a	467,684	16,340	92,556	132,786	14,623	12,439	4,565	740,994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3-2>는 일반어린이집 전체 세출 분포를 향 수준에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세출 항목 중 인건비가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사업운영비가 19.6%, 관리운영비가 12.4% 순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56.7%로 적고, 사업운영비 비중이 26.0%로 높았다. 지역규모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컸고,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경우는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운영비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lt;표 IV-3-2&gt; 일반어린이집 세출 항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66.9 <sup>cd</sup>	1.5 <sup>c</sup>	8.3 <sup>a</sup>	18.1 <sup>b</sup>	4.4 <sup>d</sup>	0.5 <sup>a</sup>	0.3 <sup>a</sup>	100.0	455	
사회복지법인	63.2 <sup>b</sup>	1.4 <sup>bc</sup>	9.9 <sup>b</sup>	20.3 <sup>c</sup>	4.0 <sup>cd</sup>	0.8 <sup>ab</sup>	0.3 <sup>a</sup>	100.0	503	
법인단체등	65.0 <sup>bcd</sup>	1.2 <sup>abc</sup>	9.6 <sup>ab</sup>	19.8 <sup>bc</sup>	3.4 <sup>c</sup>	0.7 <sup>ab</sup>	0.2 <sup>a</sup>	100.0	312	
설립 유형	민간	56.7 <sup>a</sup>	1.4 <sup>bc</sup>	12.1 <sup>c</sup>	26.0 <sup>d</sup>	2.0 <sup>b</sup>	1.5 <sup>ab</sup>	0.4 <sup>a</sup>	100.0	6,636
가정	64.8 <sup>bc</sup>	2.5 <sup>d</sup>	13.1 <sup>c</sup>	15.4 <sup>a</sup>	1.8 <sup>ab</sup>	1.7 <sup>b</sup>	0.7 <sup>a</sup>	100.0	9,759	
부모협동	71.5 <sup>e</sup>	1.1 <sup>ab</sup>	9.1 <sup>ab</sup>	15.3 <sup>a</sup>	0.9 <sup>a</sup>	1.7 <sup>b</sup>	0.4 <sup>a</sup>	100.0	58	
직장	67.4 <sup>d</sup>	0.9 <sup>a</sup>	9.2 <sup>ab</sup>	19.2 <sup>bc</sup>	2.3 <sup>b</sup>	0.8 <sup>ab</sup>	0.3 <sup>a</sup>	100.0	379	
F	731.2***	552.8***	192.7***	1,738.7***	123.7***	21.4***	26.0***			

(표 IV-3-2 계속)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대도시	63.1 <sup>b</sup>	2.0 <sup>b</sup>	12.1 <sup>a</sup>	19.0 <sup>a</sup>	1.9 <sup>a</sup>	1.3 <sup>a</sup>	0.5 <sup>a</sup>	100.0	6,532
지역 중소도시	61.1 <sup>a</sup>	2.0 <sup>b</sup>	12.6 <sup>b</sup>	20.1 <sup>c</sup>	1.9 <sup>a</sup>	1.7 <sup>b</sup>	0.5 <sup>ab</sup>	100.0	8,228
규모 농어촌	61.4 <sup>a</sup>	1.9 <sup>a</sup>	12.4 <sup>b</sup>	19.6 <sup>b</sup>	2.5 <sup>b</sup>	1.6 <sup>b</sup>	0.6 <sup>b</sup>	100.0	3,342
F	98.6 <sup>***</sup>	9.8 <sup>***</sup>	18.4 <sup>***</sup>	31.7 <sup>***</sup>	51.5 <sup>***</sup>	23.8 <sup>***</sup>	5.2 <sup>**</sup>		
전체	61.9	2.0	12.4	19.6	2.0	1.6	0.5	100.0	18,102
정원 16~20인	64.5 <sup>c</sup>	2.5 <sup>c</sup>	13.1 <sup>c</sup>	15.8 <sup>a</sup>	1.8 <sup>a</sup>	1.7 <sup>b</sup>	0.7	100.0	8,406
46~54인	59.5 <sup>d</sup>	1.4 <sup>b</sup>	11.3 <sup>ab</sup>	23.6 <sup>b</sup>	2.3 <sup>ab</sup>	1.6 <sup>ab</sup>	0.3	100.0	1,068
73~81인	58.0 <sup>cd</sup>	1.2 <sup>ab</sup>	10.4 <sup>a</sup>	26.4 <sup>c</sup>	2.6 <sup>b</sup>	1.1 <sup>ab</sup>	0.3	100.0	514
93~101인	56.1 <sup>bc</sup>	1.2 <sup>ab</sup>	10.8 <sup>ab</sup>	28.1 <sup>d</sup>	2.6 <sup>b</sup>	1.0 <sup>ab</sup>	0.3	100.0	609
규모 120~128인	54.3 <sup>b</sup>	1.0 <sup>ab</sup>	11.7 <sup>b</sup>	29.5 <sup>de</sup>	2.4 <sup>ab</sup>	0.9 <sup>ab</sup>	0.2	100.0	145
138~146인	54.5 <sup>b</sup>	1.1 <sup>ab</sup>	10.9 <sup>ab</sup>	30.2 <sup>e</sup>	2.4 <sup>ab</sup>	0.7 <sup>a</sup>	0.3	100.0	133
165인 이상	51.2 <sup>a</sup>	0.8 <sup>a</sup>	11.5 <sup>ab</sup>	32.6 <sup>f</sup>	2.6 <sup>b</sup>	0.9 <sup>ab</sup>	0.3	100.0	362
F	365.1 <sup>***</sup>	280.3 <sup>***</sup>	75.9 <sup>***</sup>	1,500.8 <sup>***</sup>	26.6 <sup>***</sup>	11.3 <sup>***</sup>	13.7 <sup>***</sup>		
전체a	62.6	2.2	12.6	18.6	2.0	1.6	0.6	100.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사후검정 결과 a, b, c, d, e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e).

\*\* p < .01, \*\*\* p < .001

## 2) 인건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3>은 일반어린이집 세출 중 인건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인건비 항의 세목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급의 비중이 80.6%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 부담비용이 8.1%였다. 설립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기본급의 비중(69.5%)이 낮고, 제수당(9.9%)과 기타후생경비(4.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컸고,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제일 낮고 일용잡급, 제수당, 기타 후생경비 등의 비중이 컸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16~20인 이하 기관의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제일 컸다.

〈표 IV-3-3〉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인건비)

단위: %,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77.4 <sup>b</sup>	0.9 <sup>a</sup>	4.0 <sup>c</sup>	6.7 <sup>b</sup>	7.9 <sup>ab</sup>	3.1 <sup>b</sup>	100.0	454	
사회복지법인	77.7 <sup>b</sup>	1.8 <sup>ab</sup>	2.5 <sup>b</sup>	6.7 <sup>b</sup>	9.0 <sup>c</sup>	2.3 <sup>ab</sup>	100.0	503	
법인단체등	77.9 <sup>b</sup>	1.6 <sup>a</sup>	2.5 <sup>b</sup>	6.8 <sup>b</sup>	8.7 <sup>bc</sup>	2.4 <sup>ab</sup>	100.0	312	
설립 유형	민간	80.4 <sup>c</sup>	1.8 <sup>ab</sup>	1.8 <sup>ab</sup>	5.6 <sup>a</sup>	8.0 <sup>ab</sup>	2.3 <sup>ab</sup>	100.0	6,633
가정	81.7 <sup>c</sup>	1.1 <sup>a</sup>	1.4 <sup>a</sup>	5.5 <sup>a</sup>	8.0 <sup>ab</sup>	2.4 <sup>ab</sup>	100.0	9,753	
부모협동	78.0 <sup>b</sup>	1.4 <sup>a</sup>	3.8 <sup>c</sup>	6.3 <sup>ab</sup>	8.5 <sup>bc</sup>	1.9 <sup>a</sup>	100.0	58	
직장	69.5 <sup>a</sup>	2.7 <sup>b</sup>	9.9 <sup>d</sup>	6.2 <sup>ab</sup>	7.1 <sup>a</sup>	4.5 <sup>c</sup>	100.0	378	
F	287.7 <sup>***</sup>	53.8 <sup>***</sup>	530.8 <sup>***</sup>	38.3 <sup>***</sup>	18.0 <sup>***</sup>	46.3 <sup>***</sup>			
지역	대도시	81.3 <sup>c</sup>	1.3 <sup>a</sup>	1.9 <sup>b</sup>	5.3 <sup>a</sup>	7.9 <sup>a</sup>	2.3 <sup>a</sup>	100.0	6,530
규모	중소도시	80.6 <sup>b</sup>	1.4 <sup>a</sup>	1.7 <sup>a</sup>	5.8 <sup>b</sup>	8.1 <sup>b</sup>	2.4 <sup>a</sup>	100.0	8,222
농어촌	79.5 <sup>a</sup>	1.6 <sup>b</sup>	2.2 <sup>c</sup>	6.0 <sup>c</sup>	8.2 <sup>b</sup>	2.6 <sup>b</sup>	100.0	3,339	
F	82.3 <sup>***</sup>	5.1 <sup>**</sup>	30.8 <sup>***</sup>	74.9 <sup>***</sup>	17.6 <sup>***</sup>	15.6 <sup>***</sup>			
전체	80.6	1.4	1.8	5.6	8.1	2.4	100.0	18,091	
정원	16~20인	81.6 <sup>c</sup>	1.1 <sup>a</sup>	1.5 <sup>a</sup>	5.5	7.9 <sup>ab</sup>	2.4	100.0	8,400
규모	46~54인	79.7 <sup>b</sup>	1.6 <sup>ab</sup>	2.6 <sup>b</sup>	5.8	7.8 <sup>a</sup>	2.5	100.0	1,067
73~81인	78.3 <sup>ab</sup>	1.8 <sup>abc</sup>	3.1 <sup>bc</sup>	6.1	8.1 <sup>ab</sup>	2.6	100.0	514	
93~101인	77.9 <sup>a</sup>	2.0 <sup>bc</sup>	2.8 <sup>bc</sup>	6.3	8.4 <sup>ab</sup>	2.6	100.0	609	
120~128인	77.1 <sup>a</sup>	3.0 <sup>d</sup>	2.7 <sup>bc</sup>	5.8	8.7 <sup>b</sup>	2.7	100.0	145	
138~146인	78.3 <sup>ab</sup>	2.1 <sup>bcd</sup>	2.3 <sup>ab</sup>	6.3	8.2 <sup>ab</sup>	2.6	100.0	133	
165인 이상	77.0 <sup>a</sup>	2.6 <sup>cd</sup>	3.6 <sup>c</sup>	5.8	8.1 <sup>ab</sup>	2.9	100.0	362	
F	89.5 <sup>***</sup>	34.0 <sup>***</sup>	70.4 <sup>***</sup>	12.3 <sup>***</sup>	4.1 <sup>***</sup>	2.9 <sup>**</sup>			
전체a	80.8	1.3	1.8	5.6	8.0	2.5	100.0	11,230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1$ , \*\*\*  $p < .001$

### 3) 업무추진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4>는 일반어린이집 세출 중 업무추진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세목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책급이 76.8%를 차지하고 기관운영비가 20.0%, 회의비는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설립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직책급의 비중이 82.0%로 여러 설립유형 중에서 가장 컸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기관운영비 49.3%, 직책급 28.6%, 회의비 22.1%로 다른 유형들과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직책급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운영비의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직책급의 비중이 작아지고 기관운영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3-4>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업무추진비)

단위: %,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17.8 <sup>ab</sup>	77.4 <sup>cd</sup>	4.9 <sup>a</sup>	100.0	448
사회복지법인	19.9 <sup>ab</sup>	75.2 <sup>cd</sup>	4.9 <sup>a</sup>	100.0	494
법인단체등	26.2 <sup>b</sup>	68.2 <sup>c</sup>	5.6 <sup>a</sup>	100.0	304
설립 유형					
민간	24.9 <sup>ab</sup>	71.5 <sup>c</sup>	3.6 <sup>a</sup>	100.0	6,388
가정	15.8 <sup>a</sup>	82.0 <sup>d</sup>	2.2 <sup>a</sup>	100.0	9,489
부모협동	49.3 <sup>d</sup>	28.6 <sup>a</sup>	22.1 <sup>c</sup>	100.0	46
직장	38.8 <sup>c</sup>	45.5 <sup>b</sup>	15.7 <sup>b</sup>	100.0	365
F	106.5 <sup>***</sup>	170.4 <sup>***</sup>	118.0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18.3 <sup>a</sup>	78.1 <sup>b</sup>	3.6 <sup>b</sup>	100.0	6,348
중소도시	21.1 <sup>b</sup>	76.1 <sup>a</sup>	2.8 <sup>a</sup>	100.0	7,945
농어촌	20.7 <sup>b</sup>	75.8 <sup>a</sup>	3.5 <sup>b</sup>	100.0	3,241
F	18.4 <sup>***</sup>	9.1 <sup>***</sup>	10.8 <sup>***</sup>		
전체	20.0	76.8	3.2	100.0	17,534
정원 규모					
16~20인	15.9 <sup>a</sup>	81.9 <sup>c</sup>	2.2 <sup>a</sup>	100.0	8,182
46~54인	23.8 <sup>b</sup>	71.2 <sup>b</sup>	5.0 <sup>ab</sup>	100.0	1,028
73~81인	23.0 <sup>ab</sup>	71.8 <sup>b</sup>	5.2 <sup>ab</sup>	100.0	507
93~101인	22.6 <sup>ab</sup>	73.1 <sup>b</sup>	4.3 <sup>ab</sup>	100.0	591
120~128인	26.4 <sup>bc</sup>	68.6 <sup>ab</sup>	5.0 <sup>ab</sup>	100.0	143
138~146인	28.3 <sup>bc</sup>	67.0 <sup>ab</sup>	4.7 <sup>ab</sup>	100.0	132
165인 이상	31.5 <sup>c</sup>	62.9 <sup>a</sup>	5.6 <sup>b</sup>	100.0	351
F	43.5 <sup>***</sup>	60.9 <sup>***</sup>	23.2 <sup>***</sup>		
전체a	18.1	79.0	2.9	100.0	10,934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01

#### 4) 관리운영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5>는 일반어린이집 세출 중 관리운영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관리운영비를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분석하면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52.9%, 기타운영비가 3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 차이를 비교하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수용비 등의 비중이 각각 72.6%, 80.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건물임대료 등의 기타운영비 비중이 각각 43.9%, 37.2%로 높아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규모 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여비, 차량비, 연료비의 비중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16~20인 이하 기관인 경우 차량비와 연료비 비중이 낮았다.

〈표 IV-3-5〉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관리운영비)

단위: %,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3.3 <sup>c</sup>	72.6 <sup>d</sup>	9.8 <sup>d</sup>	6.5 <sup>cd</sup>	7.9 <sup>a</sup>	100.0	454	
사회복지법인	1.2 <sup>b</sup>	57.4 <sup>b</sup>	15.7 <sup>e</sup>	7.1 <sup>c</sup>	18.6 <sup>b</sup>	100.0	503	
법인단체등	1.6 <sup>b</sup>	59.0 <sup>bc</sup>	13.9 <sup>e</sup>	7.3 <sup>cd</sup>	18.2 <sup>b</sup>	100.0	312	
설립 유형	민간	0.3 <sup>a</sup>	45.7 <sup>a</sup>	7.3 <sup>cd</sup>	2.8 <sup>ab</sup>	43.9 <sup>e</sup>	100.0	6,633
가정	0.3 <sup>a</sup>	55.2 <sup>b</sup>	5.4 <sup>bc</sup>	1.9 <sup>a</sup>	37.2 <sup>d</sup>	100.0	9,752	
부모협동	1.0 <sup>b</sup>	63.4 <sup>c</sup>	2.3 <sup>a</sup>	8.5 <sup>d</sup>	24.8 <sup>c</sup>	100.0	58	
직장	2.8 <sup>c</sup>	80.4 <sup>e</sup>	3.4 <sup>ab</sup>	4.0 <sup>b</sup>	9.4 <sup>a</sup>	100.0	377	
F	311.9 <sup>***</sup>	454.0 <sup>***</sup>	177.6 <sup>***</sup>	223.9 <sup>***</sup>	549.4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0.5 <sup>a</sup>	53.3	5.0 <sup>a</sup>	2.1 <sup>a</sup>	39.2 <sup>b</sup>	100.0	6,527
중소도시	0.4 <sup>a</sup>	52.7	5.7 <sup>b</sup>	2.6 <sup>b</sup>	38.6 <sup>b</sup>	100.0	8,221	
농어촌	0.7 <sup>b</sup>	52.5	11.7 <sup>c</sup>	4.0 <sup>c</sup>	31.1 <sup>a</sup>	100.0	3,341	
F	36.7 <sup>***</sup>	2.7	681.1 <sup>***</sup>	170.7 <sup>***</sup>	186.6 <sup>***</sup>			
전체	0.5	52.9	6.6	2.7	37.4	100.0	18,089	
정원 규모	16~20인	0.3 <sup>a</sup>	54.6	5.6 <sup>a</sup>	1.9 <sup>a</sup>	37.6 <sup>b</sup>	100.0	8,399
46~54인	0.8 <sup>ab</sup>	52.6	7.0 <sup>ab</sup>	3.3 <sup>b</sup>	36.3 <sup>ab</sup>	100.0	1,066	
73~81인	1.0 <sup>b</sup>	54.2	9.5 <sup>c</sup>	4.7 <sup>c</sup>	30.6 <sup>a</sup>	100.0	514	
93~101인	0.8 <sup>ab</sup>	51.9	10.0 <sup>c</sup>	4.8 <sup>c</sup>	32.6 <sup>ab</sup>	100.0	609	
120~128인	0.4 <sup>a</sup>	49.7	8.3 <sup>bc</sup>	3.3 <sup>b</sup>	38.2 <sup>b</sup>	100.0	145	
138~146인	0.8 <sup>ab</sup>	51.0	7.7 <sup>abc</sup>	4.6 <sup>bc</sup>	35.9 <sup>ab</sup>	100.0	133	
165인 이상	0.5 <sup>a</sup>	49.8	8.0 <sup>abc</sup>	4.2 <sup>bc</sup>	37.5 <sup>b</sup>	100.0	362	
F	23.0 <sup>***</sup>	8.2 <sup>***</sup>	42.9 <sup>***</sup>	79.3 <sup>***</sup>	14.3 <sup>***</sup>			
전체a	0.4	54.0	6.3	2.4	36.9	100.0	11,228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 e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e).

\*\*\*  $p < .001$

### 5) 사업운영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6>은 일반어린이집 세출 중 사업운영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운영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세목별 분포를 분석하면 급간식비가 48.0%,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지출이 합하여 40.3%로 88% 이상이었고 교재교구비는 8.7%를 차지하였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가정,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급간식비 비중이 각각 56.4%, 55.9%, 74.4%로 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지출의 비중이 51.8%로 높았다.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급간식비와 특별활동비 지출 비중이 크고, 중소도시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 지출이, 농어촌은 교재교구비와 행사비의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급간식비와 행사비 비중이 커지고, 커질수록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지출의 비중이 커졌다.

<표 IV-3-6>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사업운영비)

단위: %,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46.8 <sup>c</sup>	16.5 <sup>c</sup>	5.6 <sup>c</sup>	15.4 <sup>b</sup>	15.8 <sup>bc</sup>	100.0	453	
사회복지법인	41.2 <sup>b</sup>	16.6 <sup>c</sup>	3.6 <sup>b</sup>	14.7 <sup>b</sup>	23.9 <sup>d</sup>	100.0	503	
법인단체등	41.8 <sup>b</sup>	15.9 <sup>c</sup>	3.9 <sup>b</sup>	17.1 <sup>b</sup>	21.3 <sup>d</sup>	100.0	312	
설립 유형	민간	35.7 <sup>a</sup>	10.8 <sup>b</sup>	1.8 <sup>a</sup>	23.0 <sup>c</sup>	28.8 <sup>e</sup>	100.0	6,627
가정	56.4 <sup>d</sup>	6.0 <sup>a</sup>	3.4 <sup>b</sup>	16.6 <sup>b</sup>	17.5 <sup>c</sup>	100.0	9,752	
부모협동	74.4 <sup>e</sup>	11.9 <sup>b</sup>	4.5 <sup>b</sup>	4.5 <sup>a</sup>	4.8 <sup>a</sup>	100.0	58	
직장	55.9 <sup>d</sup>	16.6 <sup>c</sup>	7.0 <sup>d</sup>	7.3 <sup>a</sup>	13.3 <sup>b</sup>	100.0	378	
F	1,385.8 <sup>***</sup>	814.7 <sup>***</sup>	314.1 <sup>***</sup>	238.9 <sup>***</sup>	702.6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49.4 <sup>c</sup>	8.6 <sup>b</sup>	3.1 <sup>b</sup>	15.4 <sup>a</sup>	23.6 <sup>c</sup>	100.0	6,523
중소도시	46.8 <sup>a</sup>	7.7 <sup>a</sup>	2.6 <sup>a</sup>	21.9 <sup>c</sup>	21.0 <sup>b</sup>	100.0	8,222	
농어촌	48.2 <sup>b</sup>	11.4 <sup>c</sup>	3.7 <sup>c</sup>	16.9 <sup>b</sup>	19.8 <sup>a</sup>	100.0	3,338	
F	40.8 <sup>***</sup>	335.3 <sup>***</sup>	107.7 <sup>***</sup>	488.6 <sup>***</sup>	117.6 <sup>***</sup>			
전체	48.0	8.7	3.0	18.6	21.7	100.0	18,083	
정원 규모	16~20인	54.8 <sup>d</sup>	5.9 <sup>a</sup>	3.3 <sup>c</sup>	17.5 <sup>a</sup>	18.5 <sup>a</sup>	100.0	8,400
46~54인	39.3 <sup>c</sup>	12.2 <sup>b</sup>	2.5 <sup>bc</sup>	20.5 <sup>ab</sup>	25.5 <sup>b</sup>	100.0	1,066	
73~81인	35.2 <sup>b</sup>	13.6 <sup>bc</sup>	2.7 <sup>bc</sup>	21.7 <sup>b</sup>	26.8 <sup>bc</sup>	100.0	514	
93~101인	32.9 <sup>ab</sup>	14.0 <sup>c</sup>	2.3 <sup>ab</sup>	21.8 <sup>b</sup>	29.0 <sup>c</sup>	100.0	609	
120~128인	31.3 <sup>ab</sup>	13.2 <sup>bc</sup>	2.2 <sup>ab</sup>	20.9 <sup>ab</sup>	32.4 <sup>d</sup>	100.0	145	
138~146인	32.1 <sup>ab</sup>	13.0 <sup>bc</sup>	2.1 <sup>ab</sup>	23.4 <sup>bc</sup>	29.4 <sup>cd</sup>	100.0	133	
165인 이상	29.9 <sup>a</sup>	13.1 <sup>bc</sup>	1.4 <sup>a</sup>	25.8 <sup>c</sup>	29.8 <sup>cd</sup>	100.0	362	

(표 IV-3-6 계속)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F	671.3 <sup>***</sup>	522.7 <sup>***</sup>	33.3 <sup>***</sup>	47.4 <sup>***</sup>	232.4 <sup>***</sup>		
전체a	49.8	7.7	3.0	18.6	20.8	100.0	11,229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 e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e).

\*\*\*  $p < .001$

## 6) 시설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7>은 일반어린이집 세출 중 시설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설비를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별로 분포를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가 49.0%, 시설비가 36.9%로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비의 비중이 크고, 가정 어린이집은 자산취득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비 비중이 낮고 자산취득비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정원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시설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3-7> 일반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시설비)

단위: %,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37.0 <sup>ab</sup>	43.8 <sup>ab</sup>	19.1 <sup>abc</sup>	100.0	451
사회복지법인	41.7 <sup>b</sup>	37.1 <sup>a</sup>	21.2 <sup>bcd</sup>	100.0	498
법인단체등	39.9 <sup>b</sup>	38.4 <sup>a</sup>	21.7 <sup>bcd</sup>	100.0	310
민간	41.9 <sup>b</sup>	43.2 <sup>ab</sup>	14.9 <sup>ab</sup>	100.0	6,444
가정	33.4 <sup>ab</sup>	54.4 <sup>b</sup>	12.1 <sup>a</sup>	100.0	9,312
부모협동	26.7 <sup>a</sup>	46.7 <sup>ab</sup>	26.6 <sup>cd</sup>	100.0	47
직장	26.2 <sup>a</sup>	45.9 <sup>ab</sup>	27.9 <sup>d</sup>	100.0	344
F	43.2 <sup>***</sup>	78.9 <sup>***</sup>	54.7 <sup>***</sup>		
대도시	32.0 <sup>a</sup>	54.5 <sup>b</sup>	13.5 <sup>a</sup>	100.0	6,284
중소도시	40.4 <sup>c</sup>	45.7 <sup>a</sup>	13.8 <sup>a</sup>	100.0	7,884
농어촌	37.6 <sup>b</sup>	46.3 <sup>a</sup>	16.1 <sup>b</sup>	100.0	3,238
F	97.1 <sup>***</sup>	113.5 <sup>***</sup>	15.1 <sup>***</sup>		
전체	36.9	49.0	14.1	100.0	17,406

(표 IV-3-7 계속)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16~20인	33.8 <sup>a</sup>	54.0 <sup>c</sup>	12.2 <sup>a</sup>	100.0	8,046	
46~54인	37.5 <sup>ab</sup>	46.9 <sup>bc</sup>	15.6 <sup>ab</sup>	100.0	1,024	
73~81인	43.3 <sup>ab</sup>	38.3 <sup>ab</sup>	18.4 <sup>b</sup>	100.0	512	
정원 규모	93~101인	42.4 <sup>ab</sup>	38.0 <sup>ab</sup>	19.7 <sup>b</sup>	100.0	603
120~128인	42.5 <sup>ab</sup>	38.0 <sup>ab</sup>	19.4 <sup>b</sup>	100.0	143	
138~146인	39.3 <sup>ab</sup>	40.7 <sup>ab</sup>	20.0 <sup>b</sup>	100.0	132	
165인 이상	47.1 <sup>b</sup>	34.5 <sup>a</sup>	18.4 <sup>b</sup>	100.0	357	
F	18.6 <sup>***</sup>	52.0 <sup>***</sup>	24.9 <sup>***</sup>			
전체a	35.7	50.7	13.6	100.0	10,817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01

##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결산 현황

### 1) 전체 세출 항별 규모 및 분포

<표 IV-3-8>은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분포를 나타낸다. 인건비는 설립유형에서는 국공립의 경우 501,078원, 민간은 422,718원, 가정은 645,914원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유아 1인당 월 21,02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이 10,086원, 민간은 9,207원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의 경우에도 가정어린이집이 108,73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 51,029원, 민간 76,345원이었다. 사업운영비의 경우에는 민간이 152,328원, 국공립이 137,381원, 가정이 118,400원 수준이었다. 일반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정원 규모가 커질수록 영유아 1인당 지출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설비의 경우에는 국공립이 24,162원이었으며, 민간과 가정은 각각 16,588원, 16,570원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501,078	10,086	51,029	137,381	24,162	1,931	1,207	726,874	684	
사회복지법인	535,934	11,136	78,908	140,282	35,887	6,000	2,243	810,389	133	
법인단체등	566,234	8,633	69,653	136,711	22,306	5,657	2,348	811,543	93	
시설 유형	민간	422,718	9,207	76,345	152,328	16,588	11,369	2,702	691,257	1,263
가정	645,914	21,021	108,739	118,400	16,570	17,930	4,697	933,270	1,946	
부모협동	695,200	6,269	131,935	171,869	15,390	59,936	19,341	1,099,941	3	
직장	673,806	6,144	78,785	172,251	17,508	15,335	17,034	980,864	76	
F	80.5**	147.2***	104.6***	42.0***	8.6***	23.2***	7.7**	56.2***		
대도시	534,007	12,993	79,395	135,049	20,102	8,791	3,446	793,784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566,519	16,158	90,810	135,763	16,717	16,691	846,599	1,560	
농어촌	554,982	16,107	96,766	127,832	18,774	13,382	3,454	831,297	874	
F	4.7**	26.5***	28.8***	4.6*	3.2**	23.3***	0.2	7.0*		
전체	550,456	14,818	87,253	133,812	18,567	12,682	3,632	821,220	4,198	
정원 규모	16~20인	631,123	19,367	106,314	118,895	17,339	17,336	4,362	914,735	1,605
46~54인	469,576	9,353	64,042	145,515	19,042	7,119	2,198	716,845	309	
73~81인	406,672	7,940	57,026	144,973	18,968	3,104	1,568	640,252	195	
93~101인	395,320	7,449	63,938	153,390	18,018	5,776	1,721	645,613	174	
120~128인	376,755	7,281	58,615	166,016	17,262	10,572	1,350	637,852	45	
138~146인	346,223	6,602	62,680	193,910	15,899	2,506	4,371	632,191	22	
165인 이상	392,481	4,240	71,757	167,930	19,200	5,363	1,583	662,554	71	
F	43.3***	86.4***	48.4***	33.6***	0.4	10.3***	4.5***	32.3***		
전체a	561,163	15,527	91,607	129,868	17,776	13,443	3,533	832,918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3-9>는 시간연장어린이집 전체 세출 분포를 항 수준에서 나타낸 것이다. 전체 세출 항목별 비중은 인건비가 6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업운영비가 17.3%, 관리운영비가 10.6% 순으로 분포는 일반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어린이집(61.9%)에 비하여 높았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인건비 비중이 60.7%로 적고, 사업운영비 비중이 22.7%로 높았다. 지역규모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크고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는 관리운영비의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운영비 비중이 커지고 16~20인 이하 기관의 경우 업

무추진비 비중이 커 일반어린이집과 경향이 유사하였다.

<표 IV-3-9>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항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계	기관수	
국공립	68.0 <sup>ab</sup>	1.3 <sup>ab</sup>	7.1 <sup>a</sup>	19.6 <sup>b</sup>	3.4	0.2 <sup>a</sup>	0.2	100.0	684	
사회복지법인	65.3 <sup>ab</sup>	1.4 <sup>ab</sup>	9.7 <sup>ab</sup>	18.3 <sup>ab</sup>	4.4	0.7 <sup>a</sup>	0.2	100.0	133	
법인단체등	69.4 <sup>b</sup>	1.1 <sup>ab</sup>	8.5 <sup>ab</sup>	17.6 <sup>ab</sup>	2.5	0.6 <sup>a</sup>	0.3	100.0	93	
시설 유형	민간	60.7 <sup>a</sup>	1.3 <sup>ab</sup>	11.2 <sup>ab</sup>	22.7 <sup>b</sup>	2.2	1.5 <sup>a</sup>	0.4	100.0	1,263
가정	68.9 <sup>ab</sup>	2.3 <sup>b</sup>	11.8 <sup>b</sup>	13.0 <sup>a</sup>	1.8	1.8 <sup>ab</sup>	0.5	100.0	1,946	
부모협동	62.3 <sup>ab</sup>	0.6 <sup>a</sup>	12.0 <sup>b</sup>	16.8 <sup>ab</sup>	1.6	5.2 <sup>b</sup>	1.5	100.0	3	
직장	68.0 <sup>ab</sup>	0.7 <sup>a</sup>	8.0 <sup>ab</sup>	18.7 <sup>ab</sup>	1.8	2.0 <sup>ab</sup>	0.8	100.0	76	
F	165.5 <sup>***</sup>	132.6 <sup>***</sup>	150.4 <sup>***</sup>	390.6 <sup>***</sup>	35.1 <sup>***</sup>	24.0 <sup>***</sup>	3.6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66.5	1.6 <sup>a</sup>	10.1 <sup>a</sup>	17.9 <sup>b</sup>	2.5 <sup>b</sup>	1.0 <sup>a</sup>	0.4	100.0	1,764
중소도시	66.1	1.9 <sup>b</sup>	10.7 <sup>b</sup>	17.1 <sup>a</sup>	2.0 <sup>a</sup>	1.8 <sup>b</sup>	0.4	100.0	1,560	
농어촌	65.7	1.9 <sup>b</sup>	11.6 <sup>c</sup>	16.5 <sup>a</sup>	2.4 <sup>b</sup>	1.5 <sup>b</sup>	0.4	100.0	874	
F	2.5	26.0 <sup>***</sup>	39.5 <sup>***</sup>	12.0 <sup>***</sup>	10.1 <sup>***</sup>	26.1 <sup>***</sup>	0.2			
정원 규모	전체	66.2	1.8	10.6	17.3	2.3	1.4	0.4	100.0	4,198
16~20인	68.7 <sup>d</sup>	2.2 <sup>b</sup>	11.8 <sup>b</sup>	13.3 <sup>a</sup>	1.8	1.8	0.5	100.0	1,605	
46~54인	65.2 <sup>cd</sup>	1.3 <sup>a</sup>	9.0 <sup>a</sup>	20.5 <sup>b</sup>	2.6	1.0	0.3	100.0	309	
73~81인	63.0 <sup>bc</sup>	1.3 <sup>a</sup>	9.0 <sup>a</sup>	23.0 <sup>bc</sup>	2.9	0.4	0.3	100.0	195	
93~101인	60.9 <sup>b</sup>	1.2 <sup>a</sup>	10.0 <sup>ab</sup>	24.1 <sup>cd</sup>	2.7	0.8	0.4	100.0	174	
120~128인	59.2 <sup>ab</sup>	1.2 <sup>a</sup>	9.0 <sup>a</sup>	26.4 <sup>d</sup>	2.8	1.2	0.2	100.0	45	
138~146인	55.8 <sup>a</sup>	1.2 <sup>a</sup>	9.5 <sup>ab</sup>	30.4 <sup>d</sup>	2.5	0.3	0.3	100.0	22	
165인 이상	58.9 <sup>ab</sup>	0.7 <sup>a</sup>	10.6 <sup>ab</sup>	26.0 <sup>d</sup>	2.8	0.8	0.2	100.0	71	
F	79.7 <sup>***</sup>	70.2 <sup>***</sup>	35.1 <sup>***</sup>	392.7 <sup>***</sup>	11.5 <sup>***</sup>	10.4 <sup>***</sup>	1.4			
전체a	66.6	1.8	11.0	16.5	2.1	1.4	0.4	100.0	2,421	

-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3)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5, \*\* p < .01, \*\*\* p < .001

## 2) 인건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10>은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중 인건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인건비 항의 세목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본급의 비중이 79.6%로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 부담비용이 7.9%로 일반어린이집과 유사했다. 설립유형별 비교도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과 달리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68.5%), 제수당의 비중은 높았다(11.1%). 지역규모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의 비중이 컸다.

〈표 IV-3-10〉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인건비)

단위: %,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77.1 <sup>b</sup>	0.7	4.6 <sup>a</sup>	6.9	7.5	3.3	100.0	684	
사회복지법인	78.3 <sup>b</sup>	1.7	2.8 <sup>a</sup>	6.7	8.4	2.1	100.0	133	
법인단체등	76.8 <sup>b</sup>	1.3	3.7 <sup>a</sup>	6.8	8.9	2.5	100.0	93	
시설 유형	민간	80.2 <sup>b</sup>	1.4	2.6 <sup>a</sup>	5.8	8.0	100.0	1,263	
	가정	80.7 <sup>b</sup>	0.9	2.7 <sup>a</sup>	5.5	8.0	100.0	1,944	
	부모협동	80.6 <sup>b</sup>	0.8	2.5 <sup>a</sup>	6.5	7.4	100.0	3	
	직장	68.5 <sup>a</sup>	2.1	11.1 <sup>b</sup>	7.5	7.2	100.0	76	
	F	80.2 <sup>***</sup>	12.9 <sup>***</sup>	105.8 <sup>***</sup>	30.2 <sup>***</sup>	5.7 <sup>***</sup>	19.6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80.2 <sup>b</sup>	0.9 <sup>a</sup>	3.2	5.8 <sup>a</sup>	7.5 <sup>a</sup>	2.4	100.0	1,763
	중소도시	79.4 <sup>a</sup>	1.1 <sup>b</sup>	3.2	5.8 <sup>a</sup>	8.1 <sup>b</sup>	2.4	100.0	1,559
	농어촌	78.9 <sup>a</sup>	1.2 <sup>b</sup>	2.9	6.3 <sup>b</sup>	8.4 <sup>b</sup>	2.4	100.0	874
	F	13.1 <sup>***</sup>	5.5 <sup>**</sup>	1.4	9.6 <sup>***</sup>	27.4 <sup>***</sup>	0.0		
전체	79.6	1.1	3.1	5.9	7.9	2.4	100.0	4,196	
정원 규모	16~20인	80.9 <sup>c</sup>	0.9 <sup>ab</sup>	2.6 <sup>a</sup>	5.5	7.9	2.2 <sup>a</sup>	100.0	1603
	46~54인	79.4 <sup>bc</sup>	1.0 <sup>ab</sup>	3.2 <sup>ab</sup>	6.3	7.8	2.3 <sup>a</sup>	100.0	309
	73~81인	78.0 <sup>bc</sup>	1.1 <sup>ab</sup>	3.9 <sup>ab</sup>	6.5	7.8	2.7 <sup>ab</sup>	100.0	195
	93~101인	78.5 <sup>bc</sup>	1.3 <sup>ab</sup>	3.4 <sup>ab</sup>	6.2	8.1	2.5 <sup>a</sup>	100.0	174
	120~128인	76.9 <sup>ab</sup>	1.5 <sup>ab</sup>	4.7 <sup>bc</sup>	6.5	7.9	2.5 <sup>a</sup>	100.0	45
	138~146인	77.8 <sup>abc</sup>	0.6 <sup>a</sup>	2.7 <sup>ab</sup>	6.5	8.8	3.5 <sup>b</sup>	100.0	22
	165인 이상	74.6 <sup>a</sup>	2.0 <sup>b</sup>	6.7 <sup>c</sup>	6.0	8.0	2.6 <sup>ab</sup>	100.0	71
	F	28.4 <sup>***</sup>	4.3 <sup>***</sup>	20.9 <sup>***</sup>	10.9 <sup>***</sup>	0.8	6.1 <sup>***</sup>		
전체a	80.0	1.0	3.0	5.8	7.9	2.3	100.0	2,419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

\*\*  $p < .01$ , \*\*\*  $p < .001$

### 3) 업무추진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11〉은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중 업무추진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세목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직책급이 76.3%를 차지하고 기관운영비가 20.2%, 회의비는 3.4%를 차지하



여 일반어린이집과 분포가 유사했다. 이는 설립유형에 따라 비교하면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기관운영비가 65.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이 크고 직책 급은 31.6%로 작았다.

<표 IV-3-11>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업무추진비)

단위: %,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19.3 <sup>a</sup>	75.0 <sup>b</sup>	5.6 <sup>ab</sup>	100.0	684
사회복지법인	18.3 <sup>a</sup>	76.4 <sup>b</sup>	5.3 <sup>ab</sup>	100.0	133
법인단체등	27.5 <sup>a</sup>	65.7 <sup>b</sup>	6.7 <sup>ab</sup>	100.0	92
시설 유형					
민간	24.0 <sup>a</sup>	72.7 <sup>b</sup>	3.3 <sup>a</sup>	100.0	1,227
가정	17.5 <sup>a</sup>	80.5 <sup>b</sup>	2.0 <sup>a</sup>	100.0	1,912
부모협동	65.9 <sup>b</sup>	31.6 <sup>a</sup>	2.5 <sup>a</sup>	100.0	3
직장	30.5 <sup>a</sup>	54.5 <sup>ab</sup>	15.0 <sup>b</sup>	100.0	74
F	13.2 <sup>***</sup>	22.9 <sup>***</sup>	42.1 <sup>***</sup>		
지역구					
대도시	76.1	3.6	20.3	100.0	1,732
중소도시	75.8	3.2	21.0	100.0	1,534
모 농어촌	77.7	3.6	18.7	100.0	859
F	2.2	1.3	0.9		
전체	20.2	76.3	3.4	100.0	4,125
정원 규모					
16~20인	18.2	79.5	2.3 <sup>a</sup>	100.0	1,581
46~54인	21.7	74.3	4.0 <sup>a</sup>	100.0	303
73~81인	21.4	73.5	5.1 <sup>ab</sup>	100.0	194
93~101인	22.9	72.6	4.6 <sup>a</sup>	100.0	174
120~128인	20.5	74.8	4.8 <sup>ab</sup>	100.0	45
138~146인	25.4	70.1	4.5 <sup>a</sup>	100.0	22
165인 이상	25.2	65.3	9.5 <sup>b</sup>	100.0	70
F	2.6 <sup>*</sup>	6.6 <sup>***</sup>	13.8 <sup>***</sup>		
전체a	19.6	77.2	3.2	100.0	2,389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

\*  $p < .05$ , \*\*\*  $p < .001$

#### 4) 관리운영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12>는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중 관리운영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관리운영비를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분석하면 일반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이 59.1%, 기타운영비가 2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나 수용비 등의 비중은 약간 높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수용비 등의 비중이 각각 84.5%, 81.3%로 높고, 민간,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건물임대료 등의 기타운영비의 비중이 각각 40.7%, 34.1%, 31.3%로 높았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차량비의 비중이 21.4%로 높아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역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비와 연료비 비중이 각각 12.9%, 4.1%로 높았다.

〈표 IV-3-12〉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관리운영비)

단위: %,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3.0 <sup>b</sup>	84.5 <sup>c</sup>	4.5 <sup>ab</sup>	4.8 <sup>ab</sup>	3.3 <sup>a</sup>	100.0	684
사회복지법인	1.2 <sup>ab</sup>	58.6 <sup>ab</sup>	15.0 <sup>bc</sup>	7.6 <sup>b</sup>	17.6 <sup>abc</sup>	100.0	133
법인단체등	1.9 <sup>ab</sup>	67.5 <sup>bc</sup>	11.4 <sup>abc</sup>	6.6 <sup>ab</sup>	12.5 <sup>ab</sup>	100.0	93
시설 유형	민간	0.4 <sup>ab</sup>	47.5 <sup>a</sup>	8.6 <sup>ab</sup>	2.8 <sup>ab</sup>	40.7 <sup>d</sup>	1,263
	가정	0.4 <sup>ab</sup>	56.6 <sup>ab</sup>	6.9 <sup>ab</sup>	1.9 <sup>ab</sup>	34.1 <sup>cd</sup>	1,946
	부모협동	0.0 <sup>a</sup>	45.6 <sup>a</sup>	21.4 <sup>c</sup>	1.7 <sup>a</sup>	31.3 <sup>bcd</sup>	3
	직장	1.9 <sup>ab</sup>	81.3 <sup>c</sup>	2.8 <sup>a</sup>	5.0 <sup>ab</sup>	9.0 <sup>a</sup>	75
	F	103.9 <sup>***</sup>	381.5 <sup>***</sup>	36.8 <sup>***</sup>	56.7 <sup>***</sup>	397.0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0.9	61.7 <sup>c</sup>	5.0 <sup>a</sup>	2.1 <sup>a</sup>	30.3 <sup>b</sup>	1,764
	중소도시	0.9	58.1 <sup>b</sup>	6.9 <sup>b</sup>	3.4 <sup>b</sup>	30.8 <sup>b</sup>	1,559
	농어촌	1.0	55.8 <sup>a</sup>	12.9 <sup>c</sup>	4.1 <sup>c</sup>	26.2 <sup>a</sup>	874
	F	0.6	26.2 <sup>***</sup>	221.1 <sup>***</sup>	50.5 <sup>***</sup>	13.4 <sup>***</sup>	
전체	0.9	59.1	7.3	3.0	29.6	100.0	4,197
정원 규모	16~20인	0.4 <sup>a</sup>	55.8 <sup>a</sup>	7.1	1.9 <sup>a</sup>	34.8 <sup>b</sup>	1,605
	46~54인	1.0 <sup>ab</sup>	65.7 <sup>ab</sup>	7.0	3.7 <sup>ab</sup>	22.6 <sup>ab</sup>	309
	73~81인	1.6 <sup>b</sup>	67.7 <sup>b</sup>	7.0	4.5 <sup>ab</sup>	19.2 <sup>a</sup>	195
	93~101인	1.2 <sup>ab</sup>	57.3 <sup>ab</sup>	8.5	5.1 <sup>b</sup>	27.9 <sup>ab</sup>	174
	120~128인	1.4 <sup>ab</sup>	63.5 <sup>ab</sup>	5.0	4.5 <sup>ab</sup>	25.5 <sup>ab</sup>	45
	138~146인	0.7 <sup>ab</sup>	55.7 <sup>a</sup>	7.0	4.2 <sup>ab</sup>	32.3 <sup>b</sup>	22
	165인 이상	1.0 <sup>ab</sup>	59.7 <sup>ab</sup>	7.2	4.3 <sup>ab</sup>	27.7 <sup>ab</sup>	71
	F	19.6 <sup>***</sup>	19.7 <sup>***</sup>	1.1	24.0 <sup>***</sup>	29.0 <sup>***</sup>	
전체a	0.7	58.4	7.1	2.7	31.1	100.0	2,421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01$

### 5) 사업운영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13>은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중 사업운영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운영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세목별 분포를 분석하면 급간식비가 51.2%,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지출이 합하여 34.8%로 86%이었고 교재교구비는 10.4%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어린이집보다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중이 높았다. 설립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급간식비 비중이 61.1%로 높고 교재교구비 비중이 6.8%로 낮고, 대도시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비중이 컸다. 정원규모에 따라서는 16~20인 이하 기관의 경우 급간식비 비중은 크고 교재교구비와 특별활동비 지출 비중은 작았다.

<표 IV-3-13>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 필요경비 등 포함(사업운영비)

단위: %,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46.5 <sup>ab</sup>	15.3 <sup>b</sup>	4.7 <sup>ab</sup>	15.4	18.0	100.0	684
사회복지법인	42.9 <sup>a</sup>	15.5 <sup>b</sup>	4.1 <sup>ab</sup>	13.7	23.8	100.0	133
법인단체등	45.6 <sup>ab</sup>	14.1 <sup>ab</sup>	4.7 <sup>ab</sup>	15.3	20.2	100.0	93
시설 유형							
민간	39.7 <sup>a</sup>	12.3 <sup>ab</sup>	2.3 <sup>a</sup>	19.2	26.5	100.0	1,263
가정	61.1 <sup>b</sup>	6.8 <sup>a</sup>	3.8 <sup>ab</sup>	14.3	14.1	100.0	1,946
부모협동	52.5 <sup>ab</sup>	8.4 <sup>ab</sup>	1.3 <sup>a</sup>	19.6	18.1	100.0	3
직장	53.6 <sup>ab</sup>	14.3 <sup>ab</sup>	6.8 <sup>b</sup>	10.2	15.1	100.0	75
F	315.7 <sup>***</sup>	199.4 <sup>***</sup>	48.5 <sup>***</sup>	27.7 <sup>**</sup>	167.5 <sup>***</sup>		4,197
지역 규모							
대도시	50.5 <sup>a</sup>	10.9 <sup>b</sup>	3.5 <sup>a</sup>	14.0 <sup>a</sup>	21.1 <sup>b</sup>	100.0	1,764
중소도시	51.2 <sup>ab</sup>	9.1 <sup>a</sup>	3.3 <sup>a</sup>	18.9 <sup>b</sup>	17.6 <sup>a</sup>	100.0	1,559
농어촌	52.7 <sup>b</sup>	11.8 <sup>c</sup>	4.4 <sup>b</sup>	14.4 <sup>a</sup>	16.8 <sup>a</sup>	100.0	874
F	4.5 <sup>*</sup>	43.4 <sup>***</sup>	26.5 <sup>***</sup>	85.0 <sup>***</sup>	50.6 <sup>***</sup>		
전체	51.2	10.4	3.6	15.9	18.9	100.0	4,198
정원 규모							
16~20인	59.2 <sup>d</sup>	6.8 <sup>a</sup>	3.6 <sup>ab</sup>	15.3 <sup>a</sup>	15.1 <sup>a</sup>	100.0	1,605
46~54인	43.3 <sup>c</sup>	14.7 <sup>b</sup>	3.3 <sup>ab</sup>	15.3 <sup>a</sup>	23.3 <sup>b</sup>	100.0	309
73~81인	40.3 <sup>bc</sup>	15.0 <sup>b</sup>	4.2 <sup>b</sup>	16.7 <sup>ab</sup>	23.8 <sup>b</sup>	100.0	195
93~101인	37.7 <sup>abc</sup>	13.9 <sup>b</sup>	2.9 <sup>ab</sup>	20.3 <sup>abc</sup>	25.2 <sup>b</sup>	100.0	174
120~128인	33.9 <sup>ab</sup>	12.8 <sup>b</sup>	2.8 <sup>ab</sup>	22.9 <sup>bc</sup>	27.5 <sup>b</sup>	100.0	45
138~146인	32.1 <sup>a</sup>	12.9 <sup>b</sup>	1.6 <sup>a</sup>	24.8 <sup>c</sup>	28.5 <sup>b</sup>	100.0	22
165인 이상	40.2 <sup>bc</sup>	13.4 <sup>b</sup>	3.1 <sup>ab</sup>	19.0 <sup>ab</sup>	24.2 <sup>b</sup>	100.0	71
F	179.4 <sup>***</sup>	143.9 <sup>***</sup>	3.7 <sup>**</sup>	10.6 <sup>***</sup>	64.6 <sup>***</sup>		
전체a	52.9	9.3	3.5	16.1	18.2	100.0	2,421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 c, d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c<d).

\* p < .05, \*\* p < .01, \*\*\* p < .001

## 6) 시설비 세출 목별 분포

<표 IV-3-14>는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중 시설비 세부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시설비를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별로 분포를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가 47.4%, 시설비가 37.3%, 시설장비 유지비가 15.3%로 분포하였고 일반어린이집보다 시설장비 유지비의 비중이 1.2% 높았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비의 비중이 40%이상으로 높았고, 가정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자산취득비의 비중이 각각 52.3%, 61.7%로 높았다.

<표 IV-3-14> 시간연장어린이집 세출 목별 분포(시설비)

단위: %,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40.4	42.2	17.4	100.0	671
사회복지법인	42.7	37.0	20.3	100.0	132
법인단체등	31.6	43.1	25.2	100.0	93
시설 유형					
민간	39.7	44.5	15.9	100.0	1,236
가정	34.7	52.3	12.9	100.0	1,864
부모협동	5.5	61.7	32.8	100.0	3
직장	32.0	45.1	22.9	100.0	73
F	5.5***	13.4***	10.8***		
대도시	36.2 <sup>a</sup>	49.3 <sup>b</sup>	14.5	100.0	1,714
지역					
중소도시	40.1 <sup>b</sup>	44.2 <sup>a</sup>	15.7	100.0	1,511
규모					
농어촌	34.5 <sup>a</sup>	49.4 <sup>b</sup>	16.1	100.0	847
F	9.1***	11.2***	1.9		
전체	37.3	47.4	15.3	100.0	4,072
정원					
16~20인	34.9	52.4	12.6 <sup>a</sup>	100.0	1,547
46~54인	41.4	42.8	15.9 <sup>ab</sup>	100.0	303
73~81인	41.8	40.1	18.0 <sup>ab</sup>	100.0	191
93~101인	37.6	40.6	21.7 <sup>ab</sup>	100.0	172
규모					
120~128인	48.2	32.7	19.2 <sup>ab</sup>	100.0	45
138~146인	46.2	40.5	13.2 <sup>a</sup>	100.0	22
165인 이상	39.3	33.3	27.5 <sup>b</sup>	100.0	71
F	3.5**	12.4***	10.5***		
전체a	37.0	48.2	14.7	100.0	2,351

주: 1) 전체a는 정원이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사후검정 결과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a<b).

\*\*  $p < .01$ , \*\*\*  $p < .001$

## 4. 소결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12시간 종일보육만 제공하고 있는 일반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항목간 분포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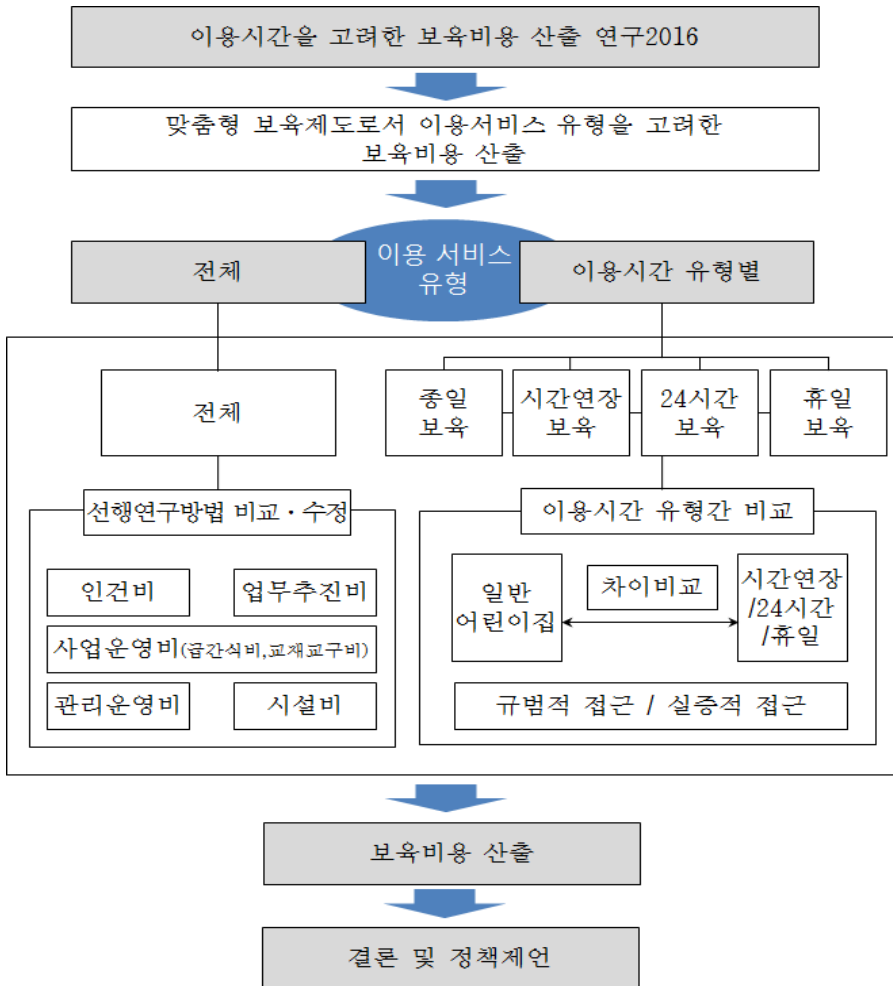
먼저 세입 목별 분포를 필요경비수입, 보육료수입, 경상보조금수입, 자본보조금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인건비보조금,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등의 경상보조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경상보조금수입 중 특히 인건비보조금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세출 항별 분포를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어린이집에 비하여 높았다. 세출 세목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등이 포함되는 인건비 항의 세목별 분포와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가 포함되는 업무추진비의 세목별 분포는 일반어린이집과 유사했다. 관리운영비를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목의 분포를 분석하면 일반어린이집보다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비중이 약간 컸다. 사업운영비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지출 세목별 분포에서는 일반어린이집보다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비중이 높았다. 시설비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세목별 분포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의 비중이 높았다.

정리하면 시간연장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보다 세입 항목에서는 경상보조금수입, 특히 인건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았고, 세출 항목에서는 항수준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크고, 목수준에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의 세목 분포는 유사하고, 관리운영비 중 수용비 및 공공요금, 사업운영비 중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 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중이 높았다.

# V. 이용시간을 고려한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 1. 보육비용 산출 모형 및 기본 원칙



[그림 V-1-1] 보육비용 산출 모형

[그림 V-1-1]은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을 위한 기본 모형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보육제도로써 이용서비스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며, 이용서비스 유형은 종일반(12시간)과 시간연장형(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먼저 종일반 보육비용 산출은 기존 1~3차년도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선행연구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일부는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보육비용 산출항목은 크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관리운영비, 시설비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연장형 보육비용 산출은 선행연구가 없어, 공시자료와 운영 및 이용실태 연구 등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큰 전제는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실제 세출결산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시간연장형 운영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비용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간 차이를 도출하였다.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종일반과 시간연장형 간의 보육비용 차이 등을 기초로 이용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일/월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비용산출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에 대해서는 규범적 접근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 하였으며, 관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실제 세출비용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이용시간 유형별로 나누어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은 일반어린이집(종일반), 시간연장형(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으로 구분하며,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비용은 제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반편성 기준에 따른 영유아수 규모를 고려하였다. 보육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규모이다. 이는 영유아 규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와 반편성 기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다양한 규모를 모두 반영하여 규모별 비용을 일일이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 2012: 39).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과 선행연구 분류방식 등에 기초하여 어린이집 규모별 반 편성 및 교직원수를 도출한 후 인건비 등 다른 비용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

원의 배치기준은 <표 V-1-1>과 같다.

〈표 V-1-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구분	배치기준
원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1명</li> <li>※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li> </ul>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세 미만 영유아 3명당 1명</li> <li>•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li> <li>•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영유아 7명당 1명</li> <li>•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영유아 15명당 1명</li> <li>•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li> <li>※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li> <li>• 취학아동 20명당 1명</li> <li>• 장애아 3명당 1명</li> <li>※ 장애아 9명당 보육교사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li> </ul>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li> <li>• 간호조무사도 가능</li> <li>•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li> </ul>
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li> <li>•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li> <li>•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겸직 가능</li> </ul>
조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li> <li>•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li> </ul>
그밖의 보육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 가능</li> </ul>

자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제10조 별표2(2015.9.18.개정) 재구성

보건복지부(2016a: 256)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소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V-1-2〉 반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주: 반 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56.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기준과 기존 선행연구를 준용하여 어린이집 규모를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의 7개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또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 배치기준, 놀이터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였다. 여기에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특례인정, 혼합반 구성 등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기존의 분류방식을 준용하였다.

특히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영양사의 경우에는 자격을 소유한 원장의 겸직이 가능하고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당 1/5명을 배치하였다. 간호사 또한 자격을 소지한 원장이 겸직이 가능하고 실제 어린이집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율이 낮다(전체 시설 수 대비 간호사 수 2.9%)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15a), 영양사의 경우처럼 어린이집당 1/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V-1-3〉 어린이집 규모별 반편성 및 교직원수

구분	단위: 명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겸직가능	1	1	1	1	1	1
보육교사	4	5	7	9	11	13	15
0세(3명)	1	1	1	1	1	2	2
1세(5명)	2	1	1	2	2	2	2
2세(7명)	1	1	2	2	3	3	4
3세(15명)	-	1	1	2	2	3	3
4세이상(20명)	-	1	2	2	3	3	4
소계	4	5	7	9	11	13	15
간호사	-	-	-	-	1/5	1/5	1/5
영양사	-	-	-	-	1/5	1/5	1/5

(표 V-1-3 계속)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조리원	-	1	1	2	2	2	3
누리보조교사	-	-	1/2	1/2	1	1	1
계	4	7	9.5	12.5	15.4	17.4	20.4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준 및 요건들을 모든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등 교직원은 시설규모 등에 따른 배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보육이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설비·장비와 교재교구는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통계자료나 연구결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연속과제로서 1-3차년도 연구들은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 산출시 체계적 절차를 통해 비용을 목록화하고 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이나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교재·교구, 급간식 품목과 소요량 등은 최근 몇 년간 제도나 과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내구연한<sup>17)</sup>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조정하였다.

다섯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산출시 설립유형이나 시설규모에 따른 각 항목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여섯째,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시 시도별 특수시책사업 등 차별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물가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인건비 보조금 지원 등은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항목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항목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포함), 시설비를 산출한다.

17) 선행연구들은 건축비의 경우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일반적 기준내용연수인 40년으로 설정하였음.

$$\text{보육비용} = \text{인건비} + \text{업무추진비} + \text{관리운영비} + \text{사업운영비} + \text{시설비}$$

또한 이용시간 유형에 따라 산출한 보육비용의 각 항목별 산출여부는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 일반어린이집과 동일하나 인건비의 경우 시간연장어린이집과 24시간 어린이집은 추가보육에 따른 보육교직원 소요액을, 휴일어린이집은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액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시설비에서는 놀이터 설치비는 제외하여 산출하였다.

〈표 V-1-4〉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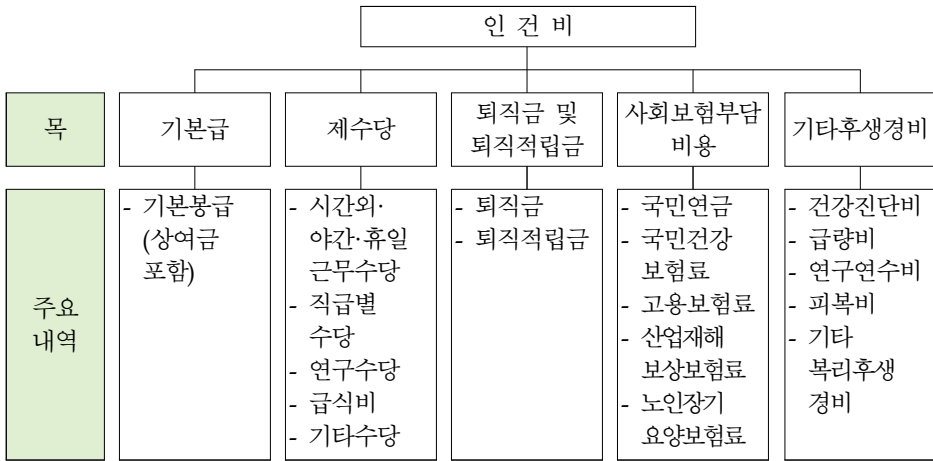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일반 어린이집	시간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인건비	월지급액	○	○	○	○	-
	법정부담금	○	○	○	○	-
	시간외수당	○	○	○	○	○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	○	○	○	○	○
	직책급	○	○	○	○	○
	회의비	○	○	○	○	○
관리 운영비	여비	○	○	○	○	○
	수용비·수수료 등	○	○	○	○	○
	차량비	-	-	-	-	-
	연료비	○	○	○	○	○
	기타운영비	-	-	-	-	-
사업 운영비	급간식비	○	○	○	○	○
	교재교구비	○	○	○	○	○
	행사비	○	○	○	○	○
	기타필요경비지출	-	-	-	-	-
	특별활동비지출	-	-	-	-	-
시설비	시설비	○	○	△*	△*	△*
	자산취득비	○	○	○	○	○
	시설장비유지비	○	○	○	○	○
기타	-	-	-	-	-	

주: \* 시설비 중 놀이터 설치비는 제외함.

## 2. 인건비

### 가. 산출 방법

어린이집 세출회계에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구성은 다음의 [그림 V-2-1]과 같다. 크게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로 구성된다.



[그림 V-2-1] 어린이집 세출의 인건비 구성항목

주: 일용잡급은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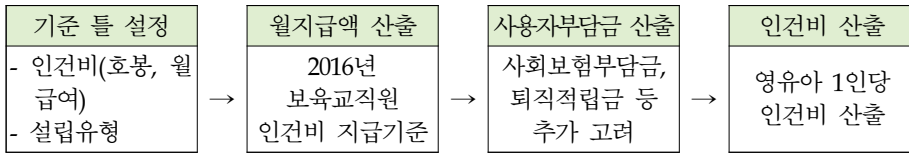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p.19. 재구성.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종별, 호봉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세출회계와 관련 자료는 위의 내용들을 공시하고 있으나,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등 직종별로 분류할 수 없으며 호봉관련 자료 또한 제공하지 않아 자료분석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월지급액의 행태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보건복지부, 2016a)에 의하면 월지급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연봉액(또는 보수총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6a: 86). 이에 의하면 월지급액은 인건비의 기본급,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제외), 기타후생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건비 산출시 자료분석에 제약이 따르는 공시자료 대신 ‘2015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에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의 호봉과 월급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V-2-2] 인건비 산출 절차

[그림 V-2-2]는 인건비 산출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산출을 위한 산출기준의 틀과 유형을 분류한다. 산출기준은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호봉과 월급여로 산정하였고, 보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전체 평균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평균호봉과 월급여 자료를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적용하여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해당 연봉에 대한 월지급액을 산출한다. 이후 법정부담금으로 사용자부담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부담비용과 퇴직적립금 등을 추가하여, 영유아 1인당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일반어린이집이나 시간연장어린이집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종일반에 소요되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이 동일하다. 다만 추가적으로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별도 교사를 채용하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보육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건비는 이용시간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출하되, 다만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분을 추가한다.

## 나. 산출 기준

### 1) 월지급액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 자료에 나타난 보육교직원별 호봉 및 월급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의 <표 V-2-1>과 같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평균급여에 대한 기준은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의 호봉과 월급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월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당을 포함한 것(월급여b)과 제외한 것(월급여c)으로 분류하여 3가지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준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하여 총 6개로 분류하였다.

먼저 원장의 경우, 전체평균은 15호봉(호봉a), 13호봉(호봉b), 7호봉(호봉c), 국공립평균은 16호봉(호봉a), 27호봉(호봉b) 15호봉(호봉c)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은 5호봉(호봉a), 7호봉(호봉b), 1호봉(호봉c), 국공립평균은 7호봉(호봉a), 11호봉(호봉b) 6호봉(호봉c)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원장호봉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호봉 대비 월급여가 높아, 여타 유형의 원장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각종 수당들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전체평균과 국공립간 월급여의 차이가 평균 호봉간 차이보다 더 커, 실제 국공립에 대한 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건비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월급여 기준의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하는 것보다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후 호봉a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어린이집 조사'(이미화·서문희·이정원 외, 2012)에서 원장은 평균 11.3호봉, 보육교사는 평균 5.0호봉이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장은 호봉이 연단위로 상승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거의 제자리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의 호봉이 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2015년의 평균 호봉이 2016년에도 동일하다고 보고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였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에는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 호봉은 없으며, 월급여에 대한 자료만 있다. 이에 월급여를 기준으로 모두 보육교사 1호봉으로 호봉을 책정하였다. 누리과정보조교사의 경우,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월 784,000원(1일 4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

도록 되어 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누리과정보조교사 등<sup>18)</sup>의 근무시간이 평균 5.28시간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6: 189).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조교사의 특성상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784,00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나 새벽근무 보육교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두 보육교사 1호봉을 책정하였다.

〈표 V-2-1〉 보육교직원 호봉 및 월급여(6개 유형)

단위: 호봉, 만원

기준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누리보조교사
호봉	전체평균	14.88	4.82	-	-	-	-
	국공립평균	15.99	6.37	-	-	-	-
월급여b	전체평균	266.33	184.30	153.87	85.05	105.71	93.55
	국공립평균	349.62	210.37	157.23	78.84	144.16	99.78
월급여c	전체평균	220.73	147.78	153.87	85.05	105.71	93.55
	국공립평균	278.09	173.58	157.23	78.84	144.16	99.78

↓ 「201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호봉으로 환산

호봉 → 호봉a	전체평균	15	5	1	1	1	1
	국공립평균	16	7	1	1	1	1
월급여b → 호봉b	전체평균	13	7	1	1	1	1
	국공립평균	27	11	1	1	1	1
월급여c → 호봉c	전체평균	7	1	1	1	1	1
	국공립평균	15	6	1	1	1	1

주: 1)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누리보조교사는 보육교사 1호봉으로 간주하였음.

2) 월급여b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기본급(월평균 급여)과 수당(지자체 처우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누리수당,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 가계보조수당, 교통급식비 등)을 포함하며, 월급여c는 월급여b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 183-184, 187, 190, 193.

18)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비담임 보조교사를 조사하였으며, 보조교사 담당업무로는 누리과정 일반, 누리과정 장애아 담당, 영아반 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이미화 외, 2016: 189-190).

## 2) 사용자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도출된 월지급액에 법정부담금 기준을 추가하였다.

〈표 V-2-2〉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내역

구분	사용자부담금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포함)	$= (\text{월보수액} \times 6.12\% \times 1/2) + (\text{월보수액} \times 6.12\% \times 6.55\% \times 1/2)$ * 건강보험료: $\text{월보수액} \times 6.12\% \times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text{건강보험료} \times 6.55\% \times 1/2$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	$= \text{월보수액} \times 9\% \times 1/2$	국민연금법
산재보험	$= \text{월보수액} \times 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 \text{월보수액} \times 0.9\%$	고용보험법

자료: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pp.84-85.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교사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sup>19)</sup>」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급여의 1/12를 퇴직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산출하였다.

$$\text{월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text{월급여} \times 1/12$$

19) [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 3)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산출

이용시간 유형별 인건비는 앞서서도 기술하였듯이 종일반 교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으로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 현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며 보육교사 1호봉을 적용한다.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산출하였다.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24시간 보육교사의 호봉을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마찬가지로 1호봉으로 책정하며,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1:5로 하였다. 휴일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시간연장 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종일보육의 50%를 반영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사직무라 볼 수 있는 유치원 교사와 비교하였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2]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3항 관련)와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6.6.25.]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 일부개정][별표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1 관련)(개정 2016.1.8.)를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 교사 18호봉<sup>20)</sup>을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호봉으로 적용하였다. 김은설, 이진화, 김혜진, 배지아(2014: 88)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경력은 5-10년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1-3년, 3-5년, 10년 이상, 1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는 14.0%에 그쳤다. 교사의 호봉은 10호봉 미만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10-20호봉이 11.6%로 그 뒤를 이어, 대부분의 교사가 20호봉 미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어 유치원 교사 18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적용하는 논리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0)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육교사 16호봉(2,495,680원)과 17호봉(2,549,400원)의 중간수준으로 호봉과 금액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형태임.

〈표 V-2-3〉 어린이집 교사 경력

단위: %(명)

구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4.0	25.6	20.1	27.5	12.7	100.0(4,122)	
지역규모							
대도시	13.4	27.6	20.4	27.6	11.0	100.0(1,630)	18.9(8)*
중소도시	15.2	23.6	20.5	27.5	13.3	100.0(1,231)	
읍면	13.8	25.1	19.4	27.5	14.2	100.0(1,261)	
설립유형							
국공립	11.1	20.4	18.0	33.3	17.2	100.0( 854)	311.8(20)***
사회복지법인	9.9	19.5	17.7	34.8	18.1	100.0( 758)	
법인·단체	11.9	16.4	21.4	34.4	15.8	100.0( 360)	
민간	15.6	31.4	22.5	20.6	9.9	100.0(1,027)	
직장	21.3	29.5	20.0	25.3	3.9	100.0( 596)	
가정	15.0	33.6	21.8	19.0	10.6	100.0( 527)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자료: 김은설 외(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88.

\*  $p < .05$ , \*\*\*  $p < .001$

〈표 V-2-4〉 어린이집 교사 호봉

단위: %(명)

구분	10 미만	10-20	20-30	30 이상	계(수)
전체	87.8	11.6	0.5	0.1	100.0(3,903)
지역규모					
대도시	88.7	10.9	0.5	0.0	100.0(1473)
중소도시	87.4	11.8	0.5	0.3	100.0(1,203)
읍면	87.3	12.3	0.4	-	100.0(1,227)
설립유형					
국공립	82.3	16.8	0.8	-	100.0( 849)
사회복지법인	79.9	19.5	0.5	-	100.0( 753)
법인·단체	81.5	17.7	0.8	-	100.0( 368)
민간	94.7	4.6	0.2	0.4	100.0( 914)
직장	92.9	7.1	-	-	100.0( 588)
가정	96.3	3.2	0.5	-	100.0( 431)

주: 원장 대상 조사결과임.

빈도분포가 교차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 외(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88.

이에 근거한 시간당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시간외 근무수당(1시간)} &= 2,528,800\text{원}(18\text{호봉 봉급액}) \times 0.55 \times 1/209 \times 1.5 \\ &= 9,982\text{원} \end{aligned}$$

김은설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도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은 전체 평균이 9시간 34분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8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면(09:00-17:00) 일평균 1시간 34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09:00-18:00) 일평균 34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다. 월평균 주간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전자는 31시간, 후자는 11시간의 초과근무로 각각 309,442원, 109,802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09:00~18:00 이후의 근로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간주한다.21)

〈표 V-2-5〉 보육교직원 1인당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결과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비고
09:00~17:00	309,442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09:00~18:00	109,802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

월급여와 함께 원장이나 교사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함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가 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는 비용으로 2016년 1월부터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때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이면서 어린이집 대표(또는 원장)인 경우와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교사겸직원장)에는 월 7만5천원을 지급하며(보건복지부, 2016a: 369-370), 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을 담당하는 누리과정 교사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보건복지부, 2016a: 255). 또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원되는 비용으로 월 11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1)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6: 186)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6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8시간40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조교사 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을 범주형으로 조사하여 범위의 중간값을 사용하여 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

2016a: 367).

특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개인 통장계좌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지출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되는 보육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외에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a: 255-256)에 의하면 현재 전체 3~5세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 비용(운영지원비)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운영지원비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에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인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를 권장하고, 월 보수는 78만 4천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관련 어린이집 부담금은 누리과정운영비에서 지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a: 256).

<표 V-2-6>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기타 지원비용

구분	금액	비고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당 9,982원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20만원	어린이집 회계에 미포함 (교사 통장계좌로 지급)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월 7만5천원	어린이집 회계에 미포함 (원장 통장계좌로 지급)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비	월 30만원	어린이집 회계에 미포함 (교사 통장계좌로 지급)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월 78만 4천원	어린이집 회계에 포함 (어린이집 부담금 별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	어린이집 회계에 미포함 (교사 통장계좌로 지급)

## 다. 산출 결과

<표 V-2-1>에서 제시한 보육교직원 평균호봉을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

비 지급기준」에 적용하고,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연장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추가하여 보육교직원의 월지급액과 사용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산출하였다.

<표 V-2-7>은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의 월지급액을 나타낸 것이다. 월지급액은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에서 추가되는 시간연장보육교사와 24시간보육교사를 1호봉을 적용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일반어린이집과 휴일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연장/24시간 보육교사가 없다고 보았다.

<표 V-2-7> 보육교직원 호봉기준 월지급액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누리보조교사 <sup>22)</sup>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보육교사
전체	전체평균	2,877,220	1,767,00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국공립평균	2,956,380	1,968,45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일반	전체평균	2,877,220	1,767,00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국공립평균	2,956,380	1,968,45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시간연장	전체평균	2,877,220	1,767,00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1,567,020	-
	국공립평균	2,956,380	1,968,45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1,567,020	-
24시간	전체평균	2,877,220	1,767,00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1,567,020
	국공립평균	2,956,380	1,968,45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1,567,020
휴일	전체평균	2,877,220	1,767,00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국공립평균	2,956,380	1,968,450	1,567,020	1,567,020	1,287,140	784,000	-	-
월평균 시간외 근무수당		-	109,802	-	-	99,820*	-	-	-

주: 조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연장이나, 24시간, 휴일보육 등의 급간식 지원을 위해 1일 30분의 시간외근무를 가정하여, 월평균 주간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V-2-7>의 자료를 바탕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등 사용자부담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22) = 보육교사 1호봉 월급여/2(4시간 기준임)

〈표 V-2-8〉 보육교직원 호봉기준 월지급액 기준 사용자부담비용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누리보조 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전체	전체평균	509,088	312,649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국공립평균	523,095	348,293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일반	전체평균	509,088	312,649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국공립평균	523,095	348,293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시간 연장	전체평균	509,088	312,649	277,265	277,265	227,744	138,719	277,265	-
	국공립평균	523,095	348,293	277,265	277,265	227,744	138,719	277,265	-
24 시간	전체평균	509,088	312,649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277,265
	국공립평균	523,095	348,293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277,265
휴일	전체평균	509,088	312,649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국공립평균	523,095	348,293	277,265	277,265	227,744	138,719	-	-
대상		어린이집 일반 이용 영유아						시간연장형 서비스 이용 영유아	

주: 법정부담비용은 월지급액에 약 17.69%를 가산하여 산출하였음.

<표 V-2-7>의 월지급액을 어린이집 규모별 반편성 및 교직원수 기준에 따라 법정부담금 등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로 환산하면 다음의 <표 V-2-9>와 같다.

〈표 V-2-9〉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사용자부담금 제외)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전체 평균	0세	625,601	708,888	679,683	681,802	674,619	668,406	669,183
		1세	375,360	458,648	429,443	431,561	424,379	418,165	418,943
		2세	268,115	351,402	322,197	324,316	317,133	310,920	311,697
		3세	-	208,407	179,203	181,321	174,139	167,925	168,703
		4세이상	-	177,127	147,923	150,041	142,859	136,645	137,423
	국공립 평균	0세	692,751	777,621	747,861	749,768	742,408	736,113	736,802
		1세	415,650	500,521	470,761	472,668	465,307	459,013	459,701
		2세	296,893	381,764	352,004	353,910	346,550	340,256	340,944
		3세	-	223,421	193,661	195,567	188,207	181,913	182,601
		4세이상	-	188,783	159,023	160,930	153,570	147,275	147,964

(표 V-2-9 계속)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일반	전체 평균	0세	625,601	708,888	679,683	681,802	674,619	668,406	669,183
		1세	375,360	458,648	429,443	431,561	424,379	418,165	418,943
		2세	268,115	351,402	322,197	324,316	317,133	310,920	311,697
		3세	-	208,407	179,203	181,321	174,139	167,925	168,703
		4세이상	-	177,127	147,923	150,041	142,859	136,645	137,423
	국공립 평균	0세	692,751	777,621	747,861	749,768	742,408	736,113	736,802
		1세	415,650	500,521	470,761	472,668	465,307	459,013	459,701
		2세	296,893	381,764	352,004	353,910	346,550	340,256	340,944
		3세	-	223,421	193,661	195,567	188,207	181,913	182,601
		4세이상	-	188,783	159,023	160,930	153,570	147,275	147,964
시간연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및 조리원 1인 월평균 1,666,840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1,567,020원, 조리원: 99,820원)							
24시간		24시간 보육교사 1인 및 조리원 1인 월평균 1,666,840원 (24시간 보육교사: 1,567,020원, 조리원: 99,820원)							
휴일		휴일보육 어린이집 교사 1인당 60,000원 (=시간당 시간외 근무수당 × 1일 12시간 × 50%)							

<표 V-2-7>의 월지급액에 대한 4대보험금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산출하면 <표 V-2-10>과 같다.

<표 V-2-10>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 사용자부담금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전체 평균	0세	104,216	118,953	113,786	114,160	112,890	111,790	111,928
		1세	62,530	77,266	72,099	72,474	71,203	70,104	70,241
		2세	44,664	59,401	54,233	54,608	53,337	52,238	52,376
		3세	-	35,580	30,412	30,787	29,516	28,417	28,555
		4세이상	-	30,369	25,202	25,577	24,306	23,206	23,344
	국공립 평균	0세	116,098	131,114	125,849	126,186	124,884	123,770	123,892
		1세	69,659	84,675	79,410	79,747	78,445	77,331	77,453
		2세	49,756	64,773	59,507	59,845	58,542	57,429	57,550
		3세	-	38,236	32,971	33,308	32,006	30,892	31,014
		4세이상	-	32,431	27,166	27,503	26,201	25,087	25,209
일반	전체 평균	0세	104,216	118,953	113,786	114,160	112,890	111,790	111,928
		1세	62,530	77,266	72,099	72,474	71,203	70,104	70,241
		2세	44,664	59,401	54,233	54,608	53,337	52,238	52,376
		3세	-	35,580	30,412	30,787	29,516	28,417	28,555
		4세이상	-	30,369	25,202	25,577	24,306	23,206	23,344

(표 V-2-10 계속)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일반	국공립 평균	0세	116,098	131,114	125,849	126,186	124,884	123,770	123,892
		1세	69,659	84,675	79,410	79,747	78,445	77,331	77,453
		2세	49,756	64,773	59,507	59,845	58,542	57,429	57,550
		3세	-	38,236	32,971	33,308	32,006	30,892	31,014
		4세이상	-	32,431	27,166	27,503	26,201	25,087	25,209
시간연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277,265원							
24시간		24시간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277,265원							
휴일		-							

주: 사용자부담금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제해 보상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합한 금액임.

<표 V-2-7>의 월지급액에 대한 4대보험금과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을 산출하면 <표 V-2-11>과 같다.

77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어린이집 월 인건비는 0세 795,962원, 1세 504,035원, 2세 378,924원, 3세 212,108원, 4세 이상 175,61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육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0세 875,954원, 1세 552,415원, 2세 413,755원, 3세 228,875원, 4세 188,433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월 1,944,105원이었으며, 24시간은 1,944,105원이었다. 24시간의 경우 이를 이용아동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388,821원이었다. 마지막으로 휴일보육에 따른 1일 인건비는 60,000원으로 나타났다.

&lt;표 V-2-11&gt;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전체 평균	0세	729,817	827,841	793,469	795,962	787,509	780,196	781,111
		1세	437,890	535,914	501,542	504,035	495,582	488,269	489,184
		2세	312,779	410,803	376,431	378,924	370,471	363,157	364,073
		3세	-	243,987	209,615	212,108	203,655	196,342	197,257
		4세이상	-	207,496	173,124	175,618	167,164	159,851	160,766
	국공립 평균	0세	808,848	908,735	873,710	875,954	867,291	859,883	860,693
		1세	485,309	585,196	550,171	552,415	543,752	536,344	537,154
		2세	346,649	446,536	411,511	413,755	405,092	397,684	398,494
		3세	-	261,657	226,631	228,875	220,213	212,805	213,615
		4세이상	-	221,214	186,189	188,433	179,770	172,362	173,172



(표 V-2-11 계속)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일반	전체 평균	0세	729,817	827,841	793,469	795,962	787,509	780,196	781,111
		1세	437,890	535,914	501,542	504,035	495,582	488,269	489,184
		2세	312,779	410,803	376,431	378,924	370,471	363,157	364,073
		3세		243,987	209,615	212,108	203,655	196,342	197,257
		4세이상		207,496	173,124	175,618	167,164	159,851	160,766
	국공립 평균	0세	808,848	908,735	873,710	875,954	867,291	859,883	860,693
		1세	485,309	585,196	550,171	552,415	543,752	536,344	537,154
		2세	346,649	446,536	411,511	413,755	405,092	397,684	398,494
		3세		261,657	226,631	228,875	220,213	212,805	213,615
		4세이상		221,214	186,189	188,433	179,770	172,362	173,172
시간연장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및 조리원 1인 월평균 1,944,105원							
24시간		24시간 보육교사 1인 및 조리원 1인 월평균 1,944,105원 24시간 이용 영유아 1인당 388,821원							
휴일		휴일보육 어린이집 교사 1인당 60,000원							

### 3. 업무추진비

#### 가. 산출 방법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b: 47)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 등을 포함한다. 직책급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회의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6b: 47).

<표 V-3-1>은 주요 선행연구들이 업무추진비 산출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대부분 산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비 산출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현재 또는 미래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는 본 연구도 세출결산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였다.

〈표 V-3-1〉 업무추진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 업무추진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산출 -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 사용 - 지출비용이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지출비용 × 전체어린이집에서 해당 목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 업무추진비 중 회의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산출 ※ 기관운영비 및 직책급은 제외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로 정한 위원 규모를 참고하여, 100인 이상은 10명, 50인 이상 100명 미만은 8명, 50인 이하는 5명을 적용하고 2회의 운영위원회와 2회의 부모회의를 적용 - 운영위원회 회의비 단가는 1인당 1만원, 부모회의는 1회당 10~30만원을 적용함
서문희 외 (2014)	- 업무추진비 산출: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2013.3.~2014.2.)의 목별 월 평균 아동 1인당 지출액의 합산
양미선·박원순 외 (2015)	- 업무추진비를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산출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2014.4월말)의 목별 월 평균 아동 1인당 지출액의 합산
본 연구 (2016)	- 업무추진비 산출: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 어린이집 공시항목중 2015회계결산의 목별 연평균, 월평균, 영유아 1인당 월평균별 지출액의 합산

또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기관운영비와 회의비, 직책급 등이 추가로 더 지출된다고 보고, 세출결산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이용시간 유형간 업무추진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업무추진비는 보육연령, 설립유형이나 시설규모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전체 업무추진비의 평균차이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시간연장어린이집의 업무추진비를 먼저 산출 후, 24시간보육과 휴일보육에 적용하였다.

## 나. 산출 결과

<표 V-3-2>는 이용시간 유형별로 업무추진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어린이집 회계 결산자료에 따른 월평균 업무추진비 목별 비용 산출 결과, 어린이집당 기관운영비는 약 5만원, 원장의 직책수당경비인 직책급은 약 30만원, 회의비는 8천원 수준이었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월평균

금액이 4만 5천원, 29만원, 6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월평균 4만6천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3-2> 이용시간 유형별 업무추진비 평균 비교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단위: 원 계
전체	연평균	606,728	3,618,266	100,025	4,325,019
	월평균	50,561	301,522	8,335	360,418
	영유아1인당월평균	1,761	12,774	245	14,780
일반 (A)	연평균	538,877	3,448,086	75,623	4,062,586
	월평균	44,906	287,341	6,302	338,549
	영유아1인당월평균	1,708	13,077	216	15,001
시간연장 (B)	연평균	675,187	3,806,925	134,548	4,616,660
	월평균	56,266	317,244	11,212	384,722
	영유아1인당월평균*	-	-	-	-
차이 (B-A)	연평균	136,310	358,839	58,925	554,074
	월평균	11,359	29,903	4,910	46,173
	영유아1인당월평균*	-	-	-	-

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1인당 월평균은 산출하지 않음.

<표 V-3-3>은 이용시간 유형별로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결과이다. 종일반을 기준으로 한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20인 1만 9천원, 50인 1만원, 77인 8천원, 97인 7천원, 124인 6천원, 142인 6천원, 169인 5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비용 계산을 위해 일반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간의 월평균 업무추진비 금액차가 이용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차이라고 보고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였으며, 산출시 보육연령, 설립유형, 시설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시간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은 월 이용 영유아수와 월 이용시간<sup>23)</sup>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24시간어린이집 비용은 시간연장 시간당 단가에 1일 2시간, 월 25일을 추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산출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이용 영유아의 95% 정도가 21시 30분까지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영유아가 21:30부터 07:30분까지 10시간 수면한다고 보면 24시간 이용에 따른 시간당 비용이 시간연

23)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평균 8.7명으로 영아가 4.4명, 유아 4.2명이었으며(양미선·배윤진 외, 2015: 62), 시간연장보육에 따른 월 보육료 수입은 36만 7천원으로(양미선·배윤진 외, 2015: 87), 시간으로 환산 월 15.1시간이었음.

장에 따른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휴일어린이집의 이용단가는 시간당 단가에 1일 12시간 보육의 50%<sup>24)</sup>로 산정하여 산출하였다. 이후에 산출되는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산출에도 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시간당 업무추진비는 360원이었으며, 24시간은 이용 영유아 1인당 월 18,000원, 휴일보육은 시간당 2,16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3-3〉 이용시간 유형별 업무추진비 산출 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1인당 월평균)	기관운영비	1,995	1,694	1,296	1,196	1,066	1,314	996
	직책급	17,002	8,271	6,475	6,011	4,968	4,602	3,583
	회의비	233	330	317	241	187	234	143
	계	19,230	10,295	8,089	7,448	6,221	6,149	4,723
일반 (1인당 월평균)	기관운영비	1,910	1,661	1,149	1,154	998	1,321	1,010
	직책급	17,031	7,936	6,466	6,051	4,943	4,781	3,666
	회의비	218	287	256	211	131	187	108
	계	19,159	9,884	7,870	7,416	6,073	6,289	4,784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360원						
24시간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18,00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2,1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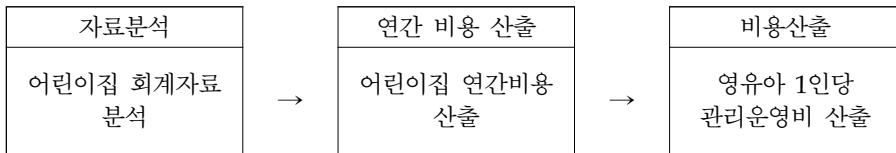
## 4. 관리운영비

### 가. 산출 방법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활동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이다. 관리운영비는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차량비는 대부분 보호자가 내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경우가 많고, 기타운영비 또한 어린이집 보육비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비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sup>25)</sup>

24) 휴일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관리운영비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 운영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산출한다. 관리운영비 산출 절차는 [그림 V-4-1]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관리운영비의 '목'별 연간 평균 비용을 산출한다. 여기에서 연간비용을 먼저 산출하는 이유는 연간비용은 냉난방 등 계절 변동요인 등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운영 특성상 정원충족률이 부족하더라도 관리운영비 대부분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간비용을 우선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를 최종 산출한다.



[그림 V-4-1] 관리운영비 산출 절차

<표 V-4-1>은 주요 선행연구들의 관리운영비 산출방식과 본 연구의 산출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료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대부분 산출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 비용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수익자 부담경비 경향이 강한 차량운영비와 건물임대료 등의 기타운영비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도 연속선상에서 기존의 방식을 준용하여 관리운영비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25) 서문희 등(2014: 126)도 기타운영비는 적립금, 임대료, 융자금 이자, 차량할부금 등 용도가 다양하고 일부는 시설비 항목으로 비용 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하였음.

〈표 V-4-1〉 관리운영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외 (2013)	- 관리운영비 포함항목: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 차량비, 기타운영비는 제외함 -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 사용 - 지출비용이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지출비용 × 전체어린이집에서 해당 목 지출이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외 (2013)	- 관리운영비 포함항목: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 차량비는 장애아동어린이집 산출시 포함. 기타운영비는 제외함 - 500여개 어린이집 대상 세출 심층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함
서문희 외 (2014)	- 관리운영비 포함항목: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 차량비, 기타운영비 제외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2013.3.~2014.2.)의 목별 월 평균 아동 1인당 지출액의 합산
양미선· 박원순 외 (2015)	- 관리운영비 포함항목: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 어린이집 재무회계 세입·세출 자료(2014.4월말)의 목별 월 평균 아동 1인당 지출액의 합산 ※ 차량비, 기타운영비 제외
본 연구 (2016)	- 관리운영비 포함항목: 여비, 수용비·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 어린이집 공시항목 중 2015회계결산의 목별 연간 지출액에 기초하여 영유아 1인당 관리운영비 산출 ※ 차량비, 기타운영비 제외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보육비용 또한 어린이집 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사용한다. 관리운영비는 시간연장형 서비스 이용 영유아가 많고 적음을 떠나, 필수적으로 지출될 수 밖에 없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는 비용이다. 본 연구는 관리운영비 중 시간연장형 서비스 운영에 따른 추가적 부담비용으로 차량비,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과 연료비로 정의하였다.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비용산출 절차는 앞에서 제시한 업무추진비 산출방법과 같다.

## 나. 산출 결과

어린이집 회계 결산자료에 따른 관리운영비 목별 비용 산출 결과, 어린이집 당 여비는 월평균 1만 7천원,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은 월평균 128만 8천원이었으며, 난방·취사비인 연료비는 월평균 7만 9천원 수준이었다. 일반어린이집

의 경우에는 각각 1만 3천원, 115만 4천원, 6만 8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어린이집이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월평균 34만 4천원 정도 관리운영비가 더 높았으며, 대부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이용시간 유형별 관리운영비 평균 비교

단위: 원

구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연료비	계
전체	연평균	215,888	15,454,553	951,839	16,622,280
	월평균	17,991	1,287,879	79,320	1,385,190
	영유아1인당월평균	507	45,028	2,247	47,782
일반 (A)	연평균	157,012	13,853,147	814,821	14,824,979
	월평균	13,084	1,154,429	67,902	1,235,415
	영유아1인당월평균	445	44,523	2,129	47,097
시간연장 (B)	연평균	296,141	17,643,340	1,011,032	18,950,512
	월평균	24,678	1,470,278	84,253	1,579,209
	영유아1인당월평균*	-	-	-	-
차이 (B-A)	연평균	139,129	3,790,193	196,211	4,125,533
	월평균	11,594	315,849	16,351	343,794
	영유아1인당월평균*	-	-	-	-

주: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월평균은 산출하지 않음.

<표 V-4-3>은 이용시간 유형별로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결과이다. 일반어린이집은 시설규모에 따라 20인 5만 3천원, 50인 4만 1천원, 77인과 97인 3만 6천원, 124인 3만 5천원 142인 3만 2천원, 169인 3만 3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산출 결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시간당 관리운영비는 2,610원, 24시간은 이용 영유아 1인당 월 비용은 130,500원, 휴일은 이용 영유아의 1일 관리운영비는 15,660원이었다.

<표 V-4-3> 이용시간 유형별 관리운영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1인당 월평균)	여비	385	574	702	546	391	421	333
	수용비·수수료 등	51,654	38,900	34,565	33,669	32,763	29,847	32,173
	연료비	1,837	2,653	2,810	3,061	2,228	2,467	2,583
	계	53,875	42,127	38,077	37,276	35,382	32,735	35,088

(표 V-43 계속)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일반 (1인당 월평균)	여비	369	469	598	431	258	391	271
	수용비·수수료 등	50,822	37,620	32,773	32,741	32,354	29,247	30,390
	연료비	1,819	2,491	2,901	2,972	2,072	2,505	2,591
	계	53,010	40,580	36,272	36,145	34,684	32,142	33,252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2,610원						
24시간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130,50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15,660원						

## 5. 사업운영비

사업운영비에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 필요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산출을 위해서 보육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급간식비와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에 소요되는 교재교구비, 행사비를 어린이집 보육비용에 포함하였고, 기타 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비용을 제외<sup>26)</sup>하였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b: 49-51)에 의한 각 목별 해당비용은 다음과 같다. 급간식비는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로,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은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49). 교재교구비는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 지출 비용이며, 행사비는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기타 필요경비 지출은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 등의 입학준비금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다(보건복지부, 2016b: 50). 특별활동비 지출비용은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26) 일부연구에서 행사비와 기타 필요경비 지출, 특별활동비를 보육비용에 포함하지는 제안도 하였으나, 행사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경비 지출과 특별활동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기 때문에 제외함.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6b: 51).

## 가. 급간식비

### 1) 산출 방법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중략)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sup>27)</sup> 제34조(급식 관리) 별표8 제3호 나목에서는 ‘원장 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연령에 맞는 적정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0세 영아의 월식단가 산출식에 대해서 표준이 없으나, 보육연령 및 반편성 기준을 고려하면 0세아 월식단가 산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 135)은 단가 산출 연령과 보육연령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0세아 급식비는 산출된 0세아 중기 이유식 비용과 1세아 비용의 평균을 적용하였다. 서문희 등(2014: 129)은 급식비단가는 기준 연령이 현재 연령기준이며, 보육연령은 현재 기준 연령보다 많게는 23개월까지 많기 때문에, 0세아도 후기 이유식과 1세아 단가를 혼합하여 적용하고, 2세아도 2세아의 단가와 3세아의 단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은 별도의 산출식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0세의 월식단가 산출시 1세 식단가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식단이나 표준레시피 등이 연도별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급간식비 산출자료에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1월-10월)를 반영하여 사용하였다.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은 2015년 6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17개 시도별로 이유기 초기(4~5개월), 이유기 중기(6~8개월), 이

27) [시행 2016.9.20.]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개정]

유기 후기(9~11개월) 식단과 영유아 식단을 산정하였다. 또한 급식단가는 표준 레시피 작성, 메뉴별 표준분량 단가 산출, 1일 식단가 산출, 월 식단가 산출, 표준 식단가 산출, 표준 급식비 산출의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기초로 식단가를 산출 한 후 1개월 식단가를 산출하여 지역별 급식단가를 비교하였다. <표 V-5-1>은 급간식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산출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표 V-5-1>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1개월 운영일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 (후기 + 만1-2세 A형 소매 단가)/2 × 1개월 운영일 ※ 별도의 설명은 없으며, 산출결과로 추정된 것임	22일
	- (후기) × 1개월 운영일 + (만1-2세 플러스 소매 단가)/2 × 1개월 운영일 ※ 보고서에는 중기라고 했으나, 산출결과를 보면 후기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됨	
	1~2세 - 만1-2세 A형/플러스 소매 단가 × 1개월 운영일	
	3~5세 - 만3-5세 A형/플러스 소매 단가 × 1개월 운영일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0세 - 별도의 설명이 없음.	25일
	1~2세 - 만1-2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3~5세 - 만3-5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서문희 외 (2014)	0세 - {(초기+중기)/2 + (후기+만1-2세 단가)/2} × 1개월 운영일	23일
	1세 - 만1-2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2세 - (만1-2세 단가 + 만3-4세단가)/2 × 1개월 운영일	
	3세~ - 만3-5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양미선·박원순 외 (2015)	0세 - {(중기+후기)/2 + (만1-2세 단가/2)} × 1개월 운영일 ※ 별도의 설명은 없으며, 산출결과로 추정된 것임	22일, 25일
	1~5세 - 해당 연령별 1일 식단가 × 1개월 운영일	
본 연구 (2016)	0세 - {(중기+후기)/2 + (만1-2세 단가/2)} × 1개월 운영일	25일
	1~2세 - 만1-2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3~5세 - 만3-5세 단가 × 1개월 운영일	

본 연구는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산출방법과 결과를 적용하였다.<sup>28)</sup> 또한 선행연구들은 1일 급식단가를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으로

28) 단 급간식비는 월 25일 운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토요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2009년 84.4%, 2012년 57.8%, 2015년 30.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이미화 외, 2016: 112), 토요일 보육이용 영아비율과 유아비율은 각각 2012년 2.4%, 2.1%에서 1.2%, 0.7%로 감소

설정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를 적용하여 본 연구는 이용시간 유형별 급식단가를 계산할 때, 시간연장 유형인 경우는 저녁과 저녁간식의 2식을 추가하였다. 24시간은 12시간 종일반 식단가에 아침, 저녁, 저녁간식 3식을 추가하였으며, 휴일보육의 급식단가는 종일반과 동일하게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용시간 유형별로 급식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간식비와 급식비가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의 연구결과는 세부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른 선행연구들의 간식비와 급식비 비중(4:6)을 분석하여 간식비와 급식비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시간연장, 휴일보육은 영유아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한시적, 비정기적, 산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월평균 급식단가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이에 시간연장과 휴일보육은 연령에 상관없이 영유아 1인당 일평균 급식단가를 산출하였다.

## 2) 산출 결과

양미선, 박원순 등(2015)에서 제시한 연령별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는 <표 V-5-2>와 같다. 표에 의하면 초기이유식의 경우 1일 평균 137원이었으며, 중기 이유식은 207원, 후기 이유식은 707원, 1~2세는 1,530원, 3~5세는 2,180원이었다.<sup>29)</sup>

---

하고 있어, 어린이집이 토요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이미화 외, 2016: 2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보건복지부, 2016a: 67)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월 운영기준일을 25일로 산출하였음.

29) 동일 시도 내에서도 가격조사대상(대형마트, 소도매상)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고, 조사시기나 날씨 등에 의해서도 다양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적용하였음. 또한 그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 이전년도에 수행된 선행연구가 이후시기 연구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의 연구를 사용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0.9%(2016년 1월~10월)로 설정하였음.

<표 V-5-2> 연령별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최대-최저 지역 비교 결과

단위: 원

구분	평균	최고(A)	최저(B)	차이(A-B)
초기 이유식(4~5개월)	137	156	132	24
중기 이유식(6~8개월)	207	226	131( 204)	95( 22)
후기 이유식(9~11개월)	707	726	631( 704)	95( 22)
만 1~2세	1,530	1,644	1,358(1,465)	286(179)
만 3~5세	2,186	2,349	1,940(2,076)	409(273)

주: ( )의 숫자는 다른 시도들의 1일 식단가에 비해 특히 낮은 1개 시도를 제외한 최저 식단가와 최고 식단가와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양미선·박원순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p.98의 내용을 재구성.

<표 V-5-3>은 이용시간 유형에 따라 영유아 1인당 1일 평균 급간식비를 보육연령에 맞춰 환산한 것이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1일 급간식비는 0세 1,233원, 1-2세 1,544원, 3-5세는 2,206원이었으며, 시간연장은 이용 영유아당 1,450원, 휴일은 1,810원이었다. 24시간의 경우에는 이용 영유아당 0세는 1,726원, 1-2세 2,161원, 3-5세 3,088원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따른 급간식비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시간연장 보육비용을 산출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5-3>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연령별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일평균	최고(A)	최저(B)	차이(A-B)	
일반	0세	1,233	1,310	1,070(1,179)	240(113)
	1세	1,544	1,659	1,370(1,478)	289(181)
	2세	1,544	1,659	1,370(1,478)	289(181)
	3세	2,206	2,370	1,957(2,095)	413(275)
	4세	2,206	2,370	1,957(2,095)	413(275)
	5세	2,206	2,370	1,957(2,095)	413(275)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 1,450원(간식1회, 저녁식사)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급간식비 : 1,810원(간식2회, 점심식사)				
24시간	0세: 1,726원, 1세: 2,161원, 2세: 2,161원, 3세: 3,088원, 4세: 3,088원, 5세: 3,088원				

주: ( )의 숫자는 다른 시도들의 1일 식단가에 비해 특히 낮은 1개 시도를 제외한 최저 식단가와 최고 식단가와와의 차이를 나타낸 것임.

앞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추가로 일반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의 보육연령별 영유아1인당 월평균 급간식비를 산출하면 <표 V-5-4>와 같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0세는 월 급간식비가 30,820원, 1-2세는 38,590원, 3-5세는 55,140원이었으며, 24시간어린이집은 0세 43,150원, 1-2세 54,030원, 3-5세 77,200원으로 산출되었다.

24시간 보육서비스의 경우 12시간 종일제 보육 이후에는 통합보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본다면 24시간어린이집의 급간식비를 보육연령별로 산출하는 것보다 평균 급간식비로 산출하는게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이에 추가로 24시간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산출하면 월 비용 65,080원이었다.

<표 V-5-4> 보육연령별 영유아 1인당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일반/24시간)

단위: 원

구분	일반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0세	30,820	43,150
1세	38,590	54,030
2세	38,590	54,030
3세	55,140	77,200
4세	55,140	77,200
5세	55,140	77,200
월 비용	-	65,080

## 나. 교재교구비

### 1) 산출 방법

본 연구에서의 교재교구비는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과 양미선, 박원순 등(2015)에서 사용한 교재교구 목록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먼저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은 선행연구 및 평가인증 지표, 영아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어린이집 교재교구 범위 및 연령기준, 반 규모 등을 설정하였으며, 학계 및 현장전문가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안)을 개발하였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안)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을 최종 정리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07).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 108)의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 기준은 첫째, 반 구성은 만0세, 1세, 2세, 3세, 4·5세반으로 구분한다. 4·5세는 누리과정 운영 시 필요한 교재교구 종류나 양에 있어 차이가 크지 않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반구성은 연령 단독 반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0세, 1세, 2세반은 2반 기준, 3세와 4·5세는 1반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교재교구 범위는 실내와 실외환경 구성에 필요한 교재교구로 구분하고, 실내환경은 앞서 살펴본 평가인증지표와 영아보육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흥미영역을 기초로 영역을 구성하며, 각 흥미영역별로 교재교구를 배치한다. 넷째, 교재교구 종류나 양은 1년 동안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교재교구로 구성한다. 이 외에도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아기 침대, 교구장, 이불장, 에어컨 등의 비품성 교재교구와 색종이, 풀, 도화지 등 소모성 교재교구를 별도 구성한다.

〈표 V-5-5〉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0세(6명)	1세(10명)	2세(14명)	3세(15명)	4·5세(20명)
일상영역 (수유,기저귀갈이,낮잠)	일상영역 (수유,기저귀갈이,낮잠)	신체	언어	언어
신체	신체	언어	수·과학	수·과학
언어	언어	감각·탐색	역할	역할
감각·탐색	감각·탐색	역할·쌓기	쌓기	쌓기
	역할·쌓기	미술	음률	음률
실외놀이	실외놀이	음률	미술	미술
비품	비품	실외놀이	실외놀이	실외놀이
소모품	소모품	비품	비품	비품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자료: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08.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 108)은 교재교구비 단가 산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재교구비 단가 산출을 위하여 연령 및 흥미영역별 교재교구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재교구 단가는 교재교구 납품업체 중 규모가 큰 3곳(B사, K사, I사)의 제품 목록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제품단가를 비교한 후 중간 가격대를 단가산출에 적용하였고, 각 교재교구별로 내용연수(조달청 및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자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는 원장 및 보육

교사 검토를 통해 내용연수를 산정함)를 반영하여 연·월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한 후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교재교구 비용을 산출하였다(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108).

양미선, 박원순 등(2015)의 연구에서도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등(2013)이 사용한 연령 및 영역별 교재교구 목록을 물가인상, 환율 변동, 판매업체의 판매상품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교재교구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공립, 민간, 가정 등의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보유현황 및 필요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 보유현황이 30% 미만이고, 필요정도가 4점 만점에 2점 미만인 항목을 제외하여 교재교구 목록을 재정비하였다(양미선·박원순 외, 2015: 103).

보육비용에서 교재교구비를 산출한 연구에서는 교재교구 비용 산출시 교재교구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연·월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한 후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월평균 교재교구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때 교재교구별 내용연수는 조달청 및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관련 자료가 없는 항목은 원장 및 보육교사 검토를 통해 내용연수를 설정하였다(양미선·박원순 외, 2015: 103;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표 V-5-6〉 교재교구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 (2013)	-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산출기준 마련: 교재교구 범위 및 연령기준, 반규모 등 - 교재교구 납품업체 3곳의 제품 목록과 홈페이지 단가 비교 → 중간가격대 단가 산출 →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비용 환산 및 산출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 (2013)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에서 제시한 교재교구 중 어린이집 47개를 대상으로 연령 및 흥미영역별 교재교구 보유현황 조사 → 47개 어린이집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품목 제외 → 책상, 의자 등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이 잦은 교구는 고가 적용 → 교재교구 비용 산출
서문희 외 (2014)	-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의 방식 및 결과값 동일하게 적용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와 동일한 방법 사용
양미선·박원순 외 (2015)	- 교재교구 목록 정비: 어린이집 대상 교재교구 보유현황 및 필요정도 조사 → 보유현황이 30%미만, 필요정도 4점 만점에 2점 미만인 항목 제외 - 교재교구 시장조사: 3개업체 제품 목록 및 홈페이지 조사 → 중간가격대 단가 산출 → 내용연수 반영 → 교재교구 비용 산출
본 연구 (2016)	- 양미선·박원순 외(2015)의 연구결과에 2016년(1월-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적용

이용시간 유형 중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영유아 1인당 월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고, 실외환경 교재교구비는 제외하였다. 24시간 보육서비스 월 비용은 시간연장 시간당 비용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교재교구 이용시간이 21:30까지 2시간으로 보아 이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시간연장 보육비용은 시간당 비용으로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급간식비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연령별이 아닌 평균단가를 산출하였다. 24시간은 현재 보육료 지원단가와 같이 연령을 고려한 비용과, 고려하지 않은 평균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 2) 산출 결과

먼저 일반어린이집의 보육연령별 영유아 교재교구비는 양미선, 박원순 등 (2015)에서 제시한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기초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일반어린이집 이용아의 월평균 교재교구비를 산출하면 0세는 45,700원, 1세는 41,340원, 2세는 30,280원, 3세는 39,900원, 4-5세는 34,340원이었다.

24시간 이용아의 월평균 교재교구비를 산출하면 0세는 52,560원, 1세는 47,780원, 2세는 34,840원, 3세는 45,470원, 4-5세는 39,410원이었다. 24시간 보육서비스의 경우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교재교구비를 산출하면 월 39,190원이었다. 시간연장 이용아의 교재교구비 시간당단가는 110원이며, 휴일 보육의 경우 1일 66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5-7〉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연령별 교재교구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실내환경						
	교재교구	23,110	27,310	17,140	19,930	17,360
일반* (1인당 월평균)	소모품	1,970	4,050	5,360	5,310	7,250
	비품	16,090	7,310	4,850	8,160	5,820
	소계	41,170	38,660	27,350	33,400	30,440
	실외환경	4,530	2,670	2,930	6,500	3,890
	계	45,700	41,340	30,280	39,900	34,340



(표 V-5-7 계속)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실내환경						
24시간 보육 (1인당 월평균)	교재교구	26,960	31,860	20,000	23,250	20,250
	소모품	2,300	4,730	6,250	6,200	8,460
	비품	18,770	8,530	5,660	9,520	6,790
	소계	48,030	45,100	31,910	38,970	35,510
실외환경		4,530	2,670	2,930	6,500	3,890
계		52,560	47,780	34,840	45,470	39,410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110원				
24시간(평균)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39,19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660원				

주: 일반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양미선·박원순 외(2015: 103)의 연령별 영유아 1인당 교재교구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값임.

## 다. 행사비

### 1) 산출 방법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행사비를 보육비용 산출시 제외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사비가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포함하였다. 행사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 운영비용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부모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행사비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호자가 부담<sup>30)</sup>하는 행사비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행사비는 회계에서 세입-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이는 세출-사업운영비-기타필요경비지출 비용으로만 지출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행사비는 어린이집별로 매년 유사한 형태도 진행된다고 보아, 비용산출시 어린이집 세출결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30)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에 산출한 수익자 부담경비로서의 월평균 행사비는 전체 13,900원이었으며, 설립유형에서는 직장과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17,500원, 15,200원으로 높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1,500원 수준이었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6,3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명 이하 어린이집이 15,200원이었음(이미화 외, 2016: 358).

31)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여지를 주었음.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a: 81-82).

추가적인 행사비 지출은 없다고 간주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에 대한 행사비는 산출하지 않았다.

〈표 V-5-8〉 행사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주요 선행연구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서문희 외(2014), 양미선·박원순 외(2015)에서는 행사비를 미포함. ※ 이미화·서문희·임양미 외(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행사비 금액에 기초하여 만0~5세아 1인당 월평균 행사비 산출
본 연구 (2016)	- 어린이집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산출

## 2) 산출 결과

<표 V-5-9>는 이용시간 유형별 행사비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연구대상 전체 어린이집의 행사비는 연평균 158만원, 월평균 13만 2천원, 1인당 월평균 4천원이었으며, 일반어린이집은 연평균 128만원, 월평균 10만 7천원, 1인당 월평균 4천원 수준이었다.

〈표 V-5-9〉 이용시간 유형별 행사비 평균 비교

			단위: 원
구분	행사비	비고	
전체	연평균	1,580,613	
	월평균	131,718	
	인당월평균	3,824	- 시간연장/24시간 해당없음
일반	연평균	1,280,242	- 휴일어린이집은 일반과 동일하게 책정
	월평균	106,687	
	인당월평균	3,558	

<표 V-5-10>은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행사비를 산출한 결과이다.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1인당 월 행사비는 20인은 3,579원, 50인 3,382원, 77인 3,967원, 124인 3,290원, 142인 3,299원, 169인 2,374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5-10> 이용시간 유형별 행사비 산출 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연평균	650,129	1,823,291	3,745,550	3,686,314	4,371,183	5,084,084	5,875,753
	월평균	54,177	151,941	312,129	307,193	364,265	423,674	489,646
	1인당월평균	3,655	3,858	4,843	3,965	3,694	3,484	2,894
일반	연평균	633,455	1,547,836	2,912,414	3,308,993	3,691,400	4,741,729	4,577,867
	월평균	52,788	128,986	242,701	275,749	307,617	395,144	381,489
	1인당월평균	3,579	3,382	3,967	3,620	3,290	3,299	2,374
시간연장	해당없음							
24시간(평균)	해당없음							
휴일	해당없음							

### 라. 사업운영비 산출 결과 종합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로 합한 사업운영비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는 <표 V-5-11>과 같다. 77인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어린이집의 사업운영비는 월평균 0세 80,490원, 1세 83,900원, 2세 72,840원, 3세 99,010원, 4세 93,450원, 5세 93,450원으로 산출되었다. 동일규모의 24시간의 경우 월평균 0세 99,680원, 1세 105,780원, 2세 92,840원, 3세 126,640원, 4세 120,580원, 5세 120,580원이었으며, 보육연령과 시설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비용은 104,270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은 1,560원, 휴일보육에 대한 1일 비용은 2,470원이었다.

<표 V-5-11> 이용시간 유형별 사업운영비 산출 결과 종합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1인당 월평균)	0세	80,180	80,380	81,360	80,490	80,210	80,000	79,410
	1세	83,590	83,790	84,770	83,900	83,620	83,410	82,820
	2세	72,530	72,730	73,710	72,840	72,560	72,350	71,760
	3세	98,700	98,900	99,880	99,010	98,730	98,520	97,930
	4세	93,140	93,340	94,320	93,450	93,170	92,960	92,370
	5세	93,140	93,340	94,320	93,450	93,170	92,960	92,370
일반 (1인당 월평균)	0세	80,100	79,900	80,490	80,140	79,810	79,820	78,890
	1세	83,510	83,310	83,900	83,550	83,220	83,230	82,300
	2세	72,450	72,250	72,840	72,490	72,160	72,170	71,240
	3세	98,620	98,420	99,010	98,660	98,330	98,340	97,410
	4세	93,060	92,860	93,450	93,100	92,770	92,780	91,850
	5세	93,060	92,860	93,450	93,100	92,770	92,780	91,850

(표 V-5-11 계속)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99,290	99,090	99,680	99,330	99,000	99,010	98,080
24시간 보육 (1인당 월평균)	1세 105,390	105,190	105,780	105,430	105,100	105,110	104,180
2세	92,450	92,250	92,840	92,490	92,160	92,170	91,240
3세	126,250	126,050	126,640	126,290	125,960	125,970	125,040
4세	120,190	119,990	120,580	120,230	119,900	119,910	118,980
5세	120,190	119,990	120,580	120,230	119,900	119,910	118,980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1시간 1,560원, 1시간 초과시 110원						
24시간(평균)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104,27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2,470원						

## 6. 시설비

본 연구에서 시설비는 건축비, 놀이터 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하며, 재무회계상 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비 항목은 제외한다.

### 가. 건축비

#### 1) 산출 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에는 어린이집 설치시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96㎡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당 1,270,000원<sup>32)</sup>이며, 국비 최대 지원액은 251,460천원으로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6a: 34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에 의하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하한 30년에서 상한 50년으로

32)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서문희 외(2014)와 양미선·박원순 외(2015)의 연구는 ㎡당 1,201,3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현재금액으로 지원단가가 상향조정되었음.

되어 있다.

〈표 V-6-1〉 건축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주요 선행연구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서문희 외(2014), 양미선·박원순 외(2015)에서는 기준내용연수를 30년으로 설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지원단가: 1,201,300원/m <sup>2</sup> (2013년 기준)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는 2안으로 공공청사 표준건비 단가인 1,670,300원/m <sup>2</sup> 를 적용하고,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함 ※ 서문희 외(2014)는 국공립과 민간·가정 등 설립주체 따라 차등비용 적용
본 연구 (2016)	- 기준내용연수를 40년 기준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 지원단가: 1,270,000원/m <sup>2</sup> (2014년~현재)

이용시간 유형에 따른 건축비 산출시에는 내구연한을 40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시간연장보육의 경우 다른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1인당 월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24시간은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된 월 비용과 종일반 건축비를 합하여 산출하였다. 휴일 보육은 시간연장 시간당 비용에 종일반보육시간의 50%를 부여하였다.

## 2) 산출 결과

〈표 V-6-2〉는 이용시간을 고려한 건축비 산출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감가상각한 경우, 영유아 1인당 건축비는 11,351원이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은 40월, 24시간은 1인당 월평균 11,922원, 휴일보육은 1인당 1일 24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V-6-2〉 이용시간을 고려한 건축비 산출결과

구분	단위: 원		
	기준내용연수 3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기준내용연수 50년
일반	15,134	11,351	9,081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40원		
24시간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11,922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240원		

## 나. 놀이터 설치비

### 1) 산출 방법

본 연구의 놀이터 설치비는 김은설, 박진아, 김승진(2016)의 최근 연구의 놀이터 설치비용을 사용하였다. 김은설, 박진아 등(2016: 45)의 연구에 의하면, 21~49인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설치비용 평균 1,721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1년도 이후 개원한 어린이집은 평균 2,460만원, 그 이전에 개원한 어린이집은 1,400~1,500만원 수준이었다. 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따라 놀이터 설치비용이 1,000만원 정도 차이난는데, 김은설, 박진아 등(2016)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놀이기구, 바닥재 등 투입되는 기자재 비용의 상승과 그간의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기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김은설, 박진아 등(2016)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2011년도 이후 놀이터 설치 평균비용인 2,460만원을 기준 비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0년의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49인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산출과 관련하여, 해당 시간동안 안전문제나 관리감독 등의 어려움으로 놀이터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연장이나 휴일보육단가 산출시 별도로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24시간보육인 경우 보육료가 월단위로 일반어린이집 비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V-6-3〉 놀이터 설치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주요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인 미만 50평 규모를 기준으로, 놀이기구 3종 이상에 바닥비용을 포함하여 설치비용이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li> <li>- 내구연한 10년, 100인을 가정하여 월평균 3,300원(1인, 4,000만원 적용)과 4,200원(2인, 5,000만원 적용)으로 산출함</li> <li>※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 서문희 외(2014), 양미선·박원순 외(2015) 모두 동일한 값을 사용. 단, 양미선·박원순 외(2015)는 1인 적용</li> </ul>
본 연구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은설, 유해미, 최은영 외(2016)에서 도출된 놀이터 설치비용(2,460만원)에 내구연한 10년, 49인 기준으로 산출</li> </ul>

### 2) 산출 결과

<표 V-6-4>는 놀이터 설치비 산출결과이다. 앞에서 제시한 절차를 통해 산출된 놀이터 설치비는 영유아 1인당 월평균 4,184원이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설치비용 5,000만원, 100인기준) 거의 같다.

<표 V-6-4> 놀이터 설치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단위: 원

구분	놀이터 설치비
전체	4,184
일반	4,184
시간연장	해당없음
24시간	해당없음(종일반 기준 4,184원)
휴일	해당없음

## 다. 자산취득비

### 1) 산출 방법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공시자료의 세출결산에 기초하여 산출된 비용을 실질적인 자산취득비로 보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용시간 유형별로는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보다는 시간연장형 서비스에 따른 추가적인 비품구입비가 추가로 지출된다고 보았다. 먼저 시간연장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세출결산 자료에 기초하여 일반어린이집과의 자산취득비 차를 도출하여 시간연장 월 이용수와 평균 이용시간을 사용하여 시간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V-6-5> 자산취득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주요 선행연구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는 자산취득비 제외
	-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는 자산취득비를 시설장비비라는 용어로 사용 ※ 2013년 4월과 9월 지출비용의 평균값 및 비율 적용
	- 서문희 외(2014)는 자산취득비를 시설장비비라는 용어로 사용 ※ 2013년 3월 2014년 2월까지 지출비용의 평균값 및 비율 적용
	- 양미선·박원순 외(2015)는 자산취득비를 시설장비비라는 용어로 사용 ※ 2014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보고자료 활용
본 연구 (2016)	-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출결산 - 연간, 월평균, 영유아1인당월평균 비용 사용

## 2) 산출 결과

<표 V-6-6>은 이용시간 유형별 자산취득비 산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의 월 자산취득비는 20인 7,191원, 50인 6,139원, 77인 6,024원, 97인 5,782원, 124인 5,283원, 142인 5,254원, 169인 5,043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 서비스의 경우 1인당 시간당 비용은 560원이었으며, 24시간은 월 8,390원, 휴일은 2,10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6-6〉 이용시간 유형별 자산취득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연평균	1,309,656	3,019,596	4,862,077	5,731,439	6,357,474	7,711,382	10,469,253
	월평균	109,138	251,633	405,173	477,620	529,789	642,615	872,438
	1인당월평균	7,370	6,469	6,221	6,209	5,137	5,569	5,256
일반	연평균	1,264,332	2,777,568	4,640,568	5,312,499	6,305,014	7,207,932	9,832,497
	월평균	105,361	231,464	386,714	442,708	525,418	600,661	819,375
	1인당월평균	7,191	6,139	6,024	5,782	5,283	5,254	5,043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560원
24시간(평균)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8,39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2,100원

## 라. 시설장비유지비

### 1) 산출 방법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공시자료의 세출결산에 기초하여 산출된 비용을 실질적인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보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은 자산취득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표 V-6-7> 시설장비유지비 산출방식 비교

구분	산출방식
주요 선행연구	-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유지관리비라는 용어로 사용.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기법 사용하여 산출
	- 서문희·양미선·박진아 외(2013)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유지비라는 용어로 사용,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의 산출값 사용
	- 서문희 외(2014)와 양미선·박원순 외(2015)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유지관리비라는 용어로 사용, 서문희·양미선·이영미 외(2013)의 산출값 사용
본 연구 (2016)	-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출결산 - 연간, 월평균, 영유아1인당월평균 비용 사용

## 2) 산출 결과

<표 V-6-8>은 이용시간 유형별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월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20인 1,438원, 50인 2,022원, 77인 2,381원, 97인 2,468원, 124인 2,237원, 142인 2,439원, 169인 2,498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연장 서비스의 경우 1인당 시간당 비용은 240원이었으며, 24시간은 월 3,600원, 휴일은 90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6-8> 이용시간 유형별 시설장비유지비 산출 결과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연평균	265,908	1,096,029	1,923,288	2,639,513	3,223,222	4,139,140	5,923,341
	월평균	22,159	91,336	160,274	219,959	268,602	344,928	493,612
	1인당월평균	1,496	2,331	2,602	2,893	2,791	2,886	2,821
일반	연평균	252,404	940,523	1,635,451	2,232,791	2,487,055	3,321,970	5,375,569
	월평균	21,034	78,377	136,288	186,066	207,255	276,831	447,964
	1인당월평균	1,438	2,022	2,381	2,468	2,237	2,439	2,498
시간연장 24시간(평균)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240원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3,600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900원							

## 마. 시설비 산출 결과 종합

<표 V-6-9>는 시설비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77인 일반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월 비용을 살펴보면, 건축비가 11,351원, 놀이터 설치비가 4,184원, 자

산취득비가 6,024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81원으로 월 시설비는 23,940원으로 산출되었다. 일반어린이집 규모별 시설비는 월 평균 20인 19,980원, 50인 23,696원, 77인 23,940원, 97인 23,785원, 124인 23,055원, 142인 23,228원, 165인 23,076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비용은 840원, 휴일보육에 대한 1일 비용은 3,240원,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1인당 월 비용은 23,912원으로 나타났다.

〈표 V-6-9〉 이용시간 유형별 시설비 산출 결과 종합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전체 (1인당 월평균)	건축비*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놀이터 설치비	-	4,184	4,184	4,184	4,184	4,184	4,184
	자산취득비	7,370	6,469	6,221	6,209	5,137	5,569	5,256
	시설장비유지비	1,496	2,331	2,602	2,893	2,791	2,886	2,821
	계	20,216	24,335	24,358	24,636	23,462	23,989	23,611
일반 (1인당 월평균)	건축비*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11,351
	놀이터 설치비	-	4,184	4,184	4,184	4,184	4,184	4,184
	자산취득비	7,191	6,139	6,024	5,782	5,283	5,254	5,043
	시설장비유지비	1,438	2,022	2,381	2,468	2,237	2,439	2,498
	계	19,980	23,696	23,940	23,785	23,055	23,228	23,076
시간연장	영유아 1인당 1시간 비용: 840원							
24시간(평균)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23,912원							
휴일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3,240원							

주: 건축비는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한 비용임.

## 7. 보육비용 산출결과 종합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보육비용 항목과 관련하여, 항목별 산출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성은 크게 중일반,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어린이집으로 구분하고, 보육비용에 따라 인건비 1인(전체평균)과 2인(국공립 평균), 보육연령별·시설규모별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을 제시하였다.

## 가.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비용

본 연구에서 종일반 보육비용은 일반어린이집의 보육비용으로 산출되었다. 일반어린이집은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일컫는다. 본 장 2절에서 6절까지의 항목에 대한 산출결과를 기초로 하여, 보육연령별, 시설규모별 월 보육비용을 제시하면 <표 V-7-1>, <표 V-7-2>와 같다.

<표 V-7-1>은 인건비 산출기준을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전체평균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7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는 보육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었으며,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시설비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되었다. 0세는 인건비 793,500원, 업무추진비 7,900원, 관리운영비 36,300원, 사업운영비 80,500원, 시설비 23,900원으로 총 942,100원으로 산출되었다. 1세는 인건비 501,500원, 사업운영비 83,900원으로 653,500원으로 산출되었다. 2세는 인건비 376,400원 사업운영비 72,800원으로 517,300원, 3세는 인건비 209,600원, 사업운영비 99,000원으로 총 376,700원 수준이었다. 4세 이상은 인건비 173,100원, 사업운영비 93,500원으로 총 334,70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7-2>는 인건비 산출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을 산출한 결과이다. 7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을 살펴보면, 0세는 인건비가 873,700원으로 총 1,022,300원, 1세는 인건비가 550,200원으로 총 702,200원, 2세는 인건비가 411,500원으로 총 552,400원, 3세는 인건비가 226,600원으로 총 393,700원, 4세 이상은 인건비가 186,200원으로 총 347,800원으로 나타났다.

〈표 V-7-1〉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1만(인건비 전체평균)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인건비	729,800	827,800	793,500	796,000	787,500	780,200	781,1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0,100	79,900	80,500	80,100	79,800	79,800	78,9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902,100	981,900	942,100	943,400	931,200	921,600	921,200
1세 인건비	437,900	535,900	501,500	504,000	495,600	488,300	489,2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3,500	83,300	83,900	83,600	83,200	83,200	82,3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613,600	693,400	653,500	654,900	642,700	633,100	632,700
2세 인건비	312,800	410,800	376,400	378,900	370,500	363,200	364,1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72,500	72,300	72,800	72,500	72,200	72,200	71,2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477,500	557,300	517,300	518,700	506,600	497,000	496,500
3세 인건비	-	244,000	209,600	212,100	203,700	196,300	197,3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8,400	99,000	98,700	98,300	98,300	97,4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416,600	376,700	378,100	365,900	356,200	355,900
4세이상 인건비	-	207,500	173,100	175,600	167,200	159,900	160,8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2,900	93,500	93,100	92,800	92,800	91,9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374,600	334,700	336,000	323,900	314,300	313,900

〈표 V-7-2〉 종일반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 2인(인건비 국공립평균)

단위: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 인건비	808,800	908,700	873,700	876,000	867,300	859,900	860,7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0,100	79,900	80,500	80,100	79,800	79,800	78,9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981,100	1,062,800	1,022,300	1,023,400	1,011,000	1,001,300	1,000,800
1세 인건비	485,300	585,200	550,200	552,400	543,800	536,300	537,2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83,500	83,300	83,900	83,600	83,200	83,200	82,3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661,000	742,700	702,200	703,300	690,900	681,100	680,700
2세 인건비	346,600	446,500	411,500	413,800	405,100	397,700	398,500
업무추진비	19,200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53,000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72,500	72,300	72,800	72,500	72,200	72,200	71,200
시설비	20,000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511,300	593,000	552,400	553,600	541,200	531,500	530,900
3세 인건비	-	261,700	226,600	228,900	220,200	212,800	213,6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8,400	99,000	98,700	98,300	98,300	97,4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434,300	393,700	394,900	382,400	372,700	372,200
4세이상 인건비	-	221,200	186,200	188,400	179,800	172,400	173,200
업무추진비	-	9,900	7,900	7,400	6,100	6,300	4,800
관리운영비	-	40,600	36,300	36,100	34,700	32,100	33,300
사업운영비	-	92,900	93,500	93,100	92,800	92,800	91,900
시설비	-	23,700	23,900	23,800	23,100	23,200	23,100
소계	-	388,300	347,800	348,800	336,500	326,800	326,300

## 나.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시간당 비용과 인건비 산출결과는 다음의 <표 V-7-3>과 같다.

인건비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시간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간보육교사의 초과근무 형태나 추가적 급간식 준비를 하는 조리원을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도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1호봉을 적용(사용자부담금 포함)과 시간외 수당 9,982원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연장 서비스의 시간당 보육비용의 경우 업무추진비는 360원, 관리운영비는 2,610원, 사업운영비는 1일 당으로 계산된 급간식비로 인해 최초 1시간은 1,560원, 1시간 초과시부터는 110원, 시설비는 840원으로, 총 시간당 보육비용은 시간연장 최초 1시간은 5,370원(360원+2,610원+1,560원+840원), 1시간 초과부터는 3,920원(360원+2,610원+110원+840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7-3> 시간연장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시간당 비용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1,944,105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1,844,285원, 조리원: 99,820원)
업무추진비	360원
시간연장 보육 관리운영비	2,610원
서비스 시간당 사업운영비	최초 1시간 1,560원, 1시간 초과시부터 110원
보육비용 시설비	840원
계	최초 1시간 5,370원, 1시간 초과시부터 3,920원

<표 V-7-4> 연도별 시간연장 보육단가 변화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본 연구
시간연장보육	2,400	2,700	2,700	2,700	2,700	2,800	3,000	5,360/3,920
시간제보육	2,6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	-	-	-	-	-	4,000	-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사업안내.

## 다. 24시간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1인당 월 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표 V-7-5>와 같다.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현재 0-5세 보육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종일반 지원단가의 1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육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먼저 인건비는 24시간 보육서비스의 인건비 또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인건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으로 환산하면 388,821원이었다.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은 업무추진비 18,000원, 관리운영비는 130,500원, 사업운영비는 104,270원, 시설비는 23,912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76,682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총 665,503원으로 나타났다.

<표 V-7-5>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및 영유아 1인당 월 비용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 1,944,105원 (24시간 보육교사: 1,844,285원, 조리원: 99,820원) - 영유아 1인당 388,821원
24시간 보육 서비스 월 보육비용	업무추진비 18,000원 관리운영비 130,500원 사업운영비 104,270원 시설비 23,912원
	소계 276,682원
영유아 1인당 월 총비용	665,503원

## 라. 휴일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표 V-7-6>은 휴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과 교사수당을 산출한 결과이다. 휴일보육 교사의 수당은 6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업무추진비 2,160원, 관리운영비 15,660원, 사업운영비 2,470원, 시설비 3,240원으로 총 23,530원으로 나타났다.

〈표 V-7-6〉 휴일 어린이집 교사수당 및 영유아 1인당 1일 비용

구분		산출 비용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60,000원
	업무추진비	2,160원
휴일보육	관리운영비	15,660원
서비스 월	사업운영비	2,470원
보육비용	시설비	3,240원
	소계	23,530원



## VI. 요약 및 제언

### 1. 요약

2000년대 중반이후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있어왔으며,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과제로 진행되는 보육비용 산출연구 중 4차년도에 해당한다. 1차년도는 보육의 질을 고려하여 보육비용 구성 항목을 검토하고 항목별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2차년도는 어린이집 설립주체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단축형 보육 도입시 예상되는 보육비용 감소분도 제시하였다. 3차년도는 17개 시도의 식자재에 대한 지역물가 차이와 시도별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지방비 지원 차이를 반영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4차년도 연구로서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반을 중심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일부 운영시간 조정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서 기존 연구의 틀 속에서 종일반 보육비용 산출과 함께, 중요 맞춤형 보육서비스인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 등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그간 종일반 이외의 보육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나 비용산출 근거가 불분명하였다는 점에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을 산출한 본 연구가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육비용을 구성하는 항목별 요소들을 고려하였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여기에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구조에 대한 이해와 어린이집 공시자료를 이용한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는 달리 특수보육 미지정 어린이집인 일반어린이집을 별도로 분석하여 특수보육 지정으로 인한 세입증가와 이로 인한 항목별 세출 증가 가능성을 어느정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용시간 유형별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2015년 전국보육 실태조사' 등 최근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보육비용 산출시 기준점 등을 마

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시간 유형별로 보육비용 산출모형과 방법을 제시하여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무엇보다 연속과제로서 선행연구의 기본 연구모형을 기본적으로 준용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실효성과 현실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보육비용 산출 모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항목별 산출방법에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항목 및 세부기준까지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보육비용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일반은 2가지 인건비 산출방식에 따라 2개 안을 제시하였다(표 V-7-1, 표 V-7-2 참고). 1안은 인건비 기준을 전체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77인 규모 일반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 942,100원, 1세 653,500원, 2세 517,300원, 3세 376,700원, 4세, 5세는 334,700원으로 산출되었다. 2안은 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0세 1,022,300원, 1세 702,200원, 2세 552,400원, 3세 393,700원, 4세, 5세는 347,800원으로 산출되었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비용은 인건비와 그 외 보육비용으로 크게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과 조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영하여 1,944,105원으로 산출되었다. 시간당 시간연장 보육비용은 급간식비는 시간연장 최초 1시간 이용에 모두 투입된다고 보아, 최초 1시간은 5,370원, 이후 1시간 초과시 부터는 3,920원으로 산출되었다. 2016년 시간연장 시간당 단가가 3,000원임을 감안한다면 단가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24시간 보육서비스 비용은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665,50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중 영유아 1인당 인건비가 월 388,821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276,682원이었다.

넷째, 휴일 보육서비스 비용은 휴일 근무에 따른 교사의 시간외 수당과, 그 외 서비스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교사의 휴일 근무수당은 60,000원으로 현재 기준은 50,000원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외 서비스 비용은 영유아 1인당 월 23,530원으로 산출되었다.

##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및 후속연구와 관련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이용시간 유형별 지원 비용에 대한 조정 필요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한 본 연구의 보육비용 산출 결과를 감안한다면,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서비스 보육료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

#### 1) 시간연장 보육료 인상

2016년도 현재 시간제보육 단가는 4,000원, 맞춤형의 긴급보육바우처 또한 시간당 4,000원(월 15시간, 6만원)인데 반해, 시간연장 보육비 지원금은 3,000원이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12시간 종일반과는 달리 부모의 추가적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에 추가로 부과되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시간당 지원비용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연장 보육이 시작되는 19시 30분부터 최초 1시간은 급간식비가로 추가로 소요됨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1인당 급간식비 1,56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24시간 보육료 조정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재 0-5세 보육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종일반 지원단가의 1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4시간 보육서비스가 12시간 종일제 보육 이후에는 현실적으로는 통합보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육연령에 관계없이 영유아 1인당 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를 기초로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식과 보육료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3) 휴일 보육료 조정

휴일 보육비용의 경우 교사의 휴일 근무수당과 서비스 비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sup>33)</sup>의 「보육사업안내」를 2003년 이후부터 확인한 결

과, 휴일 보육에 따른 교사의 휴일 근무수당은 일일 5만원으로 10년 이상 동일 금액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다면 휴일 보육교사의 수당은 일일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될 필요가 있다.

## 나. 표준보육비용 현행화 및 주기적 산출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지급기준 또한 상승하고 있어,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하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4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이하 생략)”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도 조사연구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육료 인상을 통해 꾸준히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2016년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6% 인상되어 거의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고, 물가상승률이 적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유아 급간식비나 교재교구비, 각종 보육관련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출 당시에 비해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의 재산출이 시급하며, 최소 5년 단위의 조사주기나 조사항목을 관련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시하였지만 인건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3년 표준보육비용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보다 상당금액이 상승한 인건비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여 여타 보육비용 항목들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 재산출이 요구된다.

## 다. 보육비용 산출 기준의 타당성 확보

2005년, 2008년, 2013년의 표준보육비 연구와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비용 관련 연구가 연속과제로 진행되어, 보육비용 산출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 등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없고, 동일 연구 내에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 여러 안들이 제시되

33) 2003~2016년 보육업무의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어 왔음. 2003-20004년 보건복지부, 2005년 여성부, 2006-2008년 여성가족부, 2009-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2011-2016년 보건복지부.

고 있어 오히려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보육비용 산출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는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유치원 교사 등 교육서비스 관련업의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기본급과 수당의 형태로 분리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당 등의 보조적이고, 가변성이 높은 인건비 항목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호봉에 의해 매년 지급되는 기본급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일도 보육비용 산출시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는 주 6일로 규정하여 토요일에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보육일수 계산 예시에서는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를 26일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일을 토요일 보육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일, 23일로 본 경우도 있고, 공휴일을 제외하여 25일을 운영일로 산정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도 2016년도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등 공휴일(68일)을 제외하면 297일이기 때문에 1개월 평균 25일을 어린이집의 보육가능일수로 삼았다.

급간식비는 표준화된 구매형태나 규모의 경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급간식에 소요되는 식자재는 도소매업이나 온라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구매가 가능하고, 유기농 등 고급식자재의 차별화 구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육비용 산출시 다양한 기준의 제시도 가능하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대량구매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기준 또한 표준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항목은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각종 교재교구 등을 통한 직접적인 보육활동 이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행정지원 활동들에 포함되는 관리·유지 비용이다. 표준보육비용 산출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실제 지출 비용 자료를 활용하여 그 평균을 비용을 산출한 경우가 많았다.

좀 더 안정적 보육서비스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검사수수료, 일반운영비, 각종 위원회 운영, 시설유지관리 비용 등을 세분화하여 세부내역별로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산출단가와 기준을 제시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제도의 변화와 함께 향후 비용산정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들도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2-3년 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 라. 보육비용 산출시 인건비 별도 분리 등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방식 개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은 영유아 1인당에서 시설규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비용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용을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100%라는 가정하에서의 보육비용이다. 따라서 규모별·연령별 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정부의 보육료나 지원수준 등을 산출하게 된다면, 실제 80% 내외의 정원충족률을 보이는 어린이집들의 재정상황은 더 열악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비용항목에 따라서 산출단위와 지원단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보육비용에서 인건비 산출은 전문성 및 질 제고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반 편성기준에 해당하는 현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필수경비이자 고정경비인 인건비는 현원 기준이 아닌 어린이집 규모나 반배치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일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은 오히려 정원충족률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급여수준을 더욱 열악하게 함으로써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간 서비스 질의 격차가 심화되어 영유아와 영유아를 믿고 맡기는 부모들이 결국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화, 서문희, 임양미 등(2012: 108)은 어린이집 반 편성 및 시설운영은 어린이집 1개소의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보육료 지원은 현원 아동 1인을 기준으로 하는 구간적용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비 등은 어린이집 운영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급간식비의 경우 현재의 아동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마.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 변동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맞춤형 보육제도 중 맞춤형반에 대한 보육비용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분명한 산출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육비용 산출시 인건비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이외 운영비용은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sup>34)35)</sup> 그러나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은 1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련 연구는 비용을 단순화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존 12시간 이외에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체계적 산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8시간 운영과 초과보육에 따른 시간연장 비용 등 추가적인 국가의 부담액도 추계하여야 할 것이다.

## 바. 서비스 이용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비용 산출

이용시간 유형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종일반,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보육을 중심으로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는데,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도 보육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종일반 보육비용은 꾸준히 연구되어 어느정도 방법이나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외 보육서비스 유형의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비중이 가장 큰 인건비 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산출 모형개발이나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유형으로는 추가적으로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지원 형태로는 농어촌 비용지원, 누리과정 지원, 시간제보육 비용지원 등이 있다. 여기에 더 확장시키면 기관 이

34) 최윤경·이진화·박진아 외(2015: 89)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안고 있는 격차와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본 운영시간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음. 1안은 기본운영 8시간에 추가운영을 4시간으로, 2안은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시간을 10시간으로, 3안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운영의 자율성 및 운영시간 다양화 안을 제안하였음.

35)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16.8.19.)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초과시간은 시간연장보육의 개념으로 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전액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함.

용을 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 단가나,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수당 산출도 필요할 것이다.

## 사. 어린이집 정보공시의 공시기간 3년으로 확대 및 허위 공시 벌칙조항 신설

어린이집 관련 정보의 공시기간을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sup>36)</sup>으로 확대하고, 허위 공시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에서 명시한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의 당해연도 예산서의 경우 4월까지, 이전년도 결산서의 경우 10월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모들의 관심이 큰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료 현황, 급식, 안전, 통학버스, 보험, CCTV 현황 등 공시사항 수시공시로 1년만 공시하고 있다.

현재 공시되는 상당수의 항목들이 보육비용을 산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공시기간을 확대하여 항목들간 연도별 추이나 변동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 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유용할 것이다. 또한 공시기간의 확대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향후에 보낼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본래 공시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공시내용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전문가들의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공시내용의 오류나 거짓 공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시내용의 신뢰를 확보하고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거짓 공시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6)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상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아. 어린이집 관리·감독 및 회계교육 강화

어린이집 운영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계획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회계교육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무상보육과 함께 보육료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관리 및 감독은 부족한 실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들은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실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재정상 어렵다는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고 믿는 일반국민들의 시선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대상 회계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회계업무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들이 직접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회계/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자. 시·도별 영유아 보육재정 수준에 대한 분석·진단 필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의 보육수요와 관련 요구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재정 지출이 담보되고, 상당수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육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산출과 함께 재원의 가용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은 정부에서 산정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 속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비용 산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재정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등의 여건에 따라 지원수준이 상이하며, 지역내에서도 도농간, 규모간,

설립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등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안정적이고 좋은 지역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더 할 수 있지만,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육에 대한 지출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보육·교육 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추가 재원확보 못지않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 보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시·도별 보육재정 등 여건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 참고문헌

-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16.6.25.] [대통령령 제27257호, 2016.6.24., 일부개정]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별표12(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 26323호, 2015.6.22., 일부개정]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12.7.26.] [법률 제10967호, 2011.7.25., 전부개정] 제2조(정의)
- 김은설·박진아·김승진(2016)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숙(2009). 보육설립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8, 21-40.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김혜금(2010).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김혜금·임양미·조혜영(2013). 가정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산정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7-78.
- 나민주·장수명·윤홍부·박동선·오범호(2009). 국립대학 적정 재정지원 규모산정 및 배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여성부·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법시행규칙[시행 2016.11.2.] [기획재정부령 제575호, 2016.11.2., 일부개정]  
별표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변용찬·임유경(2002). 표준보육단가 평가와 단가 산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2003). 200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4). 200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1). 201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a). 2013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b). 2013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a). 2014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b). 2014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b). 2015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a). 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육사업안내(부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c). 보도자료: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2016.4.25.)

보건복지부(2016d). 보도참고자료: 맞춤형 보육 정책 관련, △전업주부-취업주부  
차별, △교사 인건비가 삭감 등 의견에 대해 설명드림(2016.6.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시행 2015.12.24.]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2015.12.24., 일부개정] 별표7(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별표8(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삼성복지재단(2000). 서울특별시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단가 산출 및 재정지원제  
도에 관한 제언.

서문희·양미선·박진아·유영준·이영미·유옥수·정승구·이세원·이혜민(2013). 표준보

- 육비용 산정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이동하(2014). 어린이집 설립 주체에 따른 보육비용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이영미·박형진·김희정(2013).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연희·임유경(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안미라(2013). 특수학급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  
개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여성가족부(2006). 2006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8).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 여성부(2005). 2005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 양미선·박원순·피재은·이동하(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배윤진·김정민(2015). 어린이집·유치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1호, 2016.2.3., 일부개정] 제17조(보육  
교직원의 배치), 제33조(급식 관리), , 제34조(무상보육), 제49조의 2(어  
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6.9.20.][보건복지부령 제439호, 2016.9.20., 일부  
개정]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 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 제  
28조(최약보육의 종류), 제34조(급식 관리),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  
준), 별표2(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별표8(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52호, 2016.6.21., 타법개  
정] 제25조의 5(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  
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조사 보

고서.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임양미·이진경(2012). 표준보육료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호·곽수근(1991). 서울대학교 교육원가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기획실.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임양미(2011). 2012년 경기도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산정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임양미·전경숙·김혜금(2010). 경기도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료 산정 연구: 만 3~5세아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지방재정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55조(재정 분석 및 재정진단)

최윤경·이진화·박진아·조형숙·권혜진·조혜주(2015).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연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 <참고 웹사이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Abstract

# Childcare Center Cost Calculation in 2016: Considering the Types of Childcare Services

Donghoon Kim Eun-Young Choi Moonje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urth annual investigation of the five-year(2013-2017) project, was to estimate child care cost considering the types of childcare services, focusing on full-day and extended childcare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identified the items related to the child care co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examined the rela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 Further, we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f childcare centers by using disclosed data of childcare centers.

The data on the operation and use of childcare centers were based on recent research results such as the "National Childcare Survey in 2015," and the reference points for calculating child care costs were decided. Based on these, we presented the child care cost calculation model, the method for each type of childcare service, and calculated the cost of childcare center. As a continuous study, the current research contained the basic research model of the previous study, but the childcare cost calculation model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for more effective and realistic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labor cost in the full-day system is presented in two ways.

The first measure was calculated by applying the overall average wages to calculate the labor cost. The monthly childcare cost per child was calculated as 942,100 won(1,200 won is about \$1) for age 0, 653,500 won for age 1,

517,300 won for age 2, 376,700 won for age 3, and 334,700 won for age 4 and 5.

The second measure was to raise the labor cost to the average level of the public childcare center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age 0 is 1,022,300 won, age 1 is 702,200 won, age 2 is 552,400 won, age 3 is 393,700 won, and age 4 and 5 are 347,800 won.

Second, extended childcare service cost was divided into labor cost and service cost per hour. Labor costs were calculated at 1,944,105 won, reflecting the four compulsory social insurance policies, and the overtime allowance of the cook. When calculating the time extension cost per hour, the cost of the snack was considered to be spent for the first hour of extension. Therefore, the cost of first hour was 5,370 won, and after 1 hour, it was 3,920 won. Considering that the unit price per unit time of 2016 was 3,000 won, unit price adjustment is necessary.

Third, the cost of 24-hour childcare service was calculated regardless of children's age. The cost of childcare per child was calculated as 665,503 won, including the monthly labor cost of 388,821 won per child and the cost of the rest was 276,682 won.

Fourth, the cost of holiday childcare service was divided into the overtime allowance and the service cost according to the holiday work. The teacher's holiday work allowance should be raised from 50,000 won to 60,000 won. In addition, holiday childcare service cost was calculated as 23,530 won per child.



## 부록

---

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2.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3.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입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4.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출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 부록 1.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축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출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부록 2.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2,702,920	1,891,910	18,804,240	1,567,020	15,445,680	1,287,140
2	23,316,360	1,943,030	19,348,680	1,612,390	15,900,720	1,325,060
3	24,077,400	2,006,450	19,945,560	1,662,130	16,549,800	1,379,150
4	24,798,120	2,066,510	20,571,960	1,714,330	16,894,800	1,407,900
5	25,525,320	2,127,110	21,204,000	1,767,000	17,266,560	1,438,880
6	27,126,960	2,260,580	22,661,040	1,888,420	18,050,400	1,504,200
7	28,086,720	2,340,560	23,621,400	1,968,450	18,840,240	1,570,020
8	28,713,960	2,392,830	24,053,520	2,004,460	19,149,240	1,595,770
9	29,542,200	2,461,850	24,710,280	2,059,190	19,779,840	1,648,320
10	30,378,360	2,531,530	25,421,880	2,118,490	20,391,000	1,699,250
11	31,427,760	2,618,980	26,345,760	2,195,480	21,214,080	1,767,840
12	32,345,280	2,695,440	27,139,080	2,261,590	21,933,000	1,827,750
13	33,039,120	2,753,260	27,833,280	2,319,440	22,528,080	1,877,340
14	33,783,000	2,815,250	28,452,840	2,371,070	23,147,640	1,928,970
15	34,526,640	2,877,220	29,073,000	2,422,750	23,742,960	1,978,580
16	35,476,560	2,956,380	29,948,160	2,495,680	24,543,840	2,045,320
17	36,195,480	3,016,290	30,592,800	2,549,400	25,138,800	2,094,900
18	36,988,800	3,082,400	31,237,560	2,603,130	25,758,720	2,146,560
19	37,757,400	3,146,450	31,881,960	2,656,830	26,353,800	2,196,150
20	38,426,640	3,202,220	32,526,480	2,710,540	26,973,240	2,247,770
21	39,557,880	3,296,490	33,583,320	2,798,610	27,955,800	2,329,650
22	40,301,760	3,358,480	34,227,960	2,852,330	28,526,160	2,377,180
23	40,970,880	3,414,240	34,798,440	2,899,870	29,096,160	2,424,680
24	41,640,240	3,470,020	35,442,960	2,953,580	29,641,680	2,470,140
25	42,384,000	3,532,000	36,037,680	3,003,140	30,236,520	2,519,710
26	43,078,200	3,589,850	36,632,640	3,052,720	30,781,920	2,565,160
27	43,722,840	3,643,570	37,153,320	3,096,110	31,253,160	2,604,430
28	44,392,080	3,699,340	37,723,320	3,143,610	31,798,560	2,649,880
29	45,011,880	3,750,990	38,343,120	3,195,260	32,319,000	2,693,250
30	45,705,960	3,808,830	38,888,640	3,240,720	32,864,400	2,738,700

주: 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2016a). 보육사업안내. p.306

## 부록 3.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입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부록표 IV-2-1〉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588	3,950	175,908	197,541	5,506	1,605	10,093	395,192	455
	사회복지법인	844	10,444	285,490	263,979	3,954	8,502	15,773	588,987	503
	법인단체등	890	6,982	226,729	198,304	1,340	14,459	18,164	466,868	312
	민간	207	3,847	222,296	91,172	826	9,709	3,318	331,375	6,636
	가정	58	1,831	77,045	51,950	535	3,279	1,227	135,925	9,759
	부모협동	217	3,735	86,899	34,191	324	34,245	1,474	161,085	58
	직장	422	2,732	190,950	115,256	4,514	260,746	6,283	580,902	379
	F	61.8***	13.8.9***	1,578.3***	2,397.8***	41.6***	2,011.3***	224.5***	2,013.4***	
시도	서울	314	3,374	131,744	95,055	1,540	20,399	5,308	257,733	2,087
	부산	126	2,593	163,141	83,873	711	12,157	3,206	265,807	1,028
	인천	187	3,190	155,730	72,674	706	8,556	1,914	242,957	1,178
	광주	158	3,684	159,166	90,610	215	9,928	2,370	266,131	546
	대구	104	4,557	167,696	92,155	1,251	8,401	4,357	278,522	803
	대전	97	2,232	114,914	60,779	313	8,686	840	187,860	613
	울산	80	3,387	153,283	67,174	605	14,130	1,480	240,139	547
	세종	26	3,589	129,723	83,595	464	16,003	1,237	234,637	77
	경기	120	2,278	133,202	65,229	708	9,150	1,856	212,543	5,895
	강원	246	3,187	143,280	96,650	1,303	10,183	4,055	258,904	458
	충북	423	4,800	177,700	111,317	2,261	10,685	4,951	312,136	489
	충남	157	3,952	154,627	90,502	1,282	11,507	5,242	267,269	1,174
	전북	340	2,824	144,157	87,874	603	11,151	2,578	249,527	617
	전남	472	5,082	186,723	126,058	1,933	14,060	6,545	340,873	424
	경북	70	2,387	143,132	87,265	1,535	10,080	3,273	247,741	847
경남	67	2,416	133,366	69,678	798	12,127	2,554	221,006	1,181	
제주	300	4,325	150,393	106,731	533	15,324	2,054	279,659	138	
F	6.8***	11.5***	17.3***	61.4***	2.8***	4.4***	15.1***	27.8***		
지역 규모	대도시	193	3,287	146,094	83,014	928	13,391	3,355	250,262	6,532
	중소도시	104	2,356	126,909	65,816	691	9,064	2,204	207,144	8,228
	농어촌	290	3,895	179,634	107,246	1,675	13,376	4,369	310,487	3,342
	F	25.7***	51.6***	216.5***	481.4***	13.8***	12.5***	36.5***	334.0***	
전체	170	2,976	143,566	79,671	958	11,422	3,019	241,782	18,102	
정원 규모	16~20인	62	1,947	80,688	54,183	622	3,497	1,298	142,297	8,406
	46~54인	261	3,270	167,027	91,826	1,042	27,623	3,367	294,416	1,068
	73~81인	438	6,121	244,437	136,726	2,266	26,600	7,932	424,521	514
	93~101인	513	6,503	302,714	167,712	2,268	20,046	8,752	508,508	609
	120~128인	297	8,000	380,648	159,005	2,851	38,981	7,395	597,178	145
	138~146인	362	9,981	447,368	203,243	1,610	44,274	14,670	721,508	133
	165인 이	480	9,708	631,190	220,984	4,529	74,635	15,711	957,238	362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수
상									
F	32.4***	132.2***	8,576.2***	1,484.4***	11.0***	124.3***	114.8***	5,836.8***	
전체	142	2,934	134,362	76,179	993	10,976	2,903	228,490	11,237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01$

〈부록표 IV-2-2〉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수
국공립	49	329	14,659	16,462	459	134	841	32,933	455
사회복지법인	70	870	23,791	21,998	330	708	1,314	49,082	503
법인단체등	74	582	18,894	16,525	112	1,205	1,514	38,906	312
민간	17	321	18,525	7,598	69	809	276	27,615	6,636
가정	5	153	6,420	4,329	45	273	102	11,327	9,759
부모협동	18	311	7,242	2,849	27	2,854	123	13,424	58
직장	35	228	15,912	9,605	376	21,729	524	48,408	379
F	61.8***	138.9***	1,578.3***	2,397.8***	41.6***	2,011.3***	2,245***	20,134***	
서울	26	281	10,979	7,921	128	1,700	442	21,478	2,087
부산	11	216	13,595	6,989	59	1,013	267	22,151	1,028
인천	16	266	12,978	6,056	59	713	159	20,246	1,178
광주	13	307	13,264	7,551	18	827	197	22,178	546
대구	9	380	13,975	7,680	104	700	363	23,210	803
대전	8	186	9,576	5,065	26	724	70	15,655	613
울산	7	282	12,774	5,598	50	1,177	123	20,012	547
세종	2	299	10,810	6,966	39	1,334	103	19,553	77
경기	10	190	11,100	5,436	59	763	155	17,712	5,895
강원	20	266	11,940	8,054	109	849	338	21,575	458
충북	35	400	14,808	9,276	188	890	413	26,011	489
충남	13	329	12,886	7,542	107	959	437	22,272	1,174
전북	28	235	12,013	7,323	50	929	215	20,794	617
전남	39	423	15,560	10,505	161	1,172	545	28,406	424
경북	6	199	11,928	7,272	128	840	273	20,645	847
경남	6	201	11,114	5,806	66	1,011	213	18,417	1,181
제주	25	360	12,533	8,894	44	1,277	171	23,305	138
F	6.8***	11.5***	17.3***	61.4***	2.8***	4.4***	15.1***	27.8***	
대도시	16	274	12,175	6,918	77	1,116	280	20,855	6,532
중소도시	9	196	10,576	5,485	58	755	184	17,262	8,228
농어촌	24	325	14,970	8,937	140	1,115	364	25,874	3,342
F	25.7***	51.6***	216.5***	481.4***	13.8***	12.5***	36.5***	334.0***	
전체	14	248	11,964	6,639	80	952	252	20,148	18,102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정원 규모	16~20인	5	162	6,724	4,515	52	291	108	11,858	8,406
	46~54인	22	273	13,919	7,652	87	2,302	281	24,535	1,068
	73~81인	37	510	20,370	11,394	189	2,217	661	35,377	514
	93~101인	43	542	25,226	13,976	189	1,670	729	42,376	609
	120~128인	25	667	31,721	13,250	238	3,248	616	49,765	145
	138~146인	30	832	37,281	16,937	134	3,689	1,223	60,126	133
	165인 이상	40	809	52,599	18,415	377	6,220	1,309	79,770	362
	F	32.4***	132.2***	8,576.2***	1,484.4***	11.0***	124.3***	114.8***	5,836.8***	
	전체	12	245	11,197	6,348	83	915	242	19,041	11,237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01$

<부록표 IV-2-3>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1,115	7,715	312,147	402,385	14,130	3,848	19,482	760,822	455
	사회복지법인	1,270	12,000	343,936	354,308	6,519	13,704	17,769	749,505	503
	법인단체등	1,384	11,817	336,355	348,965	2,494	15,710	24,945	741,670	312
	민간	376	7,588	410,286	184,970	1,704	21,594	4,959	631,478	6,636
	가정	339	11,311	483,397	324,864	3,374	22,726	7,337	853,348	9,759
	부모협동	527	17,972	324,957	128,833	1,500	110,032	6,866	590,685	58
	직장	764	11,292	298,583	211,620	7,864	441,904	10,753	982,780	379
	F	13.4***	10.2***	77.4***	327.3***	46.6***	1,519.3***	110.1***	113.2***	
시도	서울	843	10,147	400,092	328,953	5,337	39,162	14,675	799,208	2,087
	부산	273	6,949	418,737	236,113	2,474	30,069	5,317	699,932	1,028
	인천	324	9,135	468,783	263,409	2,855	24,471	5,098	774,075	1,178
	광주	387	12,042	493,724	304,281	554	34,381	4,765	850,134	546
	대구	254	13,287	460,647	255,380	3,823	27,712	6,950	768,052	803
	대전	366	10,626	482,954	282,949	1,562	36,250	3,137	817,843	613
	울산	204	9,162	394,095	196,471	1,984	36,774	3,559	642,248	547
	세종	111	16,930	426,602	268,052	1,958	36,195	5,047	754,894	77
	경기	371	8,492	444,940	254,461	2,705	26,810	4,761	742,539	5,895
	강원	713	12,647	419,877	292,286	2,603	35,024	7,574	770,724	458
	충북	535	11,000	414,236	273,192	4,280	22,386	9,540	735,169	489
	충남	416	17,379	482,490	321,517	5,749	30,817	17,830	876,199	1,174
	전북	629	8,840	450,994	290,262	1,750	38,372	5,898	796,745	617
	전남	993	11,119	426,983	309,191	4,617	27,068	10,569	790,541	424
	경북	225	7,335	451,754	299,168	2,472	33,216	8,180	802,350	847
	경남	162	9,259	434,012	252,106	3,283	29,426	6,104	734,353	1,181
	제주	498	8,627	374,997	268,627	1,379	40,740	4,668	699,537	138
	F	4.0***	6.8***	7.5***	22.9***	6.2***	2.6***	52.0***	8.2***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가)</sup>	기관수	
지역 규모	대도시	478	10,080	437,672	279,820	3,293	32,910	8,104	772,357	6,532
	중소도시	325	9,165	450,444	265,489	2,863	27,411	6,293	761,989	8,228
	농어촌	573	11,383	426,984	282,298	3,806	33,507	8,935	767,486	3,342
	F	7.0**	5.7**	6.9**	10.0***	3.7*	6.7**	26.0***	0.6	
정원 규모	전체	426	9,905	441,504	273,763	3,192	30,521	7,434	766,745	18,102
	16~20인	336	11,456	473,552	315,191	3,552	22,069	7,224	833,380	8,406
	46~54인	528	9,116	386,344	212,704	2,109	67,758	7,693	686,253	1,068
	73~81인	677	8,190	350,571	197,035	3,405	41,281	10,387	611,545	514
	93~101인	590	7,862	342,070	193,436	2,587	23,537	9,714	579,796	609
	120~128인	275	6,717	344,688	145,259	4,114	33,836	6,139	541,029	145
	138~146인	260	7,457	343,856	153,986	1,236	32,600	10,754	550,149	133
	165인 이상	269	5,397	357,631	128,987	3,431	34,844	7,919	538,477	362
	F	1.7	4.5***	44.2***	123.0***	1.7	38.6***	3.6**	56.2***	
	전체	380	10,586	445,580	283,348	3,332	28,058	7,598	778,881	11,237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4>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33,312	588	3,950	175,908	197,541	5,506	1,605	10,093	428,504	455
	사회복지법인	70,612	844	10,444	285,490	263,979	3,954	8,502	15,773	659,598	503
	법인단체등	56,554	890	6,982	226,729	198,304	1,340	14,459	18,164	523,422	312
	민간	77,093	207	3,847	222,296	91,172	826	9,709	3,318	408,468	6,636
	가정	10,261	58	1,831	77,045	51,950	535	3,279	1,227	146,186	9,759
	부모협동	6,121	217	3,735	86,899	34,191	324	34,245	1,474	167,206	58
	직장	25,354	422	2,732	190,950	115,256	4,514	260,746	6,283	606,255	379
	F	11414***	61.8***	138.9***	15783***	23978***	41.6***	20113***	224.5***	18249***	
시도	서울	31,140	314	3,374	131,744	95,055	1,540	20,399	5,308	288,873	2,087
	부산	37,172	126	2,593	163,141	83,873	711	12,157	3,206	302,979	1,028
	인천	46,500	187	3,190	155,730	72,674	706	8,556	1,914	289,457	1,178
	광주	31,312	158	3,684	159,166	90,610	215	9,928	2,370	297,443	546
	대구	36,040	104	4,557	167,696	92,155	1,251	8,401	4,357	314,561	803
	대전	26,357	97	2,232	114,914	60,779	313	8,686	840	214,217	613
	울산	36,157	80	3,387	153,283	67,174	605	14,130	1,480	276,296	547
	세종	25,835	26	3,589	129,723	83,595	464	16,003	1,237	260,472	77
	경기	46,438	120	2,278	133,202	65,229	708	9,150	1,856	258,981	5,895
	강원	24,965	246	3,187	143,280	96,650	1,303	10,183	4,055	283,869	458
	충북	41,558	423	4,800	177,700	111,317	2,261	10,685	4,951	353,694	489
	충남	44,531	157	3,952	154,627	90,502	1,282	11,507	5,242	311,800	1,174
	전북	31,647	340	2,824	144,157	87,874	603	11,151	2,578	281,174	617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전남	36,021	472	5,082	186,723	126,058	1,933	14,060	6,545	376,894	424
경북	23,314	70	2,387	143,132	87,265	1,535	10,080	3,273	271,055	847
경남	28,007	67	2,416	133,366	69,678	798	12,127	2,554	249,013	1,181
제주	19,343	300	4,325	150,393	106,731	533	15,324	2,054	299,002	138
F	21.2***	6.8***	11.5***	17.3***	61.4***	2.8***	4.4***	15.1***	16.5***	
지역 규모										
대도시	35,175	193	3,287	146,094	83,014	928	13,391	3,355	285,437	6,532
중소도시	35,793	104	2,356	126,909	65,816	691	9,064	2,204	242,936	8,228
농어촌	49,596	290	3,895	179,634	107,246	1,675	13,376	4,369	360,083	3,342
F	73.6***	25.7***	51.6***	216.5***	481.4***	13.8***	12.5***	36.5***	271.4***	
전체	38,118	170	2,976	143,566	79,671	958	11,422	3,019	279,900	18,102
정원 규모										
16~20인	11,164	62	1,947	80,688	54,183	622	3,497	1,298	153,461	8,406
46~54인	46,702	261	3,270	167,027	91,826	1,042	27,623	3,367	341,118	1,068
73~81인	77,261	438	6,121	244,437	136,726	2,266	26,600	7,932	501,782	514
93~101인	102,180	513	6,503	302,714	167,712	2,268	20,046	8,752	610,689	609
120~128인	139,860	297	8,000	380,648	159,005	2,851	38,981	7,395	737,039	145
138~146인	163,969	362	9,981	447,368	203,243	1,610	44,274	14,670	885,478	133
165인 이상	260,523	480	9,708	631,190	220,984	4,529	74,635	15,711	1,217,761	362
F	3,677.3	32.4***	132.2***	857.2***	1,484.4***	11.0***	124.3***	114.8***	7,474.8***	
전체	34,000	142	2,934	134,362	76,179	993	10,976	2,903	262,490	11,237

\*\*\*  $p < .001$ 

## 〈부록표 IV-2-5〉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국공립	2,776	49	329	14,659	16,462	459	134	841	35,709	455
사회복지법인	5,884	70	870	23,791	21,998	330	708	1,314	54,967	503
법인단체등	4,713	74	582	18,894	16,525	112	1,205	1,514	43,618	312
시설 유형										
민간	6,424	17	321	18,525	7,598	69	809	276	34,039	6,636
가정	855	5	153	6,420	4,329	45	273	102	12,182	9,759
부모협동	510	18	311	7,242	2,849	27	2,854	123	13,934	58
직장	2,113	35	228	15,912	9,605	376	21,729	524	50,521	379
F	1,141.4***	61.8***	138.9***	1,583***	2,378***	41.6***	2,011.3***	224.5***	18,249***	
시도										
서울	2,595	26	281	10,979	7,921	128	1,700	442	24,073	2,087
부산	3,098	11	216	13,595	6,989	59	1,013	267	25,248	1,028
인천	3,875	16	266	12,978	6,056	59	713	159	24,121	1,178
광주	2,609	13	307	13,264	7,551	18	827	197	24,787	546
대구	3,003	9	380	13,975	7,680	104	700	363	26,213	803
대전	2,196	8	186	9,576	5,065	26	724	70	17,851	613
울산	3,013	7	282	12,774	5,598	50	1,177	123	23,025	547
세종	2,153	2	299	10,810	6,966	39	1,334	103	21,706	77
경기	3,870	10	190	11,100	5,436	59	763	155	21,582	5,895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강원	2,080	20	266	11,940	8,054	109	849	338	23,656	458	
충북	3,463	35	400	14,808	9,276	188	890	413	29,474	489	
충남	3,711	13	329	12,886	7,542	107	959	437	25,983	1,174	
전북	2,637	28	235	12,013	7,323	50	929	215	23,431	617	
전남	3,002	39	423	15,560	10,505	161	1,172	545	31,408	424	
경북	1,943	6	199	11,928	7,272	128	840	273	22,588	847	
경남	2,334	6	201	11,114	5,806	66	1,011	213	20,751	1,181	
제주	1,612	25	360	12,533	8,894	44	1,277	171	24,917	138	
F	21.2***	6.8***	11.5***	17.3***	61.4***	2.8***	4.4***	15.1***	16.5***		
지역	대도시	2,931	16	274	12,175	6,918	77	1,116	280	23,786	6,532
규모	중소도시	2,983	9	196	10,576	5,485	58	755	184	20,245	8,228
	농어촌	4,133	24	325	14,970	8,937	140	1,115	364	30,007	3,342
F	73.6***	25.7***	51.6***	216.5***	481.4***	13.8***	12.5***	36.5***	271.4***		
전체	3,177	14	248	11,964	6,639	80	952	252	23,325	18,102	
16~20인	930	5	162	6,724	4,515	52	291	108	12,788	8,406	
46~54인	3,892	22	273	13,919	7,652	87	2,302	281	28,426	1,068	
73~81인	6,438	37	510	20,370	11,394	189	2,217	661	41,815	514	
정원	93~101인	8,515	43	542	25,226	13,976	189	1,670	729	50,891	609
규모	120~128인	11,655	25	667	31,721	13,250	238	3,248	616	61,420	145
	138~146인	13,664	30	832	37,281	16,937	134	3,689	1,223	73,790	133
	165인 이상	21,710	40	809	52,599	18,415	377	6,220	1,309	101,480	362
F	3,677.3***	32.4***	132.2***	8,576.2***	1,484.4***	11.0***	124.3***	114.8***	7,474.8***		
전체	2,833	12	245	11,197	6,348	83	915	242	21,874	11,237	

\*\*\*  $p < .001$

<부록표 IV-2-6>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국공립	50,123	1,115	7,715	312,147	402,385	14,130	3,848	19,482	810,945	455	
사회복지법인	75,915	1,270	12,000	343,936	354,308	6,519	13,704	17,769	825,420	503	
법인단체등	76,348	1,384	11,817	336,355	348,965	2,494	15,710	24,945	818,017	312	
시설	민간	122,548	376	7,588	410,286	184,970	1,704	21,594	4,959	754,027	6,636
유형	가정	60,941	339	11,311	483,397	324,864	3,374	22,726	7,337	914,289	9,759
	부모협동	22,006	527	17,972	324,957	128,833	1,500	110,032	6,866	612,691	58
	직장	35,844	764	11,292	298,583	211,620	7,864	441,904	10,753	1,018,624	379
F	240.1***	13.4***	10.2***	77.4***	327.3***	46.6***	151.93***	110.1***	49.6***		
서울	62,384	843	10,147	400,092	328,953	5,337	39,162	14,675	861,592	2,087	
부산	71,012	273	6,949	418,737	236,113	2,474	30,069	5,317	770,943	1,028	
인cheon	104,769	324	9,135	468,783	263,409	2,855	24,471	5,098	878,844	1,178	
광주	60,024	387	12,042	493,724	304,281	554	34,381	4,765	910,157	546	
대구	71,059	254	13,287	460,647	255,380	3,823	27,712	6,950	839,111	803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대전	86,282	366	10,626	482,954	282,949	1,562	36,250	3,137	904,126	613	
울산	69,064	204	9,162	394,095	196,471	1,984	36,774	3,559	711,312	547	
세종	69,762	111	16,930	426,602	268,052	1,958	36,195	5,047	824,656	77	
경기	111,832	371	8,492	444,940	254,461	2,705	26,810	4,761	854,371	5,895	
강원	52,786	713	12,647	419,877	292,286	2,603	35,024	7,574	823,510	458	
충북	62,546	535	11,000	414,236	273,192	4,280	22,386	9,540	797,715	489	
충남	93,354	416	17,379	482,490	321,517	5,749	30,817	17,830	969,553	1,174	
전북	56,875	629	8,840	450,994	290,262	1,750	38,372	5,898	853,619	617	
전남	46,788	993	11,119	426,983	309,191	4,617	27,068	10,569	837,329	424	
경북	48,404	225	7,335	451,754	299,168	2,472	33,216	8,180	850,753	847	
경남	60,798	162	9,259	434,012	252,106	3,283	29,426	6,104	795,151	1,181	
제주	27,550	498	8,627	374,997	268,627	1,379	40,740	4,668	727,087	138	
F	56.4***	4.0***	6.8***	7.5***	22.9***	6.2***	2.6***	52.0***	7.3***		
대도시	74,947	478	10,080	437,672	279,820	3,293	32,910	8,104	847,304	6,532	
중소도시	90,683	325	9,165	450,444	265,489	2,863	27,411	6,293	852,672	8,228	
농어촌	81,370	573	11,383	426,984	282,298	3,806	33,507	8,935	848,856	3,342	
F	36.7**	7.0**	5.7**	6.9**	10.0***	3.7*	6.7**	26.0***	0.1		
전체	83,285	426	9,905	441,504	273,763	3,192	30,521	7,434	850,030	18,102	
16~20인	63,667	336	11,456	473,552	315,191	3,552	22,069	7,224	897,047	8,406	
46~54인	108,288	528	9,116	386,344	212,704	2,109	67,758	7,693	794,542	1,068	
73~81인	109,437	677	8,190	350,571	197,035	3,405	41,281	10,387	720,982	514	
정원	93~101인	111,493	590	7,862	342,070	193,436	2,587	23,537	9,714	691,289	609
규모	120~128인	123,057	275	6,717	344,688	145,259	4,114	33,836	6,139	664,086	145
138~146인	124,126	260	7,457	343,856	153,986	1,236	32,600	10,754	674,275	133	
165인 이상	145,308	269	5,397	357,631	128,987	3,431	34,844	7,919	683,785	362	
F	94.9***	1.7	4.5***	44.2***	123.0***	1.7	38.6***	3.6**	26.6***		
전체	76,706	380	10,586	445,580	283,348	3,332	28,058	7,598	855,587	11,237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7〉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75,908	165,385	4,315	27,842	0	5,506	16,237	395,192	455
사회복지법인	285,490	218,468	2,219	43,291	0	3,954	35,563	588,987	503
법인단체등	226,729	154,953	7,715	35,632	4	1,340	40,495	466,868	312
민간	222,296	6,467	53,667	31,037	2	826	17,080	331,375	6,636
가정	77,045	4,306	43,788	3,853	2	535	6,395	135,925	9,759
부모협동	86,899	4,963	17,289	11,753	186	324	39,671	161,085	58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직장	190,950	63,449	1,071	35,100	15,635	4,514	270,182	580,902	379
F	1,578.3***	6,907.4***	1,162.0***	829.9***	112.5***	41.6***	1,855.5***	2,034.4***	
서울	131,744	30,257	43,758	20,589	451	1,540	29,395	257,733	2,087
부산	163,141	20,866	48,694	14,312	0	711	18,082	265,807	1,028
인천	155,730	9,412	47,875	14,881	506	706	13,847	242,957	1,178
광주	159,166	23,520	52,829	14,255	5	215	16,140	266,131	546
대구	167,696	29,516	47,454	15,177	8	1,251	17,419	278,522	803
대전	114,914	6,383	42,925	10,911	560	313	11,854	187,860	613
울산	153,283	4,837	45,065	17,270	2	605	19,077	240,139	547
세종	129,723	14,965	49,958	12,103	6,569	464	20,854	234,637	77
경기도	133,202	8,598	42,532	13,749	351	708	13,404	212,543	5,895
강원	143,280	41,899	33,066	21,305	380	1,303	17,671	258,904	458
충북	177,700	39,891	40,396	31,030	0	2,261	20,859	312,136	489
충남	154,627	26,140	41,691	22,169	502	1,282	20,857	267,269	1,174
전북	144,157	30,189	40,652	17,030	3	603	16,893	249,527	617
전남	186,723	61,223	39,126	25,709	0	1,933	26,159	340,873	424
경북	143,132	19,416	45,529	22,320	0	1,535	15,810	247,741	847
경남	133,366	14,701	41,979	12,995	2	798	17,164	221,006	1,181
제주	150,393	31,612	46,623	23,154	5,342	533	22,003	279,659	138
F	17.3***	56.8***	18.9***	23.9***	3.3***	2.8***	8.3***	27.8***	
대도시	146,094	20,262	46,311	16,152	290	928	20,226	250,262	6,532
중소도시	126,909	9,482	43,115	12,884	334	691	13,728	207,144	8,228
농어촌	179,634	39,614	39,826	27,408	397	1,675	21,931	310,487	3,342
F	216.5***	361.4***	73.5***	280.2***	0.1	13.8***	31.4***	334.0***	
전체	143,566	18,935	43,661	16,745	330	958	17,587	241,782	18,102
16~20인	80,688	4,906	45,170	4,046	61	622	6,804	142,297	8,406
46~54인	167,027	29,693	41,293	20,219	620	1,042	34,521	294,416	1,068
73~81인	244,437	61,986	36,148	38,579	14	2,266	41,091	424,521	514
93~101인	302,714	72,713	38,509	56,328	163	2,268	35,814	508,508	609
120~128인	380,648	50,711	48,523	59,771	0	2,851	54,674	597,178	145
138~146인	447,368	79,282	50,771	73,190	0	1,610	69,287	721,508	133
165인 이상	631,190	48,756	67,140	98,381	6,708	4,529	100,535	957,238	362
F	8,576.2***	389.1***	78.0***	2,248.5***	15.4***	11.0***	211.8***	583.68**	
전체	134,362	16,432	44,845	14,573	330	993	16,956	228,49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01$

〈부록표 IV-2-8〉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4,659	13,782	360	2,320	0	459	1,353	32,933	455	
사회복지법인	23,791	18,206	185	3,608	0	330	2,964	49,082	503	
법인단체등	18,894	12,913	643	2,969	0	112	3,375	38,906	312	
시설 유형	민간	18,525	539	4,472	2,586	0	69	1,423	27,615	6,636
	가정	6,420	359	3,649	321	0	45	533	11,327	9,759
	부모협동	7,242	414	1,441	979	16	27	3,306	13,424	58
직장	15,912	5,287	89	2,925	1,303	376	22,515	48,408	379	
F	15,783 <sup>***</sup>	6,907.4 <sup>***</sup>	1,162.0 <sup>***</sup>	829.9 <sup>***</sup>	112.5 <sup>***</sup>	41.6 <sup>***</sup>	185.5 <sup>***</sup>	203.4 <sup>***</sup>		
시도	서울	10,979	2,521	3,647	1,716	38	128	2,450	21,478	2,087
	부산	13,595	1,739	4,058	1,193	0	59	1,507	22,151	1,028
	인천	12,978	784	3,990	1,240	42	59	1,154	20,246	1,178
	광주	13,264	1,960	4,402	1,188	0	18	1,345	22,178	546
	대구	13,975	2,460	3,955	1,265	1	104	1,452	23,210	803
	대전	9,576	532	3,577	909	47	26	988	15,655	613
	울산	12,774	403	3,755	1,439	0	50	1,590	20,012	547
	세종	10,810	1,247	4,163	1,009	547	39	1,738	19,553	77
	경기	11,100	716	3,544	1,146	29	59	1,117	17,712	5,895
	강원	11,940	3,492	2,755	1,775	32	109	1,473	21,575	458
	충북	14,808	3,324	3,366	2,586	0	188	1,738	26,011	489
	충남	12,886	2,178	3,474	1,847	42	107	1,738	22,272	1,174
	전북	12,013	2,516	3,388	1,419	0	50	1,408	20,794	617
	전남	15,560	5,102	3,260	2,142	0	161	2,180	28,406	424
	경북	11,928	1,618	3,794	1,860	0	128	1,317	20,645	847
	경남	11,114	1,225	3,498	1,083	0	66	1,430	18,417	1,181
	제주	12,533	2,634	3,885	1,929	445	44	1,834	23,305	138
F	17.3 <sup>***</sup>	56.8 <sup>***</sup>	18.9 <sup>***</sup>	23.9 <sup>***</sup>	3.3 <sup>***</sup>	2.8 <sup>***</sup>	8.3 <sup>***</sup>	27.8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12,175	1,688	3,859	1,346	24	77	1,685	20,855	6,532
	중소도시	10,576	790	3,593	1,074	28	58	1,144	17,262	8,228
	농어촌	14,970	3,301	3,319	2,284	33	140	1,828	25,874	3,342
F	216.5 <sup>***</sup>	361.4 <sup>***</sup>	73.5 <sup>***</sup>	280.2 <sup>***</sup>	0.1	13.8 <sup>***</sup>	31.4 <sup>***</sup>	334 <sup>***</sup>		
전체	11,964	1,578	3,638	1,395	27	80	1,466	20,148	18,102	
정원 규모	16~20인	6,724	409	3,764	337	5	52	567	11,858	8,406
	46~54인	13,919	2,474	3,441	1,685	52	87	2,877	24,535	1,068
	73~81인	20,370	5,165	3,012	3,215	1	189	3,424	35,377	514
	93~101인	25,226	6,059	3,209	4,694	14	189	2,984	42,376	609
	120~128인	31,721	4,226	4,044	4,981	0	238	4,556	49,765	145
138~146인	37,281	6,607	4,231	6,099	0	134	5,774	60,126	133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165인 이상	52,599	4,063	5,595	8,198	559	377	8,378	79,770	362
F	8,576.2 <sup>***</sup>	389.1 <sup>***</sup>	78.0 <sup>***</sup>	2,248.5 <sup>***</sup>	15.4 <sup>***</sup>	11.0 <sup>***</sup>	211.8 <sup>***</sup>	583.6 <sup>***</sup>	
전체	11,197	1,369	3,737	1,214	28	83	1,413	19,041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01$

〈부록표 IV-2-9〉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312,147	340,570	13,526	48,289	0	14,130	32,160	760,822	455	
사회복지법인	343,936	298,807	2,954	52,547	0	6,519	44,742	749,505	503	
법인단체등	336,355	288,309	10,141	50,511	5	2,494	53,856	741,670	312	
시설 유형	민간	410,286	12,552	125,990	46,425	3	1,704	34,517	631,478	6,636
	가정	483,397	24,725	276,897	23,228	13	3,374	41,714	853,348	9,759
	부모협동	324,957	12,990	67,170	47,896	776	1,500	135,396	590,685	58
	직장	298,583	132,232	3,723	45,624	30,041	7,864	464,713	982,780	379
F	77.4 <sup>***</sup>	2,430.8 <sup>***</sup>	878.9 <sup>***</sup>	229.7 <sup>***</sup>	105.7 <sup>***</sup>	46.6 <sup>***</sup>	1,179.1 <sup>***</sup>	1,132.2 <sup>***</sup>		
서울	400,092	86,297	184,459	57,059	1,138	5,337	64,827	799,208	2,087	
부산	418,737	32,581	177,785	25,747	0	2,474	42,608	699,982	1,028	
인천	468,783	26,610	210,698	24,631	1,471	2,855	39,028	774,075	1,178	
광주	493,724	35,831	245,119	23,303	29	554	51,575	850,134	546	
대구	460,647	41,286	187,739	26,342	12	3,823	48,203	768,052	803	
대전	482,954	25,884	228,172	26,305	2,588	1,562	50,379	817,843	613	
울산	394,095	9,281	159,717	27,464	9	1,984	49,698	642,248	547	
세종	426,602	25,400	211,785	26,343	4,524	1,958	58,283	754,894	77	
시도	경기	444,940	22,168	203,012	28,856	424	2,705	40,434	742,539	5,895
	강원	419,877	86,068	162,267	42,859	1,092	2,603	55,958	770,724	458
	충북	414,236	63,801	160,480	48,911	0	4,280	43,462	735,169	489
	충남	482,490	73,437	206,165	40,345	1,571	5,749	66,442	876,199	1,174
	전북	450,994	58,658	200,542	31,049	14	1,750	53,738	796,745	617
	전남	426,983	111,495	157,510	40,186	0	4,617	49,750	790,541	424
	경북	451,754	46,049	199,067	54,052	0	2,472	48,956	802,350	847
	경남	434,012	29,332	197,764	25,001	8	3,283	44,951	734,353	1,181
	제주	374,997	39,735	189,034	35,171	4,686	1,379	54,534	699,537	138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F	7.5***	62.5***	9.6***	75.1***	1.3	6.2***	7.3***	8.2***		
지역	대도시	437,672	46,948	196,846	35,149	876	3,293	51,572	772,357	6,532
	중소도시	450,444	24,006	212,508	28,567	409	2,863	43,194	761,989	8,228
규모	농어촌	426,984	79,738	155,628	46,185	746	3,806	54,398	767,486	3,342
F	6.9**	302.8***	101.8***	190.1***	0.8	3.7*	15.3***	0.6		
전체	441,504	42,574	196,355	34,195	640	3,192	48,285	766,745	18,102	
청원 규모	16~20인	473,552	26,319	265,691	22,817	365	3,552	41,085	833,380	8,406
	46~54인	386,344	68,635	97,946	44,922	1,201	2,109	85,096	686,253	1,068
	73~81인	350,571	89,350	54,715	52,955	16	3,405	60,534	611,545	514
	93~101인	342,070	87,098	45,322	60,746	269	2,587	41,703	579,796	609
	120~128인	344,688	48,626	46,108	50,525	0	4,114	46,967	541,029	145
	138~146인	343,856	57,741	43,237	53,008	0	1,236	51,071	550,149	133
165인 이상	357,631	30,282	41,755	53,215	3,735	3,431	48,428	538,477	362	
F	44.2***	90.7***	475.1***	171.9***	1.5	1.7	27.3***	56.2***		
전체	445,580	37,305	215,474	30,046	523	3,332	46,622	778,881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0〉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6,553	16,759	175,908	165,385	4,315	27,842	0	5,506	16,237	428,504	455	
사회복지법인	28,826	41,785	285,490	218,468	2,219	43,291	0	3,954	35,563	659,598	503	
법인단체등	28,254	28,300	226,729	154,953	7,715	35,632	4	1,340	40,495	523,422	312	
시설 유형	민간	38,473	38,620	222,296	6,467	53,667	31,037	2	826	17,080	408,468	6,636
	가정	5,519	4,742	77,045	4,306	43,788	3,853	2	535	6,395	146,186	9,759
	부모협동	3,272	2,849	86,899	4,963	17,289	11,753	186	324	39,671	167,206	58
	직장	10,038	15,315	190,950	63,449	1,071	35,100	15,635	4,514	270,182	606,255	379
F	795.0***	1,210.4***	1,578.3***	690.74***	1,162.0***	829.9***	112.5***	41.6***	185.5***	2,013.4***		
서울	12,096	19,044	131,744	30,257	43,758	20,589	451	1,540	29,395	288,873	2,087	
부산	13,274	23,898	163,141	20,866	48,694	14,312	0	711	18,082	302,979	1,028	
시도	인천	29,356	17,144	155,730	9,412	47,875	14,881	506	706	13,847	289,457	1,178
	광주	12,845	18,467	159,166	23,520	52,829	14,255	5	215	16,140	297,443	546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자금				
대구	12,502	23,538	167,696	29,516	47,454	15,177	8	1,251	17,419	314,561	803
대전	12,314	14,043	114,914	6,383	42,925	10,911	560	313	11,854	214,217	613
울산	8,040	28,117	153,283	4,837	45,065	17,270	2	605	19,077	276,296	547
세종	11,796	14,039	129,723	14,965	49,958	12,103	6,569	464	20,854	260,472	77
경기	28,243	18,195	133,202	8,598	42,532	13,749	351	708	13,404	258,981	5885
강원	8,487	16,477	143,280	41,899	33,066	21,305	380	1,303	17,671	283,869	458
충북	13,483	28,075	177,700	39,891	40,396	31,030	0	2,261	20,859	353,694	489
충남	19,942	24,590	154,627	26,140	41,691	22,169	502	1,282	20,857	311,800	1,174
전북	16,294	15,353	144,157	30,189	40,652	17,030	3	603	16,893	281,174	617
전남	13,043	22,978	186,723	61,223	39,126	25,709	0	1,933	26,159	376,894	424
경북	10,015	13,299	143,132	19,416	45,529	22,320	0	1,535	15,810	271,055	847
경남	12,961	15,047	133,366	14,701	41,979	12,995	2	798	17,164	249,013	1,181
제주	6,364	12,978	150,398	31,612	46,623	23,154	5,342	533	22,003	299,002	138
F	64.1***	17.7***	17.3***	56.8***	18.9***	23.9***	3.3***	2.8***	8.3***	27.8***	
대도시	15,230	19,945	146,094	20,262	46,311	16,152	290	928	20,226	285,437	6532
지역 중소도시	19,581	16,211	126,909	9,482	43,115	12,884	334	691	13,728	242,936	8,228
규모 농어촌	24,959	24,636	179,634	39,614	39,826	27,408	397	1,675	21,931	360,083	3,342
F	92.6***	96.6***	216.5***	361.4***	73.5***	280.2***	0.1	13.8***	31.4***	334.0***	
전체	19,004	19,114	143,566	18,935	43,661	16,745	330	958	17,587	279,900	18,102
16~20인	5,991	5,173	80,688	4,906	45,170	4,046	61	622	6,804	153,461	8406
46~54인	23,377	23,325	167,027	29,693	41,293	20,219	620	1,042	34,521	341,118	1,088
73~81인	38,014	39,247	244,437	61,986	36,148	38,579	14	2,266	41,091	501,782	514
정원 93~101인	48,268	53,912	302,714	72,713	38,509	56,328	163	2,268	35,814	610,689	609
규모 120~128인	62,978	76,882	380,648	50,711	48,523	59,771	0	2,851	54,674	737,039	145
138~146인	79,847	84,122	447,368	79,282	50,771	73,190	0	1,610	69,287	885,478	133
165인 이상	132,333	128,190	631,190	48,756	67,140	98,381	6,708	4,529	100,535	1,217,761	362
F	211.75**	402.94**	857.62**	389.1***	78.0***	224.85**	15.4**	11.0**	211.8**	5,836.8**	
전체	17,079	16,921	134,362	16,432	44,845	14,573	330	993	16,956	262,49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01$



〈부록표 IV-2-11〉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379	1,397	14,659	13,782	360	2,320	0	459	1,353	35,709	455	
사회복지법인	2,402	3,482	23,791	18,206	185	3,608	0	330	2,964	54,967	503	
법인단체등	2,355	2,358	18,894	12,913	643	2,969	0	112	3,375	43,618	312	
시설 유형	민간	3,206	3,218	18,525	539	4,472	2,586	0	69	1,423	34,039	6,636
가정	460	395	6,420	359	3,649	321	0	45	533	12,182	9,759	
부모협동	273	237	7,242	414	1,441	979	16	27	3,306	13,934	58	
직장	837	1,276	15,912	5,287	89	2,925	1,303	376	22,515	50,521	379	
F	795.0 <sup>***</sup>	1,214.0 <sup>***</sup>	15,833.0 <sup>***</sup>	6,974.0 <sup>***</sup>	1,162.0 <sup>***</sup>	8,299.0 <sup>***</sup>	1,125.0 <sup>***</sup>	416.0 <sup>***</sup>	18,955.0 <sup>***</sup>	20,134.0 <sup>***</sup>		
서울	1,008	1,587	10,979	2,521	3,647	1,716	38	128	2,450	24,073	2,087	
부산	1,106	1,992	13,595	1,739	4,058	1,193	0	59	1,507	25,248	1,028	
인천	2,446	1,429	12,978	784	3,990	1,240	42	59	1,154	24,121	1,178	
광주	1,070	1,539	13,264	1,960	4,402	1,188	0	18	1,345	24,787	546	
대구	1,042	1,961	13,975	2,460	3,955	1,265	1	104	1,452	26,213	803	
대전	1,026	1,170	9,576	532	3,577	909	47	26	988	17,851	613	
울산	670	2,343	12,774	403	3,755	1,439	0	50	1,590	23,025	547	
세종	983	1,170	10,810	1,247	4,163	1,009	547	39	1,738	21,706	77	
경기도	2,354	1,516	11,100	716	3,544	1,146	29	59	1,117	21,582	5,895	
강원	707	1,373	11,940	3,492	2,755	1,775	32	109	1,473	23,656	458	
충북	1,124	2,340	14,808	3,324	3,366	2,586	0	188	1,738	29,474	489	
충남	1,662	2,049	12,886	2,178	3,474	1,847	42	107	1,738	25,983	1,174	
전북	1,358	1,279	12,013	2,516	3,388	1,419	0	50	1,408	23,431	617	
전남	1,087	1,915	15,560	5,102	3,260	2,142	0	161	2,180	31,408	424	
경북	835	1,108	11,928	1,618	3,794	1,860	0	128	1,317	22,588	847	
경남	1,080	1,254	11,114	1,225	3,498	1,083	0	66	1,430	20,751	1,181	
제주	530	1,082	12,533	2,634	3,885	1,929	445	44	1,834	24,917	138	
F	64.1 <sup>***</sup>	17.7 <sup>***</sup>	17.3 <sup>***</sup>	56.8 <sup>***</sup>	18.9 <sup>***</sup>	23.9 <sup>***</sup>	3.3 <sup>***</sup>	2.8 <sup>***</sup>	8.3 <sup>***</sup>	27.8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1,269	1,662	12,175	1,688	3,859	1,346	24	77	1,685	23,786	652
중소도시	1,632	1,351	10,576	790	3,593	1,074	28	58	1,144	20,245	828	
농어촌	2,080	2,053	14,970	3,301	3,319	2,284	33	140	1,828	30,007	3,342	
F	92.6 <sup>***</sup>	96.6 <sup>***</sup>	216.5 <sup>***</sup>	361.4 <sup>***</sup>	73.5 <sup>***</sup>	280.2 <sup>***</sup>	0.1	138.0 <sup>***</sup>	31.4 <sup>***</sup>	334.0 <sup>***</sup>		
전체	1,584	1,593	11,964	1,578	3,638	1,395	27	80	1,466	23,325	18,102	
정원 규모	16~20인	499	431	6,724	409	3,764	337	5	52	12,788	840	
46~54인	1,948	1,944	13,919	2,474	3,441	1,685	52	87	2,877	28,426	1,068	
73~81인	3,168	3,271	20,370	5,165	3,012	3,215	1	189	3,424	41,815	514	
93~101인	4,022	4,493	25,226	6,059	3,209	4,694	14	189	2,984	50,891	609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120~128인	5,248	6,407	31,721	4,226	4,044	4,981	0	238	4,556	61,420	145
138~146인	6,654	7,010	37,281	6,607	4,231	6,099	0	134	5,774	73,790	133
165인 이상	11,028	10,682	52,599	4,063	5,595	8,198	559	377	8,378	101,480	362
F	2,117 <sup>**</sup>	4,024 <sup>**</sup>	8,576 <sup>**</sup>	389.1 <sup>***</sup>	78.0 <sup>***</sup>	2,248 <sup>**</sup>	15.4 <sup>***</sup>	11.0 <sup>***</sup>	211.8 <sup>***</sup>	5,836.8 <sup>***</sup>	
전체	1,423	1,410	11,197	1,369	3,737	1,214	28	83	1,413	21,874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1, \*\*\* p < .001

〈부록표 IV-2-12〉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5,811	24,312	312,147	340,570	13,526	48,289	0	14,130	32,160	810,945	455
사회복지법인	31,999	43,916	343,936	298,807	2,954	52,547	0	6,519	44,742	825,420	503
법인단체등	38,003	38,345	336,355	288,309	10,141	50,511	5	2,494	53,856	818,017	312
시설 유형											
민간	61,534	61,015	410,286	12,552	125,990	46,425	3	1,704	34,517	754,027	6,636
가정	32,834	28,107	483,397	24,725	276,897	23,228	13	3,374	41,714	914,289	9,759
부모협동	11,193	10,813	324,957	12,990	67,170	47,896	776	1,500	135,396	612,691	58
직장	14,935	20,908	298,583	132,232	3,723	45,624	30,041	7,864	464,713	1,018,624	379
F	119 <sup>**</sup>	318 <sup>**</sup>	77.4 <sup>***</sup>	2,408 <sup>***</sup>	878.9 <sup>***</sup>	229.7 <sup>***</sup>	105.7 <sup>***</sup>	46.6 <sup>***</sup>	1,179.1 <sup>***</sup>	113.2 <sup>***</sup>	
서울	25,097	37,287	400,092	86,297	184,459	57,059	1,138	5,337	64,827	861,592	2,087
부산	25,604	45,408	418,737	32,581	177,785	25,747	0	2,474	42,608	770,943	1,028
인천	68,407	36,362	468,783	26,610	210,698	24,631	1,471	2,855	39,028	878,844	1,178
광주	24,807	35,216	498,724	35,831	245,119	23,303	29	554	51,575	910,157	546
대구	22,374	48,685	460,647	41,286	187,739	26,342	12	3,823	48,203	839,111	803
대전	39,457	46,825	482,954	25,884	228,172	26,305	2,588	1,562	50,379	904,126	613
시도											
울산	15,114	53,951	394,095	9,281	159,717	27,464	9	1,984	49,698	711,312	547
세종	33,204	36,558	426,602	25,400	211,785	26,343	4,524	1,958	58,283	824,656	77
경기	68,155	43,677	444,940	22,168	203,012	28,856	424	2,705	40,434	854,371	5,895
강원	18,175	34,611	419,877	86,068	162,267	42,859	1,092	2,603	55,958	823,510	458
충북	20,895	41,651	414,236	63,801	160,480	48,911	0	4,280	43,462	797,715	489
충남	43,248	50,106	482,490	73,437	206,165	40,345	1,571	5,749	66,442	969,553	1,174
전북	28,821	28,054	450,994	58,658	200,542	31,049	14	1,750	53,738	853,619	617

구분	필요경비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자금	
전남	19,090	27,698	426,983	111,495	157,510	40,186	0	4,617	49,750	837,329	424	
경북	20,619	27,785	451,754	46,049	199,067	54,052	0	2,472	48,956	850,753	847	
경남	27,972	32,826	434,012	29,332	197,764	25,001	8	3,283	44,951	795,151	1,181	
제주	10,894	16,656	374,997	39,735	189,034	35,171	4,686	1,379	54,534	727,087	138	
F	99.4 <sup>***</sup>	21.3 <sup>***</sup>	7.5 <sup>***</sup>	62.5 <sup>***</sup>	9.6 <sup>***</sup>	75.1 <sup>***</sup>	1.3	6.2 <sup>***</sup>	7.3 <sup>***</sup>	8.2 <sup>***</sup>		
대도시	33,354	41,592	437,672	46,948	196,846	35,149	876	3,293	51,572	847,304	6,532	
지역 중소도시	50,845	39,838	450,444	24,006	212,508	28,567	409	2,863	43,194	852,672	8,228	
규모 농어촌	41,457	39,913	426,984	79,738	155,628	46,185	746	3,806	54,398	848,856	3,342	
F	101.7 <sup>***</sup>	2.4	6.9 <sup>**</sup>	302.8 <sup>***</sup>	101.8 <sup>***</sup>	190.1 <sup>***</sup>	0.8	3.7 <sup>*</sup>	15.3 <sup>***</sup>	0.6		
전체	42,800	40,485	441,504	42,574	196,355	34,195	640	3,192	48,285	850,030	18,102	
정원 규모	16~20인	34,096	29,571	473,552	26,319	265,691	22,817	365	3,552	41,085	897,047	8,406
	46~54인	54,055	54,233	386,344	68,635	97,946	44,922	1,201	2,109	85,096	794,542	1,068
	73~81인	54,029	55,409	350,571	89,350	54,715	52,955	16	3,405	60,534	720,982	514
	93~101인	52,555	58,938	342,070	87,098	45,322	60,746	269	2,587	41,703	691,289	609
	120~128인	54,805	68,253	344,688	48,626	46,108	50,525	0	4,114	46,967	664,086	145
	138~146인	61,181	62,945	343,856	57,741	43,237	53,008	0	1,236	51,071	674,275	133
	165인 이상	74,425	70,883	357,631	30,282	41,755	53,215	3,735	3,431	48,428	683,785	362
F	56.9 <sup>***</sup>	119.0 <sup>***</sup>	44.2 <sup>***</sup>	90.7 <sup>***</sup>	475.1 <sup>***</sup>	171.9 <sup>***</sup>	1.5	1.7	27.3 <sup>***</sup>	56.2 <sup>***</sup>		
전체	39,792	36,913	445,580	37,305	215,474	30,046	523	3,332	46,622	855,587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3>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 수	
국공립	990	3,839	212,992	235,212	4,545	1,916	11,362	470,856	684	
사회복지법인	942	10,195	275,349	283,439	4,994	6,899	12,583	594,401	133	
법인단체등	904	6,052	206,867	236,793	1,533	9,702	9,006	470,855	93	
시설 유형	민간	265	4,564	224,398	127,968	811	9,435	3,961	371,402	1,263
	가정	101	2,033	79,879	71,653	1,021	3,647	1,381	159,714	1,946
	부모협동	651	2,728	209,234	101,617	0	32,333	478	347,041	3
	직장	1,425	3,262	312,872	250,600	34,406	311,079	11,247	924,892	76
F	26.5 <sup>***</sup>	50.2 <sup>***</sup>	426.8 <sup>***</sup>	585.7 <sup>***</sup>	20.4 <sup>***</sup>	246.8 <sup>***</sup>	90.6 <sup>***</sup>	546.8 <sup>***</sup>		
서울	724	3,651	169,978	166,014	5,924	13,593	8,251	368,134	917	
부산	164	2,597	161,509	115,166	985	5,765	2,909	289,096	175	
인천	151	2,877	156,183	120,324	997	30,096	3,176	313,805	145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수
광주	167	4,772	180,554	114,123	675	13,417	1,388	315,096	120
대구	154	4,856	182,922	119,850	840	4,715	2,391	315,728	208
대전	338	3,213	163,047	112,756	789	12,566	2,402	295,110	208
울산	109	3,011	117,767	82,989	1,102	3,811	1,292	210,081	56
세종	5,847	5,986	399,257	126,736	1,143	313,671	10,159	862,798	7
경기	223	2,440	142,998	113,442	1,432	10,758	3,465	274,758	1,112
강원	74	2,406	145,623	119,839	2,285	5,564	3,022	278,814	65
충북	199	4,360	162,285	133,359	2,160	6,536	4,715	313,613	148
충남	174	4,499	127,477	108,278	2,183	5,659	3,832	252,102	146
전북	539	2,842	152,132	123,474	447	6,885	2,237	288,555	236
전남	300	3,696	184,043	150,691	1,155	4,534	2,687	347,105	157
경북	62	5,141	193,170	149,662	1,643	11,736	9,256	370,670	156
경남	263	3,361	121,083	88,810	942	6,172	3,268	223,899	260
제주	1,031	9,053	213,282	181,086	1,642	6,591	5,313	417,998	82
F	7.9***	8.1***	9.4***	17.3***	1.4	7.5***	11.7***	12.9**	
지역 규모									
대도시	477	3,669	169,557	141,870	3,504	13,004	5,495	337,576	1,764
중소도시	278	2,611	142,327	109,381	1,387	10,897	3,217	270,096	1,560
농어촌	290	4,550	164,396	137,440	1,370	6,802	4,710	319,558	874
F	5.2**	26.0***	22.5***	47.9***	3.1*	1.8	16.1***	33.7**	
전체	364	3,459	158,364	128,874	2,273	10,930	4,485	308,749	4,198
정원 규모									
16~20인	111	2,208	84,616	75,619	853	3,740	1,592	168,738	1,605
46~54인	429	3,167	168,589	149,289	1,985	8,703	4,931	337,092	309
73~81인	885	5,328	246,736	209,824	2,380	7,532	9,471	482,155	195
93~101인	539	6,750	307,083	228,181	1,688	17,423	11,276	572,939	174
120~128인	1,229	9,454	393,236	258,918	630	19,880	14,184	697,530	45
138~146인	2,517	11,656	452,879	253,916	1,862	7,747	10,224	740,800	22
165인 이 상	853	8,792	642,726	352,713	24,920	219,527	24,248	1,273,777	71
F	17.2***	44.4***	2,432.2***	345.1***	10.6***	63.1***	72.4***	1,089.3***	
전체	309	3,322	149,831	119,950	1,891	12,327	4,325	291,955	2,421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4〉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sup>1)</sup>	기관수
국공립	82	320	17,749	19,601	379	160	947	39,238	684
사회복지법인	79	850	22,946	23,620	416	575	1,049	49,533	133
법인단체등	75	504	17,239	19,733	128	808	750	39,238	93
민간	22	380	18,700	10,664	68	786	330	30,950	1,263
가정	8	169	6,657	5,971	85	304	115	13,310	1,946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부모협동 직장	54 119	227 272	17,436 26,073	8,468 20,883	0 2,867	2,694 25,923	40 937	28,920 77,074	3 76
F	26.5 <sup>***</sup>	50.2 <sup>***</sup>	426.8 <sup>***</sup>	585.7 <sup>***</sup>	20.4 <sup>***</sup>	246.8 <sup>***</sup>	90.6 <sup>***</sup>	546.8 <sup>***</sup>	
서울	60	304	14,165	13,834	494	1,133	688	30,678	917
부산	14	216	13,459	9,597	82	480	242	24,091	175
인천	13	240	13,015	10,027	83	2,508	265	26,150	145
광주	14	398	15,046	9,510	56	1,118	116	26,258	120
대구	13	405	15,244	9,988	70	393	199	26,311	208
대전	28	268	13,587	9,396	66	1,047	200	24,593	208
울산	9	251	9,814	6,916	92	318	108	17,507	56
세종	487	499	33,271	10,561	95	26,139	847	71,900	7
경기	19	203	11,917	9,454	119	897	289	22,897	1,112
강원	6	200	12,135	9,987	190	464	252	23,234	65
충북	17	363	13,524	11,113	180	545	393	26,134	148
충남	15	375	10,623	9,023	182	472	319	21,008	146
전북	45	237	12,678	10,289	37	574	186	24,046	236
전남	25	308	15,337	12,558	96	378	224	28,925	157
경북	5	428	16,098	12,472	137	978	771	30,889	156
경남	22	280	10,090	7,401	79	514	272	18,658	260
제주	86	754	17,773	15,091	137	549	443	34,833	82
F	7.9 <sup>**</sup>	8.1 <sup>**</sup>	9.4 <sup>**</sup>	17.3 <sup>**</sup>	1.4	7.5 <sup>**</sup>	11.7 <sup>**</sup>	12.9 <sup>**</sup>	
대도시	40	306	14,130	11,822	292	1,084	458	28,131	1,764
중소도시	23	218	11,861	9,115	116	908	268	22,508	1,560
농어촌	24	379	13,700	11,453	114	567	392	26,630	874
F	5.2 <sup>**</sup>	26.0 <sup>***</sup>	22.5 <sup>***</sup>	47.9 <sup>***</sup>	3.1 <sup>*</sup>	1.8	16.1 <sup>***</sup>	33.7 <sup>***</sup>	
전체	30	288	13,197	10,740	189	911	374	25,729	4,198
16~20인	9	184	7,051	6,302	71	312	133	14,062	1,605
46~54인	36	264	14,049	12,441	165	725	411	28,091	309
73~81인	74	444	20,561	17,485	198	628	789	40,180	195
93~101인	45	562	25,590	19,015	141	1,452	940	47,745	174
120~128인	102	788	32,770	21,576	52	1,657	1,182	58,127	45
138~146인	210	971	37,740	21,160	155	646	852	61,733	22
165인 이상	71	733	53,560	29,393	2,077	18,294	2,021	106,148	71
F	17.2 <sup>***</sup>	44.4 <sup>***</sup>	2,432.2 <sup>***</sup>	345.1 <sup>***</sup>	10.6 <sup>***</sup>	63.1 <sup>***</sup>	72.4 <sup>***</sup>	1,089.3 <sup>***</sup>	
전체	26	277	12,486	9,996	158	1,027	360	24,330	2,421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5〉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합	기관수	
국공립	1,272	5,665	305,812	374,470	8,451	2,650	16,674	714,992	684	
사회복지법인	1,198	14,152	346,911	400,772	7,558	10,909	15,239	796,738	133	
법인단체등	1,305	11,580	340,372	421,800	4,455	16,041	10,780	806,334	93	
시설 유형	민간	456	8,570	399,602	242,361	1,718	21,368	679,691	1,263	
	가정	529	11,991	496,377	443,211	8,730	25,080	993,531	1,946	
	부모협동	1,306	8,258	668,007	397,721	0	133,788	1,137	1,210,217	3
	직장	1,434	2,889	304,950	305,427	22,739	294,788	12,774	945,001	76
F	7.1 <sup>***</sup>	11.8 <sup>***</sup>	63.4 <sup>***</sup>	88.3 <sup>***</sup>	0.4	198.1 <sup>***</sup>	32.1 <sup>***</sup>	56.0 <sup>***</sup>		
시도	서울	1,313	9,433	369,988	383,466	9,059	21,905	16,442	811,605	917
	부산	399	6,711	393,692	291,171	2,519	16,126	5,280	715,898	175
	인천	337	8,350	430,544	354,836	3,462	21,878	6,152	825,559	145
	광주	356	14,751	484,200	340,495	2,400	36,621	2,414	881,237	120
	대구	502	13,653	463,152	319,992	2,141	19,422	4,897	823,759	208
	대전	551	9,308	471,726	343,313	1,914	37,501	4,320	868,634	208
	울산	289	13,465	432,278	345,846	4,139	21,282	4,830	822,129	56
	세종	3,407	7,853	396,815	144,319	2,763	170,277	7,156	732,591	7
	경기	405	8,061	441,252	389,643	11,642	25,717	6,870	883,591	1,112
	강원	185	5,406	376,239	287,457	3,712	12,889	5,507	691,396	65
	충북	548	9,864	396,933	330,117	4,322	18,503	10,537	770,823	148
	충남	314	17,110	481,267	420,215	7,111	23,437	12,808	962,262	146
	전북	772	8,838	454,735	405,146	1,592	29,951	5,385	906,418	236
	전남	894	8,016	453,459	390,283	3,410	18,296	5,288	879,647	157
	경북	125	10,912	410,561	346,694	3,272	32,812	12,704	817,081	156
	경남	682	12,673	425,792	325,139	3,497	26,881	6,628	801,292	260
제주	1,641	15,032	429,828	374,752	3,139	12,310	8,089	844,792	82	
F	4.2 <sup>***</sup>	4.0 <sup>***</sup>	5.3 <sup>***</sup>	4.6 <sup>***</sup>	0.2	2.7 <sup>***</sup>	16.0 <sup>***</sup>	2.6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902	10,100	408,521	357,496	5,907	23,942	10,833	817,702	1,764
	중소도시	467	8,222	438,718	369,749	9,230	27,545	6,861	860,791	1,560
	농어촌	627	12,121	432,226	382,418	3,738	20,765	8,586	860,482	874
	F	7.3 <sup>**</sup>	10.4 <sup>***</sup>	6.2 <sup>**</sup>	2.8	0.4	2.1	18.8 <sup>**</sup>	3.3 <sup>*</sup>	
전체	683	9,823	424,678	367,238	6,690	24,620	8,889	842,621	4,198	
정원 규모	16~20인	559	12,057	485,513	427,563	4,455	23,770	8,403	962,320	1,605
	46~54인	798	6,613	359,466	306,760	4,008	21,932	9,393	708,970	309
	73~81인	1,150	6,759	315,059	269,393	3,011	11,984	11,360	618,715	195
	93~101인	528	7,159	338,584	244,793	1,882	23,827	10,668	627,439	174
	120~128인	882	8,125	320,775	208,564	496	16,999	11,581	567,421	45
	138~146인	1,499	10,265	335,330	185,807	1,206	7,192	6,903	548,204	22
	165인 이상	455	4,483	322,525	173,401	14,377	89,880	12,423	617,543	71
F	1.2	5.5 <sup>***</sup>	28.2 <sup>***</sup>	40.8 <sup>***</sup>	3.8 <sup>**</sup>	11.7 <sup>***</sup>	1.3 <sup>***</sup>	34.4 <sup>***</sup>		
전체	646	10,272	435,929	372,547	4,284	24,252	9,094	857,025	2,421	

주: 1)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6〉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국공립	41,551	990	3,839	212,992	235,212	4,545	1,916	11,362	512,407	684	
사회복지법인	61,536	942	10,195	275,349	283,439	4,994	6,899	12,583	655,938	133	
법인단체등	41,148	904	6,052	206,867	236,793	1,533	9,702	9,006	512,003	93	
시설 유형	민간	65,119	265	4,564	224,398	127,968	811	9,435	3,961	436,521	1,263
가정	8,639	101	2,033	79,879	71,653	1,021	3,647	1,381	168,353	1,946	
부모협동	40,582	651	2,728	209,234	101,617	0	32,333	478	387,623	3	
직장	47,262	1,425	3,262	312,872	250,600	34,406	311,079	11,247	972,154	76	
F	268.2***	7.1***	11.8***	63.4***	88.3***	0.4	198.1***	32.1***	522.1***		
서울	33,965	724	3,651	169,978	166,014	5,924	13,593	8,251	402,099	917	
부산	32,994	164	2,597	161,509	115,166	985	5,765	2,909	322,090	175	
인천	41,298	151	2,877	156,183	120,324	997	30,096	3,176	355,103	145	
광주	37,300	167	4,772	180,554	114,123	675	13,417	1,388	352,396	120	
대구	38,186	154	4,856	182,922	119,850	840	4,715	2,391	353,914	208	
대전	44,038	338	3,213	163,047	112,756	789	12,566	2,402	339,148	208	
울산	21,817	109	3,011	117,767	82,989	1,102	3,811	1,292	231,897	56	
세종	109,267	5,847	5,986	399,257	126,736	1,143	313,671	10,159	972,065	7	
경기	39,372	223	2,440	142,998	113,442	1,432	10,758	3,465	314,130	1,112	
강원	24,551	74	2,406	145,623	119,839	2,285	5,564	3,022	303,364	65	
충북	26,952	199	4,360	162,285	133,359	2,160	6,536	4,715	340,564	148	
충남	27,868	174	4,499	127,477	108,278	2,183	5,659	3,832	279,970	146	
전북	23,528	539	2,842	152,132	123,474	447	6,885	2,237	312,083	236	
전남	30,870	300	3,696	184,043	150,691	1,155	4,534	2,687	377,975	157	
경북	30,202	62	5,141	193,170	149,662	1,643	11,736	9,256	400,872	156	
경남	20,330	263	3,361	121,083	88,810	942	6,172	3,268	244,229	260	
제주	35,359	1,031	9,053	213,282	181,086	1,642	6,591	5,313	453,357	82	
F	5.9***	4.2***	4.0***	5.3***	4.6***	0.2	2.7***	16.0***	11.1***		
지역 규모	대도시	36,637	477	3,669	169,557	141,870	3,504	13,004	5,495	374,212	1,764
중소도시	32,440	278	2,611	142,327	109,381	1,387	10,897	3,217	302,536	1,560	
농어촌	32,003	290	4,550	164,396	137,440	1,370	6,802	4,710	351,560	874	
F	4.3**	7.3**	10.4***	6.2**	2.8	0.4	2.1	18.8***	29.0***		
전체	34,112	364	3,459	158,364	128,874	2,273	10,930	4,485	342,861	4,198	
청원 규모	16~20인	9,591	111	2,208	84,616	75,619	853	3,740	1,592	178,329	1,605
46~54인	37,265	429	3,167	168,589	149,289	1,985	8,703	4,931	374,357	309	
73~81인	60,123	885	5,328	246,736	209,824	2,380	7,532	9,471	542,278	195	
93~101인	87,132	539	6,750	307,083	228,181	1,688	17,423	11,276	660,071	174	
120~128인	122,640	1,229	9,454	393,236	258,918	630	19,880	14,184	820,170	45	
138~146인	172,601	2,517	11,656	452,879	253,916	1,862	7,747	10,224	913,401	22	
165인 이상	174,665	853	8,792	642,726	352,713	24,920	219,527	24,248	1,448,442	71	
F	626.5***	1.2	5.5***	28.2***	40.8***	3.8**	11.7***	1.3***	1,452.4***		
전체	31,190	309	3,322	149,831	119,950	1,891	12,327	4,325	323,145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7〉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국공립	3,463	82	320	17,749	19,601	379	160	947	42,701	684	
사회복지법인	5,128	79	850	22,946	23,620	416	575	1,049	54,661	133	
법인단체등	3,429	75	504	17,239	19,733	128	808	750	42,667	93	
시설 유형	민간	5,427	22	380	18,700	10,664	68	786	330	36,377	1,263
가정	720	8	169	6,657	5,971	85	304	115	14,029	1,946	
부모협동	3,382	54	227	17,436	8,468	0	2,694	40	32,302	3	
직장	3,939	119	272	26,073	20,883	2,867	25,923	937	81,013	76	
F	268.2***	7.1***	11.8***	63.4***	88.3***	0.4	198.1***	32.1***	522.1***		
서울	2,830	60	304	14,165	13,834	494	1,133	688	33,508	917	
부산	2,750	14	216	13,459	9,597	82	480	242	26,841	175	
인천	3,442	13	240	13,015	10,027	83	2,508	265	29,592	145	
광주	3,108	14	398	15,046	9,510	56	1,118	116	29,366	120	
대구	3,182	13	405	15,244	9,988	70	393	199	29,493	208	
대전	3,670	28	268	13,587	9,396	66	1,047	200	28,262	208	
울산	1,818	9	251	9,814	6,916	92	318	108	19,325	56	
세종	9,106	487	499	33,271	10,561	95	26,139	847	81,005	7	
경기	3,281	19	203	11,917	9,454	119	897	289	26,178	1,112	
강원	2,046	6	200	12,135	9,987	190	464	252	25,280	65	
충북	2,246	17	363	13,524	11,113	180	545	393	28,380	148	
충남	2,322	15	375	10,623	9,023	182	472	319	23,331	146	
전북	1,961	45	237	12,678	10,289	37	574	186	26,007	236	
전남	2,572	25	308	15,337	12,558	96	378	224	31,498	157	
경북	2,517	5	428	16,098	12,472	137	978	771	33,406	156	
경남	1,694	22	280	10,090	7,401	79	514	272	20,352	260	
제주	2,947	86	754	17,773	15,091	137	549	443	37,780	82	
F	5.9***	4.2***	4.0***	5.3***	4.6***	0.2	2.7***	16.0***	11.1***		
지역 규모	대도시	3,053	40	306	14,130	11,822	292	1,084	458	31,184	1,764
중소도시	2,703	23	218	11,861	9,115	116	908	268	25,211	1,560	
농어촌	2,667	24	379	13,700	11,453	114	567	392	29,297	874	
F	4.3**	7.3**	10.4***	6.2**	2.8	0.4	2.1	18.8***	29.0***		
전체	2,843	30	288	13,197	10,740	189	911	374	28,572	4,198	
16~20인	799	9	184	7,051	6,302	71	312	133	14,861	1,605	
46~54인	3,105	36	264	14,049	12,441	165	725	411	31,196	309	
73~81인	5,010	74	444	20,561	17,485	198	628	789	45,190	195	
93~101인	7,261	45	562	25,590	19,015	141	1,452	940	55,006	174	
120~128인	10,220	102	788	32,770	21,576	52	1,657	1,182	68,348	45	
138~146인	14,383	210	971	37,740	21,160	155	646	852	76,117	22	
165인 이상	14,555	71	733	53,560	29,393	2,077	18,294	2,021	120,703	71	
F	626.5***	1.2	5.5***	28.2***	40.8***	3.8**	11.7***	1.3***	1,452.4**		
전체	2,599	26	277	12,486	9,996	158	1,027	360	26,929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 경비 수입	과년도 수입	잡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전입금	이월금	세입 계	기관수	
국공립	54,059	1,272	5,665	305,812	374,470	8,451	2,650	16,674	769,052	684	
사회복지법인	69,047	1,198	14,152	346,911	400,772	7,558	10,909	15,239	865,785	133	
법인단체등	62,473	1,305	11,580	340,372	421,800	4,455	16,041	10,780	868,808	93	
시설 유형	민간	99,949	456	8,570	399,602	242,361	1,718	21,368	5,616	779,640	1,263
가정	50,928	529	11,991	496,377	443,211	8,730	25,080	7,614	1,044,619	1,946	
부모협동	101,169	1,306	8,258	668,007	397,721	0	133,788	1,137	1,311,385	3	
직장	62,694	1,434	2,889	304,950	305,427	22,739	294,788	12,774	1,007,695	76	
F	83.0***	7.1***	11.8***	63.4***	88.3***	0.4	198.1***	32.1***	40.9***		
서울	57,137	1,313	9,433	369,988	383,466	9,059	21,905	16,442	868,742	917	
부산	62,794	399	6,711	393,692	291,171	2,519	16,126	5,280	778,691	175	
인천	87,027	337	8,350	430,544	354,836	3,462	21,878	6,152	912,586	145	
광주	63,180	356	14,751	484,200	340,495	2,400	36,621	2,414	944,416	120	
대구	72,468	502	13,653	463,152	319,992	2,141	19,422	4,897	896,226	208	
대전	94,571	551	9,308	471,726	343,313	1,914	37,501	4,320	963,205	208	
울산	48,988	289	13,465	432,278	345,846	4,139	21,282	4,830	871,116	56	
세종	109,242	3,407	7,853	396,815	144,319	2,763	170,277	7,156	841,833	7	
경기	87,518	405	8,061	441,252	389,643	11,642	25,717	6,870	971,109	1,112	
강원	49,254	185	5,406	376,239	287,457	3,712	12,889	5,507	740,650	65	
충북	47,131	548	9,864	396,933	330,117	4,322	18,503	10,537	817,954	148	
충남	78,649	314	17,110	481,267	420,215	7,111	23,437	12,808	1,040,911	146	
전북	47,325	772	8,838	454,735	405,146	1,592	29,951	5,385	953,743	236	
전남	38,112	894	8,016	453,459	390,283	3,410	18,296	5,288	917,759	157	
경북	51,987	125	10,912	410,561	346,694	3,272	32,812	12,704	869,069	156	
경남	49,748	682	12,673	425,792	325,139	3,497	26,881	6,628	851,040	260	
제주	41,068	1,641	15,032	429,828	374,752	3,139	12,310	8,089	885,860	82	
F	19.5***	4.2***	4.0***	5.3***	4.6***	0.2	2.7***	16.0***	3.4***		
대도시	66,970	902	10,100	408,521	357,496	5,907	23,942	10,833	884,673	1,764	
중소도시	71,597	467	8,222	438,718	369,749	9,230	27,545	6,861	932,388	1,560	
농어촌	60,129	627	12,121	432,226	382,418	3,738	20,765	8,586	920,611	874	
F	8.3***	7.3**	10.4***	6.2**	2.8	0.4	2.1	18.8***	3.3*		
전체	67,265	683	9,823	424,678	367,238	6,690	24,620	8,889	909,886	4,198	
16~20인	53,429	559	12,057	485,513	427,563	4,455	23,770	8,403	1,015,749	1,605	
46~54인	79,401	798	6,613	359,466	306,760	4,008	21,932	9,393	788,371	309	
73~81인	75,177	1,150	6,759	315,059	269,393	3,011	11,984	11,360	693,892	195	
93~101인	94,896	528	7,159	338,584	244,793	1,882	23,827	10,668	722,335	174	
120~128인	99,523	882	8,125	320,775	208,564	496	16,999	11,581	666,944	45	
138~146인	125,451	1,499	10,265	335,330	185,807	1,206	7,192	6,903	673,655	22	
165인 이상	88,997	455	4,483	322,525	173,401	14,377	89,880	12,423	706,539	71	
F	31.3***	1.2	5.5***	28.2***	40.8***	3.8**	11.7***	1.3***	25.8***		
전체	64,030	646	10,272	435,929	372,547	4,284	24,252	9,094	921,056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19〉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12,992	197,700	4,734	32,775	3	4,545	18,107	470,856	684	
사회복지법인	275,349	241,874	435	41,130	0	4,994	30,620	594,401	133	
법인단체등	206,867	192,968	9,122	34,702	0	1,533	25,663	470,855	93	
시설 유형	민간	224,398	27,889	58,090	41,988	1	811	18,225	371,402	1,263
	가정	79,879	19,905	45,119	6,626	3	1,021	7,161	159,714	1,946
	부모협동	209,234	12,044	88,873	700	0	0	36,190	347,041	3
직장	312,872	145,178	2,339	96,545	6,538	34,406	327,013	924,892	76	
F	426.8 <sup>***</sup>	1,591.6 <sup>***</sup>	593.4 <sup>***</sup>	125.7 <sup>***</sup>	16.5 <sup>***</sup>	20.4 <sup>***</sup>	254.4 <sup>***</sup>	546.8 <sup>***</sup>		
시도	서울	169,978	101,000	35,102	29,408	503	5,924	26,219	368,134	917
	부산	161,509	53,401	42,323	19,435	6	985	11,436	289,096	175
	인천	156,183	61,983	36,277	22,044	20	997	36,301	313,805	145
	광주	180,554	44,800	52,248	17,075	0	675	19,743	315,096	120
	대구	182,922	47,634	50,360	21,856	0	840	12,116	315,728	208
	대전	163,047	44,078	40,575	28,097	5	789	18,519	295,110	208
	울산	117,767	21,661	43,985	17,343	0	1,102	8,223	210,081	56
	세종	399,257	20,320	29,899	76,517	0	1,143	335,662	862,798	7
	경기	142,998	53,162	39,044	21,233	3	1,432	16,885	274,758	1,112
	강원	145,623	57,721	38,115	24,003	0	2,285	11,065	278,814	65
	충북	162,285	59,202	42,214	31,943	0	2,160	15,810	313,613	148
	충남	127,477	52,176	37,963	18,132	7	2,183	14,164	252,102	146
	전북	152,132	59,625	41,817	22,032	0	447	12,502	288,555	236
	전남	184,043	82,296	36,771	31,624	0	1,155	11,217	347,105	157
	경북	193,170	62,756	44,390	42,285	231	1,643	26,195	370,670	156
경남	121,083	37,557	37,905	13,347	0	942	13,063	223,899	260	
제주	213,282	95,355	35,834	49,898	0	1,642	21,988	417,998	82	
F	9.4 <sup>***</sup>	16.5 <sup>***</sup>	5.4 <sup>***</sup>	6.3 <sup>***</sup>	0.3	1.4	8.4 <sup>***</sup>	12.9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169,557	75,980	39,407	26,218	264	3,504	22,644	337,576	1,764
	중소도시	142,327	47,873	40,587	20,895	25	1,387	17,002	270,096	1,560
	농어촌	164,396	70,548	37,675	29,216	2	1,370	16,352	319,558	874
F	22.5 <sup>***</sup>	43.3 <sup>***</sup>	2.7	9.5 <sup>***</sup>	1.0	3.1 <sup>*</sup>	2.7	33.7 <sup>***</sup>		
전체	158,364	64,405	39,485	24,864	121	2,273	19,238	308,749	4,198	
정원 규모	16~20인	84,616	21,362	47,178	7,075	4	853	7,651	168,738	1,605
	46~54인	168,589	89,021	31,994	27,130	1,144	1,985	17,229	337,092	309
	73~81인	246,736	137,280	24,974	47,570	0	2,380	23,216	482,155	195
	93~101인	307,083	127,769	37,904	62,508	0	1,688	35,987	572,989	174
	120~128인	393,236	152,405	36,016	70,496	0	630	44,746	697,530	45
138~146인	452,879	108,512	45,842	99,562	0	1,862	32,144	740,800	22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165인 이상	642,726	169,781	55,308	127,624	0	24,920	253,420	127,777	71
F	2,432.2**	185.7**	32.2***	143.3***	1.1	10.6***	83.6***	1,089.3**	
전체	149,831	54,562	42,804	22,435	149	1,891	20,283	291,955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01$

〈부록표 IV-2-20〉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7,749	16,475	394	2,731	0	379	1,509	39,238	684	
사회복지법인	22,946	20,156	36	3,427	0	416	2,552	49,533	133	
법인단체등	17,239	16,081	760	2,892	0	128	2,139	39,238	93	
시설 유형	민간	18,700	2,324	4,841	3,499	0	68	1,519	30,950	1,263
가정	6,657	1,659	3,760	552	0	85	597	13,310	1,946	
부모협동	17,436	1,004	7,406	58	0	0	3,016	28,920	3	
직장	26,073	12,098	195	8,045	545	2,867	27,251	77,074	76	
F	426.8***	1,591.6***	593.4***	125.7***	16.5***	20.4***	254.4***	546.8***		
서울	14,165	8,417	2,925	2,451	42	494	2,185	30,678	917	
부산	13,459	4,450	3,527	1,620	1	82	953	24,091	175	
인천	13,015	5,165	3,023	1,837	2	83	3,025	26,150	145	
광주	15,046	3,733	4,354	1,423	0	56	1,645	26,258	120	
대구	15,244	3,969	4,197	1,821	0	70	1,010	26,311	208	
대전	13,587	3,673	3,381	2,341	0	66	1,543	24,593	208	
울산	9,814	1,805	3,665	1,445	0	92	685	17,507	56	
세종	33,271	1,693	2,492	6,376	0	95	27,972	71,900	7	
시도	경기	11,917	4,430	3,254	1,769	0	119	1,407	22,897	1,112
강원	12,135	4,810	3,176	2,000	0	190	922	23,234	65	
충북	13,524	4,934	3,518	2,662	0	180	1,317	26,134	148	
충남	10,623	4,348	3,164	1,511	1	182	1,180	21,008	146	
전북	12,678	4,969	3,485	1,836	0	37	1,042	24,046	236	
전남	15,337	6,858	3,064	2,635	0	96	935	28,925	157	
경북	16,098	5,230	3,699	3,524	19	137	2,183	30,889	156	
경남	10,090	3,130	3,159	1,112	0	79	1,089	18,658	260	
제주	17,773	7,946	2,986	4,158	0	137	1,832	34,833	82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F	9.4***	16.5***	5.4***	6.3***	0.3	1.4	8.4***	12.9***	
대도시	14,130	6,332	3,284	2,185	22	292	1,887	28,131	1,764
지역 중소도시	11,861	3,989	3,382	1,741	2	116	1,417	22,508	1,560
규모 농어촌	13,700	5,879	3,140	2,435	0	114	1,363	26,630	874
F	22.5***	43.3***	2.7	9.5***	1.0	3.1*	2.7	33.7***	
전체	13,197	5,367	3,290	2,072	10	189	1,603	25,729	4,198
정원 규모 16~20인	7,051	1,780	3,932	590	0	71	638	14,062	1,605
46~54인	14,049	7,418	2,666	2,261	95	165	1,436	28,091	309
73~81인	20,561	11,440	2,081	3,964	0	198	1,935	40,180	195
93~101인	25,590	10,647	3,159	5,209	0	141	2,999	47,745	174
120~128인	32,770	12,700	3,001	5,875	0	52	3,729	58,127	45
138~146인	37,740	9,043	3,820	8,297	0	155	2,679	61,733	22
165인 이상	53,560	14,148	4,609	10,635	0	2,077	21,118	106,148	71
F	2,432.2***	185.7***	32.2***	143.3***	1.1	10.6***	83.6***	1,089.3***	
전체	12,486	4,547	3,567	1,870	12	158	1,690	24,330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입.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01$

〈부록표 IV-2-21〉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305,812	320,143	11,125	43,199	2	8,451	26,260	714,992	684
사회복지법인	346,911	348,416	896	51,461	0	7,558	41,497	796,738	133
법인단체등	340,372	345,830	14,945	61,024	0	4,455	39,707	806,334	93
시설 유형 민간	399,602	56,303	122,483	63,572	2	1,718	36,010	679,691	1,263
가정	496,377	121,294	283,059	38,840	18	8,730	45,213	993,531	1,946
부모협동	668,007	86,334	304,095	7,292	0	0	144,489	1,210,217	3
직장	304,950	200,562	3,788	87,034	14,042	22,739	311,885	945,001	76
F	63.4***	433.8***	326.8***	41.9***	17.0***	0.4	167.6***	56.0***	
서울	369,988	200,218	126,710	55,522	1,015	9,059	49,093	811,605	917
부산	393,692	110,495	145,674	34,971	31	2,519	28,516	715,898	175
인천	430,544	147,638	171,043	36,067	88	3,462	36,717	825,559	145
광주	484,200	99,473	212,919	28,103	0	2,400	54,142	881,237	120
대구	463,152	109,252	175,406	35,334	0	2,141	38,474	823,759	208

구분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sup>2)</sup>	기관수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대전	471,726	106,392	189,110	47,789	22	1,914	51,680	868,634	208	
울산	432,278	99,456	205,350	41,040	0	4,139	39,866	822,129	56	
세종	396,815	24,244	51,927	68,148	0	2,763	188,693	732,591	7	
경기	441,252	146,431	191,874	51,334	4	11,642	41,053	883,591	1,112	
강원	376,239	103,410	141,347	42,701	0	3,712	23,988	691,396	65	
충북	396,933	111,162	160,476	58,479	0	4,322	39,451	770,823	148	
충남	481,267	165,158	210,127	44,844	86	7,111	53,669	962,262	146	
전북	454,735	155,710	204,346	45,089	0	1,592	44,945	906,418	236	
전남	453,459	157,505	176,575	56,204	0	3,410	32,494	879,647	157	
경북	410,561	137,490	139,601	68,729	874	3,272	56,554	817,081	156	
경남	425,792	111,529	183,063	30,548	0	3,497	46,863	801,292	260	
제주	429,828	136,776	168,612	69,365	0	3,139	37,072	844,792	82	
F	5.3**	11.9**	5.8**	10.2**	0.3	0.2	3.1**	2.6**		
대도시	408,521	158,500	151,318	47,137	541	5,907	45,778	817,702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438,718	128,382	196,540	44,730	96	9,230	43,095	860,791	1,560
농어촌	432,226	160,481	162,838	59,095	4	3,738	42,100	860,482	874	
F	6.2**	18.2**	22.3**	23.8**	0.8	0.4	0.7	3.3*		
전체	424,678	147,720	170,521	48,732	264	6,690	44,015	842,621	4,198	
16~20인	485,513	116,734	272,463	38,343	22	4,455	44,789	962,320	1,605	
46~54인	359,466	177,002	72,053	55,261	2,445	4,008	38,736	708,970	309	
73~81인	315,059	174,804	34,799	59,791	0	3,011	31,253	618,715	195	
정원 규모	93~101인	338,584	136,981	44,189	63,623	0	1,882	42,181	627,439	174
120~128인	320,775	119,764	32,362	56,438	0	496	37,586	567,421	45	
138~146인	335,330	78,281	38,645	68,881	0	1,206	25,860	548,204	22	
165인 이상	322,525	80,328	31,699	61,374	0	14,377	107,241	617,543	71	
F	28.2**	15.0**	122.8**	19.3**	1.1	3.8**	9.7**	34.4**		
전체	435,929	129,198	197,687	45,336	327	4,284	44,264	857,025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2) 필요경비수입(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제외함.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2-22〉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보육료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0,164	21,388	212,992	197,700	4,734	32,775	3	4,545	18,107	512,407	684	
사회복지법인	24,426	37,111	275,349	241,874	435	41,130	0	4,994	30,620	655,938	133	
법인단체등	20,230	20,919	206,867	192,968	9,122	34,702	0	1,533	25,663	512,003	93	
시설 유형	민간	30,722	34,398	224,398	27,889	58,090	41,988	1	811	18,225	436,521	1,263
가정	4,813	3,827	79,879	19,905	45,119	6,626	3	1,021	7,161	168,353	1,946	
부모협동	18,040	22,542	209,234	12,044	88,873	700	0	0	36,190	387,623	3	
직장	19,525	27,737	312,872	145,178	2,339	96,545	6,538	34,406	32,013	972,154	76	
F	165.7***	308.9***	426.8***	1591.6***	593.4***	125.7***	16.5***	20.4***	254.4***	522.1***		
서울	13,554	20,411	169,978	101,000	35,102	29,408	503	5,924	26,219	402,099	917	
부산	12,344	20,650	161,509	53,401	42,323	19,435	6	985	11,436	322,090	175	
인천	26,104	15,194	156,183	61,983	36,277	22,044	20	997	36,301	355,103	145	
광주	15,543	21,757	180,554	44,800	52,248	17,075	0	675	19,743	352,396	120	
대구	12,922	25,263	182,922	47,634	50,360	21,856	0	840	12,116	353,914	208	
대전	20,583	23,455	163,047	44,078	40,575	28,097	5	789	18,519	339,148	208	
울산	5,278	16,538	117,767	21,661	43,985	17,343	0	1,102	8,223	231,897	56	
세종	50,516	58,751	399,257	20,320	29,899	76,517	0	1,143	35,662	972,065	7	
시도	경기	23,715	15,657	142,998	53,162	39,044	21,233	3	1,432	16,885	314,130	1,112
강원	7,786	16,765	145,623	57,721	38,115	24,003	0	2,285	11,065	303,364	65	
충북	8,810	18,141	162,285	59,202	42,214	31,943	0	2,160	15,810	340,564	148	
충남	13,984	13,884	127,477	52,176	37,963	18,132	7	2,183	14,164	279,970	146	
전북	12,898	10,630	152,132	59,625	41,817	22,032	0	447	12,502	312,083	236	
전남	12,172	18,698	184,043	82,296	36,771	31,624	0	1,155	11,217	377,975	157	
경북	14,032	16,170	193,170	62,756	44,390	42,285	231	1,643	26,195	400,872	156	
경남	9,619	10,711	121,083	37,557	37,905	13,347	0	942	13,063	244,229	260	
제주	10,987	24,372	213,282	95,355	35,834	49,898	0	1,642	21,988	453,357	82	
F	13.6***	8.0***	9.4***	16.5***	5.4***	6.3***	0.3	1.4	8.4***	11.1***		
지역 규모	대도시	15,386	21,251	169,557	75,980	39,407	26,218	264	3,504	22,644	374,212	1,764
중소도시	17,801	14,639	142,327	47,873	40,587	20,895	25	1,387	17,002	302,536	1,560	
농어촌	15,694	16,309	164,396	70,548	37,675	29,216	2	1,370	16,352	351,560	874	
F	3.9*	31.7***	22.5***	43.3***	2.7	9.5***	1.0	3.1*	2.7	29.0***		
전체	16,347	17,765	158,364	64,405	39,485	24,864	121	2,273	19,238	342,861	4,198	
정원 규모	16~20인	5,334	4,257	84,616	21,362	47,178	7,075	4	853	7,651	178,329	1,605
46~54인	16,323	20,941	168,589	89,021	31,994	27,130	1,144	1,985	17,229	374,357	309	
73~81인	27,864	32,259	246,736	137,280	24,974	47,570	0	2,380	23,216	542,278	195	
93~101인	42,963	44,170	307,083	127,769	37,904	62,508	0	1,688	35,987	660,071	174	
120~128인	59,745	62,895	393,236	152,405	36,016	70,496	0	630	44,746	820,170	45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138~146인	86,636	85,965	45,289	108,512	45,842	99,562	0	1,862	32,144	913,401	22
165인 이상	81,125	93,540	64,276	169,781	55,308	127,624	0	24,920	23,420	1,484,442	71
F	347.2***	721.2***	242.2***	185.7***	32.2***	143.3***	1.1	10.6***	83.6***	1,452.4***	
전체	15,229	15,961	149,831	54,562	42,804	22,435	149	1,891	20,283	323,145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5$ , \*\*\*  $p < .001$

〈부록표 IV-2-23〉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1,680	1,782	17,749	16,475	394	2,731	0	379	1,509	42,701	684
사회복지법인	2,035	3,093	22,946	20,156	36	3,427	0	416	2,552	54,661	133
법인단체등	1,686	1,743	17,239	16,081	760	2,892	0	128	2,139	42,667	93
시설 유형											
민간	2,560	2,866	18,700	2,324	4,841	3,499	0	68	1,519	36,377	1,263
가정	401	319	6,657	1,659	3,760	552	0	85	597	14,029	1,946
부모협동	1,503	1,879	17,436	1,004	7,406	58	0	0	3,016	32,302	3
직장	1,627	2,311	26,073	12,098	195	8,045	545	2,867	27,251	81,013	76
F	165.7***	308.9***	426.8***	1591.6***	593.4***	125.7***	16.5***	20.4***	254.4***	522.1***	
서울	1,130	1,701	14,165	8,417	2,925	2,451	42	494	2,185	33,508	917
부산	1,029	1,721	13,459	4,450	3,527	1,620	1	82	953	26,841	175
인천	2,175	1,266	13,015	5,165	3,023	1,837	2	83	3,025	29,592	145
광주	1,295	1,813	15,046	3,733	4,354	1,423	0	56	1,645	29,366	120
대구	1,077	2,105	15,244	3,969	4,197	1,821	0	70	1,010	29,493	208
대전	1,715	1,955	13,587	3,673	3,381	2,341	0	66	1,543	28,262	208
울산	440	1,378	9,814	1,805	3,665	1,445	0	92	685	19,325	56
시도											
세종	4,210	4,896	33,271	1,693	2,492	6,376	0	95	27,972	81,005	7
경기	1,976	1,305	11,917	4,430	3,254	1,769	0	119	1,407	26,178	1,112
강원	649	1,397	12,135	4,810	3,176	2,000	0	190	922	25,280	65
충북	734	1,512	13,524	4,934	3,518	2,662	0	180	1,317	28,380	148
충남	1,165	1,157	10,623	4,348	3,164	1,511	1	182	1,180	23,331	146
전북	1,075	886	12,678	4,969	3,485	1,836	0	37	1,042	26,007	236
전남	1,014	1,558	15,337	6,858	3,064	2,635	0	96	935	31,498	157
경북	1,169	1,347	16,098	5,230	3,699	3,524	19	137	2,183	33,406	156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 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경남	802	893	10,090	3,130	3,159	1,112	0	79	1,089	20,352	260
제주	916	2,031	17,773	7,946	2,986	4,158	0	137	1,832	37,780	82
F	13.6***	8.0***	9.4***	16.5***	5.4***	6.3***	0.3	1.4	8.4***	11.1***	
대도시	1,282	1,771	14,130	6,332	3,284	2,185	22	292	1,887	31,184	1,764
지역 중소도시	1,483	1,220	11,861	3,989	3,382	1,741	2	116	1,417	25,211	1,560
규모 농어촌	1,308	1,359	13,700	5,879	3,140	2,435	0	114	1,363	29,297	874
F	3.9*	31.7***	22.5***	43.3***	2.7	9.5***	1.0	3.1*	2.7	29.0***	
전체	1,362	1,480	13,197	5,367	3,290	2,072	10	189	1,603	28,572	4,198
16~20인	445	355	7,051	1,780	3,932	590	0	71	638	14,861	1,605
46~54인	1,360	1,745	14,049	7,418	2,666	2,261	95	165	1,436	31,196	309
73~81인	2,322	2,688	20,561	11,440	2,081	3,964	0	198	1,935	45,190	195
정원 93~101인	3,580	3,681	25,590	10,647	3,159	5,209	0	141	2,999	55,006	174
규모 120~128인	4,979	5,241	32,770	12,700	3,001	5,875	0	52	3,729	68,348	45
138~146인	7,220	7,164	37,740	9,043	3,820	8,297	0	155	2,679	76,117	22
165인 이상	6,760	7,795	53,560	14,148	4,609	10,635	0	2,077	21,118	120,703	71
F	347.2**	721.2**	2432**	185.7***	32.2***	143.3**	1.1	10.6***	83.6**	14524**	
전체	1,269	1,330	12,486	4,547	3,567	1,870	12	158	1,690	26,929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5$ , \*\*\*  $p < .001$

〈부록표 IV-2-24〉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입 예산목별 규모: 필요경비수입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지원금				
국공립	26,919	27,140	305,812	320,143	11,125	43,199	2	8,451	26,260	769,052	684
사회복지법인	28,502	40,545	346,911	348,416	896	51,461	0	7,558	41,497	865,785	133
법인단체등	29,200	33,273	340,372	345,830	14,945	61,024	0	4,455	39,707	868,808	93
시설 민간	46,679	53,269	399,602	56,303	122,483	63,572	2	1,718	36,010	779,640	1,263
유형 가정	28,385	22,544	496,377	121,294	283,059	38,840	18	8,730	45,213	1,044,459	1,946
부모협동	39,347	61,822	668,007	86,334	304,095	7,292	0	0	144,489	1,311,385	3
직장	36,808	25,886	304,950	200,562	3,788	87,034	14,042	22,739	311,885	1,007,695	76
F	26.5***	146.9***	63.4***	433.8***	326.8***	41.9***	17.0***	0.4	167.6***	40.9***	
시도 서울	23,838	33,299	369,988	200,218	126,710	55,522	1,015	9,059	49,093	868,742	917



구분	필요경비 수입		보육료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기타 <sup>1)</sup>	세입계	기관 수
	기타 필요 경비	특별 활동 비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기업 자금				
부산	24,196	38,598	398,692	110,495	145,674	34,971	31	2,519	28,516	778,691	175
인천	55,027	32,000	430,544	147,638	171,043	36,067	88	3,462	36,717	912,586	145
광주	28,119	35,060	484,200	99,473	212,919	28,103	0	2,400	54,142	944,416	120
대구	25,634	46,833	463,152	109,252	175,406	35,334	0	2,141	38,474	896,226	208
대전	45,024	49,546	471,726	106,392	189,110	47,789	22	1,914	51,680	963,205	208
울산	10,809	38,178	432,278	99,456	205,350	41,040	0	4,139	39,866	871,116	56
세종	55,767	53,475	396,815	24,244	51,927	68,148	0	2,763	188,693	841,833	7
경기	53,024	34,493	441,252	146,431	191,874	51,334	4	11,642	41,053	971,109	1,112
강원	17,547	31,708	376,239	103,410	141,347	42,701	0	3,712	23,988	740,650	65
충북	15,727	31,404	396,933	111,162	160,476	58,479	0	4,322	39,451	817,954	148
충남	41,527	37,122	481,267	165,158	210,127	44,844	86	7,111	53,669	1,040,911	146
전북	26,374	20,951	454,735	155,710	204,346	45,089	0	1,592	44,945	953,743	236
전남	16,130	21,982	453,459	157,505	176,575	56,204	0	3,410	32,494	917,759	157
경북	27,667	24,321	410,561	137,490	139,601	68,729	874	3,272	56,554	869,069	156
경남	23,687	26,061	425,792	111,529	183,063	30,548	0	3,497	46,863	851,040	260
제주	14,168	26,900	429,828	136,776	168,612	69,365	0	3,139	37,072	885,860	82
F	30.1***	11.9***	5.3***	11.9***	5.8***	10.2***	0.3	0.2	3.1***	3.4***	
대도시	29,369	37,601	408,521	158,500	151,318	47,137	541	5,907	45,778	884,673	1,764
지역 중소도시	40,321	31,276	438,718	128,382	196,540	44,730	96	9,230	43,095	932,388	1,560
규모 농어촌	31,258	28,871	432,226	160,481	162,838	59,095	4	3,738	42,100	920,611	874
F	27.2***	27.0***	6.2**	18.2***	22.3***	23.8***	0.8	0.4	0.7	3.3*	
전체	33,832	33,433	424,678	147,720	170,521	48,732	264	6,690	44,015	909,886	4,198
16~20인	29,551	23,878	485,513	116,734	272,463	38,343	22	4,455	44,789	1,015,749	1,605
46~54인	34,378	45,023	359,466	177,002	72,053	55,261	2,445	4,008	38,736	788,371	309
73~81인	34,458	40,719	315,059	174,804	34,799	59,791	0	3,011	31,253	693,892	195
정원 93~101인	47,040	47,855	338,584	136,981	44,189	63,623	0	1,882	42,181	722,335	174
규모 120~128인	48,901	50,622	320,775	119,764	32,362	56,438	0	496	37,586	666,944	45
138~146인	64,773	60,678	335,330	78,281	38,645	68,881	0	1,206	25,860	673,655	22
165인 이상	41,874	47,122	322,525	80,328	31,699	61,374	0	14,377	107,241	706,539	71
F	9.8***	56.4***	28.2***	15.0***	122.8***	19.3***	1.1	3.8**	9.7***	25.8***	
전체	32,860	31,170	435,929	129,198	197,687	45,336	327	4,284	44,264	921,056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수입, 잡수입(이자수입,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전입금(전입금, 차입금), 이월금(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사업비)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 4. 어린이집 공시자료 세출결산(2015년도) 분석 결과 표

〈부록표 IV-3-1〉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1)</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268,330	5,793	33,804	50,183	15,853	2,169	1,012	377,144	455	
사회복지법인	379,393	8,308	59,621	74,983	24,955	4,450	1,738	553,449	503	
법인단체등	306,470	5,647	45,673	57,293	17,172	2,845	1,018	436,118	312	
시설 유형	민간	198,466	4,659	42,306	44,392	7,782	4,922	1,272	303,799	6,636
	가정	84,849	3,306	16,592	12,255	2,340	2,195	861	122,399	9,759
	부모협동	122,413	1,698	14,413	21,840	1,839	4,505	494	167,200	58
	직장	386,930	4,438	47,419	83,422	15,130	3,338	721	541,399	379
	F	2,075.8 <sup>***</sup>	273.6 <sup>***</sup>	1,039.4 <sup>***</sup>	1,577.6 <sup>***</sup>	457.9 <sup>***</sup>	38.6 <sup>***</sup>	8.6 <sup>***</sup>	1,968.7 <sup>**</sup>	
서울	164,832	3,660	27,531	30,036	6,606	2,626	1,238	236,528	2,087	
부산	167,983	4,289	29,960	31,373	5,994	3,316	716	243,632	1,028	
인천	148,237	4,407	29,280	28,749	4,607	2,687	1,356	219,323	1,178	
광주	161,505	5,123	31,589	30,572	4,488	4,117	532	237,926	546	
대구	174,079	4,531	31,459	31,859	6,946	1,862	1,195	251,929	803	
대전	112,032	3,001	22,406	21,304	3,495	4,408	851	167,496	613	
울산	156,163	5,316	33,329	32,419	5,073	2,859	864	236,024	547	
세종	131,684	4,121	22,392	26,509	4,619	4,610	1,905	195,841	77	
경기	130,953	3,544	27,074	25,566	4,765	3,635	990	196,527	5,895	
강원	162,710	4,134	30,209	31,190	8,034	3,735	855	240,867	458	
충북	189,224	4,546	36,414	41,562	9,954	2,811	1,066	285,577	489	
충남	154,649	4,551	30,126	33,231	8,076	2,916	1,504	235,052	1,174	
전북	158,674	4,146	29,190	29,703	6,341	6,215	1,187	235,456	617	
전남	206,984	5,403	36,288	41,912	10,918	3,714	949	306,170	424	
경북	150,496	4,700	30,937	29,375	5,865	3,782	1,159	226,313	847	
경남	138,471	4,251	26,811	26,816	5,074	1,843	590	203,855	1,181	
제주	192,669	4,364	30,961	33,328	8,340	4,206	1,191	275,060	138	
	F	28.2 <sup>***</sup>	29.7 <sup>***</sup>	11.8 <sup>***</sup>	17.5 <sup>***</sup>	15.1 <sup>***</sup>	6.3 <sup>***</sup>	3.7 <sup>***</sup>	24.2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157,052	4,137	28,718	29,455	5,576	2,962	1,033	228,933	6,532
	중소도시	128,123	3,662	25,380	24,707	4,526	3,245	927	190,570	8,228
	농어촌	187,698	4,905	37,307	38,840	9,510	4,093	1,323	283,677	3,342
	F	288.7 <sup>***</sup>	145.9 <sup>***</sup>	237.7 <sup>***</sup>	218.2 <sup>***</sup>	161.9 <sup>***</sup>	10.7 <sup>***</sup>	9.9 <sup>***</sup>	299.8 <sup>***</sup>	
전체	149,561	4,063	28,787	29,030	5,825	3,299	1,039	221,603	18,102	
정원 규모	16~20인	89,183	3,407	17,456	12,908	2,512	2,264	925	128,656	8,406
	46~54인	184,378	4,344	33,455	35,726	6,923	4,613	960	270,400	1,068
	73~81인	264,818	5,599	46,341	58,144	12,582	4,277	1,359	393,120	514
	93~101인	315,106	6,783	59,081	73,353	15,350	5,186	1,821	476,680	609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120~128인	370,365	7,068	77,944	88,478	16,749	4,961	1,190	566,756	145
138~146인	432,116	8,651	82,994	106,355	20,105	4,971	2,333	657,525	133
165인 이상	557,984	9,057	119,663	150,532	29,353	9,016	2,523	878,127	362
F	4,024.9***	372.8***	2,745.1***	5,289.5***	527.1***	53.5***	15.1***	5,183.8***	
전체	141,299	4,071	27,403	26,936	5,344	3,022	1,068	209,143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2〉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22,361	483	2,817	4,182	1,321	181	84	31,429	455
사회복지법인	31,616	692	4,968	6,249	2,080	371	145	46,121	503
법인단체등	25,539	471	3,806	4,774	1,431	237	85	36,343	312
시설 유형	민간	16,539	388	3,526	3,699	649	410	25,317	6,636
가정	7,071	276	1,383	1,021	195	183	72	10,200	9,759
부모협동	10,201	141	1,201	1,820	153	375	41	13,933	58
직장	32,244	370	3,952	6,952	1,261	278	60	45,117	379
F	2,075.8***	273.6***	1,039.4***	1,577.6***	457.9***	38.6***	8.6***	1,968.7***	
서울	13,736	305	2,294	2,503	550	219	103	19,711	2,087
부산	13,999	357	2,497	2,614	500	276	60	20,303	1,028
인천	12,353	367	2,440	2,396	384	224	113	18,277	1,178
광주	13,459	427	2,632	2,548	374	343	44	19,827	546
대구	14,507	378	2,622	2,655	579	155	100	20,994	803
대전	9,336	250	1,867	1,775	291	367	71	13,958	613
울산	13,014	443	2,777	2,702	423	238	72	19,669	547
세종	10,974	343	1,866	2,209	385	384	159	16,320	77
경기	10,913	295	2,256	2,131	397	303	83	16,377	5,895
강원	13,559	344	2,517	2,599	670	311	71	20,072	458
충북	15,769	379	3,034	3,463	830	234	89	23,798	489
충남	12,887	379	2,511	2,769	673	243	125	19,588	1,174
전북	13,223	346	2,433	2,475	528	518	99	19,621	617
전남	17,249	450	3,024	3,493	910	310	79	25,514	424
경북	12,541	392	2,578	2,448	489	315	97	18,859	847
경남	11,539	354	2,234	2,235	423	154	49	16,988	1,181
제주	16,056	364	2,580	2,777	695	351	99	22,922	138
F	28.2***	29.7***	11.8***	17.5***	15.1***	6.3***	3.7***	24.2***	
지역 대도시	13,088	345	2,393	2,455	465	247	86	19,078	6,532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중소도시	10,677	305	2,115	2,059	377	270	77	15,881	8,228
규모 농어촌	15,642	409	3,109	3,237	793	341	110	23,640	3,342
F	288.7 <sup>***</sup>	145.9 <sup>***</sup>	237.7 <sup>***</sup>	218.2 <sup>***</sup>	161.9 <sup>***</sup>	10.7 <sup>***</sup>	9.9 <sup>***</sup>	299.8 <sup>***</sup>	
전체	12,463	339	2,399	2,419	485	275	87	18,467	18,102
정원 규모	16~20인	7,432	284	1,455	1,076	209	77	10,721	8,406
	46~54인	15,365	362	2,788	2,977	577	80	22,533	1,068
	73~81인	22,068	467	3,862	4,845	1,048	113	32,760	514
	93~101인	26,259	565	4,923	6,113	1,279	152	39,723	609
	120~128인	30,864	589	6,495	7,373	1,396	99	47,230	145
	138~146인	36,010	721	6,916	8,863	1,675	194	54,794	133
	165인 이상	46,499	755	9,972	12,544	2,446	210	73,177	362
F	4,024.9 <sup>***</sup>	372.8 <sup>***</sup>	2,745.1 <sup>***</sup>	5,289.5 <sup>***</sup>	527.1 <sup>***</sup>	53.5 <sup>***</sup>	15.1 <sup>***</sup>	5,183.8 <sup>***</sup>	
전체	11,775	339	2,284	2,245	445	252	89	17,429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3〉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525,545	12,173	64,119	87,747	32,261	5,443	2,799	730,085	455
사회복지법인	481,924	10,853	75,291	85,549	32,564	9,901	2,020	698,103	503
법인단체등	489,386	9,385	71,162	81,377	26,134	6,472	1,796	685,713	312
시설 유형	민간	369,948	8,940	77,640	73,937	12,833	10,995	556,971	6,636
	가정	506,677	19,989	101,320	73,680	14,125	14,265	735,324	9,759
	부모협동	435,428	6,093	53,219	79,113	5,665	12,346	593,805	58
	직장	642,414	7,592	82,386	128,564	19,574	6,274	889,063	379
F	185.7 <sup>***</sup>	335.1 <sup>***</sup>	116.3 <sup>***</sup>	87.6 <sup>***</sup>	74.7 <sup>***</sup>	8.3 <sup>***</sup>	16.5 <sup>***</sup>	144.2 <sup>***</sup>	
서울	502,492	13,369	86,874	78,721	17,265	8,285	4,237	711,243	2,087
부산	426,835	13,304	79,027	69,656	12,679	10,659	2,311	614,471	1,028
인천	449,569	17,260	88,330	72,801	12,241	8,393	5,402	653,995	1,178
광주	485,666	19,721	90,574	78,400	10,283	16,421	1,910	702,976	546
대구	464,036	15,106	88,280	75,537	15,282	7,872	4,466	670,579	803
시도	대전	456,718	12,944	93,120	76,999	13,998	21,672	679,444	613
	울산	413,441	16,554	90,499	74,020	12,320	9,133	618,460	547
	세종	383,965	15,887	74,497	69,495	13,235	16,243	584,133	77
	경기	443,026	14,260	92,832	73,540	13,633	14,362	655,890	5,895
	강원	447,943	13,369	84,927	74,868	19,294	12,520	655,843	458
	충북	441,313	13,112	81,560	77,746	18,050	9,045	644,534	489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충남	498,401	17,756	93,429	86,958	19,860	11,284	6,634	734,323	1,174
전북	477,717	14,804	88,703	74,057	15,490	24,439	4,402	699,612	617
전남	471,414	13,215	83,324	78,676	20,716	10,540	2,664	680,548	424
경북	473,695	17,194	100,780	82,160	17,325	15,904	4,472	711,531	847
경남	450,500	16,994	89,631	73,614	13,517	7,366	1,716	653,337	1,181
제주	481,244	12,474	81,928	70,239	13,947	14,549	4,202	678,582	138
F	8.2 <sup>***</sup>	12.2 <sup>***</sup>	6.0 <sup>***</sup>	7.9 <sup>***</sup>	8.3 <sup>***</sup>	9.8 <sup>***</sup>	5.4 <sup>***</sup>	6.5 <sup>***</sup>	
대도시	466,436	14,969	87,294	75,494	14,242	10,622	3,815	672,872	6,532
지역 중소도시	453,264	15,343	91,850	74,293	14,042	13,795	4,028	666,615	8,228
규모 농어촌	456,722	14,224	90,247	79,872	18,372	12,526	4,472	676,436	3,342
F	3.8 <sup>*</sup>	5.1 <sup>**</sup>	8.8 <sup>***</sup>	15.3 <sup>***</sup>	28.3 <sup>***</sup>	9.4 <sup>***</sup>	1.4	0.8	
전체	458,655	15,001	89,910	75,757	14,913	12,416	4,033	670,686	18,102
16~20인	499,169	19,159	99,938	72,804	14,060	13,681	5,336	724,147	8,406
46~54인	419,794	9,884	76,959	80,520	16,237	13,261	3,001	619,656	1,068
73~81인	376,426	7,870	66,321	80,521	16,981	7,150	1,991	557,259	514
정원 93~101인	353,258	7,416	67,272	79,722	17,141	6,078	2,039	532,927	609
규모 120~128인	332,672	6,073	70,397	77,473	14,456	5,335	1,117	507,524	145
138~146인	325,028	6,289	63,272	77,883	14,767	4,357	1,758	493,355	133
165인 이상	306,448	4,784	66,592	80,470	15,366	5,188	1,575	480,422	362
F	72.0 <sup>**</sup>	157.7 <sup>**</sup>	76.5 <sup>***</sup>	7.0 <sup>***</sup>	2.4 <sup>*</sup>	6.6 <sup>***</sup>	8.9 <sup>***</sup>	57.7 <sup>***</sup>	
전체	467,684	16,340	92,556	74,633	14,623	12,439	4,565	682,84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4〉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268,330	5,793	33,804	79,891	15,853	2,169	1,012	406,852	455	
사회복지법인	379,393	8,308	59,621	134,939	24,955	4,450	1,738	613,405	503	
법인단체등	306,470	5,647	45,673	101,753	17,172	2,845	1,018	480,578	312	
시설 유형	민간	198,466	4,659	42,306	106,464	7,782	4,922	1,272	365,871	6,636
가정	84,849	3,306	16,592	20,301	2,340	2,195	861	130,445	9,759	
부모협동	122,413	1,698	14,413	26,446	1,839	4,505	494	171,807	58	
직장	386,930	4,438	47,419	108,871	15,130	3,338	721	566,848	379	
F	2,075.8 <sup>***</sup>	273.6 <sup>***</sup>	1,039.4 <sup>***</sup>	1,244.4 <sup>***</sup>	457.9 <sup>***</sup>	38.6 <sup>***</sup>	8.6 <sup>***</sup>	1,784.5 <sup>***</sup>		
서울	164,832	3,660	27,531	57,278	6,606	2,626	1,238	263,770	2,087	
시도	부산	167,983	4,289	29,960	62,617	5,994	3,316	716	274,876	1,028
인천	148,237	4,407	29,280	67,145	4,607	2,687	1,356	257,718	1,178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광주	161,505	5,123	31,589	53,610	4,488	4,117	532	260,965	546
대구	174,079	4,531	31,459	61,777	6,946	1,862	1,195	281,848	803
대전	112,032	3,001	22,406	42,170	3,495	4,408	851	188,362	613
울산	156,163	5,316	33,329	66,895	5,073	2,859	864	270,500	547
세종	131,684	4,121	22,392	44,624	4,619	4,610	1,905	213,955	77
경기	130,953	3,544	27,074	62,552	4,765	3,635	990	233,513	5,895
강원	162,710	4,134	30,209	50,589	8,034	3,735	855	260,266	458
충북	189,224	4,546	36,414	77,736	9,954	2,811	1,066	321,751	489
충남	154,649	4,551	30,126	66,058	8,076	2,916	1,504	267,880	1,174
전북	158,674	4,146	29,190	54,437	6,341	6,215	1,187	260,190	617
전남	206,984	5,403	36,288	70,924	10,918	3,714	949	335,181	424
경북	150,496	4,700	30,937	45,500	5,865	3,782	1,159	242,438	847
경남	138,471	4,251	26,811	49,781	5,074	1,843	590	226,820	1,181
제주	192,669	4,364	30,961	51,783	8,340	4,206	1,191	293,514	138
F	28.2 <sup>***</sup>	29.7 <sup>***</sup>	11.8 <sup>***</sup>	9.8 <sup>***</sup>	15.1 <sup>***</sup>	6.3 <sup>***</sup>	3.7 <sup>***</sup>	15.5 <sup>***</sup>	
대도시	157,052	4,137	28,718	59,094	5,576	2,962	1,033	258,572	6,532
지역 중소도시	128,123	3,662	25,380	53,534	4,526	3,245	927	219,398	8,228
규모 농어촌	187,698	4,905	37,307	76,870	9,510	4,093	1,323	321,706	3,342
F	288.7 <sup>***</sup>	145.9 <sup>***</sup>	237.7 <sup>***</sup>	101.5 <sup>***</sup>	161.9 <sup>***</sup>	10.7 <sup>***</sup>	9.9 <sup>***</sup>	241.6 <sup>***</sup>	
전체	149,561	4,063	28,787	59,849	5,825	3,299	1,039	252,422	18,102
16~20인	89,183	3,407	17,456	21,720	2,512	2,264	925	137,468	8,406
46~54인	184,378	4,344	33,455	72,677	6,923	4,613	960	307,352	1,068
73~81인	264,818	5,599	46,341	121,299	12,582	4,277	1,359	456,275	514
정원 93~101인	315,106	6,783	59,081	159,410	15,350	5,186	1,821	562,737	609
규모 120~128인	370,365	7,068	77,944	206,253	16,749	4,961	1,190	684,531	145
138~146인	432,116	8,651	82,994	242,017	20,105	4,971	2,333	793,187	133
165인 이상	557,984	9,057	119,663	362,737	29,353	9,016	2,523	1,090,332	362
F	4,024.9 <sup>***</sup>	372.8 <sup>***</sup>	2,745.1 <sup>***</sup>	5,366.9 <sup>***</sup>	527.1 <sup>***</sup>	53.5 <sup>***</sup>	15.1 <sup>***</sup>	6,388.6 <sup>***</sup>	
전체	141,299	4,071	27,403	54,555	5,344	3,022	1,068	236,761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01$

〈부록표 IV-3-5〉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22,361	483	2,817	6,658	1,321	181	84	33,904	455
시설 유형 사회복지법인	31,616	692	4,968	11,245	2,080	371	145	51,117	503
법인단체등	25,539	471	3,806	8,479	1,431	237	85	40,048	312
민간	16,539	388	3,526	8,872	649	410	106	30,489	6,636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가정	7,071	276	1,383	1,692	195	183	72	10,870	9,759
부모협동	10,201	141	1,201	2,204	153	375	41	14,317	58
직장	32,244	370	3,952	9,073	1,261	278	60	47,237	379
F	20758 <sup>***</sup>	273.6 <sup>***</sup>	1,0894 <sup>***</sup>	1,2444 <sup>***</sup>	457.9 <sup>***</sup>	38.6 <sup>***</sup>	8.6 <sup>***</sup>	1,7845 <sup>***</sup>	
서울	13,736	305	2,294	4,773	550	219	103	21,981	2,087
부산	13,999	357	2,497	5,218	500	276	60	22,906	1,028
인천	12,353	367	2,440	5,595	384	224	113	21,477	1,178
광주	13,459	427	2,632	4,468	374	343	44	21,747	546
대구	14,507	378	2,622	5,148	579	155	100	23,487	803
대전	9,336	250	1,867	3,514	291	367	71	15,697	613
울산	13,014	443	2,777	5,575	423	238	72	22,542	547
세종	10,974	343	1,866	3,719	385	384	159	17,830	77
경기	10,913	295	2,256	5,213	397	303	83	19,459	5,895
강원	13,559	344	2,517	4,216	670	311	71	21,689	458
충북	15,769	379	3,034	6,478	830	234	89	26,813	489
충남	12,887	379	2,511	5,505	673	243	125	22,323	1,174
전북	13,223	346	2,433	4,536	528	518	99	21,683	617
전남	17,249	450	3,024	5,910	910	310	79	27,932	424
경북	12,541	392	2,578	3,792	489	315	97	20,203	847
경남	11,539	354	2,234	4,148	423	154	49	18,902	1,181
제주	16,056	364	2,580	4,315	695	351	99	24,460	138
F	28.2 <sup>***</sup>	29.7 <sup>***</sup>	11.8 <sup>***</sup>	9.8 <sup>***</sup>	15.1 <sup>***</sup>	6.3 <sup>***</sup>	3.7 <sup>***</sup>	15.5 <sup>***</sup>	
대도시	13,088	345	2,393	4,925	465	247	86	21,548	6,532
지역 중소도시	10,677	305	2,115	4,461	377	270	77	18,283	8,228
규모 농어촌	15,642	409	3,109	6,406	793	341	110	26,809	3,342
F	288.7 <sup>***</sup>	145.9 <sup>***</sup>	237.7 <sup>***</sup>	101.5 <sup>***</sup>	161.9 <sup>***</sup>	10.7 <sup>***</sup>	9.9 <sup>***</sup>	241.6 <sup>***</sup>	
전체	12,463	339	2,399	4,987	485	275	87	21,035	18,102
16~20인	7,432	284	1,455	1,810	209	189	77	11,456	8,406
46~54인	15,365	362	2,788	6,056	577	384	80	25,613	1,068
73~81인	22,068	467	3,862	10,108	1,048	356	113	38,023	514
정원 93~101인	26,259	565	4,923	13,284	1,279	432	152	46,895	609
규모 120~128인	30,864	589	6,495	17,188	1,396	413	99	57,044	145
138~146인	36,010	721	6,916	20,168	1,675	414	194	66,099	133
165인 이상	46,499	755	9,972	30,228	2,446	751	210	90,861	362
F	40249 <sup>***</sup>	372.8 <sup>***</sup>	2745.1 <sup>***</sup>	5366.9 <sup>***</sup>	527.1 <sup>***</sup>	53.5 <sup>***</sup>	15.1 <sup>***</sup>	6,388.6 <sup>***</sup>	
전체	11,775	339	2,284	4,546	445	252	89	19,730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01$

〈부록표 IV-3-6〉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525,545	12,173	64,119	132,612	32,261	5,443	2,799	774,951	455	
사회복지법인	481,924	10,853	75,291	146,176	32,564	9,901	2,020	758,730	503	
법인단체등	489,386	9,385	71,162	139,253	26,134	6,472	1,796	743,589	312	
시설 유형	민간	369,948	8,940	77,640	165,321	12,833	10,995	2,678	648,355	6,636
가정	506,677	19,989	101,320	118,710	14,125	14,265	5,269	780,354	9,759	
부모협동	435,428	6,093	53,219	93,309	5,665	12,346	1,941	608,000	58	
직장	642,414	7,592	82,386	163,847	19,574	6,274	2,259	924,345	379	
F	185.7***	335.1***	116.3***	179.9***	74.7***	8.3***	16.5***	73.2***		
서울	502,492	13,369	86,874	129,434	17,265	8,285	4,237	761,957	2,087	
부산	426,835	13,304	79,027	124,049	12,679	10,659	2,311	668,864	1,028	
인천	449,569	17,260	88,330	152,438	12,241	8,393	5,402	733,632	1,178	
광주	485,666	19,721	90,574	114,346	10,283	16,421	1,910	738,923	546	
대구	464,036	15,106	88,280	129,315	15,282	7,872	4,466	724,357	803	
대전	456,718	12,944	93,120	137,896	13,998	21,672	3,991	740,341	613	
울산	413,441	16,554	90,499	137,829	12,320	9,133	2,492	682,268	547	
세종	383,965	15,887	74,497	114,051	13,235	16,243	10,811	628,689	77	
경기	443,026	14,260	92,832	157,789	13,633	14,362	4,237	740,140	5,895	
강원	447,943	13,369	84,927	111,615	19,294	12,520	2,923	692,590	458	
충북	441,313	13,112	81,560	127,668	18,050	9,045	3,708	694,456	489	
충남	498,401	17,756	93,429	148,789	19,860	11,284	6,634	796,154	1,174	
전북	477,717	14,804	88,703	113,857	15,490	24,439	4,402	739,412	617	
전남	471,414	13,215	83,324	112,315	20,716	10,540	2,664	714,187	424	
경북	473,695	17,194	100,780	112,447	17,325	15,904	4,472	741,818	847	
경남	450,500	16,994	89,631	121,488	13,517	7,366	1,716	701,211	1,181	
제주	481,244	12,474	81,928	95,582	13,947	14,549	4,202	703,925	138	
F	8.2***	12.2***	6.0***	40.9***	8.3***	9.8***	5.4***	5.1***		
대도시	466,436	14,969	87,294	133,094	14,242	10,622	3,815	730,472	6,532	
중소도시	453,264	15,343	91,850	142,404	14,042	13,795	4,028	734,725	8,228	
농어촌	456,722	14,224	90,247	137,436	18,372	12,526	4,472	734,000	3,342	
F	3.8*	5.1**	8.8***	18.0***	28.3***	9.4***	1.4	0.2		
전체	458,655	15,001	89,910	138,127	14,913	12,416	4,033	733,057	18,102	
16~20인	499,169	19,159	99,938	120,601	14,060	13,681	5,336	771,943	8,406	
46~54인	419,794	9,884	76,959	158,871	16,237	13,261	3,001	698,007	1,068	
73~81인	376,426	7,870	66,321	166,216	16,981	7,150	1,991	642,955	514	
93~101인	353,258	7,416	67,272	170,508	17,141	6,078	2,039	623,713	609	
120~128인	332,672	6,073	70,397	177,431	14,456	5,335	1,117	607,482	145	
138~146인	325,028	6,289	63,272	176,689	14,767	4,357	1,758	592,160	133	
165인 이상	306,448	4,784	66,592	193,850	15,366	5,188	1,575	593,802	362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F	72.0***	157.7***	76.5***	103.8***	2.4*	6.6***	8.9***	28.7***	
전체	467,684	16,340	92,556	132,786	14,623	12,439	4,565	740,994	11,237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7〉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206,891	2,720	11,311	18,199	21,376	7,832	268,330	455	
사회복지법인	294,078	6,702	10,353	25,490	33,693	9,077	379,393	503	
법인단체등	237,065	5,548	9,025	20,713	26,171	7,948	306,470	312	
시설 유형	민간	158,254	3,870	4,254	11,472	15,775	198,466	6,636	
가정	69,441	886	1,232	4,663	6,591	2,035	84,849	9,759	
부모협동	94,060	1,802	6,125	7,758	10,493	2,175	122,413	58	
직장	273,248	7,205	39,666	25,078	28,494	13,239	386,930	379	
F	1,965.5***	196.1***	1,049.8***	1,566.2***	1,698.4***	726.1***	2,075.8***		
서울	133,347	1,622	5,151	8,820	12,080	3,812	164,832	2,087	
부산	132,545	2,921	4,724	9,807	14,593	3,393	167,983	1,028	
인천	120,261	1,818	2,987	8,275	11,163	3,733	148,237	1,178	
광주	130,019	3,819	2,379	9,071	12,260	3,956	161,505	546	
대구	140,738	2,271	3,135	10,438	13,069	4,427	174,079	803	
대전	88,512	2,459	2,746	6,470	9,106	2,738	112,032	613	
울산	120,188	4,423	3,864	9,160	14,416	4,111	156,163	547	
세종	104,889	1,057	4,809	7,777	9,780	3,372	131,684	77	
경기	104,165	2,363	3,017	7,737	10,258	3,412	130,953	5,895	
강원	126,693	3,002	5,265	10,150	13,849	3,750	162,710	458	
충북	146,197	5,193	5,977	11,434	15,228	5,196	189,224	489	
충남	122,245	1,800	3,414	10,347	12,330	4,513	154,649	1,174	
전북	124,950	2,936	3,944	9,664	13,489	3,689	158,674	617	
전남	164,604	2,117	5,686	12,229	17,213	5,135	206,984	424	
경북	119,939	2,024	3,802	9,206	11,369	4,156	150,496	847	
경남	108,396	2,023	4,737	8,019	12,188	3,107	138,471	1,181	
제주	152,279	2,117	6,616	11,520	15,238	4,899	192,669	138	
F	31.3***	12.5***	8.9***	20.5***	28.7***	11.8***	28.2***		
지역 규모	대도시	125,931	2,364	3,926	8,837	12,262	3,731	157,052	6,532
중소도시	102,019	2,075	2,993	7,642	10,202	3,193	128,123	8,228	
농어촌	146,887	3,288	5,548	11,535	15,326	5,115	187,698	3,342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F	292.9***	33.6***	60.5***	211.4***	260.2***	159.7***	288.7***		
전체	118,931	2,403	3,801	8,792	11,891	3,742	149,561	18,102	
16~20인	72,903	959	1,354	4,923	6,879	2,166	89,183	8,406	
46~54인	146,178	2,877	5,761	10,989	14,222	4,351	184,378	1,068	
73~81인	205,857	4,368	9,800	16,410	21,212	7,171	264,818	514	
정원 규모	93~101인	244,136	6,125	10,103	20,242	26,259	8,240	315,106	609
120~128인	285,427	10,798	10,101	22,288	32,043	9,709	370,365	145	
138~146인	337,809	9,000	11,000	27,491	35,190	11,626	432,116	133	
165인 이상	427,447	13,307	21,733	33,638	44,535	17,323	557,984	362	
F	3,995.8***	302.3***	349.9***	2,066.6***	2,841.7***	919.7***	4,024.9***		
전체	112,529	2,197	3,517	8,271	11,155	3,629	141,299	11,237	

\*\*\*  $p < .001$ 

〈부록표 IV-3-8〉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17,241	227	943	1,517	1,781	653	22,361	455	
사회복지법인	24,506	559	863	2,124	2,808	756	31,616	503	
법인단체등	19,755	462	752	1,726	2,181	662	25,539	312	
시설 유형	민간	13,188	323	354	956	1,315	403	16,539	6,636
가정	5,787	74	103	389	549	170	7,071	9,759	
부모협동	7,838	150	510	646	874	181	10,201	58	
직장	22,771	600	3,306	2,090	2,375	1,103	32,244	379	
F	1,965.5***	196.1***	1,049.8***	1,566.2***	1,698.4***	726.1***	2,075.8***		
서울	11,112	135	429	735	1,007	318	13,736	2,087	
부산	11,045	243	394	817	1,216	283	13,999	1,028	
인천	10,022	151	249	690	930	311	12,353	1,178	
광주	10,835	318	198	756	1,022	330	13,459	546	
대구	11,728	189	261	870	1,089	369	14,507	803	
대전	7,376	205	229	539	759	228	9,336	613	
시도	울산	10,016	369	322	763	1,201	343	13,014	547
세종	8,741	88	401	648	815	281	10,974	77	
경기	8,680	197	251	645	855	284	10,913	5,895	
강원	10,558	250	439	846	1,154	313	13,559	458	
충북	12,183	433	498	953	1,269	433	15,769	489	
충남	10,187	150	285	862	1,027	376	12,887	1,174	
전북	10,413	245	329	805	1,124	307	13,223	617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전남	13,717	176	474	1,019	1,434	428	17,249	424
경북	9,995	169	317	767	947	346	12,541	847
경남	9,033	169	395	668	1,016	259	11,539	1,181
제주	12,690	176	551	960	1,270	408	16,056	138
F	31.3***	12.5***	8.9***	20.5***	28.7***	11.8***	28.2***	
대도시	10,494	197	327	736	1,022	311	13,088	6,532
지역 중소도시	8,502	173	249	637	850	266	10,677	8,228
규모 농어촌	12,241	274	462	961	1,277	426	15,642	3,342
F	292.9***	33.6***	60.5***	211.4***	260.2***	159.7***	288.7***	
전체	9,911	200	317	733	991	312	12,463	18,102
16~20인	6,075	80	113	410	573	180	7,432	8,406
46~54인	12,181	240	480	916	1,185	363	15,365	1,068
73~81인	17,155	364	817	1,368	1,768	598	22,068	514
정원 93~101인	20,345	510	842	1,687	2,188	687	26,259	609
규모 120~128인	23,786	900	842	1,857	2,670	809	30,864	145
138~146인	28,151	750	917	2,291	2,932	969	36,010	133
165인 이상	35,621	1,109	1,811	2,803	3,711	1,444	46,499	362
F	3,995.8***	302.3***	349.9***	2,066.6***	2,841.7***	919.7***	4,024.9***	
전체	9,377	183	293	689	930	302	11,775	11,237

\*\*\*  $p < .001$ 

## 〈부록표 IV-3-9〉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406,774	4,889	21,464	35,644	41,771	15,002	525,545	455
사회복지법인	375,966	8,023	11,337	32,066	44,066	10,466	481,924	503
법인단체등	381,010	8,948	11,676	33,075	43,471	11,205	489,386	312
시설 유형 민간	297,916	6,332	6,351	21,473	29,599	8,277	369,948	6,636
가정	414,239	5,132	6,937	28,047	40,631	11,690	506,677	9,759
부모협동	339,238	6,464	17,965	26,709	37,192	7,861	435,428	58
직장	457,211	12,039	62,827	43,545	47,517	19,273	642,414	379
F	180.8***	18.8***	851.8***	67.0***	129.8***	148.2***	185.7***	
서울	414,382	3,989	12,025	24,718	36,832	10,546	502,492	2,087
부산	341,236	6,575	9,212	23,446	38,125	8,241	426,835	1,028
시도 인천	368,297	3,994	7,341	24,630	34,592	10,716	449,569	1,178
광주	398,631	7,876	5,402	26,216	36,027	11,514	485,666	546
대구	384,512	3,906	4,182	26,370	33,907	11,159	464,036	803

구분	기본급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대전	362,442	10,107	9,945	25,852	37,832	10,542	456,718	613
울산	322,994	8,982	9,330	23,092	38,817	10,227	413,441	547
세종	312,539	3,814	7,671	21,576	27,294	11,072	383,965	77
경기	357,450	6,105	7,541	25,958	35,400	10,571	443,026	5,895
강원	352,046	8,280	10,217	28,584	38,773	10,041	447,943	458
충북	348,004	9,962	10,406	26,205	36,003	10,735	441,313	489
충남	399,911	4,372	6,790	35,198	38,494	13,636	498,401	1,174
전북	380,511	8,278	9,119	27,831	41,928	10,051	477,717	617
전남	380,030	4,377	9,397	26,494	40,752	10,363	471,414	424
경북	384,985	4,236	8,639	27,595	36,238	12,001	473,695	847
경남	358,147	5,382	10,080	26,205	41,528	9,158	450,500	1,181
제주	389,318	5,575	10,670	26,211	39,693	9,778	481,244	138
F	11.2***	14.5***	13.2***	8.3***	7.4***	13.8***	8.2***	
대도시	380,069	5,603	8,982	24,815	36,577	10,391	466,436	6,532
중소도시	365,874	5,864	7,619	26,564	36,909	10,435	453,264	8,228
농어촌	362,816	6,357	9,711	28,806	37,472	11,560	456,722	3,342
F	8.7**	2.6	20.3***	19.2***	1.1	17.8***	3.8*	
전체	370,432	5,861	8,497	26,346	36,893	10,627	458,655	18,102
16~20인	407,529	5,263	7,226	27,927	39,486	11,736	499,169	8,406
46~54인	332,254	6,743	12,271	26,168	32,692	9,665	419,794	1,068
73~81인	293,891	6,246	13,187	23,151	30,238	9,712	376,426	514
93~101인	274,427	6,850	10,626	22,845	29,729	8,780	353,258	609
120~128인	257,204	9,815	8,702	20,078	28,763	8,110	332,672	145
138~146인	255,134	6,267	7,663	20,644	26,891	8,428	325,028	133
165인 이상	236,037	7,537	11,238	18,296	24,545	8,794	306,448	362
F	92.2***	5.4***	27.7***	10.2***	46.5***	23.4***	72.0***	
전체	378,695	5,679	8,316	26,769	37,120	11,106	467,684	11,237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10〉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7	4,579	237	5,793	455
사회복지법인	1,458	6,553	297	8,308	503
법인단체등	1,322	4,069	257	5,647	312
민간	636	3,947	76	4,659	6,636
가정	319	2,951	36	3,306	9,759
부모협동	677	872	149	1,698	58
직장	2,085	1,919	433	4,438	379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F	265.8***	188.9***	394.3***	273.6***	
서울	628	2,945	87	3,660	2,087
부산	522	3,675	92	4,289	1,028
인천	389	3,940	78	4,407	1,178
광주	634	4,428	61	5,123	546
대구	476	3,958	96	4,531	803
대전	381	2,569	51	3,001	613
울산	465	4,716	135	5,316	547
세종	375	3,687	58	4,121	77
경기	540	2,957	47	3,544	5,895
강원	602	3,428	104	4,134	458
충북	643	3,791	113	4,546	489
충남	594	3,883	74	4,551	1,174
전북	701	3,323	121	4,146	617
전남	598	4,707	98	5,403	424
경북	640	3,978	81	4,700	847
경남	387	3,772	92	4,251	1,181
제주	351	3,872	141	4,364	138
F	6.1***	36.2***	13.7***	29.7***	
대도시	514	3,539	83	4,137	6,532
중소도시	497	3,109	57	3,662	8,228
농어촌	692	4,106	107	4,905	3,342
F	33.3***	121.6***	63.0***	145.9***	
전체	539	3,448	76	4,063	18,102
16~20인	340	3,029	39	3,407	8,406
46~54인	717	3,509	118	4,344	1,068
73~81인	809	4,596	194	5,599	514
93~101인	1,044	5,547	192	6,783	609
120~128인	1,136	5,780	152	7,068	145
138~146인	1,753	6,620	278	8,651	133
165인 이상	2,057	6,810	189	9,057	362
F	180.2***	218.5***	125.9***	372.8***	
전체	517	3,482	71	4,071	11,237

\*\*\*  $p < .001$ 

## 〈부록표 IV-3-11〉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81	382	20	483	455
사회복지법인	122	546	25	692	503
법인단체등	110	339	21	471	312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민간	53	329	6	388	6,636
가정	27	246	3	276	9,759
부모협동	56	73	12	141	58
직장	174	160	36	370	379
F	265.8***	188.9***	394.3***	273.6***	
서울	52	245	7	305	2,087
부산	44	306	8	357	1,028
인천	32	328	6	367	1,178
광주	53	369	5	427	546
대구	40	330	8	378	803
대전	32	214	4	250	613
울산	39	393	11	443	547
세종	31	307	5	343	77
경기	45	246	4	295	5,895
강원	50	286	9	344	458
충북	54	316	9	379	489
충남	50	324	6	379	1,174
전북	58	277	10	346	617
전남	50	392	8	450	424
경북	53	331	7	392	847
경남	32	314	8	354	1,181
제주	29	323	12	364	138
F	6.1***	36.2***	13.7***	29.7***	
대도시	43	295	7	345	6,532
지역규모 중소도시	41	259	5	305	8,228
모 농어촌	58	342	9	409	3,342
F	33.3***	121.6***	63.0***	145.9***	
전체	45	287	6	339	18,102
16~20인	28	252	3	284	8,406
46~54인	60	292	10	362	1,068
73~81인	67	383	16	467	514
정원 93~101인	87	462	16	565	609
규모 120~128인	95	482	13	589	145
138~146인	146	552	23	721	133
165인 이상	171	568	16	755	362
F	180.2***	218.5***	125.9***	372.8***	
전체	43	290	6	339	11,237

\*\*\*  $p < .001$

〈부록표 IV-3-12〉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2,052	9,662	459	12,173	455	
사회복지법인	2,074	8,393	386	10,853	503	
법인단체등	1,931	7,070	384	9,385	312	
시설 유형	민간	1,267	7,525	148	8,940	6,636
	가정	1,915	17,861	214	19,989	9,759
	부모협동	2,635	2,901	557	6,093	58
	직장	2,886	3,925	781	7,592	379
F	24.7***	366.4***	61.5***	335.1***		
서울	1,862	11,271	236	13,369	2,087	
부산	1,387	11,642	275	13,304	1,028	
인천	1,256	15,804	200	17,260	1,178	
광주	1,976	17,577	168	19,721	546	
대구	1,357	13,499	250	15,106	803	
대전	1,476	11,291	177	12,944	613	
울산	1,529	14,660	365	16,554	547	
세종	1,141	14,602	145	15,887	77	
경기	1,856	12,252	152	14,260	5,895	
강원	2,305	10,837	227	13,369	458	
충북	1,486	11,435	190	13,112	489	
충남	1,791	15,731	235	17,756	1,174	
전북	2,126	12,280	397	14,804	617	
전남	1,507	11,513	195	13,215	424	
경북	2,046	14,934	215	17,194	847	
경남	1,273	15,400	321	16,994	1,181	
제주	831	11,384	259	12,474	138	
F	5.7**	14.9***	8.6***	12.2***		
지역규모	대도시	1,566	13,172	231	14,969	6,532
	중소도시	1,811	13,335	197	15,343	8,228
모	농어촌	1,732	12,256	236	14,224	3,342
F	6.7**	5.7**	5.2**	5.1**		
전체	1,708	13,077	216	15,001	18,102	
정원 규모	16~20인	1,910	17,031	218	19,159	8,406
	46~54인	1,661	7,936	287	9,884	1,068
	73~81인	1,149	6,466	256	7,870	514
	93~101인	1,154	6,051	211	7,416	609
	120~128인	998	4,943	131	6,073	145
	138~146인	1,321	4,781	187	6,289	133
	165인 이상	1,010	3,666	108	4,784	362
F	8.4***	163.2***	3.4**	157.7***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전체	1,763	14,357	221	16,340	11,237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13〉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1,030	22,844	4,283	2,277	3,371	33,804	455	
사회복지법인	672	32,944	9,346	3,921	12,737	59,621	503	
법인단체등	752	25,252	5,966	3,262	10,440	45,673	312	
시설 유형	민간	129	17,972	3,049	1,093	20,064	6,636	
	가정	58	8,456	928	275	6,875	9,759	
	부모협동	140	7,970	340	945	14,413	58	
	직장	975	36,088	3,552	1,943	47,419	379	
	F	56.5***	1,182.7***	260.7***	578.3***	712.6***	1,039.4***	
서울	151	13,497	557	229	13,097	27,531	2,087	
부산	129	14,157	2,283	1,169	12,221	29,960	1,028	
인천	101	13,818	1,173	477	13,711	29,280	1,178	
광주	124	15,090	5,847	511	10,017	31,589	546	
대구	122	15,138	1,943	1,478	12,779	31,459	803	
대전	205	11,734	1,356	404	8,707	22,406	613	
울산	174	15,244	3,370	1,026	13,515	33,329	547	
세종	123	13,094	1,024	688	7,464	22,392	77	
경기	120	12,578	1,307	548	12,521	27,074	5,895	
시도	강원	505	14,569	3,483	1,704	9,948	30,209	458
	충북	259	18,222	4,622	1,468	11,843	36,414	489
	충남	120	14,886	2,588	1,239	11,294	30,126	1,174
	전북	159	14,643	3,844	1,394	9,149	29,190	617
	전남	388	18,398	5,288	1,663	10,550	36,288	424
	경북	216	14,745	4,141	1,496	10,339	30,937	847
	경남	148	13,459	3,239	793	9,172	26,811	1,181
	제주	398	17,468	1,606	1,631	9,858	30,961	138
	F	2.5**	14.7***	60.5***	61.7***	11.7***	11.8***	
지역 규모	대도시	139	13,875	1,716	640	12,348	28,718	6,532
	중소도시	123	12,171	1,620	672	10,794	25,380	8,228
	농어촌	276	17,954	4,376	1,507	13,194	37,307	3,342
	F	10.4***	245.8***	278.6***	255.0***	39.2***	237.7***	
	전체	157	13,853	2,164	815	11,798	28,787	18,102
정원 규모	16~20인	65	8,836	996	290	7,268	17,456	8,406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46~54인	216	16,289	2,162	1,026	13,762	33,455	1,068
73~81인	448	23,136	4,275	1,884	16,598	46,341	514
93~101인	399	29,047	6,092	2,566	20,978	59,081	609
120~128인	313	35,459	6,131	2,316	33,725	77,944	145
138~146인	552	38,941	6,728	3,358	33,416	82,994	133
165인 이상	528	54,335	11,043	4,429	49,327	119,663	362
F	30.7***	2,245.9***	232.3***	544.8***	933.7***	2,745.1***	
전체	139	13,460	1,991	752	11,061	27,403	11,237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14〉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86	1,904	357	190	281	2,817	455	
사회복지법인	56	2,745	779	327	1,061	4,968	503	
법인단체등	63	2,104	497	272	870	3,806	312	
시설 유형	민간	11	1,498	254	91	1,672	6,636	
가정	5	705	77	23	573	1,383	9,759	
부모협동	12	664	28	79	418	1,201	58	
직장	81	3,007	296	162	405	3,952	379	
F	56.5***	1,182.7***	260.7***	578.3***	712.6***	1,039.4***		
서울	13	1,125	46	19	1,091	2,294	2,087	
부산	11	1,180	190	97	1,018	2,497	1,028	
인천	8	1,152	98	40	1,143	2,440	1,178	
광주	10	1,258	487	43	835	2,632	546	
대구	10	1,262	162	123	1,065	2,622	803	
대전	17	978	113	34	726	1,867	613	
울산	14	1,270	281	86	1,126	2,777	547	
시도	세종	10	1,091	85	57	622	1,866	77
경기	10	1,048	109	46	1,043	2,256	5,895	
강원	42	1,214	290	142	829	2,517	458	
충북	22	1,519	385	122	987	3,034	489	
충남	10	1,240	216	103	941	2,511	1,174	
전북	13	1,220	320	116	762	2,433	617	
전남	32	1,533	441	139	879	3,024	424	
경북	18	1,229	345	125	862	2,578	847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경남	12	1,122	270	66	764	2,234	1,181
제주	33	1,456	134	136	821	2,580	138
F	2.5***	14.7***	60.5***	61.7***	11.7***	11.8***	
대도시	12	1,156	143	53	1,029	2,393	6,532
지역 중소도시	10	1,014	135	56	900	2,115	8,228
규모 농어촌	23	1,496	365	126	1,100	3,109	3,342
F	10.4***	245.8***	278.6***	255.0***	39.2***	237.7***	
전체	13	1,154	180	68	983	2,399	18,102
16~20인	5	736	83	24	606	1,455	8,406
46~54인	18	1,357	180	86	1,147	2,788	1,068
73~81인	37	1,928	356	157	1,383	3,862	514
정월 93~101인	33	2,421	508	214	1,748	4,923	609
규모 120~128인	26	2,955	511	193	2,810	6,495	145
138~146인	46	3,245	561	280	2,785	6,916	133
165인 이상	44	4,528	920	369	4,111	9,972	362
F	30.7***	2,245.9***	232.3***	544.8***	933.7***	2,745.1***	
전체	12	1,122	166	63	922	2,284	11,237

\*\*\*  $p < .001$ 

## 〈부록표 IV-3-15〉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2,094	44,101	7,970	4,065	5,888	64,119	455
사회복지법인	854	41,500	13,471	4,866	14,599	75,291	503
법인단체등	1,038	38,563	11,044	5,149	15,367	71,162	312
시설 민간	351	33,172	5,905	2,015	36,197	77,640	6,636
유형 가정	344	52,066	5,820	1,843	41,248	101,320	9,759
부모협동	487	29,569	1,705	3,201	18,257	53,219	58
직장	1,691	60,760	5,017	2,904	12,014	82,386	379
F	3.7**	256.4***	41.0***	66.7***	172.0***	116.3***	
서울	455	41,770	1,310	490	42,849	86,874	2,087
부산	280	38,222	6,095	2,690	31,739	79,027	1,028
인cheon	300	44,328	2,974	1,201	39,527	88,330	1,178
광역시 광주	396	51,209	11,573	1,068	26,329	90,574	546
대구	264	41,941	6,027	3,961	36,087	88,280	803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대전	970	50,443	5,653	1,190	34,865	93,120	613	
울산	318	41,960	9,580	2,856	35,785	90,499	547	
세종	261	43,448	4,550	2,125	24,113	74,497	77	
경기	480	44,501	3,973	1,398	42,480	92,832	5,895	
강원	1,018	43,011	10,173	4,236	26,489	84,927	458	
충북	449	43,521	8,656	2,508	26,426	81,560	489	
충남	287	48,562	7,012	3,373	34,196	93,429	1,174	
전북	375	46,168	12,189	4,165	25,806	88,703	617	
전남	758	44,168	12,593	3,523	22,281	83,324	424	
경북	479	47,971	14,816	5,305	32,209	100,780	847	
경남	293	46,031	10,566	2,263	30,477	89,631	1,181	
제주	661	42,607	4,892	3,830	29,938	81,928	138	
F	0.3	8.5***	106.1***	84.4***	35.6***	6.0***		
대도시	408	43,422	4,556	1,620	37,289	87,294	6,532	
지역 규모	중소도시	432	45,238	5,403	2,057	38,721	91,850	8,228
농어촌	550	44,916	11,256	3,303	30,222	90,247	3,342	
F	0.2	5.8**	349.6***	132.7***	68.0***	8.8***		
전체	445	44,523	6,178	2,129	36,635	89,910	18,102	
정원 규모	16~20인	369	50,822	5,940	1,819	40,988	99,938	8,406
46~54인	469	37,620	5,978	2,491	30,401	76,959	1,068	
73~81인	598	32,773	6,973	2,901	23,076	66,321	514	
93~101인	431	32,741	7,900	2,972	23,226	67,272	609	
120~128인	258	32,354	5,963	2,072	29,751	70,397	145	
138~146인	391	29,247	5,905	2,505	25,225	63,272	133	
165인 이상	271	30,390	6,398	2,591	26,941	66,592	362	
F	0.2	100.4***	2.7*	10.4***	58.7***	76.5***		
전체	388	46,610	6,111	2,032	37,416	92,556	11,237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16〉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제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국공립	33,300	12,983	3,900	50,183	455	
사회복지법인	49,158	21,439	4,386	74,983	503	
시설 유형	법인단체등	38,492	15,512	3,290	57,293	312
민간	30,792	12,164	1,436	44,392	6,636	
가정	10,507	1,141	608	12,255	9,759	

구분	급간식비	교제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부모협동	17,553	3,197	1,090	21,840	58	
직장	59,029	17,420	6,974	83,422	379	
F	1,508.3 <sup>***</sup>	1,127.6 <sup>***</sup>	771.2 <sup>***</sup>	1,577.6 <sup>***</sup>		
서울	22,532	6,247	1,257	30,036	2,087	
부산	23,760	6,061	1,552	31,373	1,028	
인천	21,009	7,181	560	28,749	1,178	
광주	21,404	7,263	1,904	30,572	546	
대구	23,595	6,331	1,933	31,859	803	
대전	15,631	4,433	1,240	21,304	613	
울산	23,088	7,710	1,620	32,419	547	
세종	19,516	5,629	1,365	26,509	77	
경기	19,153	5,656	757	25,566	5,895	
강원	21,602	7,974	1,614	31,190	458	
충북	27,536	11,726	2,299	41,562	489	
충남	22,992	8,564	1,675	33,231	1,174	
전북	20,405	7,437	1,861	29,703	617	
전남	28,603	11,372	1,937	41,912	424	
경북	21,285	5,997	2,093	29,375	847	
경남	18,694	6,715	1,406	26,816	1,181	
제주	25,534	5,945	1,850	33,328	138	
F	16.0 <sup>***</sup>	17.4 <sup>***</sup>	42.8 <sup>***</sup>	17.5 <sup>***</sup>		
대도시	21,785	6,352	1,318	29,455	6,532	
지역구 중소도시	18,319	5,423	964	24,707	8,228	
모 농어촌	26,665	10,191	1,984	38,840	3,342	
F	185.7 <sup>***</sup>	198.6 <sup>***</sup>	179.1 <sup>***</sup>	218.2 <sup>***</sup>		
전체	21,111	6,638	1,280	29,030	18,102	
정원 규모	16~20인	11,055	1,219	633	12,908	8,406
	46~54인	25,597	8,581	1,548	35,726	1,068
	73~81인	39,380	15,851	2,912	58,144	514
	93~101인	48,265	21,779	3,309	73,353	609
	120~128인	58,746	26,041	3,691	88,478	145
	138~146인	69,893	31,720	4,742	106,355	133
	165인 이상	99,676	46,277	4,578	150,532	362
F	4,490.6 <sup>***</sup>	3,447.7 <sup>***</sup>	433.6 <sup>***</sup>	5,289.5 <sup>***</sup>		
전체	19,916	5,835	1,185	26,936	11,237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17〉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2,775	1,082	325	4,182	455
	사회복지법인	4,096	1,787	366	6,249	503
	법인단체등	3,208	1,293	274	4,774	312
	민간	2,566	1,014	120	3,699	6,636
	가정	876	95	51	1,021	9,759
	부모협동	1,463	266	91	1,820	58
	직장	4,919	1,452	581	6,952	379
	F	1,508.3 <sup>***</sup>	1,127.6 <sup>***</sup>	771.2 <sup>***</sup>	1,577.6 <sup>***</sup>	
시도	서울	1,878	521	105	2,503	2,087
	부산	1,980	505	129	2,614	1,028
	인천	1,751	598	47	2,396	1,178
	광주	1,784	605	159	2,548	546
	대구	1,966	528	161	2,655	803
	대전	1,303	369	103	1,775	613
	울산	1,924	643	135	2,702	547
	세종	1,626	469	114	2,209	77
	경기	1,596	471	63	2,131	5,895
	강원	1,800	664	135	2,599	458
	충북	2,295	977	192	3,463	489
	충남	1,916	714	140	2,769	1,174
	전북	1,700	620	155	2,475	617
	전남	2,384	948	161	3,493	424
	경북	1,774	500	174	2,448	847
	경남	1,558	560	117	2,235	1,181
제주	2,128	495	154	2,777	138	
	F	16.0 <sup>***</sup>	17.4 <sup>***</sup>	42.8 <sup>***</sup>	17.5 <sup>***</sup>	
지역구 모	대도시	1,815	529	110	2,455	6,532
	중소도시	1,527	452	80	2,059	8,228
	농어촌	2,222	849	165	3,237	3,342
	F	185.7 <sup>***</sup>	198.6 <sup>***</sup>	179.1 <sup>***</sup>	218.2 <sup>***</sup>	
정원 규모	전체	1,759	553	107	2,419	18,102
	16~20인	921	102	53	1,076	8,406
	46~54인	2,133	715	129	2,977	1,068
	73~81인	3,282	1,321	243	4,845	514
	93~101인	4,022	1,815	276	6,113	609
	120~128인	4,896	2,170	308	7,373	145
	138~146인	5,824	2,643	395	8,863	133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165인 이상	8,306	3,856	381	12,544	362
F	4,490.6***	3,447.7***	433.6***	5,289.5***	
전체	1,660	486	99	2,245	11,237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18〉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국공립	59,023	21,403	7,320	87,747	455	
사회복지법인	56,535	23,895	5,118	85,549	503	
법인단체등	55,041	21,266	5,070	81,377	312	
시설 유형	민간	53,578	17,898	2,460	73,937	6,636
	가정	63,148	6,856	3,676	73,680	9,759
	부모협동	64,116	11,183	3,814	79,113	58
	직장	88,903	27,813	11,849	128,564	379
F	83.3***	585.6***	296.0***	87.6***		
서울	62,808	12,475	3,439	78,721	2,087	
부산	56,247	9,677	3,731	69,656	1,028	
인천	59,183	12,072	1,546	72,801	1,178	
광주	59,927	13,034	5,439	78,400	546	
대구	59,204	11,536	4,798	75,537	803	
대전	60,120	12,076	4,803	76,999	613	
울산	56,307	13,451	4,262	74,020	547	
세종	54,903	10,431	4,161	69,495	77	
시도	경기	59,776	11,520	2,243	73,540	5,895
	강원	55,153	15,716	3,999	74,868	458
	충북	57,191	15,888	4,667	77,746	489
	충남	66,674	15,435	4,850	86,958	1,174
	전북	56,637	12,382	5,038	74,057	617
	전남	58,713	15,895	4,067	78,676	424
	경북	62,415	13,614	6,131	82,160	847
	경남	56,337	12,614	4,663	73,614	1,181
	제주	56,518	9,469	4,252	70,239	138
F	6.0***	11.2***	77.8***	7.9***		
지역구	대도시	59,921	11,917	3,656	75,494	6,532
모	중소도시	59,803	11,376	3,114	74,293	8,228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농어촌	59,312	16,103	4,457	79,872	3,342	
F	0.3	116.0***	84.1***	15.3***		
전체	59,755	12,444	3,558	75,757	18,102	
16~20인	62,347	6,879	3,579	72,804	8,406	
46~54인	57,507	19,631	3,382	80,520	1,068	
73~81인	54,513	22,041	3,967	80,521	514	
정원 규모	93~101인	52,815	23,288	3,620	79,722	609
120~128인	51,322	22,861	3,290	77,473	145	
138~146인	51,968	22,616	3,299	77,883	133	
165인 이상	53,382	24,713	2,374	80,470	362	
F	14.0***	378.1***	5.2***	7.0***		
전체	60,458	10,641	3,534	74,633	11,237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19>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33,300	12,983	3,900	14,211	15,497	79,891	455	
사회복지법인	49,158	21,439	4,386	22,222	37,734	134,939	503	
법인단체등	38,492	15,512	3,290	20,843	23,617	101,753	312	
시설 유형	민간	30,792	12,164	1,436	28,814	33,258	106,464	6,636
가정	10,507	1,141	608	4,014	4,032	20,301	9,759	
부모협동	17,553	3,197	1,090	2,138	2,468	26,446	58	
직장	59,029	17,420	6,974	8,821	16,628	108,871	379	
F	1,508.3***	1,127.6***	771.2***	713.7***	1,107.8***	1,244.4***		
서울	22,532	6,247	1,257	9,774	17,468	57,278	2,087	
부산	23,760	6,061	1,552	9,658	21,587	62,617	1,028	
인천	21,009	7,181	560	23,311	15,085	67,145	1,178	
광주	21,404	7,263	1,904	8,508	14,531	53,610	546	
대구	23,595	6,331	1,933	8,942	20,976	61,777	803	
대전	15,631	4,433	1,240	9,074	11,792	42,170	613	
시도	울산	23,088	7,710	1,620	6,971	27,506	66,895	547
세종	19,516	5,629	1,365	8,309	9,806	44,624	77	
경기	19,153	5,656	757	21,428	15,559	62,552	5,895	
강원	21,602	7,974	1,614	5,543	13,856	50,589	458	
충북	27,536	11,726	2,299	10,503	25,672	77,736	489	
충남	22,992	8,564	1,675	13,474	19,354	66,058	1,174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전북	20,405	7,437	1,861	12,058	12,676	54,437	617
전남	28,603	11,372	1,937	9,336	19,676	70,924	424
경북	21,285	5,997	2,093	5,951	10,174	45,500	847
경남	18,694	6,715	1,406	9,660	13,305	49,781	1,181
제주	25,534	5,945	1,850	5,127	13,327	51,783	138
F	16.0 <sup>***</sup>	17.4 <sup>***</sup>	42.8 <sup>***</sup>	64.4 <sup>***</sup>	21.5 <sup>***</sup>	9.8 <sup>***</sup>	
대도시	21,785	6,352	1,318	11,755	17,884	59,094	6,532
지역 중소도시	18,319	5,423	964	14,824	14,003	53,534	8,228
규모 농어촌	26,665	10,191	1,984	17,724	20,306	76,870	3,342
F	185.7 <sup>***</sup>	198.6 <sup>***</sup>	179.1 <sup>***</sup>	58.5 <sup>***</sup>	75.6 <sup>***</sup>	101.5 <sup>***</sup>	
전체	21,111	6,638	1,280	14,252	16,567	59,849	18,102
16~20인	11,055	1,219	633	4,393	4,419	21,720	8,406
46~54인	25,597	8,581	1,548	17,063	19,888	72,677	1,068
73~81인	39,380	15,851	2,912	29,073	34,083	121,299	514
정원 93~101인	48,265	21,779	3,309	38,019	48,038	159,410	609
규모 120~128인	58,746	26,041	3,691	49,368	68,406	206,253	145
138~146인	69,893	31,720	4,742	61,640	74,022	242,017	133
165인 이상	99,676	46,277	4,578	101,309	110,897	362,737	362
F	4,490.6 <sup>***</sup>	3,447.7 <sup>***</sup>	433.6 <sup>***</sup>	1,923.4 <sup>***</sup>	3,478.7 <sup>***</sup>	5,366.9 <sup>***</sup>	
전체	19,916	5,835	1,185	12,929	14,690	54,555	11,237

\*\*\*  $p < .001$ 

<부록표 IV-3-20>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2,775	1,082	325	1,184	1,291	6,658	455	
사회복지법인	4,096	1,787	366	1,852	3,145	11,245	503	
법인단체등	3,208	1,293	274	1,737	1,968	8,479	312	
시설 유형	민간	2,566	1,014	120	2,401	2,772	8,872	6,636
가정	876	95	51	334	336	1,692	9,759	
부모협동	1,463	266	91	178	206	2,204	58	
직장	4,919	1,452	581	735	1,386	9,073	379	
F	1,508.3 <sup>***</sup>	1,127.6 <sup>***</sup>	771.2 <sup>***</sup>	713.7 <sup>***</sup>	1,107.8 <sup>***</sup>	1,244.4 <sup>***</sup>		
서울	1,878	521	105	815	1,456	4,773	2,087	
부산	1,980	505	129	805	1,799	5,218	1,028	
인천	1,751	598	47	1,943	1,257	5,595	1,178	
광주	1,784	605	159	709	1,211	4,468	546	
대구	1,966	528	161	745	1,748	5,148	803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대전	1,303	369	103	756	983	3,514	613
울산	1,924	643	135	581	2,292	5,575	547
세종	1,626	469	114	692	817	3,719	77
경기	1,596	471	63	1,786	1,297	5,213	5,895
강원	1,800	664	135	462	1,155	4,216	458
충북	2,295	977	192	875	2,139	6,478	489
충남	1,916	714	140	1,123	1,613	5,505	1,174
전북	1,700	620	155	1,005	1,056	4,536	617
전남	2,384	948	161	778	1,640	5,910	424
경북	1,774	500	174	496	848	3,792	847
경남	1,558	560	117	805	1,109	4,148	1,181
제주	2,128	495	154	427	1,111	4,315	138
F	16.0***	17.4***	42.8***	64.4***	21.5***	9.8***	
대도시	1,815	529	110	980	1,490	4,925	6,532
중소도시	1,527	452	80	1,235	1,167	4,461	8,228
농어촌	2,222	849	165	1,477	1,692	6,406	3,342
F	185.7***	198.6***	179.1***	58.5***	75.6***	101.5***	
전체	1,759	553	107	1,188	1,381	4,987	18,102
16~20인	921	102	53	366	368	1,810	8,406
46~54인	2,133	715	129	1,422	1,657	6,056	1,068
73~81인	3,282	1,321	243	2,423	2,840	10,108	514
93~101인	4,022	1,815	276	3,168	4,003	13,284	609
120~128인	4,896	2,170	308	4,114	5,701	17,188	145
138~146인	5,824	2,643	395	5,137	6,169	20,168	133
165인 이상	8,306	3,856	381	8,442	9,241	30,228	362
F	4,490.6***	3,447.7***	433.6***	1,923.4***	3,478.7***	5,366.9***	
전체	1,660	486	99	1,077	1,224	4,546	11,237

\*\*\*  $p < .001$ 

〈부록표 IV-3-21〉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59,023	21,403	7,320	22,211	22,654	132,612	455
시설 사회복지법인	56,535	23,895	5,118	23,212	37,415	146,176	503
유형 법인단체등	55,041	21,266	5,070	26,556	31,320	139,253	312
민간	53,578	17,898	2,460	41,975	49,409	165,321	6,636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가정	63,148	6,856	3,676	22,130	22,899	118,710	9,759	
부모협동	64,116	11,183	3,814	6,349	7,847	93,309	58	
직장	88,903	27,813	11,849	12,139	23,143	163,847	379	
F	83.3 <sup>***</sup>	585.6 <sup>***</sup>	296.0 <sup>***</sup>	285.0 <sup>***</sup>	535.8 <sup>***</sup>	179.9 <sup>***</sup>		
시도	서울	62,808	12,475	3,439	18,200	32,513	129,434	2,087
	부산	56,247	9,677	3,731	16,034	38,359	124,049	1,028
	인천	59,183	12,072	1,546	49,607	30,030	152,438	1,178
	광주	59,927	13,034	5,439	12,906	23,041	114,346	546
	대구	59,204	11,536	4,798	12,969	40,809	129,315	803
	대전	60,120	12,076	4,803	25,055	35,842	137,896	613
	울산	56,307	13,451	4,262	11,933	51,876	137,829	547
	세종	54,903	10,431	4,161	20,492	24,063	114,051	77
	경기	59,776	11,520	2,243	48,242	36,007	157,789	5,895
	강원	55,153	15,716	3,999	10,401	26,346	111,615	458
	충북	57,191	15,888	4,667	13,824	36,098	127,668	489
	충남	66,674	15,435	4,850	25,861	35,969	148,789	1,174
	전북	56,637	12,382	5,038	18,486	21,313	113,857	617
	전남	58,713	15,895	4,067	12,288	21,351	112,315	424
	경북	62,415	13,614	6,131	10,559	19,729	112,447	847
경남	56,337	12,614	4,663	19,233	28,641	121,488	1,181	
제주	56,518	9,469	4,252	8,570	16,773	95,582	138	
F	6.0 <sup>***</sup>	11.2 <sup>***</sup>	77.8 <sup>***</sup>	326.0 <sup>***</sup>	48.0 <sup>***</sup>	40.9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59,921	11,917	3,656	22,789	34,810	133,094	6,532
	중소도시	59,803	11,376	3,114	35,319	32,792	142,404	8,228
	농어촌	59,312	16,103	4,457	26,958	30,606	137,436	3,342
F	0.3	116.0 <sup>***</sup>	84.1 <sup>***</sup>	272.2 <sup>***</sup>	19.1 <sup>***</sup>	18.0 <sup>***</sup>		
전체	59,755	12,444	3,558	29,254	33,117	138,127	18,102	
정원 규모	16~20인	62,347	6,879	3,579	23,461	24,335	120,601	8,406
	46~54인	57,507	19,631	3,382	35,970	42,381	158,871	1,068
	73~81인	54,513	22,041	3,967	39,187	46,508	166,216	514
	93~101인	52,815	23,288	3,620	39,783	51,003	170,508	609
	120~128인	51,322	22,861	3,290	40,801	59,157	177,431	145
	138~146인	51,968	22,616	3,299	45,238	53,567	176,689	133
	165인 이상	53,382	24,713	2,374	54,165	59,216	193,850	362
F	14.0 <sup>***</sup>	378.1 <sup>***</sup>	5.2 <sup>***</sup>	131.6 <sup>***</sup>	283.3 <sup>***</sup>	103.8 <sup>***</sup>		
전체	60,458	10,641	3,534	27,725	30,429	132,786	11,237	

\*\*\*  $p < .001$

〈부록표 IV-3-22〉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7,584	6,372	1,897	15,853	455	
사회복지법인	13,247	7,577	4,131	24,955	503	
법인단체등	8,813	5,833	2,526	17,172	312	
시설 유형	민간	4,082	2,772	928	7,782	6,636
	가정	906	1,196	239	2,340	9,759
	부모협동	586	1,016	237	1,839	58
	직장	4,100	6,442	4,587	15,130	379
	F	265.1***	197.4***	121.1***	457.9**	
서울	3,180	2,754	671	6,606	2,087	
부산	2,518	2,712	765	5,994	1,028	
인천	2,056	1,896	655	4,607	1,178	
광주	2,155	1,648	685	4,488	546	
대구	3,382	2,593	971	6,946	803	
대전	1,776	1,277	442	3,495	613	
울산	1,719	2,468	886	5,073	547	
세종	2,084	1,976	559	4,619	77	
경기	2,541	1,625	599	4,765	5,895	
강원	3,466	3,524	1,044	8,034	458	
충북	5,550	3,163	1,242	9,954	489	
충남	3,456	3,186	1,434	8,076	1,174	
전북	3,136	2,258	947	6,341	617	
전남	5,595	4,158	1,166	10,918	424	
경북	2,800	2,210	855	5,865	847	
경남	1,830	2,555	689	5,074	1,181	
제주	3,432	3,888	1,019	8,340	138	
	F	9.1***	12.8***	3.0***	15.1***	
지역구 모	대도시	2,567	2,313	696	5,576	6,532
	중소도시	2,206	1,731	589	4,526	8,228
	농어촌	4,628	3,515	1,367	9,510	3,342
	F	86.3***	93.8***	33.5***	161.9***	
정원 규모	전체	2,783	2,270	772	5,825	18,102
	16~20인	995	1,264	252	2,512	8,406
	46~54인	3,205	2,778	941	6,923	1,068
	73~81인	6,306	4,641	1,635	12,582	514
	93~101인	7,805	5,312	2,233	15,350	609
	120~128인	7,957	6,305	2,487	16,749	145
	138~146인	9,575	7,208	3,322	20,105	133
	165인 이상	14,145	9,832	5,376	29,353	362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F	398.1***	179.7***	71.4***	527.1***	
전체	2,432	2,193	719	5,344	11,237

\*\*\*  $p < .001$ 

## 〈부록표 IV-3-23〉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632	531	158	1,321	455	
사회복지법인	1,104	631	344	2,080	503	
법인단체등	734	486	210	1,431	312	
시설 유형	민간	340	231	77	649	6,636
	가정	75	100	20	195	9,759
	부모협동	49	85	20	153	58
	직장	342	537	382	1,261	379
F	265.1***	197.4***	121.1***	457.9***		
서울	265	230	56	550	2,087	
부산	210	226	64	500	1,028	
인천	171	158	55	384	1,178	
광주	180	137	57	374	546	
대구	282	216	81	579	803	
대전	148	106	37	291	613	
울산	143	206	74	423	547	
세종	174	165	47	385	77	
시도	경기	212	135	50	397	5,895
	강원	289	294	87	670	458
	충북	462	264	104	830	489
	충남	288	266	119	673	1,174
	전북	261	188	79	528	617
	전남	466	346	97	910	424
	경북	233	184	71	489	847
	경남	152	213	57	423	1,181
	제주	286	324	85	695	138
F	9.1***	12.8***	3.0***	15.1***		
지역구	대도시	214	193	58	465	6,532
	중소도시	184	144	49	377	8,228
모	농어촌	386	293	114	793	3,342
F	86.3***	93.8***	33.5***	161.9***		
전체	232	189	64	485	18,102	
정원	16~20인	83	105	21	209	8,406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46~54인	267	231	78	577	1,068
73~81인	525	387	136	1,048	514
93~101인	650	443	186	1,279	609
규모 120~128인	663	525	207	1,396	145
138~146인	798	601	277	1,675	133
165인 이상	1,179	819	448	2,446	362
F	398.1 <sup>***</sup>	179.7 <sup>***</sup>	71.4 <sup>***</sup>	527.1 <sup>***</sup>	
전체	203	183	60	445	11,237

\*\*\*  $p < .001$

〈부록표 IV-3-24〉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15,912	12,946	3,402	32,261	455
사회복지법인	18,079	9,031	5,455	32,564	503
법인단체등	13,595	9,070	3,469	26,134	312
시설 유형 민간	6,617	4,702	1,514	12,833	6,636
가정	5,335	7,307	1,483	14,125	9,759
부모협동	1,639	3,275	751	5,665	58
직장	7,053	7,813	4,708	19,574	379
F	60.7 <sup>***</sup>	23.5 <sup>***</sup>	92.7 <sup>***</sup>	74.7 <sup>***</sup>	
서울	7,471	8,362	1,433	17,265	2,087
부산	4,336	6,867	1,476	12,679	1,028
인천	4,165	6,295	1,781	12,241	1,178
광주	3,885	4,861	1,537	10,283	546
대구	7,426	6,193	1,664	15,282	803
대전	6,943	5,439	1,616	13,998	613
울산	3,554	6,676	2,089	12,320	547
세종	5,731	6,347	1,157	13,235	77
경기	6,846	5,127	1,660	13,633	5,895
강원	8,387	8,334	2,573	19,294	458
충북	9,596	6,211	2,243	18,050	489
충남	8,526	9,013	2,321	19,860	1,174
전북	6,945	6,458	2,086	15,490	617
전남	9,983	8,419	2,315	20,716	424
경북	7,363	7,931	2,032	17,325	847
경남	4,587	7,479	1,452	13,517	1,181
제주	4,090	8,215	1,642	13,947	138
F	7.3 <sup>***</sup>	5.7 <sup>***</sup>	4.2 <sup>***</sup>	8.3 <sup>***</sup>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대도시	5,794	6,869	1,579	14,242	6,532
지역구 중소도시	6,472	5,951	1,618	14,042	8,228
모 농어촌	8,443	7,507	2,422	18,372	3,342
F	20.4 <sup>***</sup>	8.8 <sup>***</sup>	37.0 <sup>***</sup>	28.3 <sup>***</sup>	
전체	6,591	6,570	1,752	14,913	18,102
16~20인	5,431	7,191	1,438	14,060	8,406
46~54인	8,076	6,139	2,022	16,237	1,068
73~81인	8,575	6,024	2,381	16,981	514
정원 규모 93~101인	8,891	5,782	2,468	17,141	609
120~128인	6,936	5,283	2,237	14,456	145
138~146인	7,074	5,254	2,439	14,767	133
165인 이상	7,825	5,043	2,498	15,366	362
F	10.2 <sup>***</sup>	1.5	13.2 <sup>***</sup>	2.4 <sup>*</sup>	
전체	6,130	6,845	1,649	14,623	11,237

\*  $p < .05$ , \*\*\*  $p < .001$

〈부록표 IV-3-25〉 일반어린이집 연간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137	797	1,188	47	2,169	455
사회복지법인	442	3,552	378	78	4,450	503
법인단체등	306	2,238	253	48	2,845	312
시설 유형 민간	124	4,641	93	64	4,922	6,636
가정	40	2,107	39	10	2,195	9,759
부모협동	2,749	1,725	15	15	4,505	58
직장	2,482	443	346	67	3,338	379
F	20.9 <sup>***</sup>	47.1 <sup>***</sup>	34.4 <sup>***</sup>	21.1 <sup>***</sup>	38.6 <sup>***</sup>	
서울	64	2,389	143	30	2,626	2,087
부산	401	2,765	104	46	3,316	1,028
인천	10	2,487	116	74	2,687	1,178
광주	62	4,013	33	10	4,117	546
대구	33	1,762	51	16	1,862	803
시도 대전	23	4,342	33	10	4,408	613
울산	274	2,487	61	38	2,859	547
세종	0	4,494	102	13	4,610	77
경기	218	3,312	70	35	3,635	5,895
강원	582	2,884	165	105	3,735	458
충북	111	2,578	99	22	2,811	489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충남	30	2,756	110	20	2,916	1,174
전북	77	6,055	56	26	6,215	617
전남	36	3,450	209	19	3,714	424
경북	77	3,180	491	34	3,782	847
경남	15	1,737	61	30	1,843	1,181
제주	883	3,274	42	6	4,206	138
F	1.1	7.3 <sup>***</sup>	3.1 <sup>***</sup>	3.5 <sup>***</sup>	6.3 <sup>***</sup>	
대도시	118	2,713	96	35	2,962	6,532
지역 중소도시	134	3,021	57	32	3,245	8,228
규모 농어촌	243	3,558	254	38	4,093	3,342
F	0.9	7.2 <sup>**</sup>	14.9 <sup>***</sup>	0.3	10.7 <sup>***</sup>	
전체	149	3,009	107	34	3,299	18,102
정원 규모						
16~20인	53	2,157	43	11	2,264	8,406
46~54인	370	3,733	465	45	4,613	1,068
73~81인	63	3,862	239	113	4,277	514
93~101인	1,259	3,729	132	66	5,186	609
120~128인	7	4,812	87	55	4,961	145
138~146인	1	4,654	221	95	4,971	133
165인 이상	610	8,096	154	155	9,016	362
F	6.9 <sup>***</sup>	53.8 <sup>***</sup>	6.7 <sup>**</sup>	24.1 <sup>***</sup>	53.5 <sup>***</sup>	
전체	166	2,725	103	28	3,022	11,237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26〉 일반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11	66	99	4	181	455
사회복지법인	37	296	31	6	371	503
법인단체등	25	186	21	4	237	312
시설 유형						
민간	10	387	8	5	410	6,636
가정	3	176	3	1	183	9,759
부모협동	229	144	1	1	375	58
직장	207	37	29	6	278	379
F	20.9 <sup>***</sup>	47.1 <sup>***</sup>	34.4 <sup>***</sup>	21.1 <sup>***</sup>	38.6 <sup>***</sup>	
서울	5	199	12	3	219	2,087
부산	33	230	9	4	276	1,028
시도 인천	1	207	10	6	224	1,178
광주	5	334	3	1	343	546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대구	3	147	4	1	155	803	
대전	2	362	3	1	367	613	
울산	23	207	5	3	238	547	
세종	0	375	9	1	384	77	
경기	18	276	6	3	303	5,895	
강원	49	240	14	9	311	458	
충북	9	215	8	2	234	489	
충남	3	230	9	2	243	1,174	
전북	6	505	5	2	518	617	
전남	3	288	17	2	310	424	
경북	6	265	41	3	315	847	
경남	1	145	5	2	154	1,181	
제주	74	273	4	1	351	138	
F	1.1	7.3***	3.1***	3.5***	6.3***		
대도시	10	226	8	3	247	6,532	
지역 규모	중소도시	11	252	5	3	270	8,228
농어촌	20	297	21	3	341	3,342	
F	0.9	7.2**	14.9***	0.3	10.7***		
전체	12	251	9	3	275	18,102	
정원 규모	16~20인	4	180	4	1	189	8,406
46~54인	31	311	39	4	384	1,068	
73~81인	5	322	20	9	356	514	
93~101인	105	311	11	6	432	609	
120~128인	1	401	7	5	413	145	
138~146인	0	388	18	8	414	133	
165인 이상	51	675	13	13	751	362	
F	6.9***	53.8***	6.7***	24.1***	53.5***		
전체	14	227	9	2	252	11,237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27〉 일반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486	2,157	2,705	94	5,443	455	
시설 유형	사회복지법인	467	8,759	596	80	9,901	503
법인단체등	336	5,396	667	73	6,472	312	
민간	268	10,380	216	131	10,995	6,636	
가정	447	13,473	289	56	14,265	9,759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부모협동	6,924	5,332	56	33	12,346	58	
직장	4,421	936	842	74	6,274	379	
F	2.2 <sup>*</sup>	19.4 <sup>***</sup>	11.4 <sup>***</sup>	4.5 <sup>***</sup>	8.3 <sup>***</sup>		
서울	222	7,517	468	78	8,285	2,087	
부산	1,282	8,866	395	116	10,659	1,028	
인천	26	7,827	366	175	8,393	1,178	
광주	266	16,022	108	26	16,421	546	
대구	74	7,658	115	25	7,872	803	
대전	125	21,339	167	42	21,672	613	
울산	588	8,282	181	82	9,133	547	
세종	0	15,564	648	32	16,243	77	
경기	871	13,050	343	98	14,362	5,895	
강원	754	11,158	420	187	12,520	458	
충북	162	8,604	244	35	9,045	489	
충남	180	10,849	206	49	11,284	1,174	
전북	465	23,732	180	61	24,439	617	
전남	94	9,960	447	39	10,540	424	
경북	97	14,588	1,164	55	15,904	847	
경남	56	7,017	199	94	7,366	1,181	
제주	866	13,635	31	17	14,549	138	
F	0.3	14.5 <sup>***</sup>	1.2	2.1 <sup>**</sup>	9.8 <sup>***</sup>		
대도시	366	9,854	315	87	10,622	6,532	
지역 규모	중소도시	608	12,809	287	89	13,795	8,228
농어촌	413	11,472	568	73	12,526	3,342	
F	0.2	12.6 <sup>***</sup>	2.4	0.4	9.4 <sup>***</sup>		
전체	485	11,496	349	86	12,416	18,102	
정원 규모	16~20인	550	12,827	247	58	13,681	8,406
46~54인	782	11,316	1,061	103	13,261	1,068	
73~81인	92	6,406	391	261	7,150	514	
93~101인	1,364	4,484	158	72	6,078	609	
120~128인	6	5,153	116	61	5,335	145	
138~146인	0	4,077	214	66	4,357	133	
165인 이상	290	4,720	94	85	5,188	362	
F	0.1	11.7 <sup>***</sup>	4.1 <sup>***</sup>	4.1 <sup>***</sup>	6.6 <sup>***</sup>		
전체	573	11,474	319	73	12,439	11,237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28〉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324,395	6,067	34,217	63,514	16,025	1,208	759	446,185	684	
사회복지법인	394,116	8,232	59,366	68,683	28,794	3,702	1,158	564,051	133	
법인단체등	337,563	4,894	41,815	53,592	13,348	2,649	1,437	455,298	93	
시설 유형	민간	232,976	5,136	43,310	46,985	9,631	5,469	1,362	344,869	1,263
	가정	107,820	3,485	17,747	13,456	2,774	2,757	742	148,781	1,946
	부모협동	224,554	2,810	48,802	32,395	5,903	22,702	4,306	341,473	3
	직장	651,394	5,304	90,465	134,137	21,498	9,377	5,180	917,356	76
F	576.2 <sup>***</sup>	96.9 <sup>**</sup>	162.4 <sup>***</sup>	470.6 <sup>***</sup>	124.7 <sup>***</sup>	14.5 <sup>***</sup>	9.4 <sup>***</sup>	531.1 <sup>***</sup>		
시도	서울	246,920	4,190	30,948	45,782	12,026	2,134	1,070	343,070	917
	부산	198,289	5,166	29,639	32,940	7,112	3,478	839	277,463	175
	인천	205,812	5,011	35,706	38,194	7,020	2,409	1,009	295,161	145
	광주	194,983	5,763	37,294	35,348	6,210	5,051	1,262	285,910	120
	대구	208,476	5,168	32,804	35,788	7,521	2,132	1,482	293,372	208
	대전	192,798	4,375	31,828	36,642	7,041	5,131	1,363	279,179	208
	울산	143,438	5,184	26,217	23,949	4,222	2,100	671	205,783	56
	세종	471,157	6,567	69,583	122,081	35,731	1,396	1,512	708,028	7
	경기	183,910	4,179	29,139	32,079	6,325	4,193	736	260,561	1,112
	강원	189,810	4,396	30,209	34,015	8,253	3,316	723	270,722	65
	충북	206,438	4,960	32,453	39,348	9,915	2,689	1,142	296,945	148
	충남	161,010	4,516	27,084	27,263	8,558	2,448	949	231,828	146
	전북	190,724	4,190	30,004	29,513	7,461	6,395	1,244	269,531	236
	전남	221,816	5,902	35,906	43,079	8,030	2,445	732	317,910	157
	경북	237,755	6,002	42,818	42,348	12,077	7,210	3,038	351,248	156
	경남	149,885	4,666	25,373	24,926	5,238	2,213	650	212,951	260
제주	292,423	6,147	45,239	49,893	13,914	2,835	1,061	411,513	82	
F	11.8 <sup>***</sup>	8.4 <sup>***</sup>	4.2 <sup>***</sup>	10.7 <sup>***</sup>	7.6 <sup>***</sup>	3.5 <sup>***</sup>	1.8 <sup>***</sup>	10.8 <sup>***</sup>		
지역 규모	대도시	224,440	4,595	31,988	41,025	9,666	2,789	1,142	315,645	1,764
	중소도시	181,597	4,297	28,193	31,336	6,577	4,027	928	256,955	1,560
	농어촌	206,794	5,231	35,513	36,760	9,080	3,908	1,048	298,336	874
	F	28.9 <sup>***</sup>	10.9 <sup>***</sup>	13.5 <sup>***</sup>	26.0 <sup>***</sup>	15.5 <sup>***</sup>	4.7 <sup>**</sup>	0.6	26.4 <sup>***</sup>	
전체	204,846	4,617	31,312	36,537	8,396	3,482	1,043	290,232	4,198	
정원 규모	16~20인	114,323	3,562	18,823	14,262	3,237	2,870	760	157,836	1,605
	46~54인	227,222	4,599	30,122	41,808	9,194	3,159	1,058	317,161	309
	73~81인	316,672	6,236	43,843	66,564	15,374	2,017	1,226	451,931	195
	93~101인	369,328	7,028	58,734	75,701	16,381	4,089	1,287	532,547	174
	120~128인	465,431	9,250	69,716	98,506	21,366	7,046	1,623	672,939	45
	138~146인	472,967	8,569	81,026	118,099	22,753	2,798	3,084	709,295	22
	165인 이상	816,613	7,982	149,883	188,528	40,866	10,325	2,799	1,216,995	71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F	784.6***	114.4***	245.8***	1,019.9***	176.9***	11.0***	8.1***	895.2***	
전체	193,739	4,440	30,504	34,026	7,537	3,221	970	274,437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29〉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27,033	506	2,851	5,293	1,335	101	63	37,182	684	
사회복지법인	32,843	686	4,947	5,724	2,399	309	97	47,004	133	
법인단체등	28,130	408	3,485	4,466	1,112	221	120	37,941	93	
시설 유형	민간	19,415	428	3,609	3,915	803	456	114	28,739	1,263
가정	8,985	290	1,479	1,121	231	230	62	12,398	1,946	
부모협동	18,713	234	4,067	2,700	492	1,892	359	28,456	3	
직장	54,283	442	7,539	11,178	1,792	781	432	76,446	76	
F	576.2***	96.9***	162.4***	470.6***	124.7***	14.5***	9.4***	531.1***		
서울	20,577	349	2,579	3,815	1,002	178	89	28,589	917	
부산	16,524	430	2,470	2,745	593	290	70	23,122	175	
인천	17,151	418	2,976	3,183	585	201	84	24,597	145	
광주	16,249	480	3,108	2,946	517	421	105	23,826	120	
대구	17,373	431	2,734	2,982	627	178	124	24,448	208	
대전	16,067	365	2,652	3,053	587	428	114	23,265	208	
울산	11,953	432	2,185	1,996	352	175	56	17,149	56	
세종	39,263	547	5,799	10,173	2,978	116	126	59,002	7	
경기	15,326	348	2,428	2,673	527	349	61	21,713	1,112	
강원	15,818	366	2,517	2,835	688	276	60	22,560	65	
충북	17,203	413	2,704	3,279	826	224	95	24,745	148	
충남	13,417	376	2,257	2,272	713	204	79	19,319	146	
전북	15,894	349	2,500	2,459	622	533	104	22,461	236	
전남	18,485	492	2,992	3,590	669	204	61	26,493	157	
경북	19,813	500	3,568	3,529	1,006	601	253	29,271	156	
경남	12,490	389	2,114	2,077	437	184	54	17,746	260	
제주	24,369	512	3,770	4,158	1,160	236	88	34,293	82	
F	11.8***	8.4***	4.2***	10.7***	7.6***	3.5***	1.8***	10.8***		
대도시	18,703	383	2,666	3,419	805	232	95	26,304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15,133	358	2,349	2,611	548	77	21,413	1,560	
농어촌	17,233	436	2,959	3,063	757	326	87	24,861	874	
F	28.9***	10.9***	13.5***	26.0***	15.5***	4.7**	0.6	26.4***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전체	17,070	385	2,609	3,045	700	290	87	24,186	4,198	
16~20인	9,527	297	1,569	1,188	270	239	63	13,153	1,605	
46~54인	18,935	383	2,510	3,484	766	263	88	26,430	309	
73~81인	26,389	520	3,654	5,547	1,281	168	102	37,661	195	
정원 규모	93~101인	30,777	586	4,894	6,308	1,365	341	107	44,379	174
120~128인	38,786	771	5,810	8,209	1,781	587	135	56,078	45	
138~146인	39,414	714	6,752	9,842	1,896	233	257	59,108	22	
165인 이상	68,051	665	12,490	15,711	3,405	860	233	101,416	71	
F	784.6***	114.4***	245.8***	1,019.9***	176.9***	11.0***	8.1***	895.2***		
전체	16,145	370	2,542	2,836	628	268	81	22,870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30〉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국공립	501,078	10,086	51,029	89,261	24,162	1,931	1,207	678,755	684	
사회복지법인	535,934	11,136	78,908	84,222	35,887	6,000	2,243	754,329	133	
법인단체등	566,234	8,633	69,653	85,329	22,306	5,657	2,348	760,160	93	
시설 유형	민간	422,718	9,207	76,345	76,699	16,588	11,369	615,627	1,263	
가정	645,914	21,021	108,739	80,997	16,570	17,930	4,697	895,867	1,946	
부모협동	695,200	6,269	131,935	97,115	15,390	59,936	19,341	1,025,187	3	
직장	673,806	6,144	78,785	126,962	17,508	15,335	17,034	935,574	76	
F	80.5***	147.2***	104.6***	26.2***	8.6***	23.2***	7.7***	74.9***		
서울	543,670	10,657	73,689	85,303	24,020	4,998	2,675	745,012	917	
부산	494,153	14,599	77,697	72,589	15,491	10,680	2,311	687,521	175	
인천	551,917	18,172	85,545	82,578	15,711	10,751	4,545	769,217	145	
광주	524,263	20,408	94,345	79,586	12,307	13,899	4,012	748,820	120	
대구	525,018	15,371	81,708	79,122	15,723	7,491	5,678	730,112	208	
대전	516,857	11,995	90,720	83,374	17,905	22,239	4,651	747,740	208	
시도	울산	558,236	20,560	96,514	77,860	14,541	11,943	2,158	781,812	56
세종	300,812	4,902	50,500	79,189	18,843	2,320	949	457,515	7	
경기	581,005	16,291	94,296	83,145	16,067	16,754	3,232	810,790	1,112	
강원	478,115	13,353	78,441	74,915	16,503	10,548	4,413	676,288	65	
충북	521,162	14,612	84,624	82,088	22,938	9,472	2,930	737,828	148	
충남	606,419	19,479	99,042	88,726	21,960	9,958	4,447	850,030	146	
전북	568,818	13,767	91,732	74,373	19,538	27,516	3,703	799,447	236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sup>2)</sup>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sup>2)</sup>	기관수
전남	548,263	16,700	96,194	87,973	15,687	8,369	2,201	775,388	157
경북	535,205	14,141	92,428	84,761	21,204	19,820	11,280	778,838	156
경남	527,811	18,281	92,909	74,800	15,601	12,220	2,902	744,524	260
제주	596,454	13,346	91,512	85,308	18,720	5,428	3,359	814,128	82
F	2.6**	11.9***	5.7***	3.1***	2.3**	9.7***	1.6	2.6***	
대도시	534,007	12,993	79,395	82,647	20,102	8,791	3,446	741,382	1,764
지역 중소도시	566,519	16,158	90,810	80,373	16,717	16,691	3,942	791,209	1,560
규모 농어촌	554,982	16,107	96,766	84,041	18,774	13,382	3,454	787,506	874
F	4.7**	26.5***	28.8***	2.8	3.2**	23.3***	0.2	7.1**	
전체	550,456	14,818	87,253	82,092	18,567	12,682	3,632	769,501	4,198
16~20인	631,123	19,367	106,314	79,121	17,339	17,336	4,362	874,961	1,605
46~54인	469,576	9,353	64,042	85,367	19,042	7,119	2,198	656,697	309
73~81인	406,672	7,940	57,026	83,504	18,968	3,104	1,568	578,783	195
정원 93~101인	395,320	7,449	63,938	79,414	18,018	5,776	1,721	571,637	174
규모 120~128인	376,755	7,281	58,615	78,676	17,262	10,572	1,350	550,512	45
138~146인	346,223	6,602	62,680	83,829	15,899	2,506	4,371	522,111	22
165인 이상	392,481	4,240	71,757	90,731	19,200	5,363	1,583	585,355	71
F	43.3***	86.4***	48.4***	2.2*	0.4	10.3***	4.5***	41.6***	
전체	561,163	15,527	91,607	80,667	17,776	13,443	3,533	783,717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2) 사업운영비와 세출합계는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31〉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324,395	6,067	34,217	100,407	16,025	1,208	759	483,078	684
사회복지법인	394,116	8,232	59,366	121,133	28,794	3,702	1,158	616,501	133
법인단체등	337,563	4,894	41,815	89,057	13,348	2,649	1,437	490,763	93
시설 유형 민간	232,976	5,136	43,310	99,192	9,631	5,469	1,362	397,075	1,263
가정	107,820	3,485	17,747	20,217	2,774	2,757	742	155,542	1,946
부모협동	224,554	2,810	48,802	69,614	5,903	22,702	4,306	378,692	3
직장	651,394	5,304	90,465	177,294	21,498	9,377	5,180	960,513	76
F	576.2***	96.9***	162.4***	349.6***	124.7***	14.5***	9.4***	500.9***	
서울	246,920	4,190	30,948	74,748	12,026	2,134	1,070	372,036	917
부산	198,289	5,166	29,639	60,784	7,112	3,478	839	305,307	175
시도 인천	205,812	5,011	35,706	73,810	7,020	2,409	1,009	330,777	145
광주	194,983	5,763	37,294	63,973	6,210	5,051	1,262	314,535	120
대구	208,476	5,168	32,804	68,095	7,521	2,132	1,482	325,679	208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대전	192,798	4,375	31,828	72,438	7,041	5,131	1,363	314,975	208
울산	143,438	5,184	26,217	44,783	4,222	2,100	671	226,616	56
세종	471,157	6,567	69,583	195,533	35,731	1,396	1,512	781,479	7
경기	183,910	4,179	29,139	64,317	6,325	4,193	736	292,799	1,112
강원	189,810	4,396	30,209	53,318	8,253	3,316	723	290,025	65
충북	206,438	4,960	32,453	64,264	9,915	2,689	1,142	321,861	148
충남	161,010	4,516	27,084	45,970	8,558	2,448	949	250,535	146
전북	190,724	4,190	30,004	47,374	7,461	6,395	1,244	287,393	236
전남	221,816	5,902	35,906	67,784	8,030	2,445	732	342,614	157
경북	237,755	6,002	42,818	63,557	12,077	7,210	3,038	372,457	156
경남	149,885	4,666	25,373	41,993	5,238	2,213	650	230,018	260
제주	292,423	6,147	45,239	83,448	13,914	2,835	1,061	445,068	82
F	11.8***	8.4***	4.2***	6.5***	7.6***	3.5***	1.8***	9.4***	
대도시	224,440	4,595	31,988	71,867	9,666	2,789	1,142	346,487	1,764
지역 중소도시	181,597	4,297	28,193	58,129	6,577	4,027	928	283,747	1,560
규모 농어촌	206,794	5,231	35,513	61,695	9,080	3,908	1,048	323,270	874
F	28.9***	10.9***	13.5***	15.2***	15.5***	4.7**	0.6	23.5***	
전체	204,846	4,617	31,312	64,644	8,396	3,482	1,043	318,339	4,198
16~20인	114,323	3,562	18,823	21,818	3,237	2,870	760	165,393	1,605
46~54인	227,222	4,599	30,122	71,499	9,194	3,159	1,058	346,852	309
73~81인	316,672	6,236	43,843	116,222	15,374	2,017	1,226	501,590	195
정원 93~101인	369,328	7,028	58,734	146,623	16,381	4,089	1,287	603,470	174
규모 120~128인	465,431	9,250	69,716	207,960	21,366	7,046	1,623	782,393	45
138~146인	472,967	8,569	81,026	269,573	22,753	2,798	3,084	860,769	22
165인 이상	816,613	7,982	149,883	342,169	40,866	10,325	2,799	1,370,635	71
F	784.6***	114.4***	245.8***	1,313.4***	176.9***	11.0***	8.1***	1,156.1***	
전체	193,739	4,440	30,504	59,839	7,537	3,221	970	300,250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32〉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27,033	506	2,851	8,367	1,335	101	63	40,257	684
사회복지법인	32,843	686	4,947	10,094	2,399	309	97	51,375	133
시설 유형 법인단체등	28,130	408	3,485	7,421	1,112	221	120	40,897	93
민간	19,415	428	3,609	8,266	803	456	114	33,090	1,263
가정	8,985	290	1,479	1,685	231	230	62	12,962	1,946
부모협동	18,713	234	4,067	5,801	492	1,892	359	31,558	3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직장	54,283	442	7,539	14,775	1,792	781	432	80,043	76
F	576.2***	96.9***	162.4***	349.6***	124.7***	14.5***	9.4***	500.9***	
서울	20,577	349	2,579	6,229	1,002	178	89	31,003	917
부산	16,524	430	2,470	5,065	593	290	70	25,442	175
인천	17,151	418	2,976	6,151	585	201	84	27,565	145
광주	16,249	480	3,108	5,331	517	421	105	26,211	120
대구	17,373	431	2,734	5,675	627	178	124	27,140	208
대전	16,067	365	2,652	6,036	587	428	114	26,248	208
울산	11,953	432	2,185	3,732	352	175	56	18,885	56
세종	39,263	547	5,799	16,294	2,978	116	126	65,123	7
경기도	15,326	348	2,428	5,360	527	349	61	24,400	1,112
강원	15,818	366	2,517	4,443	688	276	60	24,169	65
충북	17,203	413	2,704	5,355	826	224	95	26,822	148
충남	13,417	376	2,257	3,831	713	204	79	20,878	146
전북	15,894	349	2,500	3,948	622	533	104	23,949	236
전남	18,485	492	2,992	5,649	669	204	61	28,551	157
경북	19,813	500	3,568	5,296	1,006	601	253	31,038	156
경남	12,490	389	2,114	3,499	437	184	54	19,168	260
제주	24,369	512	3,770	6,954	1,160	236	88	37,089	82
F	11.8***	8.4***	4.2***	6.5***	7.6***	3.5***	1.8***	9.4***	
대도시	18,703	383	2,666	5,989	805	232	95	28,874	1,764
지역 중소도시	15,133	358	2,349	4,844	548	336	77	23,646	1,560
규모 농어촌	17,233	436	2,959	5,141	757	326	87	26,939	874
F	28.9***	10.9***	13.5***	15.2***	15.5***	4.7***	0.6	23.5***	
전체	17,070	385	2,609	5,387	700	290	87	26,528	4,198
16~20인	9,527	297	1,569	1,818	270	239	63	13,783	1,605
46~54인	18,935	383	2,510	5,958	766	263	88	28,904	309
73~81인	26,389	520	3,654	9,685	1,281	168	102	41,799	195
정원 93~101인	30,777	586	4,894	12,219	1,365	341	107	50,289	174
규모 120~128인	38,786	771	5,810	17,330	1,781	587	135	65,199	45
138~146인	39,414	714	6,752	22,464	1,896	233	257	71,731	22
165인 이상	68,051	665	12,490	28,514	3,405	860	233	114,220	71
F	784.6***	114.4***	245.8***	1,313.4***	176.9***	11.0***	8.1***	1,156.1***	
전체	16,145	370	2,542	4,987	628	268	81	25,021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33〉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국공립	501,078	10,086	51,029	137,381	24,162	1,931	1,207	726,874	684	
사회복지법인	535,934	11,136	78,908	140,282	35,887	6,000	2,243	810,389	133	
법인단체등	566,234	8,633	69,653	136,711	22,306	5,657	2,348	811,543	93	
시설 유형	민간	422,718	9,207	76,345	152,328	16,588	11,369	2,702	691,257	1,263
가정	645,914	21,021	108,739	118,400	16,570	17,930	4,697	933,270	1,946	
부모협동	695,200	6,269	131,935	171,869	15,390	59,936	19,341	1,099,941	3	
직장	673,806	6,144	78,785	172,251	17,508	15,335	17,034	980,864	76	
F	80.5**	147.2***	104.6**	42.0**	8.6**	23.2**	7.7**	56.2**		
서울	543,670	10,657	73,689	132,721	24,020	4,998	2,675	792,431	917	
부산	494,153	14,599	77,697	123,448	15,491	10,680	2,311	738,380	175	
인천	551,917	18,172	85,545	154,886	15,711	10,751	4,545	841,526	145	
광주	524,263	20,408	94,345	120,048	12,307	13,899	4,012	789,282	120	
대구	525,018	15,371	81,708	130,895	15,723	7,491	5,678	781,884	208	
대전	516,857	11,995	90,720	150,190	17,905	22,239	4,651	814,556	208	
울산	558,236	20,560	96,514	123,824	14,541	11,943	2,158	827,777	56	
세종	300,812	4,902	50,500	133,868	18,843	2,320	949	512,193	7	
경기	581,005	16,291	94,296	152,312	16,067	16,754	3,232	879,958	1,112	
강원	478,115	13,353	78,441	109,703	16,503	10,548	4,413	711,076	65	
충북	521,162	14,612	84,624	123,104	22,938	9,472	2,930	778,843	148	
충남	606,419	19,479	99,042	134,812	21,960	9,958	4,447	896,116	146	
전북	568,818	13,767	91,732	106,419	19,538	27,516	3,703	831,493	236	
전남	548,263	16,700	96,194	115,440	15,687	8,369	2,201	802,855	157	
경북	535,205	14,141	92,428	115,010	21,204	19,820	11,280	809,087	156	
경남	527,811	18,281	92,909	113,616	15,601	12,220	2,902	783,340	260	
제주	596,454	13,346	91,512	123,274	18,720	5,428	3,359	852,094	82	
F	2.6**	11.9***	5.7***	15.4***	2.3**	9.7***	1.6	3.4**		
지역 규모	대도시	534,007	12,993	79,395	135,049	20,102	8,791	3,446	793,784	1,764
중소도시	566,519	16,158	90,810	135,763	16,717	16,691	3,942	846,599	1,560	
농어촌	554,982	16,107	96,766	127,832	18,774	13,382	3,454	831,297	874	
F	4.7**	26.5***	28.8***	4.6*	3.2**	23.3***	0.2	7.0*		
전체	550,456	14,818	87,253	133,812	18,567	12,682	3,632	821,220	4,198	
정원 규모	16~20인	631,123	19,367	106,314	118,895	17,339	17,336	4,362	914,735	1,605
46~54인	469,576	9,353	64,042	145,515	19,042	7,119	2,198	716,845	309	
73~81인	406,672	7,940	57,026	144,973	18,968	3,104	1,568	640,252	195	
93~101인	395,320	7,449	63,938	153,390	18,018	5,776	1,721	645,613	174	
120~128인	376,755	7,281	58,615	166,016	17,262	10,572	1,350	637,852	45	
138~146인	346,223	6,602	62,680	193,910	15,899	2,506	4,371	632,191	22	
165인 이상	392,481	4,240	71,757	167,930	19,200	5,363	1,583	662,554	71	



구분	인건비	업무 추진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 <sup>1)</sup>	세출 계	기관수
F	43.3***	86.4***	48.4***	33.6***	0.4	10.3***	4.5***	32.3***	
전체	561,163	15,527	91,607	129,868	17,776	13,443	3,533	832,918	2,421

주: 1) 기타는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합계임.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34〉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250,585	2,103	15,106	22,245	24,094	10,262	324,395	684
사회복지법인	308,637	6,013	10,851	26,421	33,381	8,813	394,116	133
법인단체등	259,479	3,496	13,768	23,012	29,394	8,414	337,563	93
시설 유형	민간	186,560	3,158	6,047	13,521	18,624	232,976	1,263
가정	87,386	969	2,784	5,924	8,347	2,410	107,820	1,946
부모협동	180,973	1,548	5,827	15,322	16,984	3,900	224,554	3
직장	432,392	14,978	95,601	42,736	47,101	18,586	651,394	76
F	562.8***	56.5***	382.6***	573.6***	460.2***	274.3***	576.2***	
서울	194,340	1,485	11,342	15,112	17,818	6,823	246,920	917
부산	157,822	3,161	5,203	11,886	16,311	3,906	198,289	175
인천	159,025	3,117	10,661	12,942	14,685	5,382	205,812	145
광주	154,240	4,300	5,998	11,993	14,193	4,260	194,983	120
대구	168,600	2,077	4,050	12,638	15,843	5,268	208,476	208
대전	149,079	4,244	7,833	11,445	15,679	4,519	192,798	208
울산	113,191	1,600	3,337	8,228	14,112	2,969	143,438	56
세종	303,412	15,065	76,824	30,242	35,528	10,086	471,157	7
경기	143,111	1,945	8,248	11,329	14,416	4,860	183,910	1,112
강원	148,277	2,383	8,296	11,506	15,522	3,827	189,810	65
충북	159,836	4,979	8,835	11,657	16,032	5,098	206,438	148
충남	127,576	1,226	3,560	10,991	12,229	5,427	161,010	146
전북	151,364	2,556	5,193	11,240	16,476	3,895	190,724	236
전남	176,207	2,132	6,788	13,583	18,701	4,405	221,816	157
경북	189,126	3,227	5,964	14,801	19,394	5,242	237,755	156
경남	118,608	1,414	4,468	9,374	13,076	2,945	149,885	260
제주	230,979	1,763	8,514	19,820	24,157	7,190	292,423	82
F	13.6***	5.4***	8.4***	9.6***	7.9***	8.9***	11.8***	
대도시	176,824	2,317	9,082	13,684	16,751	5,782	224,440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142,584	2,143	7,226	10,970	14,337	181,597	1,560
농어촌	161,687	2,459	6,980	13,176	17,318	5,175	206,794	874
F	35.2***	0.5	4.3*	24.3***	19.3***	21.1***	28.9***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전체	160,949	2,282	7,955	12,570	15,972	5,119	204,846	4,198	
16~20인	92,716	1,033	2,989	6,271	8,758	2,556	114,323	1,605	
46~54인	179,166	2,148	8,392	14,436	17,539	5,541	227,222	309	
73~81인	246,642	2,975	13,315	20,796	24,519	8,425	316,672	195	
정원 규모	93~101인	289,760	4,315	12,904	23,161	29,575	9,614	369,328	174
120~128인	358,329	6,788	21,350	30,537	36,688	11,739	465,431	45	
138~146인	367,652	2,715	13,417	31,191	40,273	17,719	472,967	22	
165인 이상	581,419	19,068	80,260	50,765	62,467	22,634	816,613	71	
F	918.5***	59.7***	149.0***	551.6***	728.8***	235.8***	784.6***		
전체	152,077	2,219	7,925	11,679	15,025	4,814	193,739	2,421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35〉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20,882	175	1,259	1,854	2,008	855	27,033	684	
사회복지법인	25,720	501	904	2,202	2,782	734	32,843	133	
법인단체등	21,623	291	1,147	1,918	2,450	701	28,130	93	
시설 유형	민간	15,547	263	504	1,127	1,552	422	19,415	1,263
가정	7,282	81	232	494	696	201	8,985	1,946	
부모협동	15,081	129	486	1,277	1,415	325	18,713	3	
직장	36,033	1,248	7,967	3,561	3,925	1,549	54,283	76	
F	562.8***	56.5***	382.6***	573.6***	460.2***	274.3***	576.2***		
서울	16,195	124	945	1,259	1,485	569	20,577	917	
부산	13,152	263	434	991	1,359	325	16,524	175	
인천	13,252	260	888	1,079	1,224	448	17,151	145	
광주	12,853	358	500	999	1,183	355	16,249	120	
대구	14,050	173	337	1,053	1,320	439	17,373	208	
대전	12,423	354	653	954	1,307	377	16,067	208	
울산	9,433	133	278	686	1,176	247	11,953	56	
시도	세종	25,284	1,255	6,402	2,520	2,961	841	39,263	7
경기	11,926	162	687	944	1,201	405	15,326	1,112	
강원	12,356	199	691	959	1,293	319	15,818	65	
충북	13,320	415	736	971	1,336	425	17,203	148	
충남	10,631	102	297	916	1,019	452	13,417	146	
전북	12,614	213	433	937	1,373	325	15,894	236	
전남	14,684	178	566	1,132	1,558	367	18,485	157	
경북	15,761	269	497	1,233	1,616	437	19,813	156	

구분	기본급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경남	9,884	118	372	781	1,090	245	12,490	260	
제주	19,248	147	709	1,652	2,013	599	24,369	82	
F	13.6***	5.4***	8.4***	9.6***	7.9***	8.9**	11.8**		
대도시	14,735	193	757	1,140	1,396	482	18,703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11,882	179	602	914	1,195	361	15,133	1,560
농어촌	13,474	205	582	1,098	1,443	431	17,233	874	
F	35.2***	0.5	4.3*	24.3***	19.3***	21.1***	28.9***		
전체	13,412	190	663	1,047	1,331	427	17,070	4,198	
정원 규모	16~20인	7,726	86	249	523	730	213	9,527	1,605
46~54인	14,930	179	699	1,203	1,462	462	18,935	309	
73~81인	20,554	248	1,110	1,733	2,043	702	26,389	195	
93~101인	24,147	360	1,075	1,930	2,465	801	30,777	174	
120~128인	29,861	566	1,779	2,545	3,057	978	38,786	45	
138~146인	30,638	226	1,118	2,599	3,356	1,477	39,414	22	
165인 이상	48,452	1,589	6,688	4,230	5,206	1,886	68,051	71	
F	918.5***	59.7***	149.0***	551.6***	728.8***	235.8***	784.6***		
전체	12,673	185	660	973	1,252	401	16,145	2,421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36〉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인건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기본급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국공립	387,591	3,332	23,018	34,329	37,383	15,424	501,078	684	
사회복지법인	419,996	8,924	15,030	36,326	45,194	10,463	535,934	133	
법인단체등	435,818	6,522	19,597	38,974	52,310	13,013	566,234	93	
시설 유형	민간	340,015	5,599	10,555	24,452	33,674	8,422	422,718	1,263
가정	522,905	5,629	17,003	35,440	50,935	14,002	645,914	1,946	
부모협동	561,535	4,440	18,049	43,521	50,208	17,447	695,200	3	
직장	471,378	10,397	81,430	42,782	49,984	17,835	673,806	76	
F	78.0**	4.3***	123.0***	37.9***	61.8**	59.7**	80.5**		
서울	437,953	2,894	20,038	30,941	38,975	12,869	543,670	917	
부산	397,974	6,653	11,283	28,491	40,853	8,897	494,153	175	
인천	445,171	5,080	17,378	32,092	39,947	12,249	551,917	145	
광주	418,376	7,670	19,434	29,668	38,144	10,971	524,263	120	
대구	430,230	4,190	8,402	30,957	38,092	13,147	525,018	208	
대전	408,616	8,134	15,566	30,160	43,532	10,850	516,857	208	
울산	437,555	7,674	12,012	34,818	55,370	10,807	558,236	56	
세종	202,081	10,159	40,439	19,051	22,439	6,643	300,812	7	

구분	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계	기관수
경기	461,228	5,675	19,459	34,280	46,133	14,230	581,005	1,112
강원	369,421	6,235	27,382	28,274	37,868	8,935	478,115	65
충북	411,053	11,530	17,303	27,803	40,793	12,680	521,162	148
충남	485,855	4,827	13,152	41,263	44,584	16,737	606,419	146
전북	451,248	7,692	15,302	31,506	52,042	11,027	568,818	236
전남	440,522	4,353	14,364	30,777	48,499	9,749	548,263	157
경북	428,131	6,980	12,662	32,209	42,519	12,704	535,205	156
경남	418,269	5,380	15,866	32,248	46,299	9,750	527,811	260
제주	484,865	3,044	14,876	36,933	44,834	11,901	596,454	82
F	2.4**	4.1***	5.8***	3.6***	6.3***	8.9***	2.6**	
대도시	429,526	4,508	17,135	30,793	39,957	12,089	534,007	1,764
지역 중소도시	451,462	6,132	18,302	32,250	45,694	12,680	566,519	1,560
규모 농어촌	439,426	6,162	15,390	34,944	46,087	12,974	554,982	874
F	3.0	5.2**	3.8*	9.5***	23.0***	2.6	4.7**	
전체	439,739	5,455	17,205	32,199	43,365	12,493	550,456	4,198
정원 16~20인	511,595	5,755	16,805	34,310	48,972	13,686	631,123	1,605
46~54인	370,475	4,714	16,853	29,797	36,792	10,946	469,576	309
73~81인	316,993	4,104	16,607	26,750	31,845	10,373	406,672	195
93~101인	309,791	5,302	14,064	24,528	31,771	9,864	395,320	174
규모 120~128인	289,903	5,127	17,662	24,625	30,194	9,245	376,755	45
138~146인	267,625	2,349	9,731	23,465	31,338	11,714	346,223	22
165인 이상	284,391	8,301	34,661	24,322	30,330	10,475	392,481	71
F	46.3**	0.7	6.6**	10.7**	33.8**	9.3**	43.3**	
전체	450,404	5,489	17,073	31,851	43,745	12,600	561,163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록표 IV-3-37〉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1,169	4,575	323	6,067	684	
사회복지법인	1,189	6,754	289	8,232	133	
법인단체등	1,043	3,603	248	4,894	93	
시설 유형	민간	703	4,336	97	5,136	1,263
가정	401	3,034	50	3,485	1,946	
부모협동	788	1,967	56	2,810	3	
직장	1,442	3,036	825	5,304	76	
F	84.3**	59.2**	178.1**	96.9**		
서울	798	3,213	179	4,190	917	
시도 부산	524	4,474	167	5,166	175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인천	494	4,338	179	5,011	145
광주	639	5,054	70	5,763	120
대구	621	4,449	98	5,168	208
대전	564	3,709	102	4,375	208
울산	429	4,646	110	5,184	56
세종	819	5,150	597	6,567	7
경기	685	3,385	109	4,179	1,112
강원	869	3,384	143	4,396	65
충북	807	4,014	138	4,960	148
충남	558	3,851	107	4,516	146
전북	715	3,365	110	4,190	236
전남	617	5,154	131	5,902	157
경북	867	5,002	134	6,002	156
경남	482	4,080	104	4,666	260
제주	496	5,351	300	6,147	82
F	3.9**	11.9***	5.6***	8.4***	
대도시	688	3,756	151	4,595	1,764
지역구 중소도시	651	3,526	120	4,297	1,560
모 농어촌	693	4,411	127	5,231	874
F	0.8	23.6***	4.4*	10.9***	
전체	675	3,807	135	4,617	4,198
정원 규모					
16~20인	429	3,076	56	3,562	1,605
46~54인	753	3,682	163	4,599	309
73~81인	1,024	4,940	271	6,236	195
93~101인	1,108	5,679	241	7,028	174
120~128인	1,657	7,252	340	9,250	45
138~146인	1,554	6,572	442	8,569	22
165인 이상	1,497	5,862	623	7,982	71
F	61.7***	65.9***	71.5***	114.4***	
전체	632	3,682	126	4,440	2,421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38〉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	381	27	506	684
사회복지법인	99	563	24	686	133
시설 유형					
법인단체등	87	300	21	408	93
민간	59	361	8	428	1,263
가정	33	253	4	290	1,946
부모협동	66	164	5	234	3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직장	120	253	69	442	76
	F	84.3***	59.2***	178.1***	96.9***	
시도	서울	67	268	15	349	917
	부산	44	373	14	430	175
	인천	41	361	15	418	145
	광주	53	421	6	480	120
	대구	52	371	8	431	208
	대전	47	309	9	365	208
	울산	36	387	9	432	56
	세종	68	429	50	547	7
	경기	57	282	9	348	1,112
	강원	72	282	12	366	65
	충북	67	335	12	413	148
	충남	47	321	9	376	146
	전북	60	280	9	349	236
	전남	51	429	11	492	157
	경북	72	417	11	500	156
	경남	40	340	9	389	260
제주	41	446	25	512	82	
	F	3.9***	11.9***	5.6***	8.4***	
지역규모	대도시	57	313	13	383	1,764
	중소도시	54	294	10	358	1,560
	모 농어촌	58	368	11	436	874
	F	0.8	23.6***	4.4*	10.9***	
정원규모	전체	56	317	11	385	4,198
	16~20인	36	256	5	297	1,605
	46~54인	63	307	14	383	309
	73~81인	85	412	23	520	195
	93~101인	92	473	20	586	174
	120~128인	138	604	28	771	45
	138~146인	130	548	37	714	22
	165인 이상	125	489	52	665	71
	F	61.7***	65.9***	71.5***	114.4***	
전체	53	307	10	370	2,421	

\*  $p < .05$ , \*\*\*  $p < .001$ 

〈부록표 IV-3-39〉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업무추진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1,933	7,659	495	10,086	684
	사회복지법인	1,660	9,085	392	11,136	133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법인단체등	1,964	6,299	371	8,633	93
민간	1,274	7,766	167	9,207	1,263
가정	2,391	18,351	279	21,021	1,946
부모협동	2,589	3,563	118	6,269	3
직장	1,502	3,849	793	6,144	76
F	18.7 <sup>***</sup>	144.8 <sup>***</sup>	21.6 <sup>***</sup>	147.2 <sup>***</sup>	
서울	1,722	8,593	342	10,657	917
부산	1,360	12,846	393	14,599	175
인천	1,796	16,055	321	18,172	145
광주	2,016	18,165	227	20,408	120
대구	1,587	13,563	222	15,371	208
대전	1,509	10,279	207	11,995	208
울산	2,196	17,929	435	20,560	56
세종	692	3,889	321	4,902	7
경기	2,229	13,802	260	16,291	1,112
강원	2,280	10,777	295	13,353	65
충북	2,357	11,993	261	14,612	148
충남	1,831	17,363	285	19,479	146
전북	2,261	11,202	305	13,767	236
전남	1,670	14,827	203	16,700	157
경북	2,201	11,650	290	14,141	156
경남	2,180	15,748	354	18,281	260
제주	849	12,035	462	13,346	82
F	3.3 <sup>***</sup>	12.6 <sup>***</sup>	1.6	11.9 <sup>***</sup>	
대도시	1,684	11,003	306	12,993	1,764
지역규 중소도시	2,190	13,670	298	16,158	1,560
모 농어촌	1,970	13,868	269	16,107	874
F	11.9 <sup>***</sup>	23.0 <sup>***</sup>	0.7	26.5 <sup>***</sup>	
전체	1,932	12,591	295	14,818	4,198
16~20인	2,392	16,680	295	19,367	1,605
46~54인	1,530	7,508	315	9,353	309
73~81인	1,271	6,337	332	7,940	195
정원 93~101인	1,167	6,027	256	7,449	174
규모 120~128인	1,274	5,728	279	7,281	45
138~146인	1,110	5,119	373	6,602	22
165인 이상	747	3,212	282	4,240	71
F	12.2 <sup>***</sup>	81.7 <sup>***</sup>	0.2	86.4 <sup>***</sup>	
전체	2,023	13,207	298	15,527	2,421

\*\*\*  $p < .001$

## 〈부록표 IV-3-40〉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1	27,738	2,175	1,793	1,541	34,217	684	
사회복지법인	648	32,790	8,870	4,479	12,579	59,366	133	
법인단체등	834	26,134	5,255	3,148	6,445	41,815	93	
시설 유형	민간	153	19,282	3,439	1,064	19,371	43,310	1,263
	가정	67	9,367	1,259	300	6,754	17,747	1,946
	부모협동	0	19,445	13,175	682	15,500	48,802	3
	직장	1,202	74,512	6,321	2,640	5,790	90,465	76
	F	135.5***	146.4***	58.7***	142.4***	244.3***	162.4***	
서울	343	20,130	512	323	9,640	30,948	917	
부산	256	15,851	2,213	1,072	10,247	29,639	175	
인천	460	22,139	3,645	938	8,523	35,706	145	
광주	114	17,566	7,295	856	11,464	37,294	120	
대구	159	16,266	2,775	1,443	12,161	32,804	208	
대전	111	16,343	2,580	1,198	11,597	31,828	208	
울산	91	12,807	3,204	802	9,313	26,217	56	
세종	1,479	39,975	3,016	1,665	23,448	69,583	7	
시도	경기	267	16,509	1,574	871	9,918	29,139	1,112
	강원	569	15,126	3,570	1,796	9,148	30,209	65
	충북	537	18,827	3,005	1,237	8,847	32,453	148
	충남	282	14,471	2,779	1,074	8,478	27,084	146
	전북	167	15,538	4,338	1,684	8,277	30,004	236
	전남	516	18,676	5,881	1,847	8,986	35,906	157
	경북	355	20,448	6,958	2,210	12,847	42,818	156
	경남	186	13,688	3,213	809	7,477	25,373	260
	제주	650	26,189	2,362	3,025	13,013	45,239	82
	F	5.8**	2.9***	25.7***	17.5***	3.2***	4.2***	
지역 규모	대도시	274	18,797	1,911	718	10,288	31,988	1,764
	중소도시	265	15,740	1,978	1,030	9,179	28,193	1,560
	농어촌	397	18,711	4,591	1,569	10,245	35,513	874
	F	7.0**	6.7**	69.6***	42.3***	3.5*	13.5***	
전체	296	17,643	2,494	1,011	9,867	31,312	4,198	
정원 규모	16~20인	75	9,858	1,329	315	7,246	18,823	1,605
	46~54인	286	18,394	2,191	1,072	8,179	30,122	309
	73~81인	628	27,739	3,799	1,951	9,726	43,843	195
	93~101인	651	31,639	5,382	2,941	18,120	58,734	174
	120~128인	853	41,436	3,562	3,021	20,845	69,716	45
	138~146인	494	42,527	3,907	2,702	31,396	81,026	22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165인 이상	872	93,986	12,251	4,288	38,485	149,883	71
F	54.9***	125.2***	43.6***	100.8***	120.8***	245.8***	
전체	230	17,304	2,314	921	9,735	30,504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41〉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81	2,311	181	149	128	2,851	684	
사회복지법인	54	2,732	739	373	1,048	4,947	133	
법인단체등	69	2,178	438	262	537	3,485	93	
시설 유형	민간	13	1,607	287	89	1,614	1,263	
가정	6	781	105	25	563	1,479	1,946	
부모협동	0	1,620	1,098	57	1,292	4,067	3	
직장	100	6,209	527	220	482	7,539	76	
F	135.5***	146.4***	58.7***	142.4***	244.3***	162.4***		
서울	29	1,677	43	27	803	2,579	917	
부산	21	1,321	184	89	854	2,470	175	
인천	38	1,845	304	78	710	2,976	145	
광주	9	1,464	608	71	955	3,108	120	
대구	13	1,356	231	120	1,013	2,734	208	
대전	9	1,362	215	100	966	2,652	208	
울산	8	1,067	267	67	776	2,185	56	
세종	123	3,331	251	139	1,954	5,799	7	
경기	22	1,376	131	73	827	2,428	1,112	
강원	47	1,260	298	150	762	2,517	65	
충북	45	1,569	250	103	737	2,704	148	
충남	24	1,206	232	90	706	2,257	146	
전북	14	1,295	362	140	690	2,500	236	
전남	43	1,556	490	154	749	2,992	157	
경북	30	1,704	580	184	1,071	3,568	156	
경남	16	1,141	268	67	623	2,114	260	
제주	54	2,182	197	252	1,084	3,770	82	
F	5.8***	2.9***	25.7***	17.5***	3.2***	4.2***		
지역	대도시	23	1,566	159	60	857	2,666	1,764
규모	중소도시	22	1,312	165	86	765	2,349	1,560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농어촌	33	1,559	383	131	854	2,959	874
F	7.0**	6.7**	69.6***	42.3***	3.5*	13.5***	
전체	25	1,470	208	84	822	2,609	4,198
정원 규모							
16~20인	6	821	111	26	604	1,569	1,605
46~54인	24	1,533	183	89	682	2,510	309
73~81인	52	2,312	317	163	810	3,654	195
93~101인	54	2,637	449	245	1,510	4,894	174
120~128인	71	3,453	297	252	1,737	5,810	45
138~146인	41	3,544	326	225	2,616	6,752	22
165인 이상	73	7,832	1,021	357	3,207	12,490	71
F	54.9***	125.2***	43.6***	100.8***	120.8***	245.8***	
전체	19	1,442	193	77	811	2,542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42〉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국공립	1,598	41,359	3,154	2,506	2,412	51,029	684
사회복지법인	827	44,409	13,158	5,608	14,905	78,908	133
법인단체등	1,165	42,810	9,502	4,484	11,692	69,653	93
시설 유형							
민간	256	34,210	6,598	1,977	33,303	76,345	1,263
가정	370	57,646	8,051	1,936	40,737	108,739	1,946
부모협동	0	58,860	29,927	1,495	41,652	131,935	3
직장	1,198	60,754	3,123	3,579	10,131	78,785	76
F	61.0***	89.9***	30.2***	24.7***	139.0***	104.6***	
시도							
서울	642	42,098	1,193	541	29,215	73,689	917
부산	580	40,887	7,163	2,480	26,588	77,697	175
인천	786	50,422	4,332	2,098	27,907	85,545	145
광주	321	50,159	14,131	1,958	27,776	94,345	120
대구	384	42,360	7,373	3,060	28,531	81,708	208
대전	221	47,631	7,235	2,184	33,448	90,720	208
울산	345	51,716	12,565	2,302	29,586	96,514	56
세종	824	24,933	2,652	1,335	20,756	50,500	7
경기	553	50,576	5,197	1,766	36,204	94,296	1,112
강원	784	40,517	10,891	3,278	22,970	78,441	65
충북	947	47,817	7,661	2,889	25,310	84,624	148

구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계	기관수	
충남	665	54,021	9,275	3,187	31,894	99,042	146	
전북	344	48,387	14,006	4,732	24,264	91,732	236	
전남	1,035	50,051	16,006	4,182	24,920	96,194	157	
경북	637	46,076	15,359	4,964	25,392	92,428	156	
경남	488	49,696	11,143	2,633	28,948	92,909	260	
제주	966	51,884	7,311	5,098	26,253	91,512	82	
F	3.0**	4.6**	53.4**	29.6**	3.8**	5.7**		
지역	대도시	536	43,923	4,323	1,454	29,159	79,395	1,764
규모	중소도시	516	48,989	6,516	2,473	32,316	90,810	1,560
	농어촌	796	50,864	12,960	3,427	28,719	96,766	874
F	8.6***	18.5***	201.9**	73.3***	4.4*	28.8***		
전체	583	47,250	6,936	2,244	30,241	87,253	4,198	
정원	16~20인	377	55,663	7,897	1,858	40,521	106,314	1,605
규모	46~54인	541	38,124	5,148	2,366	17,863	64,042	309
	73~81인	744	35,515	5,220	2,500	13,049	57,026	195
	93~101인	645	34,015	6,033	3,124	20,120	63,938	174
	120~128인	687	34,315	2,862	2,407	18,344	58,615	45
	138~146인	337	30,606	3,419	2,289	26,030	62,680	22
	165인 이상	397	42,365	5,805	2,037	21,152	71,757	71
F	3.1**	33.4***	6.1***	3.5**	42.1***	48.4***		
전체	452	49,231	7,001	2,085	32,838	91,607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43〉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국공립	43,616	15,550	4,348	63,514	684	
사회복지법인	46,284	17,811	4,588	68,683	133	
법인단체등	37,677	12,359	3,556	53,592	93	
시설	민간	32,686	12,392	1,907	46,985	1,263
유형	가정	11,446	1,326	684	13,456	1,946
	부모협동	27,529	4,646	220	32,395	3
	직장	97,229	24,424	12,484	134,137	76
F	436.6***	342.9***	271.9***	470.6***		
시도	서울	33,138	10,103	2,541	45,782	917
	부산	24,347	6,843	1,750	32,940	175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인천	27,558	8,632	2,003	38,194	145
광주	24,803	8,437	2,108	35,348	120
대구	25,812	7,440	2,536	35,788	208
대전	25,861	8,723	2,058	36,642	208
울산	17,536	5,163	1,251	23,949	56
세종	80,902	33,547	7,632	122,081	7
경기	23,650	6,892	1,537	32,079	1,112
강원	22,811	9,395	1,809	34,015	65
충북	28,172	8,870	2,306	39,348	148
충남	19,770	5,735	1,758	27,263	146
전북	21,379	6,325	1,810	29,513	236
전남	29,028	11,914	2,137	43,079	157
경북	29,518	9,336	3,494	42,348	156
경남	17,580	5,943	1,402	24,926	260
제주	36,453	10,420	3,020	49,893	82
F	11.2***	8.0***	6.2***	10.7***	
대도시	29,571	9,136	2,318	41,025	1,764
지역구 중소도시	22,948	6,793	1,596	31,336	1,560
모 농어촌	25,812	8,632	2,316	36,760	874
F	26.4***	18.0***	18.2***	26.0***	
전체	26,327	8,160	2,049	36,537	4,198
16~20인	12,117	1,434	711	14,262	1,605
46~54인	29,078	10,467	2,264	41,808	309
73~81인	44,639	17,414	4,511	66,564	195
정원 93~101인	52,118	19,609	3,973	75,701	174
규모 120~128인	66,634	26,525	5,347	98,506	45
138~146인	79,709	34,555	3,834	118,099	22
165인 이상	132,811	44,157	11,561	188,528	71
F	862.0***	760.1***	158.1***	1,019.9***	
전체	24,943	7,201	1,882	34,026	2,421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44〉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시설 국공립	3,635	1,296	362	5,293	684
유형 사회복지법인	3,857	1,484	382	5,724	133

	구분	급간식비	교제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법인단체등	3,140	1,030	296	4,466	93
	민간	2,724	1,033	159	3,915	1,263
	가정	954	110	57	1,121	1,946
	부모협동	2,294	387	18	2,700	3
	직장	8,102	2,035	1,040	11,178	76
	F	436.6***	342.9***	271.9***	470.6***	
시도	서울	2,761	842	212	3,815	917
	부산	2,029	570	146	2,745	175
	인천	2,297	719	167	3,183	145
	광주	2,067	703	176	2,946	120
	대구	2,151	620	211	2,982	208
	대전	2,155	727	171	3,053	208
	울산	1,461	430	104	1,996	56
	세종	6,742	2,796	636	10,173	7
	경기	1,971	574	128	2,673	1,112
	강원	1,901	783	151	2,835	65
	충북	2,348	739	192	3,279	148
	충남	1,647	478	147	2,272	146
	전북	1,782	527	151	2,459	236
	전남	2,419	993	178	3,590	157
	경북	2,460	778	291	3,529	156
	경남	1,465	495	117	2,077	260
	제주	3,038	868	252	4,158	82
		F	11.2***	8.0***	6.2***	10.7***
지역구 모	대도시	2,464	761	193	3,419	1,764
	중소도시	1,912	566	133	2,611	1,560
	농어촌	2,151	719	193	3,063	874
	F	26.4***	18.0***	18.2***	26.0***	
	전체	2,194	680	171	3,045	4,198
정원 규모	16~20인	1,010	120	59	1,188	1,605
	46~54인	2,423	872	189	3,484	309
	73~81인	3,720	1,451	376	5,547	195
	93~101인	4,343	1,634	331	6,308	174
	120~128인	5,553	2,210	446	8,209	45
	138~146인	6,642	2,880	320	9,842	22
165인 이상	11,068	3,680	963	15,711	71	
	F	862.0***	760.1***	158.1***	1,019.9***	
	전체	2,079	600	157	2,836	2,421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01$

〈부록표 IV-3-45〉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제외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시설 유형	국공립	61,951	20,953	6,357	89,261	684
	사회복지법인	57,264	21,403	5,554	84,222	133
	법인단체등	60,064	19,311	5,954	85,329	93
	민간	54,897	18,746	3,056	76,699	1,263
	가정	68,919	7,930	4,148	80,997	1,946
	부모협동	81,413	14,045	1,658	97,115	3
	직장	90,759	24,316	11,887	126,962	76
	F	38.3***	196.2***	75.7***	26.2***	
시도	서울	64,656	16,342	4,305	85,303	917
	부산	57,184	11,584	3,821	72,589	175
	인천	64,878	14,747	2,953	82,578	145
	광주	60,809	13,865	4,912	79,586	120
	대구	59,449	13,996	5,676	79,122	208
	대전	62,986	15,634	4,754	83,374	208
	울산	60,695	11,913	5,251	77,860	56
	세종	51,589	23,151	4,449	79,189	7
	경기	66,543	13,058	3,544	83,145	1,112
	강원	53,683	17,268	3,964	74,915	65
	충북	62,688	14,838	4,563	82,088	148
	충남	69,625	13,665	5,436	88,726	146
	전북	58,939	10,515	4,918	74,373	236
	전남	66,053	17,304	4,617	87,973	157
	경북	61,186	16,527	7,048	84,761	156
경남	56,745	13,166	4,890	74,800	260	
제주	66,302	13,805	5,201	85,308	82	
	F	3.5***	5.7***	8.3***	3.1***	
지역구 모	대도시	62,943	15,309	4,395	82,647	1,764
	중소도시	63,882	12,608	3,882	80,373	1,560
	농어촌	63,483	15,215	5,344	84,041	874
	F	0.4	21.5***	25.6***	2.8	
정원 규모	전체	63,404	14,286	4,402	82,092	4,198
	16~20인	67,160	8,008	3,953	79,121	1,605
	46~54인	59,367	21,424	4,576	85,367	309
	73~81인	56,149	21,783	5,573	83,504	195
	93~101인	54,867	20,353	4,194	79,414	174
	120~128인	53,383	21,019	4,274	78,676	45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계	기관수
138~146인	57,113	24,105	2,611	83,829	22
165인 이상	63,830	21,774	5,126	90,731	71
F	9.1***	169.3***	4.9***	2.2*	
전체	63,950	12,509	4,208	80,667	2,421

주: 사업운영비 중 기타필요경비지출과 특별활동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  $p < .05$ , \*\*\*  $p < .001$

〈부록표 IV-3-46〉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43,616	15,550	4,348	16,697	20,196	100,407	684	
사회복지법인	46,284	17,811	4,588	19,142	33,307	121,133	133	
법인단체등	37,677	12,359	3,556	16,184	19,281	89,057	93	
시설 유형	민간	32,686	12,392	1,907	22,890	29,316	99,192	1,263
가정	11,446	1,326	684	3,508	3,253	20,217	1,946	
부모협동	27,529	4,646	220	19,376	17,843	69,614	3	
직장	97,229	24,424	12,484	15,714	27,443	177,294	76	
F	436.6***	342.9***	271.9***	147.2***	263.5***	349.6***		
서울	33,138	10,103	2,541	10,734	18,233	74,748	917	
부산	24,347	6,843	1,750	9,582	18,262	60,784	175	
인천	27,558	8,632	2,003	22,098	13,519	73,810	145	
광주	24,803	8,437	2,108	10,857	17,767	63,973	120	
대구	25,812	7,440	2,536	9,578	22,729	68,095	208	
대전	25,861	8,723	2,058	15,630	20,166	72,438	208	
울산	17,536	5,163	1,251	4,106	16,727	44,783	56	
세종	80,902	33,547	7,632	28,300	45,152	195,533	7	
경기	23,650	6,892	1,537	18,643	13,595	64,317	1,112	
강원	22,811	9,395	1,809	4,947	14,356	53,318	65	
충북	28,172	8,870	2,306	7,114	17,801	64,264	148	
충남	19,770	5,735	1,758	8,235	10,472	45,970	146	
전북	21,379	6,325	1,810	9,362	8,499	47,374	236	
전남	29,028	11,914	2,137	8,321	16,383	67,784	157	
경북	29,518	9,336	3,494	8,139	13,070	63,557	156	
경남	17,580	5,943	1,402	7,331	9,736	41,993	260	
제주	36,453	10,420	3,020	9,317	24,238	83,448	82	
F	11.2***	8.0***	6.2***	14.7***	8.2***	6.5***		
지역 규모	대도시	29,571	9,136	2,318	12,010	18,832	71,867	1,764
중소도시	22,948	6,793	1,596	13,820	12,972	58,129	1,560	
농어촌	25,812	8,632	2,316	11,116	13,818	61,695	874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F	26.4***	18.0***	18.2***	5.6**	30.9**	15.2***		
전체	26,327	8,160	2,049	12,497	15,610	64,644	4,198	
정월 규모	16~20인	12,117	1,434	711	3,926	3,631	21,818	1,605
	46~54인	29,078	10,467	2,264	11,986	17,705	71,499	309
	73~81인	44,639	17,414	4,511	21,385	28,273	116,222	195
	93~101인	52,118	19,609	3,973	32,785	38,137	146,623	174
	120~128인	66,634	26,525	5,347	50,155	59,300	207,960	45
	138~146인	79,709	34,555	3,834	72,521	78,953	269,573	22
	165인 이상	132,811	44,157	11,561	67,705	85,935	342,169	71
F	862.0**	760.1**	158.1**	358.5**	680.4**	1,313.4**		
전체	24,943	7,201	1,882	11,788	14,025	59,839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47>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3,635	1,296	362	1,391	1,683	8,367	684	
사회복지법인	3,857	1,484	382	1,595	2,776	10,094	133	
법인단체등	3,140	1,030	296	1,349	1,607	7,421	93	
시설 유형	민간	2,724	1,033	159	1,908	2,443	8,266	1,263
	가정	954	110	57	292	271	1,685	1,946
	부모협동	2,294	387	18	1,615	1,487	5,801	3
	직장	8,102	2,035	1,040	1,309	2,287	14,775	76
F	436.6***	342.9***	271.9***	147.2***	263.5***	349.6***		
서울	2,761	842	212	894	1,519	6,229	917	
부산	2,029	570	146	798	1,522	5,065	175	
인천	2,297	719	167	1,841	1,127	6,151	145	
광주	2,067	703	176	905	1,481	5,331	120	
대구	2,151	620	211	798	1,894	5,675	208	
대전	2,155	727	171	1,302	1,681	6,036	208	
울산	1,461	430	104	342	1,394	3,732	56	
시도	세종	6,742	2,796	636	2,358	3,763	16,294	7
	경기	1,971	574	128	1,554	1,133	5,360	1,112
	강원	1,901	783	151	412	1,196	4,443	65
	충북	2,348	739	192	593	1,483	5,355	148
	충남	1,647	478	147	686	873	3,831	146
	전북	1,782	527	151	780	708	3,948	236
	전남	2,419	993	178	693	1,365	5,649	157
	경북	2,460	778	291	678	1,089	5,296	156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경남	1,465	495	117	611	811	3,499	260	
제주	3,038	868	252	776	2,020	6,954	82	
F	11.2***	8.0***	6.2***	14.7**	8.2***	6.5**		
지역	대도시	2,464	761	193	1,001	1,569	5,989	1,764
규모	중소도시	1,912	566	133	1,152	1,081	4,844	1,560
	농어촌	2,151	719	193	926	1,151	5,141	874
F	26.4**	18.0***	18.2***	5.6**	30.9***	15.2**		
전체	2,194	680	171	1,041	1,301	5,387	4,198	
정원	16~20인	1,010	120	59	327	303	1,818	1,605
규모	46~54인	2,423	872	189	999	1,475	5,958	309
	73~81인	3,720	1,451	376	1,782	2,356	9,685	195
	93~101인	4,343	1,634	331	2,732	3,178	12,219	174
	120~128인	5,553	2,210	446	4,180	4,942	17,330	45
	138~146인	6,642	2,880	320	6,043	6,579	22,464	22
	165인 이상	11,068	3,680	963	5,642	7,161	28,514	71
F	862.0***	760.1***	158.1***	358.5***	680.4***	1,313.4***		
전체	2,079	600	157	982	1,169	4,987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48〉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사업운영비) 규모:  
필요경비 등 포함

단위: 원, 개소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국공립	61,951	20,953	6,357	22,301	25,819	137,381	684	
사회복지법인	57,264	21,403	5,554	21,257	34,803	140,282	133	
법인단체등	60,064	19,311	5,954	22,540	28,842	136,711	93	
시설	민간	54,897	18,746	3,056	32,597	43,033	152,328	1,263
유형	가정	68,919	7,930	4,148	19,206	18,197	118,400	1,946
	부모협동	81,413	14,045	1,658	38,986	35,768	171,869	3
	직장	90,759	24,316	11,887	18,949	26,341	172,251	76
F	38.3***	196.2***	75.7***	41.1***	160.5***	42.0***		
서울	64,656	16,342	4,305	18,320	29,099	132,721	917	
부산	57,184	11,584	3,821	17,647	33,212	123,448	175	
인천	64,878	14,747	2,953	44,732	27,577	154,886	145	
시도	광주	60,809	13,865	4,912	14,766	25,696	120,048	120
	대구	59,449	13,996	5,676	13,589	38,184	130,895	208
	대전	62,986	15,634	4,754	28,904	37,911	150,190	208
	울산	60,695	11,913	5,251	8,379	37,586	123,824	56

구분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 경비지출	특별활동비 지출	계	기관수	
세종	51,589	23,151	4,449	23,224	31,454	133,868	7	
경기	66,543	13,058	3,544	40,494	28,673	152,312	1,112	
강원	53,683	17,268	3,964	9,472	25,315	109,703	65	
충북	62,688	14,838	4,563	12,055	28,960	123,104	148	
충남	69,625	13,665	5,436	20,480	25,606	134,812	146	
전북	58,939	10,515	4,918	16,666	15,380	106,419	236	
전남	66,053	17,304	4,617	9,363	18,104	115,440	157	
경북	61,186	16,527	7,048	11,439	18,810	115,010	156	
경남	56,745	13,166	4,890	15,705	23,110	113,616	260	
제주	66,302	13,805	5,201	11,852	26,114	123,274	82	
F	3.5***	5.7***	8.3***	77.4***	13.7***	15.4***		
대도시	62,943	15,309	4,395	20,812	31,590	135,049	1,764	
지역 규모	중소도시	63,882	12,608	3,882	29,273	26,117	135,763	1,560
농어촌	63,483	15,215	5,344	20,479	23,312	127,832	874	
F	0.4	21.5***	25.6***	60.2***	39.2***	4.6*		
전체	63,404	14,286	4,402	23,887	27,833	133,812	4,198	
정원 규모	16~20인	67,160	8,008	3,953	20,306	19,467	118,895	1,605
46~54인	59,367	21,424	4,576	24,179	35,969	145,515	309	
73~81인	56,149	21,783	5,573	26,423	35,046	144,973	195	
93~101인	54,867	20,353	4,194	34,154	39,822	153,390	174	
120~128인	53,383	21,019	4,274	40,638	46,703	166,016	45	
138~146인	57,113	24,105	2,611	54,655	55,425	193,910	22	
165인 이상	63,830	21,774	5,126	34,061	43,139	167,930	71	
F	9.1***	169.3***	4.9***	26.9***	93.5***	33.6***		
전체	63,950	12,509	4,208	23,382	25,819	129,868	2,421	

\*  $p < .05$ , \*\*\*  $p < .001$ 

## 〈부록표 IV-3-49〉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8,891	5,167	1,967	16,025	684	
사회복지법인	13,595	9,674	5,524	28,794	133	
법인단체등	6,124	4,284	2,940	13,348	93	
시설 유형	민간	4,546	3,911	1,175	9,631	1,263
가정	1,144	1,320	310	2,774	1,946	
부모협동	793	3,997	1,113	5,903	3	
직장	10,422	6,170	4,906	21,498	76	
F	66.8***	39.0***	71.4***	124.7***		
시도	서울	6,206	4,684	1,137	12,026	917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부산	3,094	3,159	858	7,112	175
인천	2,747	2,775	1,497	7,020	145
광주	3,173	2,105	932	6,210	120
대구	4,124	2,630	767	7,521	208
대전	3,370	2,111	1,560	7,041	208
울산	1,492	2,187	544	4,222	56
세종	25,654	9,227	850	35,731	7
경기	3,242	2,068	1,014	6,325	1,112
강원	3,745	2,886	1,623	8,253	65
충북	5,446	3,504	964	9,915	148
충남	4,874	2,853	831	8,558	146
전북	2,449	3,366	1,645	7,461	236
전남	3,691	3,045	1,294	8,030	157
경북	6,554	3,583	1,940	12,077	156
경남	1,751	2,574	913	5,238	260
제주	4,709	7,424	1,781	13,914	82
F	6.1**	5.0**	1.6	7.6***	
지역구					
대도시	4,859	3,669	1,138	9,666	1,764
중소도시	3,218	2,396	963	6,577	1,560
모	4,154	3,431	1,495	9,080	874
F	8.5***	9.7***	5.4**	15.5***	
전체	4,102	3,146	1,147	8,396	4,198
정원					
16~20인	1,423	1,487	327	3,237	1,605
46~54인	4,987	3,093	1,114	9,194	309
73~81인	8,076	5,198	2,101	15,374	195
93~101인	6,320	6,618	3,442	16,381	174
규모					
120~128인	11,150	5,350	4,867	21,366	45
138~146인	12,359	8,513	1,881	22,753	22
165인 이상	21,767	11,665	7,434	40,866	71
F	89.3***	82.2***	56.4***	176.9***	
전체	3,643	2,793	1,101	7,537	2,421

\*\*  $p < .01$ , \*\*\*  $p < .001$ 

## 〈부록표 IV-3-50〉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시설					
국공립	741	431	164	1,335	684
사회복지법인	1,133	806	460	2,399	133
법인단체등	510	357	245	1,112	93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민간	379	326	98	803	1,263
가정	95	110	26	231	1,946
부모협동	66	333	93	492	3
직장	869	514	409	1,792	76
F	66.8***	39.0***	71.4***	124.7***	
서울	517	390	95	1,002	917
부산	258	263	72	593	175
인천	229	231	125	585	145
광주	264	175	78	517	120
대구	344	219	64	627	208
대전	281	176	130	587	208
울산	124	182	45	352	56
세종	2,138	769	71	2,978	7
경기	270	172	85	527	1,112
강원	312	240	135	688	65
충북	454	292	80	826	148
충남	406	238	69	713	146
전북	204	281	137	622	236
전남	308	254	108	669	157
경북	546	299	162	1,006	156
경남	146	214	76	437	260
제주	392	619	148	1,160	82
F	6.1***	5.0***	1.6	7.6***	
대도시	405	306	95	805	1,764
지역규모 중소도시	268	200	80	548	1,560
모 농어촌	346	286	125	757	874
F	8.5***	9.7***	5.4**	15.5***	
전체	342	262	96	700	4,198
16~20인	119	124	27	270	1,605
46~54인	416	258	93	766	309
73~81인	673	433	175	1,281	195
정원 93~101인	527	552	287	1,365	174
규모 120~128인	929	446	406	1,781	45
138~146인	1,030	709	157	1,896	22
165인 이상	1,814	972	620	3,405	71
F	89.3***	82.2***	56.4***	176.9***	
전체	304	233	92	628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51〉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시설비)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13,369	8,062	2,732	24,162	684	
사회복지법인	16,752	12,985	6,150	35,887	133	
법인단체등	11,161	7,182	3,963	22,306	93	
시설 유형	민간	7,219	7,450	1,919	16,588	1,263
	가정	6,638	7,812	2,120	16,570	1,946
	부모협동	1,740	10,272	3,378	15,390	3
	직장	7,057	5,686	4,766	17,508	76
	F	17.2**	0.7	4.2**	8.6**	
서울	11,222	10,864	1,935	24,020	917	
부산	6,041	7,662	1,788	15,491	175	
인천	4,956	7,463	3,291	15,711	145	
광주	5,702	4,519	2,086	12,307	120	
대구	6,951	7,173	1,599	15,723	208	
대전	9,204	6,170	2,531	17,905	208	
울산	4,082	8,044	2,415	14,541	56	
세종	12,957	5,341	545	18,843	7	
경기	8,090	5,767	2,210	16,067	1,112	
강원	6,167	6,985	3,352	16,503	65	
충북	11,831	9,077	2,030	22,938	148	
충남	10,066	9,779	2,115	21,960	146	
전북	6,118	7,971	5,449	19,538	236	
전남	5,970	7,425	2,292	15,687	157	
경북	11,472	6,618	3,113	21,204	156	
경남	4,670	8,788	2,144	15,601	260	
제주	6,759	9,634	2,327	18,720	82	
	F	4.1**	1.1	1.5	2.3**	
지역구 모	대도시	9,135	8,870	2,097	20,102	1,764
	중소도시	7,618	6,594	2,505	16,717	1,560
	농어촌	7,996	8,067	2,711	18,774	874
	F	2.9	2.3	1.1	3.2**	
전체	8,334	7,857	2,377	18,567	4,198	
정월 규모	16~20인	7,500	8,075	1,763	17,339	1,605
	46~54인	10,446	6,232	2,364	19,042	309
	73~81인	9,801	6,541	2,626	18,968	195
	93~101인	7,018	7,193	3,808	18,018	174
	120~128인	8,782	4,298	4,182	17,262	45
	138~146인	8,004	6,629	1,266	15,899	22
	165인 이상	9,961	5,708	3,530	19,200	71

구분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계	기관수
F	1.6	2.4*	6.7***	0.4	
전체	8,127	7,500	2,149	17,776	2,421

\*  $p < .05$ ,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52〉 시간연장어린이집 연간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72	376	696	65	1,208	684	
사회복지법인	248	2,960	345	149	3,702	133	
법인단체등	10	2,047	549	43	2,649	93	
시설 유형	민간	404	4,937	95	33	5,469	1,263
가정	5	2,688	52	12	2,757	1,946	
부모협동	0	22,667	0	36	22,702	3	
직장	7,339	734	1,289	15	9,377	76	
F	7.7***	35.1***	3.6**	3.7**	14.5***		
서울	603	1,277	232	21	2,134	917	
부산	0	3,375	67	37	3,478	175	
인천	0	2,172	192	45	2,409	145	
광주	10	5,002	33	7	5,051	120	
대구	0	1,993	112	27	2,132	208	
대전	110	4,979	27	14	5,131	208	
울산	0	2,055	37	8	2,100	56	
세종	0	1,186	0	211	1,396	7	
경기	468	3,510	171	44	4,193	1,112	
강원	55	3,113	65	84	3,316	65	
충북	0	2,533	134	22	2,689	148	
충남	1	2,357	75	16	2,448	146	
전북	197	6,071	106	21	6,395	236	
전남	0	2,029	308	107	2,445	157	
경북	69	5,285	1,832	24	7,210	156	
경남	12	2,127	64	11	2,213	260	
제주	0	2,763	36	37	2,835	82	
F	0.2	9.4***	1.8*	0.8	3.5***		
지역 규모	대도시	327	2,280	159	23	2,789	1,764
중소도시	368	3,483	138	38	4,027	1,560	
농어촌	12	3,403	452	41	3,908	874	
F	0.5	12.7***	2.1	0.9	4.7**		
전체	277	2,961	212	32	3,482	4,198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16~20인	6	2,778	72	14	2,870	1,605	
46~54인	612	2,373	150	24	3,159	309	
73~81인	278	1,539	173	27	2,017	195	
정원 규모	93~101인	23	3,838	175	53	4,089	174
120~128인	2	6,922	95	27	7,046	45	
138~146인	0	2,575	141	82	2,798	22	
165인 이상	187	9,602	495	41	10,325	71	
F	1.1	12.8 <sup>***</sup>	5.1 <sup>***</sup>	3.9 <sup>**</sup>	11.0 <sup>***</sup>		
전체	112	2,978	111	21	3,221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53〉 시간연장어린이집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6	31	58	5	101	684	
사회복지법인	21	247	29	12	309	133	
법인단체등	1	171	46	4	221	93	
시설 유형	민간	34	411	8	3	456	1,263
가정	0	224	4	1	230	1,946	
부모협동	0	1,889	0	3	1,892	3	
직장	612	61	107	1	781	76	
F	7.7 <sup>***</sup>	35.1 <sup>***</sup>	3.6 <sup>**</sup>	3.7 <sup>**</sup>	14.5 <sup>***</sup>		
서울	50	106	19	2	178	917	
부산	0	281	6	3	290	175	
인천	0	181	16	4	201	145	
광주	1	417	3	1	421	120	
대구	0	166	9	2	178	208	
대전	9	415	2	1	428	208	
울산	0	171	3	1	175	56	
세종	0	99	0	18	116	7	
시도	경기	39	292	14	4	349	1,112
강원	5	259	5	7	276	65	
충북	0	211	11	2	224	148	
충남	0	196	6	1	204	146	
전북	16	506	9	2	533	236	
전남	0	169	26	9	204	157	
경북	6	440	153	2	601	156	
경남	1	177	5	1	184	260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제주	0	230	3	3	236	82
F	0.2	9.4***	1.8*	0.8	3.5***	
대도시	27	190	13	2	232	1,764
지역 중소도시	31	290	12	3	336	1,560
규모 농어촌	1	284	38	3	326	874
F	0.5	12.7***	2.1	0.9	4.7**	
전체	23	247	18	3	290	4,198
정원 16~20인	1	232	6	1	239	1,605
46~54인	51	198	12	2	263	309
73~81인	23	128	14	2	168	195
93~101인	2	320	15	4	341	174
규모 120~128인	0	577	8	2	587	45
138~146인	0	215	12	7	233	22
165인 이상	16	800	41	3	860	71
F	1.1	12.8***	5.1***	3.9**	11.0***	
전체	9	248	9	2	268	2,421

\*\*  $p < .01$ , \*\*\*  $p < .001$

〈부록표 IV-3-54〉 시간연장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세출(전출금) 규모

단위: 원, 개소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국공립	71	776	1,004	79	1,931	684
사회복지법인	392	4,925	448	235	6,000	133
법인단체등	23	4,803	716	115	5,657	93
시설 민간	339	10,781	191	58	11,369	1,263
유형 가정	25	17,529	307	69	17,930	1,946
부모협동	0	59,858	0	78	59,936	3
직장	11,622	1,334	2,371	8	15,335	76
F	16.4***	30.0***	3.9**	1.8	23.2***	
서울	512	3,905	526	56	4,998	917
부산	1	10,390	189	100	10,680	175
인천	0	10,217	428	105	10,751	145
광주	15	13,777	85	22	13,899	120
시도 대구	0	7,241	213	37	7,491	208
대전	138	21,950	97	54	22,239	208
울산	0	11,710	215	19	11,943	56
세종	0	2,142	0	177	2,320	7



구분	법인회계 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계	기관수
경기	747	15,454	462	91	16,754	1,112
강원	138	10,131	134	145	10,548	65
충북	0	9,047	343	82	9,472	148
충남	2	9,649	256	50	9,958	146
전북	281	26,911	282	41	27,516	236
전남	0	7,634	529	207	8,369	157
경북	286	17,214	2,246	73	19,820	156
경남	50	11,933	198	39	12,220	260
제주	0	5,331	61	36	5,428	82
F	0.2	10.7 <sup>***</sup>	1.5	0.9	9.7 <sup>***</sup>	
대도시	283	8,088	364	56	8,791	1,764
지역 중소도시	598	15,663	346	85	16,691	1,560
규모 농어촌	36	12,517	745	84	13,382	874
F	0.9	24.1 <sup>***</sup>	2.0	1.1	23.3 <sup>***</sup>	
전체	349	11,825	436	73	12,682	4,198
정원 규모 16~20인	27	16,821	409	79	17,336	1,605
46~54인	1,071	5,665	323	60	7,119	309
73~81인	610	2,240	221	33	3,104	195
93~101인	26	5,498	191	61	5,776	174
120~128인	2	10,475	75	20	10,572	45
138~146인	0	2,361	91	54	2,506	22
165인 이상	100	5,012	233	18	5,363	71
F	1.2	11.4 <sup>***</sup>	0.4	0.5	10.3 <sup>***</sup>	
전체	209	12,814	353	68	13,443	2,421

\*\*  $p < .01$ , \*\*\*  $p < .001$



연구보고 2016-29

---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 연구 2016**

---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00-8 93330